

국역 『清季中日韓關係史料』 1

동북아역사 자료총서 41

역자 서문

이 책에서 국역하여 소개하는 자료는 원래 『淸季중일한관계사료(淸季中日韓關係史料)』라는 제목으로 편찬된 사료집의 일부다. 이 분야의 전문 연구자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듯이, 이 사료집은 타이완[臺灣]의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당안관(檔案館)에서 소장하고 있는 청말(淸末)의 외교 관계 문서(중국에서는 이러한 기록 문서를 檔案이라고 부른다) 가운데 한·중·일 세 나라 사이의 외교 관계에 관련된 사료를 주제별로 골라서 출판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1864~1912년까지 청 말의 외교를 담당한 부서인 총리각국사무아문(總理各國事務衙門)과 외무부(外務部, 1901년 이후) 및 중화민국시기의 외교부(外交部, 1912년 이후) 문서 가운데, 특히 조선과 관련된 것을 중점적으로 선별하여 편찬한 것으로, 총 11권 7,300여 페이지(4,300건, 색인 1권 포함)의 방대한 분량이다.

이 시기 한중관계나 동아시아사 연구에서 이 사료집이 가지는 위치는 그야말로 독보적이다. 이러한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사료집의 출판을 최근까지도 계속 이어져오고 있지만, 보충하는 자료일 뿐 이 사료집을 대신할 만한 정도의 비중을 갖춘 것은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미 출간 40년이 되지만, 이 사료집은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로서의 위치를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료집의 전체적인 내용은 주로 『총리각국사무아문당안』에 포함된 자료를 다음과 같이 여덟 가지 주제로 분류한 것이다.

- (1) 朝·淸 通商 및 외교 교섭
- (2) 朝·淸 국경교섭

- (3) 청일전쟁 이전 조선과 각국의 외교 교섭
- (4)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 (5) 청일전쟁
- (6) 청·일 통상 및 외교 교섭
- (7) 러·일전쟁과 청의 입장
- (8) 일본의 중국 동북지역 침략

이 주제의 목록을 일별하면 알 수 있듯이, 여기에는 근대 동아시아 정세변화와 관련된 모든 중요 사안들이 망라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료집은 1972년 처음 출간되자마자, 곧 근대 한국과 중국·일본 등 동아시아 국제관계사 연구에 있어 필수적인 기초 자료가 되었다. 특히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 당안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총리각국사무아문당안』 가운데 「조선당(朝鮮檔)」 부분은 거의 모두 여기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 사료집의 출판은 근대 한국을 둘러싼 동아시아 국제관계 연구의 진전과 활성화에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오늘날에는 인터넷 상으로도 이 「조선당」이 모두 공개되었다). 또한 이 사료집은 목차가 일자별로 분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제별로도 분류되어 있어, 그간 편집된 편년체 위주의 자료집에 비하여 검색이 용이하므로, 연구자에게 더욱 유용한 자료로서의 기능과 장점을 갖추고 있다. 또한 근대 시기를 다루고 있는 다른 외교문서 관련 자료집과 비교해 볼 때, 해당 사료의 약 86%(3,600건)가 새롭게 공개된 내용이라는 점도 그 중요성을 더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료집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국역 『淸季中日韓關係史料』 1』의 출간은 특히 다음 두 분야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되리라 예상된다.

첫째, 근대(동아시아) 외교사 분야다. 조선은 1899년 한청조약(韓淸條約)이 체결되기까지 청과 불평등한 조공책봉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서구 세력의 진출과 더불어 ‘만국공법(萬國公法)’이 주지하는 조약체제로의 전환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청 자신도 여기에 편입되었다), 청은 기존의 불간섭 원칙을 버리고, 적극적인 간섭주의를 채택하면서, 기존 조공체제 내의 속국(屬國)이었던 조선을 근대적 외교 관계 속의 속방(屬邦)으로 편입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은 특히 외교 부분에서 두드러졌다. 1876년 일본과의 개항을 시작으로 조선에서 체결한 구미 각국과의 조약은 대부분이 청의 중용 혹은 중계를 통해 이루어졌다. 때문에 조선은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청과의 협의하에 외교권을 행사했고, 대부분의 외교 활동도 청에

게 보고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따라서 조선의 외교 활동 및 이에 대한 청의 대응, 청의 요구와 그에 대한 조선의 대응에 대해 이 사료집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1880년대 이후가 되면, 청은 외교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직접 청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내정에까지 개입하는 적극적인 간섭주의로 나섰으므로, 이 사료집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마찬가지로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에서 최근 공개한 「주한사관당안(駐韓使館檔案)」도 이 사료집을 보완하는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는 점도 알려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사료집은 근대 조선·청의 변경 및 국경 문제와 관련해서 활용할 여지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근대시기는 주권이라는 개념과 함께 근대적 영토 관념이 형성된 시기다. 조선의 영토는 북으로 청의 봉금(封禁) 지역과 맞닿아 있었다. 봉금 지역에 대한 청의 관리는 아편전쟁 이후 급격히 무너져갔고, 이에 중국 본토의 한족(漢族)뿐만 아니라, 조선인까지 봉금 지역으로의 이주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활발한 이주현상으로 인해 나타난 전통적 무주공간(無住空間)의 해체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점은 조·청 양국의 최초 경계 설정 과정, 국경 관념의 형성, 그리고 국경 조사 및 회담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동북아역사재단에서도 이 분야에 관한 이미 상당한 분량의 자료집과 연구서를 출간하였지만, 이 사료집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된 수많은 문서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연구 분야의 진전과 확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사료집이 가지고 있는 질적·양적인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이 이용하기에는 지금까지 몇 가지 난점들이 존재해 왔다. 우선은 방대한 양이 한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외교 문서는 매우 미묘한 단어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히 읽어 낼 수 있는 독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문법 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한문, 그것도 조선의 한문과는 차이가 있는 19세기 청대(淸代)의 한문을 미묘한 뉘앙스까지 파악하면서 분명하게 독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물론 이 책이 그것을 모두 완벽하게 처리하였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관련 연구자들에게는 자료의 활용도와 접근성을 훨씬 더 높여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대 공문서와 외교문서의 형식(程式)이라는 문제를 들 수 있다. 이 사료집에 포함된 자료의 대부분은 청대 공문서와 외교문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주고받은 것들이다. 청대 공문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문서 작성 이전에 수신한 문서를 새로운 문서의 본문 속에서 거의 그대로, 또는 줄여서 인용하는 방식으로 문서를 작성한다는 점이다.

문서의 주제가 간단한 경우라도 주고받은 정부 기관이 몇 군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만약 해당 문서가 여러 기관을 거치면서 오르내리거나 회람될 경우, 문서 안에서 인용하는 화자(話者)의 수는 급속도로 늘어나게 된다. 각각의 화자들은 사건의 보고 및 처리 주체를 가리키며, 사건의 처리시점도 아울러 여기에 반영된다. 따라서 상하 관계 또는 대등한 관계를 반영하는 화자의 구분은 문서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당시 문서를 주고받은 당사자들에게는 자명한 사실이었겠지만, 오늘날 한국의 독자에게 낯설은 청대 관료 체계의 다양한 직급에 걸쳐 존재하는 화자의 위치와 상하 관계, 직무와 역할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청대사나 외교사를 연구하는 전문 연구자에게도 이것은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이 사료집에 수록된 대부분의 문서는 화자를 구분하지 않고 작성되어 있었다. 독자의 편의를 위해 출판 이전에 원 문서 구두점을 찍는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누가 화자이고, 그의 발언이나 문서 인용이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디에서 끝나는지를 알려주는 부호는 여전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서술한 어려움이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화자의 정확한 위상을 구분함으로써 본문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대 공문서의 작성 방식과 관련 용어들에 대한 숙달이 필요하다. 때문에 이 번역 사료집에서는 독해의 편의를 위해 형식이 복잡한 문건에 대해 먼저 구조 분석을 하여, 가장 중요한 난제인 화자의 구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단락을 구분하여 보여주는 번역을 실시하였다. 이 작업을 통해 사료 본문의 내용에 대해 보다 훨씬 용이한 접근과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만 제한된 시간과 인력 때문에 가능한 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주석을 추가하고자 하였지만, 충분한 정도로 제대로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참고로 『청계중일한관계사료』의 분량을 소개하자면, 전체 및 시기별 자료 분량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기간	분량(쪽)	글자 수
고종 시기	1864. 8 ~ 1897. 8(33년)	5,042	2,541,000
대한제국 시기	1897. 8 ~ 1910. 8(13년)	2,094	1,055,000
총독부 시기	1910. 8 ~ 1912. 3(2년)	121	60,900
합 계	1864 ~ 1912(48년)	7,257	3,656,900

이것은 한 쪽에 최대로 기입된 한문 글자 수를 20자(열)×18(행)×2(면)=720자로 파악하고 한 쪽 당 평균 여백을 30%로 잡아 720자-216자(여백)=504자 정도를 한 쪽 평균 글자 수로 추정하는 것이다. 국역할 경우 한자 대 한글의 글자 수 분량 비율은 대략 1 : 3 정도가 되므로 국역본의 경우 원본 사료집보다 크게 분량이 늘어난다.

그리고 위 표에 정리된 바와 같이 『청계중일한관계사료』에서 다루는 시기는 1864년 8월 ~ 1912년까지로 약 48년에 이른다. 문서의 전체 분량은 7,257쪽(원 사료집)이며, 글자 수는 한자(漢字) 약 365만 자다. 이 분량은 200자 원고지로 약 18,250매(漢字)에 해당하며, 한글로 번역했을 때 약 54,750매 정도의 분량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료를 번역하고 연구할 수 있는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거대한 분량을 짧은 시간 내에 번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 번역 사료집은 단계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번역을 시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국역 『清季中日韓關係史料』 1』은 그러한 장기 번역 작업의 첫 번째 성과다.

따라서 이상의 요건들을 감안하여, 본 연구진은 제1차 연도 번역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청계중일한관계사료』의 첫 번째 주제 항목인 ‘중국-조선의 변경 방어와 국경 문제(中韓邊防界務)’는 총 여섯 가지의 소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해인 2011년에는 먼저 그중 두 항목의 번역을 목표로 하였다. 아래 목차에서 나타나듯이, 소항목 ‘월경 벌목(越界伐木)’과 ‘조선 백성의 월경(韓民越界)’은 청말 동북 변경 지대에서 발생한 조선 백성의 월경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다. 그 세부적인 목차는 다음과 같다.

1. 월경벌목(越界伐木)

- 1) 조선 지방관의 벌목청구(韓地方官請求伐木)
- 2) 조선 백성의 월경벌목(韓民越界伐木)

2. 조선 백성의 월경(韓民越界)

- 1) 길림의 월경 조선 백성 송환(吉林遣回越界韓人)
- 2) 러시아인의 조선 백성 개간 유인(俄人招引韓人開墾)
- 3) 월경 조선 백성의 체포 및 저지(查拿及禁阻韓人越界)
- 4) 월경 조선 백성 송환을 위한 중국·러시아 교섭(中俄交涉逐回越界韓人)

이 책의 발간은 근대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및 근대 한국의 역사에 대한 기초 자료로서 의도된 것이다. 단순한 한문 텍스트의 제공이 아니라 한글 번역 작업까지 수반된 것이므로, 이 책이 관련 분야 연구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이 작업을 맡은 연구진에게는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이 연구 작업은 필자와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의 배우성 교수 및 두 학교의 대학원생에 의한 공동작업의 소산이다. 짧은 시간과 힘든 수작업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여기에 참가해 준 배우성 교수 및 이지영, 이원준, 김창수 군과 원문 입력에 힘써 준 양개강, 임찬혁 군에게 우선 감사를 드린다. 물론 이러한 장기적 작업의 번역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출판에 이르기까지 많은 작업을 맡아주신 동북아역사재단의 이사장 및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2년 11월 20일
연구책임자 김 형 중

일러두기

1. 이 책은 『中國近代史資料彙編 清季中日韓關係史料』(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 1972)의 첫 번째 주제 항목인 ‘中韓邊防界務’의 여섯 개 소항목 중에서, ‘越界伐木’과 ‘韓民越界’로 분류된 문서들에 대한 표점과 번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건은 문서정보와 원문, 번역문의 순서에 입각하여 정리 및 번역되었다.
2. 각 문건의 문서번호는 ‘가-나-다-라(마, 바)’의 양식으로 정리되어 있다. ‘가’·‘나’·‘다’의 숫자는 原書의 주제 분류에 입각한 번호체계를 표현한 것이며, ‘라’는 각 분류체계 내에서의 문서의 수록 순서를 나타낸다. 괄호 안의 ‘마’는 原書에서 각 문건에 부여한 번호이며, ‘바’는 해당 문서가 수록된 쪽수를 가리킨다.
3. 각 문건의 문서정보에는 문서번호 다음으로 ‘사안’과 ‘첨부문서’, ‘날짜’, ‘발신’, ‘수신’ 등에 관한 정보가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다. ‘사안’은 原書의 ‘清季中日韓關係史料分類目錄’에서 정리한 ‘事項’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해당 문건의 핵심 요지를 정리하고 있다. ‘첨부문서’는 原書에 수록된 문건 안에 附件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事項’을 정리하였다. ‘날짜’는 해당 문건의 발신일/수신일(문서에 따라 다름)을 의미하며, 음력 날짜와 양력 날짜를 함께 표기하였다. ‘발신’과 ‘수신’은 각각 해당 문건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의미한다.
4. 본서의 표점과 번역은 문서 안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누구의 진술인지 밝히는 것에 유의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국역 『同文彙考』 疆界 史料』(배우성·구범진 역, 동북아역사재단, 2008)의 편집 양식을 활용하였다.
5. 원문 및 번역문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쉼표, 마침표, 따옴표 등 기본적인 부호만을 사용하여 표점을 하였다. 원본의 분명한 오류로 보이는 글자에 대해서는, ‘實據(→據實)’의 경우처럼 원문의 글자는 그대로 두고, 괄호 안에 화살표와 함께 바른 글자를 밝혀 두었다.
6. 번역문에서는 문장의 의미가 원활하게 통하도록 하기 위하여, 괄호를 사용하여 접속사나 단어 등을 추가하였다. 아울러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부 명사들에 대해서는 괄호 안에 간단한 설명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유사한 맥락으로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원문에서 ‘本部’·‘本衙門’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을, 번역문에서는 경우에 따라 ‘禮部’·‘總理衙門’ 등으로 풀어서 번역하였다.

차 례

월경벌목(越界伐木)	19
• 조선 지방관의 벌목 청구(韓地方官請求伐木)	21
(1) 문서번호 : 1-1-1-01 (1, 1a-4b)	21
(2) 문서번호 : 1-1-1-02 (2, 5a-8b)	32
(3) 문서번호 : 1-1-1-03 (3, 8a)	42
(4) 문서번호 : 1-1-1-04 (5, 12a-15b)	45
(5) 문서번호 : 1-1-1-05 (6, 16a-16b)	47
(6) 문서번호 : 1-1-1-06 (7, 17a-17b)	50
(7) 문서번호 : 1-1-1-07 (8, 18a-18b)	52
(8) 문서번호 : 1-1-1-08 (9, 19a-19b)	55
(9) 문서번호 : 1-1-1-09 (10, 20a-20b)	58
(10) 문서번호 : 1-1-1-10 (11, 21a)	61
(11) 문서번호 : 1-1-1-11 (12, 21b-22a)	62
(12) 문서번호 : 1-1-1-12 (1615, 2894b-2895a)	65

- 한민의 월경 벌목(韓民越界伐木) 69
 - (13) 문서번호 : 1-1-2-01 (1094, 1970b-1972b)69
 - (14) 문서번호 : 1-1-2-02 (1363, 2500b-2501b)75
 - (15) 문서번호 : 1-1-2-03 (1371, 2516a)80
 - (16) 문서번호 : 1-1-2-04 (1469, 2669a-2671b)82
 - (17) 문서번호 : 1-1-2-05 (1481, 2689a-2691b)90
 - (18) 문서번호 : 1-1-2-06 (1526, 2761b~ 2764b)97

한민월경(韓民越界) 105

- 갈림의 월경한인 송환(吉林遣回越界韓人) 107
 - (19) 문서번호 : 1-2-1-01 (4, 9a-11b)107
 - (20) 문서번호 : 1-2-1-02 (13, 22b-23b)115
 - (21) 문서번호 : 1-2-1-03 (14, 24a-25a)119
 - (22) 문서번호 : 1-2-1-04 (98, 123a-125b)123

문서번호 : 1-2-1-05 (111, 143b-145a)	131
문서번호 : 1-2-1-06 (112, 145b-147b)	131
문서번호 : 1-2-1-07 (113, 148a-151a)	131
문서번호 : 1-2-1-08 (117, 157b)	132
문서번호 : 1-2-1-09 (121, 161b-162b)	132
문서번호 : 1-2-1-10 (122, 163a-164b)	132
문서번호 : 1-2-1-12 (134, 173a)	133
문서번호 : 1-2-1-13 (184, 238b-240b)	133
문서번호 : 1-2-1-14 (185, 241a-242b)	133
문서번호 : 1-2-1-15 (193, 251a-251b)	134

- 러시아인의 한인 개간 유인(俄人招引韓人開墾) … 135
 - (23) 문서번호 : 1-2-2-01 (36, 50a-50b)
 - (24) 문서번호 : 1-2-2-02 (37, 51a)
 - (25) 문서번호 : 1-2-2-03 (44, 57a)

(26) 문서번호 : 1-2-2-04 (50, 60a)	141
(27) 문서번호 : 1-2-2-05 (61, 76b)	143
(28) 문서번호 : 1-2-2-06 (92, 111a-112b)	145
(29) 문서번호 : 1-2-2-07 (93, 113a-114b)	149
(30) 문서번호 : 1-2-2-08 (191, 248a-249b)	150
(31) 문서번호 : 1-2-2-09 (194, 252a-253b)	155

- 월경한인의 체포 및 저지(查拿及禁阻韓人越界) … 160

(32) 문서번호 : 1-2-3-01 (41, 55b)	160
(33) 문서번호 : 1-2-3-02 (42, 56a)	162
(34) 문서번호 : 1-2-3-03 (43, 56b)	163
(35) 문서번호 : 1-2-3-04 (45, 57b)	165
(36) 문서번호 : 1-2-3-05 (46, 58a)	166
(37) 문서번호 : 1-2-3-06 (49, 59b)	167
(38) 문서번호 : 1-2-3-07 (52, 62b)	168

(39) 문서번호 : 1-2-3-08 (56, 66b)	170
(40) 문서번호 : 1-2-3-09 (57, 67a-70a)	171
(41) 문서번호 : 1-2-3-10 (58, 70b)	181
(42) 문서번호 : 1-2-3-11 (59, 71a-75b)	182
(43) 문서번호 : 1-2-3-12 (60, 76a)	193
(44) 문서번호 : 1-2-3-13 (65, 80b-82b)	194
(45) 문서번호 : 1-2-3-14 (66, 83a)	199
(46) 문서번호 : 1-2-3-15 (67, 83b)	201
(47) 문서번호 : 1-2-3-16 (68, 84a)	202
(48) 문서번호 : 1-2-3-17 (70, 88b)	204
(49) 문서번호 : 1-2-3-18 (71, 89a)	205
(50) 문서번호 : 1-2-3-19 (72, 89b)	206
(51) 문서번호 : 1-2-3-20 (73, 90a)	207
(52) 문서번호 : 1-2-3-21 (94, 115a-b)	208
(53) 문서번호 : 1-2-3-22 (95, 116a-117b)	211

(54) 문서번호 : 1-2-3-23 (96, 118a-b)	216
(55) 문서번호 : 1-2-3-24 (97, 119a-122b)	219
(56) 문서번호 : 1-2-3-25 (98, 123a-125b)	229
(57) 문서번호 : 1-2-3-26 (104, 135b-137a)	230
(58) 문서번호 : 1-2-3-27 (105, 137b)	235
(59) 문서번호 : 1-2-3-28 (106, 138a)	237
(60) 문서번호 : 1-2-3-29 (107, 138b-139b)	238
(61) 문서번호 : 1-2-3-30 (108, 140a-140b)	242
(62) 문서번호 : 1-2-3-31 (109, 141a-141b)	245
(63) 문서번호 : 1-2-3-32 (111, 143b-145a)	248
(64) 문서번호 : 1-2-3-33 (112, 145b-147b)	254
(65) 문서번호 : 1-2-3-34 (113, 148a-151a)	259
(66) 문서번호 : 1-2-3-35 (114, 151a-153b)	262
(67) 문서번호 : 1-2-3-36 (117, 157b)	268
(68) 문서번호 : 1-2-3-37 (121, 161b-162b)	270

(69) 문서번호 : 1-2-3-38(122, 163a-164b)	274
(70) 문서번호 : 1-2-3-39(34, 173a)	280
(71) 문서번호 : 1-2-3-40(177, 216b-218b)	282
(72) 문서번호 : 1-2-3-41(184, 238b-240b)	288
(73) 문서번호 : 1-2-3-42(185, 241a-242b)	294
(74) 문서번호 : 1-2-3-43(193, 251a-251b)	295
(75) 문서번호 : 1-2-3-44(195, 254a)	297
(76) 문서번호 : 1-2-3-45(199, 258a-258b)	299
(77) 문서번호 : 1-2-3-46(200, 259a)	301
(78) 문서번호 : 1-2-3-47(1761, 3091b-3092a)	303
(79) 문서번호 : 1-2-3-48(1764, 3095b)	306

- 월경한인 송환을 위한 중국·러시아 교섭

(中俄交涉逐回越界韓人)	307
(80) 문서번호 : 1-2-4-01(73, 90a)	307

(81) 문서번호 : 1-2-4-02 (97, 119a-122b)	308
(82) 문서번호 : 1-2-4-03 (100, 127a-130b)	309
(83) 문서번호 : 1-2-4-04 (101, 131a-132a)	321
(84) 문서번호 : 1-2-4-05 (102, 132b)	326
(85) 문서번호 : 1-2-4-06 (103, 133a-135a)	328
(86) 문서번호 : 1-2-4-07 (104, 135b-137a)	335
(87) 문서번호 : 1-2-4-08 (110, 142a-143a)	340
(88) 문서번호 : 1-2-4-09 (115, 154a-156b)	344
(89) 문서번호 : 1-2-4-10 (116, 157a)	350
(90) 문서번호 : 1-2-4-11 (190, 247b)	352
(91) 문서번호 : 1-2-4-12 (192, 250a-250b)	354
(92) 문서번호 : 1-2-4-13 (194, 252a-253b)	357
(93) 문서번호 : 1-2-4-14 (198, 256b-257b)	362

중국과 조선의 변경 방어와 경계문제(中韓邊防界務)

월경벌목(越界伐木)

조선 지방관의 벌목 청구(韓地方官請求伐木)

(1) 문서번호 : 1-1-1-01 (1, 1a-4b)

사안 : 嘎哈哩河 양안에서 조선 慶源지방의 교역공소를 수선하는 데 필요한 재목을 벌목합니다(於嘎哈哩河兩岸砍伐修繕朝鮮慶源地方交易公所應需材木).

첨부문서 : 1. 첨부목록(粘單). 재목의 굵기와 길이 및 그루 수(材木徑長株數).

날짜 : 同治三年八月二十八日(1864년 9월 28일)

발신 : 吉林將軍 景綸

수신 : 總理各國事務衙門(이하 總理衙門으로 약칭)

同治三年八月二十八日, 吉林將軍¹⁾景綸, 副都統麟瑞文稱.²⁾

案查,³⁾ 前據琿春協領⁴⁾台斐音阿呈報, 朝鮮慶源地方官墾祈越界伐木一案, 當經呈報 [總理各國事務衙, 禮部], 先後奏明遵旨行知前來. 隨即飛飭琿春協領照辦去後, 茲據報稱.

遵卽備具文移照會慶源地方官查照, 卽將應需木植徑長根件數目, 迅速核明開載文移費送以備遣匠代爲砍伐. 並希將本省將軍衙門咨會⁵⁾貴朝鮮國權署國事⁶⁾李公文一

角，迅速轉遞，先給收付。

等因。7)

差派領催委官薩凌阿，多托哩等賚送去後，嗣據薩凌阿等旋回，携來慶源地方官將其應需木植徑長根件數目粘單移覆，並將咨會公文已經接遞出具收付之處，一併移覆前來。查⁸⁾圖們江臨江切近，並無大材樹木，且此項材木，非由河道不能運至該處。惟有嘎哈哩河流入圖們江，其河兩岸偏僻山場，與風水無礙，⁹⁾是以出派驍騎校¹⁰⁾訥勒和，帶同兵役前往該處砍伐，並嚴禁不得藉端濫行開採。俟伐有成數，交付該國人役自行轉運，並將交付之處，俟該員差旋之日，再行呈報。現將賚來應需木植徑長根件數目照抄一分，粘連文尾，並收付移文一件，一併附封先行飛報查核前來。除將取具回收存查外，詳核該地方官此次單開木植總數，核與前請之數，計短十七根。自應照其現單飭屬照辦。相應¹¹⁾照抄單開細數，粘連文尾，備文呈報總理各國事務衙門，謹請查照。再，¹²⁾據差員回報，慶源地方官損修公所於越界伐木之事，並未詳其國王，故於接遞國王公文之時，乃竟面有難色等情。合併聲明。

(1) 照錄粘單。

材木徑長株數件記。

大廳所入。

土桂八箇，長十二尺，圓五尺

童子土桂二箇，長十二尺，圓三尺

高桂八箇，長十五尺，圓五尺

中下榜木二十九箇，長十二尺，圓三尺

長甫四箇，長二十四尺，圓七尺

小蓋甫十六箇，長八尺，圓三尺

中甫四箇，長十四尺，圓六尺

上甫四箇，長十四尺，圓六尺
初榜木二十一箇，長十二尺，圓四尺
背榜木二十一箇，長十八尺，圓三尺
上中道里二十一箇，長十八尺，圓四尺
初葉桶八箇，長十尺，廣一尺三寸，厚七寸
柱頭板材桶 4箇，長十日一，廣一尺三寸，厚7寸
小錄木十箇，長十尺，圓三尺
臺空板子桶四箇，長十尺，廣一尺，厚七寸
朴貢木六箇，長七尺，廣一尺，厚五寸
椽合木三箇，長十四尺，圓四尺
椽木二百五十箇，長八尺，圓二尺五寸
五道發乙伊八十箇，長六尺
以上 體木一百七十三箇，椽木二百五十箇，五道發乙伊八十箇，

上房所入。

土柱十二箇，長八尺，圓四尺
高柱八箇，長十尺，圓五尺
小蓋甫八箇，長八尺，圓三尺
充量甫二箇，長十一尺，圓三尺
從甫四箇，長十五尺，圓四尺
中下榜木二十箇，長十尺，圓三尺
背榜木十三箇，長十二尺，圓三尺
下道里十三箇，長十二尺，圓四尺
中道里八尺，長十四尺，圓四尺
上莊四箇，長十四尺，圓四尺
加道里背榜一箇，長十六尺，圓三尺

加道里一箇，長十六尺，圓四尺
 聚椽二箇，長十五尺，圓五尺
 椽合木二箇，長十五尺，圓五尺
 外朴貢木一箇，長八尺，圓四尺
 散榜木二箇，長十二尺，圓三尺
 臺空木二箇，長十尺，圓二尺五寸
 間榜木二十箇，長十尺，圓二尺五寸
 板子木六箇，長十尺，圓二尺五寸
 廚間木四箇，長十四尺
 椽木二十八箇，長六尺
 椽木十四箇，長十尺
 門骨木四箇，長七尺，圓四尺
 修裝木二桶，長八尺，圓三尺
 間土柱四箇，長八尺，圓三尺
 機木二十八箇，長十尺，圓三尺
 株樓板子桶十七箇，長九尺，圓四尺
 長椽木一白二十一箇，長十一尺，圓二尺
 短椽木八十二箇，長八尺
 五道發伊四十七箇，長七尺
 以上 體木一白八十箇，椽木二白四十五箇，五道發伊四十七箇.

三榜所入.

土柱十二箇，長八尺，圓四尺
 高柱八箇，長十尺，圓五尺
 小蓋甫八箇，長八尺，圓三尺
 充甫甫二箇，長十一尺，圓三尺

從甫四箇, 長十五尺, 圓四尺
 中下榜木二十箇, 長十尺, 圓三尺
 背榜十三箇, 長十二尺, 圓三尺
 下道里十三箇, 長十二尺, 圓四尺
 中道里八箇, 長十四尺, 圓四尺
 上莊四箇, 長十四尺, 圓四尺
 加道里一箇, 長十六尺, 圓四尺
 加道里背榜一箇, 長十六尺, 圓三尺
 聚椽二箇, 長十五尺, 圓五尺
 椽合木二箇, 長十五尺, 圓四尺
 朴貢木一箇, 長八尺, 圓四尺
 散榜木二箇, 長十二尺, 圓三尺
 臺空木二箇, 長十尺, 圓二尺五寸
 間榜木十二箇, 長十尺, 圓二尺五寸
 板子桶六箇, 長十尺, 圓二尺五寸
 廚間木四箇, 長十四尺
 椽木二十八箇, 長六尺
 椽木十四箇, 長十尺
 門骨木四桶, 長七尺, 圓四尺
 修裝木二桶, 長六尺, 圓五尺
 間土柱四箇, 長八尺, 圓三尺
 機木二十八箇, 長十尺, 圓三尺
 椽樓板子木十七箇, 長九尺, 圓四尺
 長椽木一百二十一箇, 長十一尺, 圓二尺
 短椽木八十二箇, 長八尺
 五道發伊四十七箇, 長七尺

以上 體木一百八十箇, 椽木二百四十五箇, 五道發伊四十七箇.

- 1) 청대(清代) 지방, 즉 성(省)의 최고위 장관은 보통 총독(總督)·순무(巡撫)라 불리지만 만주(滿洲) 지역은 청조의 發祥地라 특수행정구역으로 취급되었고, 여기에서는 대신 장군이 최고의 군사·행정 책임자였다. 이곳이 성이라는 정식행정구역으로 편입되어 총독과 순무가 파견된 것은 1907년 이후의 일이었다. 부도통(副都統. 梅勒章京)은 청대 팔기조직 가운데 1기(旗)의 부장관(副長官)으로 각 기마다 2명씩 있는 정이품(正二品)의 관직으로, 도통(都統)을 도와 본기(本旗)의 호적, 전택(田宅), 교양(教養), 조련(操練) 등 군정사무를 처리하였다. 각 요지에 산재한 주방팔기(駐防八旗)의 경우 장군(將軍)이 없는 지역에서는 최고의 군정장관이었다.
- 2) 하급에서 올려 보내온 문서(據의 경우)를 인용할 때는 보통 '稱'을 사용한다. 반대로 蒙·奉·准 등 상급에서 보내온 문서(蒙·奉의 경우)나 동급에서 보내온 문서(准의 경우)를 인용할 때는 '開'(나열한다·늘어놓는다)를 사용한다.
- 3) 案查(卷查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는 기존의 공문을 이미 살펴보았다, 즉 '살펴 보건대' 라는 뜻이다. 관용적으로 쓰이는 것이므로 굳이 번역할 필요는 없는 내용이다. 문맥에 따라 그냥 '살펴 보건대' 라고 번역하였다. 한편 案據·案照도 같은 뜻이지만 案照는 案查보다 약간 겸허한 뜻을 보여주는 것이고, 案據는 案卷, 즉 서류철에 의거한다는 뜻인데 오로지 下行文에만 쓰인다.
- 4) 협령(協領)은 부도통(副都統) 아래, 좌령(佐領) 위에 속하는 清代 八旗의 武官이다.
- 5) '咨文'은 '咨文'을 가리킨다. 咨文(자문)은 공문형식의 일종으로 平行文, 즉 상대적으로 지위가 대등한 양쪽이 주고받는 형식의 문서인데, 조선국왕의 경우 중국으로 보내는 공문은 대부분 이 형식을 취하여 보통 清朝의 禮部(나 혹은 總理衙門이나 吉林將軍 등)에 보내는 것이었고, 이 咨文을 받은 禮部는 皇帝에게 대신 奏摺(의 첨부문서)으로 上奏하였다. 이것을 전주(轉奏), 즉 받아서 대신 상주하는 것이라고 한다. 청조 중앙정부의 禮部나 總理衙門, 그리고 吉林將軍 등이 서로 주고받는 문서도 대부분 이 형식을 취한다.
- 6) 권서국사(權署國事)는 국사(國事)를 임시로 서리하는 관직, 또는 국사를 임시로 처리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대개 중국 임금으로부터 정식 책봉을 받기 전의 임금을 이르는 말로 쓰이는데, 이때는 1863년 高宗이 즉위한 다음 해에 해당하므로 아마 興宣大院君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 7) '等因'은 상급이나 동급 아문에서 보내온 문서의 인용을 끝맺을 때 사용한다. '等情'은 하급아문에서 보내온 것을 인용할 때 사용하며, '等語'도 이와 비슷하지만, 법률이나 조례, 또는 진술서를 인용할 때에도 사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한편 皇帝의 諭旨를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欽此'를 사용한다.
- 8) 查의 경우도 案查와 유사한데, 공문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 9) 풍수(風水)는 바람과 물(또는 비), 추위와 습기 등을 가리키거나 아니면 풍광, 풍경을 뜻하기도 한다. 물론 풍향, 수류, 산맥 등의 형세를 가리키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바로 이것을 가리킨다. 바로 다음의 공문에서 풍수에 장애가 없는 곳을 택하라고 지시한 上諭 때문에 이런 구절이 나온 것이다.
- 10) 효기교(驍騎校)는 좌령(佐領)과 더불어 도통(都統)·부도통(副都統) 등의 직접 지휘를 받는 팔기관원(八

同治 3년 8월 28일에 吉林將軍 景綸, 副都統 麟瑞가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살펴 보건대, “朝鮮 慶源의 地方官이 국경을 넘어와서 벌목하기를 간절하게 요청한다”고 琿春 協領 台斐音阿가 보고한 사안은 總理衙門과 禮部에 보고했고, (그에 따라 이 두 衙門에서) 전후로 上奏하여 유지(旨)를 받은 다음 (본 아문에)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즉시 琿春協領에게 그에 따라 처리하라고 서둘러 명령했는데, 이번에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삼가 즉시 공문을 갖추어 慶源의 지방관에게 알리고, 즉시 필요한 나무의 직경과 길이 및 그루 수를 신속히 검토하여 공문에 적어 보냄으로써 (우리 쪽에서) 목수를 파견해 대신 벌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本省의 將軍衙門에서 朝鮮國權署國事 李에게 보내는 공문 한 통을 신속히 전달하라고 요청하고 우선 공문을 보냈다는 증명서를 주었습니다.¹³⁾

그래서 領催委官 薩凌阿, 多托哩 등에게 임무를 주어 공문을 전송하도록 파견하였고, 뒤이어 이들은 慶源의 지방관으로부터 ‘필요한 나무의 직경과 길이 및 그루 수를 첨부한 답장공문’과 아울러 “참文으로 알리는 공문을 이미 접수해서 전달했다”고 확인을 해준 증명서를 가지고 곧바로 돌아왔습니다. 생각건대, 圖們江에 근접한 지역에는 큰 재목을 얻을 나무가 없으며, 이러한 재목은 물길을 통해서가 아니면 그곳까지 운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嘎哈哩河가 圖們江으로 흘러드는데, 강 양안의 구석진 곳에 있는 산마루는 풍수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驍騎校 訥勒和를 파견하여 兵役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서 벌목을 하게 하고, 아울러 벌목을 빙자하여 멋대로 남벌하지 않도록 엄금하겠습니다. 벌목 그루 수를 모두 채우면 조선 役人에게 넘겨 그들이 스스로 운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넘겨 주는 장소는 해당 역원이 돌아오는 날을 기다렸다가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현재 (조선) 보내온 ‘필요한 나무의 직경과 길이 및 그루 수’ 목록을 한 장 초록하여 문서 말미에 덧붙이고,

旗官員)을 가리킨다.

- 11) ‘相應’은 ‘理合’·‘合行’과 마찬가지로 ‘응당, 마땅히 ~해야 한다’는 뜻인데, ‘相應’은 동급 기관 사이에 오가는 平行文에, ‘理合’은 상사에게 올라가는 上行文에, ‘合行’은 부하·속하에게 보내는 下行文에 보통 사용된다.
- 12) 재(再)는 문서의 말미에 본문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을 추가로 기록할 때 쓰는 용어이다.
- 13) 수부(收付)는 보통 범인을 체포하여 재판에 넘긴다는 뜻으로 쓰이거나 아니면 수입과 지출을 뜻한다. 여기서는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그것을 확인하는 증명서라는 용도로 쓰이는 것 같다.

아울러 공문수령 증명서 1건을 함께 동봉하여, 우선 서둘러 보고하여 검토해주시도록 보냅니다. 돌려받은 증명서는 조사를 위해 남겨둔 것 외에, 해당 지방관이 이번 목록에서 열거한 나무의 총수를 상세히 검토해보니 지난번에 요청한 숫자에 비해 17개가 모자랍니다. 따라서 응당 현재 목록에 비추어 속하에게 처리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목록에서 열거한 상세한 수량을 초록하여 뒤에 덧붙인 다음, 문서를 갖추어 總理衙門으로 보고하오니 삼가 검토해 주십시오. 한편, 파견한 관원이 돌아와 보고하기를, 慶源의 지방관은 公所를 수리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와 별목하는 일에 대해 국왕에게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중국에서 조선국왕에게 보내는 문서를 받아서 전달할 때 결국 얼굴에 난색을 띠었다고 합니다. 이상을 아울러 밝히는 바입니다.

(1) 첨부목록 초록

나무의 직경과 길이 및 그루 수

大廳에 들어갈 것

土桂 8개, 길이 12尺, 지름 5 五尺
 童子土桂 2개, 길이 12尺, 지름 3尺
 高桂 8개, 길이 15尺, 지름 5尺
 中下榜木 29개, 길이 12尺, 지름 3尺
 長甫 4개, 길이 24尺, 지름 7尺
 小蓋甫 16개, 길이 8尺, 지름 3尺
 中甫 4개, 길이 14尺, 지름 6尺
 上甫 4개, 길이 14尺, 지름 6尺
 初榜木 21개, 길이 12尺, 지름 4尺
 背榜木 21개, 길이 18尺, 지름 3尺
 上中道里 21개, 길이 8尺, 지름 4尺
 初葉桶 8개, 길이 10尺, 넓이 1尺 3寸, 두께 7寸
 桂頭板材桶 4개, 길이 11尺, 넓이 1尺 3寸, 두께 7寸
 小錄木 10개, 길이 10尺, 지름 3尺

臺空板子桶 4개, 길이 10尺, 넓이 1尺, 두께 7寸
 朴貢木 6개, 길이 7尺, 넓이 1尺, 두께 5寸
 椽合木 3개, 길이 14尺, 지름 4尺
 椽木 250개, 길이 8尺, 지름 2尺 5寸
 五道發乙伊 80개, 길이 6尺
 이상 體木 173개, 椽木 250개, 五道發乙伊 80개.

上房에 들어갈 것

土桂 12개, 길이 8尺, 지름 4尺
 高桂 8개, 길이 10尺, 지름 5尺
 小蓋甫 8개, 길이 8尺, 지름 3尺
 充量甫 2개, 길이 11尺, 지름 3尺
 從甫 4개, 길이 15尺, 지름 4尺
 中下榜木 20개, 길이 10尺, 지름 3尺
 背榜木 13개, 길이 12尺, 지름 3尺
 下道里 13개, 길이 12尺, 지름 4尺
 中道里 8개, 길이 14尺, 지름 4尺
 上莊 4개, 길이 14尺, 지름 4尺
 加道里背榜 1개, 길이 16尺, 지름 3尺
 加道里 1개, 길이 16尺, 지름 4尺
 聚椽 2개, 길이 15尺, 지름 5尺
 椽合木 2개, 길이 15尺, 지름 5尺
 外朴貢木 1개, 길이 8尺, 지름 尺
 散榜木 2개, 길이 13尺, 지름 3尺
 臺空木 2개, 길이 10尺, 지름 2尺 5寸
 間榜木 12개, 길이 10尺, 지름 2尺 5寸
 板子木 6개, 길이 10尺, 지름 2尺 5寸
 廚間木 4개, 길이 14尺

椽木 28개, 길이 6尺
 椽木 14개, 길이 10尺
 門骨木 4개, 길이 7尺, 지름 4尺
 修裝木 2桶, 길이 8尺, 지름 3尺
 間土柱 4개, 길이 8尺, 지름 3尺
 機木 28개, 길이 10尺, 지름 3尺
 林樓板子桶 17개, 길이 9尺, 지름 4尺
 長椽木 121개, 길이 11尺, 지름 2尺
 短椽木 82개, 길이 8尺
 五道發伊 47개, 길이 7尺
 이상 體木 180개, 椽木 245개, 五道發伊 47개.

三榜에 들어갈 것

土柱 12개, 길이 8尺, 지름 4尺
 高柱 8개, 길이 10尺, 지름 5尺
 小盖甫 8개, 길이 8尺, 지름 3尺
 充甫甫 2개, 길이 11尺, 지름 3尺
 從甫 4개, 길이 15尺, 지름 4尺
 中下榜木 20개, 길이 10尺, 지름 3尺
 背榜 13개, 길이 12尺, 지름 3尺
 下道里 13개, 길이 12尺, 지름 4尺
 中道里 8개, 길이 14尺, 지름 4尺
 上莊 4개, 길이 14尺, 지름 4尺
 加道里 1개, 길이 16尺, 지름 4尺
 加道里背榜 1개, 길이 16尺, 지름 3尺
 聚椽 2개, 길이 15尺, 지름 5尺
 椽合木 2개, 길이 15尺, 지름 4尺
 朴貢木 1개, 길이 8尺, 지름 4尺

散榜木 2개, 길이 12尺, 지름 3尺
 臺空木 2개, 길이 10尺, 지름 2尺 5寸
 間榜木 12개, 길이 10尺, 지름 2尺 5寸
 板子桶 6개, 길이 10尺, 지름 2尺 5寸
 廚間木 4개, 길이 14尺
 椽木 28개, 길이 6尺
 椽木 14개, 길이 10尺
 門骨木 4桶, 길이 7尺, 지름 4尺
 修裝木 2桶, 길이 6尺, 지름 5尺
 間土柱 4개, 길이 8尺, 지름 3尺
 機木 28개, 길이 10尺, 지름 3尺
 林樓板子木 17개, 길이 9尺, 지름 4尺
 길이 椽木 121개, 길이 11尺, 지름 2尺
 短椽木 82개, 길이 8尺
 五道發伊 47개, 길이 7尺
 이상 體木 180개, 椽木 248개, 五道發伊 47개.

총 1447개.

(2) 문서번호 : 1-1-1-02(2, 5a-8b)

사안 : 조선국왕이 국경을 넘어 벌목하게 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시한 咨文을 (예부에서 총리아문으로) 대신 전달합니다(轉咨朝鮮國爲越界伐木事謝恩文).

첨부문서 : 1. 조선의 권서국사가 보낸 문서(朝鮮權署國事李文). 예부에서 재목을 상으로 내려주고 아울러 변계 관원은 이후 공문을 보낼 때 반드시 정례를 엄수해야지 이를 어겨서는 안 된다고 통보하는 내용(謝賞材木, 並飭邊界官嗣後因公行文須嚴遵定例, 不得逾越)¹⁴⁾ 등 3통의 咨文에 대해 답장을 한 2통의 咨文.

날짜 : 同治三年十月二十五日(1864년 11월 23일)

발신 : 禮部

수신 : 總理衙門

同治三年十月二十五日, 禮部文稱.

所有本部收到朝鮮國砍伐樹株恭謝天恩原文一件, 除本部據咨轉奏外, 相應抄錄原文, 知照貴衙門查照可也.

(1) 照錄原文.

朝鮮國權署國事, 爲 地方官罪犯駭妄, 特蒙格外體恤, 感戴洪恩, 彌切慙懼 事.¹⁵⁾

14) 원문의 이 설명은 약간 착오가 있는 것이다. 이 예부가 보낸 咨文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첨부문서 (조선에서 보내온 내용 문서)와는 상관이 없다.

15) “爲……事”의 가운데에 들어가는 내용은 보통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제목과 같은 역할을

同治三年七月十二日，承准貴部咨。

節該¹⁶⁾本部謹奏，為請旨事¹⁷⁾

准吉林將軍咨稱。

據琿春協領報稱。

本年五月初一日，有朝鮮慶源地方官遣人三名，渡江投署，備述。

伊國舊設兩國交易官房，今春被焚，現欲修理，因伊界木料維艱，欲越圖們江界砍伐材木。

等語。

該協領查係禮請，曲為開導，給予回字，叙明琿春屬界概隸禁山，不敢私允，祇可備文申請上司，再行定奪。並阻其不可率行越界砍伐，派弁尾送過江去後。旋於初四日復據朝鮮官差人齎送文移，重申前請，其言，“若不乘時砍伐，恐致貽誤工作，廢弛次年交易之事。”等語。該協領因無成案，不敢率行允許，開導至再，將該國遣人派弁尾送過江，隨將原接朝鮮文移附封。

前來。

查朝鮮素稱禮義之邦，從無越邊要求之事，慶源地方官逕具文移，遽請越界伐木，本衙門無案可循，未便率准。除飛飭琿春協領轉移慶源地方官，今其暫行聽候外，相應將朝鮮慶源地方官印文一紙，附封答送禮部，望速示覆。

等因。到部。

臣等查臣部則例內開¹⁸⁾“凡近邊各國，不得越境魚採”等語。是邊開禁令，定例甚嚴。此次朝鮮國越境砍伐材木，本屬與例不符。惟該將軍咨據琿春協領報稱，慶源地方官申請砍伐材木，係為修建官房起見，與無故越境魚採不同。且聲稱該處交易房屋被焚，若不乘時修建，恐廢弛次年交易之事，亦屬寔在情形。臣等公同商議，所有慶源地方官懇請越圖們江砍伐材木之處，應請旨飭下吉林將軍查看該處情形。倘砍伐之地，寔與風水有礙，即別擇偏僻處所，酌量採取足用而止，亦不得藉端濫行砍伐，滋擾地方，以示限制。是否有當，伏候欽定，恭候命下臣部遵奉施行。為此謹奏請旨一摺，於同治三年六月十九日具奏，本日奉旨¹⁹⁾

依議。

欽此。

相應抄錄原奏，移咨朝鮮國權署國事可也。

等因。

再，承准貴部咨。

節該。主客司案呈。²⁰⁾

前准吉林將軍咨稱。

據琿春協領報稱。

本年五月初一日，有朝鮮慶源地方官遣人三名，渡江投署，備述伊國舊設兩國交易官房，今春破焚，現欲修理。因伊界木料維艱，欲越圖們江界砍伐材木。其言“若不乘時砍伐，恐致貽誤工作，廢弛次年交易之事。”

等語。

查朝鮮素稱禮義之邦，從無越邊要求之事，慶源地方官逕具文移，遽請越界伐木，本衙門無案可循，未便率准。除飛飭琿春協領轉移慶源地方官，令其暫行聽候外，相應將朝鮮慶源地方官印文一紙，附封答送禮部，望速示覆。

等因。

本部當以此次朝鮮伐木，本屬與例不符。有該將軍咨係為修建交易官房起見，緣此項房屋被焚，若不乘時修建，恐廢弛次年交易之事。應有吉林將軍查看情形，倘伐木之地寔與風水有礙，即別擇偏僻處所，酌量採取足用而止。查砍伐此項樹木，現已奏准，飭令吉林將軍，查明該國現需此項木植數目，由該將軍遣匠代為砍伐，俟伐有成數，知照該國派員赴交界處所祇領，以示體恤。相應知照朝鮮國權署國事可也。

等因。

奉此。²¹⁾竊照邊開糾禁，憲令裁嚴，因事行文，具有體例。么麼地地方小官，膽敢擅行文移，猥請越界伐木，論其無嚴無憚也，是罪犯罔赦。而遂致上達宸聰，轉煩裁處，只緣當職之不能隨處檢飭，有此前所未有之事，惶懼慙愧，無地自容，詎意聖恩洪大，

河海莫量，不惟不致譴罰，仍許賞給材木，飭令派員祇領，感激隕越，不知所云。惟當恭派人員赴界領受，俾一國[臣]民，感頌我皇上字小柔遠之德，度越前古。而該地方官慶源府使申明義，違法冒禁，擅妄如彼，其濫雜情狀，難保必無。已將該員革職挈勘，尚須嚴鞫得情，以便咨覆。

同年八月初四日，又准貴部咨。

節該。主客司案呈。

前准吉林將軍咨稱。

朝鮮國慶源地方官行文琿春協領，懇請越圖們江界伐木修蓋交易官房。

等因。

當經奏請飭下吉林將軍遣匠伐材木賞給應用，並行文朝鮮國權署國事，派員赴交界祇領在案。²²⁾

查向章朝鮮邊界地方官於應辦公事，本應呈報該國王，由該國王咨報本部，或由該國王行文該地方將軍辦理。此次慶源地方官行文琿春協領，懇請越界伐木，本屬與例不符。本部特為奏請賞給材木應用，寔係格外體恤。嗣後邊界各官因公行文，務當恪守定章，不得援此次奏案為例。為此咨行朝鮮國權署國事，轉飭所屬邊界各官，一體各遵定例，不得稍有踰越，可也。

等因。

竊念因公行文，自有關由等級，²³⁾本係章程之莫可踰越。此次慶源府使申明義擅行文書，妄有要求，苟不重究施律，將何以示警知畏於邊界官吏。除該地方官慶源府使申明義革職挈鞫，依律警衆，仍嚴飭邊界大小官吏，凡係因公行文，無敢踰越章程，恭派謹慎官員，前赴慶源琿春交界，祇領賞給材木外。前項貢使之行，另具表文，稱謝格外體恤之隆恩厚渥，粗伸頂戴感祝之忱。為此合行²⁴⁾咨覆，請照驗轉奏施行。

한다. 따라서 “爲 地方官罪犯駭妄，特蒙格外體恤，感戴洪恩，彌切慙懼 事”는 “조선의 지방관이 (두만강을 건너가 벌목하겠다는 요청을 하는) 해괴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그 죄를 묻지 않고 목재를 상으로 내려주는) 특별한 격외의 은혜를 입게 되었으니, 크나큰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 몹시 황송해 하는

同治 3년 10월 25일 禮部에서 다음과 같이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본 예부는 조선으로부터 나무를 벌목해주신 황제의 은혜에 대해 공경히 감사를 올린다는
咨文을 1건 받았습니다. 본 예부에서咨文을 받고 대신 상주하는 외에, 마땅히 원문을 抄錄하
여 귀 총리아문으로 보내 알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입니다”라고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다.

- 16) 요컨대, 즉, 곧 등의 뜻으로 다시 말해 공문을 인용하거나 생략할 때 쓰인다.
- 17) “爲 請旨 事”는 請旨한다, 즉 황제의 諭旨를 요청한다, 황제가 결정을 내려주기를 상주하여 요청한다(奏請)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 18) ‘開’는 ‘나열한다·늘어놓는다’는 뜻인데 보통 蒙·奉·准 등 상급에서 보내온 문서(蒙·奉의 경우)나 동급에서 보내온 문서(准의 경우)를 인용할 때 사용한다. 반대로 하급에서 올려 보내온 문서(據의 경우)를 인용할 때는 보통 ‘稱’을 사용한다.
- 19) ‘奉旨’는 皇帝의 諭旨를 받았다는 뜻이다.
- 20) 主客司는 賓禮 및 外賓接待事務를 관장하는 禮部의 한 부서를 가리킨다. 따라서 藩屬國과의 ‘外交’의 사무라는 예부의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로 볼 수 있겠다. ‘案呈’은 하급 속료가 상사에게 초안을 잡은 기안문서(보통 관련 司에서 쓰고 堂官이 검토·확정하기 때문에 呈稿라고 한다)를 올려 보고한다는 뜻이다. 이 呈稿는 황제에게 올라가는 題本이나 各省에 보내지는 咨文에도 그대로 실린다. 즉 보통 이 기안문서를 그대로 보내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공문의 초반부분에 나오는 관행구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案呈’으로 시작되는 이 呈稿는 보통 대부분의 경우 ‘可也’로 끝맺음이 된다는 특징이 있다.
- 21) ‘奉此’는 상급에서 보내온 문서의 인용을 마친 다음에 사용한다. 즉 “위와 같은 문서를 받았습니다.”라는 뜻이다. 蒙此도 마찬가지로, 이 앞에는 ‘等因’ 등이 함께 사용된다. 同級(平級)기관에서 보내온 문서의 경우에는 ‘准此’를 사용하며(보통 等因 다음에 온다), 하급기관에서 보내온 문서의 경우에는 ‘據此’를 사용한다(보통 等情, 等語 다음에 온다).
- 22) ‘在案’은 案卷(서류철) 속에 있다는 뜻인데, 그 앞의 내용이 이미 공문을 통해 실행·전달되어 처리된 다음 서류철로 보관되어 있음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다시 말해 ‘과거형’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다.
- 23) 關由(關由)는 관청에서 발급한 증서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關文이나 由文이라는 공문의 종류(下行文과 上行文)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 24) ‘合行’은 ‘理合’·‘相應’과 마찬가지로 응당, 마땅히 ~해야 한다는 뜻인데, ‘合行’은 부하·속하에게 보내는 下行文에, ‘相應’은 동급 기관 사이에 오가는 平行文에, ‘理合’은 상사에게 올라가는 上行文에 보통 사용된다.

(1) 원문의 초록

朝鮮國權署國事가 지방관이 해괴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특별한 격외의 은혜를 입게 되었으니, 크나큰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 몹시 황송해 하는 바입니다.

同治 3년 7월 12일에 귀 예부의 다음과 같은咨文을 받았습니다.

생략. 예부에서 삼가 주를 올려 유지를 청하고자 합니다.

吉林將軍의 다음과 같은咨文을 받았습니다.

琿春協領이 다음과 같이 보고를 하였습니다.

올해 5월 1일 조선의 慶源 지방관이 3명을 파견해 저희 아문에 보냈는데,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하였습니다.

조선에서는 종전에 양국의 교역을 위한 官房을 설치했는데, 올 봄에 화재를 당해 이제 수리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쪽에서는 목재를 구하기가 어려우니 圖們江을 넘어가서 벌목을 하고자 합니다.

본 協領은 禮로써 청해 온 것이기 때문에 꼭진히 타이르고 답장을 주어 보내, 琿春지역은 이미 禁山에 속하니 감히 사사롭게 허락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후, 다만 문서를 갖추어 上司에게 신청하여 다시 결정을 기다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들이 경솔하게 경계를 넘어와 벌목하지 못하도록 막고자, 하급무관을 함께 보내 강을 건너 돌아가는 것을 전송하였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4일에 다시 조선 관원이 사람을 파견해서 보내 온 문서를 받았는데, 지난번의 신청을 거둬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즉 “만일 제때 벌목하지 않으면 작업을 그르치게 되어 내년에 교역하는 일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서 감히 경솔히 허락지 못하고 다시 타이른 다음, 하급무관을 파견하여 조선에서 보낸 사람이 강을 건너 돌아가도록 전송하였고, 이어서 조선으로부터 받은 원래 공문을 즉시 첨부하여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吉林將軍이) 생각건대, 朝鮮은 평소 예의의 나라라고 불리며, 경계를 넘어와 요구한 일은 종래 없었는데, 慶源의 지방관이 갑자기 문서를 보내 느닷없이 국경을 넘어와 벌목할 것을 요청하니, 본 將軍衙門에서는 따를 만한 전례가 없어 그냥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琿春協領을 통해 慶源의 지방관에게 문서를 보내 잠시 기다리도록 하는 것 외에, 응당 조선의 경원 지방관이 날인한 공문 한 통을 첨부하여 예부로 보내니, 서둘러 답장으로 지시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의 咨文이 예부로 전달되어 왔습니다. (예부의) 臣 등이 예부의 『칙례(則例)』를 조사해보니, “무릇 변경 근처의 나라들은 국경을 넘어와 어로나 채렵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어, 邊關에 대한 금령은 정례가 몹시 엄격합니다. 이번에 조선에서 경계를 넘어와 벌목하겠다는 것은 본래 定例와 부합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吉林將軍이 첨부한 琿春協領의 보고에 의하면, 慶源 지방관이 벌목을 신청한 것은 官房을 수리하기 위한 것으로, 까닭 없이 국경을 넘어와 어로나 채렵을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또 그곳의 交易官房이 화재를 입어 만약 제때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내년도 교역을 그르칠 수 있다는 것도 실제 상황에 속합니다. 신 등은 다음과 같이 함께 상의하였습니다. 慶源 지방관이 圖們江을 넘어와 벌목하겠다고 신청한 일에 대해서는 吉林將軍에게 명령하여 해당 지역의 상황을 살피되, 벌목할 땅이 진실로 풍수에 지장이 있다면 곧바로 다른 편벽한 곳을 택하여 적절하게 충분한 수량을 채취하는 데 그치도록 하며, 또한 이를 빙자하여 지나치게 남벌하여 지방에 소란을 피우지 못하도록 막아 제한하는 뜻을 보여 주도록 유지를 내려주실 것을 청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요청이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삼가 皇上의 결정을 기다려, 예부로 명령이 내려오면 받들어 시행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상주하여 유지를 청하는 주접을 同治 3년 6월 19일 올렸고, 그날로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의논한대로 하라.

따라서 마땅히 原奏를 초록하여 朝鮮國權署國事에게 咨文으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시 貴部の 咨文을 받았습니다.

생략. 主客司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문서를 올렸습니다.

지난번에 吉林將軍의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琿春協領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올해 5월 1일, 조선의 慶源 지방관이 3명을 파견해 글을 보냈는데, “조선에서는 종전에 양국의 교역을 위한 官房을 설치했는데, 올 봄에 화재를 당해 이제 수리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쪽에서는 목재를 구하기가 어려우니 圖們江을 넘어가서 벌목을 하고자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일 제때 벌목하지 않으면 작업을 그르치게 되어 내년에 교역하는 일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고도 하였습니다.

(吉林將軍이) 생각건대, 조선은 평소 예의의 나라라고 불리며, 경계를 넘어와 요구한 일은 종래 없었는데, 慶源의 지방관이 갑자기 문서를 보내 느닷없이 국경을 넘어와 벌목할 것을 요청하니, 본 將軍衙門에서는 따를 만한 전례가 없어 그냥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琿春協領을 통해 경원 지방관에게 문서를 보내 잠시 기다리도록 하는 것 외에, 응당 조선의 慶源 지방관이 날인한 공문 한 통을 첨부하여 예부로 보내니, 서둘러 답장으로 지시해주기를 바랍니다.

본 예부에서는 이번 조선의 벌목요구는 본래 정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吉林將軍의 咨文에는 交易官房의 수리를 위해서이며, 이 官房이 화재를 입어 만일 제때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내년에 교역을 그르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吉林將軍이 상황을 살펴, 혹시 벌목할 지역이 진실로 풍수에 문제가 있다면 즉시 다른 구석진 곳을 택한 다음, 적절하게 충분한 수량을 헤아려 취하게 하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생각건대 이번 벌목은 이미 상주를 올려 吉林將軍에게 지시하여 조선에서 이번에 필요한 나무의 수량을 정확하게 조사한 후, (알려오면) 吉林將軍 쪽에서 대신 목수를 파견하여 벌목하게 하고, 필요한 숫자가 채워지면 조선에 알려 관원을 交界지역으로 파견해서 수령하게 함으로써 體恤의 뜻을 보여주라는 허락을 받았습시다. 따라서 응당 이상의 내용을 마땅히 朝鮮國權署國事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朝鮮國權署國事가) 생각건대 邊關에서의 糾察과 禁令은 법 집행이 몹시 엄격하며, 사안에 따라 공문을 보내는 것은 모두 體例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찮은 地方小官이 대담하게도 감히 제멋대로 공문을 보내 월경하여 벌목할 것을 요청하였으니, 그 무엄하고 거리낌 없는 짓을 따지자면 절대로 용서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끝내 皇上께 알려져 처리를 하시는 번거로움을 끼쳐드렸으니, 이것은 제가 바로 수시로 단속하여 지시하지 못한 바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렇게 전에 없는 일이 생기게 되었으니 정말로 황송하고 부끄러워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크나큰 聖恩이 마치 河海와 같아 견책을 하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목재를 상으로 내려주시는 것을 허락하시고 관원을 보내 수령하도록 해주셨으니, 끝없이 감격하여 도무지 말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공손히 관원을 交界지역으로 보내 목재를 수령한 다음, 온 나라의 신민으로 하여금 우리 皇上께서 小國을 아껴주시고

먼 지역까지 감싸주시는 은덕이 옛 시대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송축하도록 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지방관 慶源府使 申明羲는 법을 어기고 금령을 짓밟아 이렇게 제멋대로 망령을 부렸으니, 그 난잡한 상황은 앞으로도 반드시 없으리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미 申明羲를 파직하고 잡아 들였지만, 엄히 鞫問하여 실상을 알아냄으로써 咨文으로 답장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동년 8월 4일에 다시 예부의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생략. 主客司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문서를 올렸습니다.

앞서 吉林將軍의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朝鮮의 慶源 지방관이 琿春協領에게 문서를 보내, 圖們江을 넘어와 벌목하여 交易官房을 수리할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예부에서는) 吉林將軍으로 하여금 목수를 보내 재목을 벌목한 후 필요한 재목을 (조선에) 상으로 주게 하고, 朝鮮國權署國事에게 공문을 보내 관원을 파견해 국경지역에서 수령하도록 奏請한 바 있습니다.

과거의 章程을 조사해보니 조선의 邊界 지방관은 公事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본래 응당 조선국왕에게 보고한 다음 조선국왕이 저희 예부로 咨文을 보내거나, 아니면 조선국왕이 직접 吉林將軍에게 咨文을 보내 처리해 왔습니다. 이번에 경원 지방관이 琿春協領에게 공문을 보내 국경을 넘어와 벌목할 것을 간청한 것은 본래 정례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예부에서 특별히 주청하여 재목을 상으로 내려 필요한 곳에 쓰게 한 것은 실로 격외로 體恤의 뜻을 보여준 것입니다. 앞으로는 변경의 관원이 공무로 문서를 보낼 때에는 마땅히 정해진 장정을 각별히 지키도록 하고, 이번 奏請 안전을 전례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朝鮮國權署國事에게 咨文을 보내, 소속변경의 각 관원에게 모두 각기 定例를 지키고 조금이라도 어기지 못하도록 지시를 전달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국 권서국사가) 생각건대 공무로 문서를 보내는 것은 자연히 關文·由文 등의 등급이 있으며 본래 어길 수 없는 章程에 해당합니다. 이번에 慶源府使 申明羲가 제멋대로 공문을 망령되이 요구하였으니, 만일 엄격히 조사하여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장차 어떻게 변경 관원이 경계심을 갖고 두려움을 알게 하겠습니까? 해당 지방관 慶源府使 申明羲를 혁직한

다음 잡아들여 鞫問함으로써 법률에 의해 남들에게 경계심을 갖게 할 것이며, 동시에 변경의 대소 관원에게 엄격히 지시하여, 무릇 공무로 인해 문서를 보낼 경우 감히 章程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경히 신중한 官員을 골라 慶源과 瑋春의 경계지역으로 보내, 상으로 주시는 목재를 수령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貢使 행차에 별도로 表文을 갖추어 특별히 體恤해주신 매우 크고 두터운 은혜에 감사를 드려 대략이나마 삼가 받들어 감축하는 마음을 펼칠까 합니다. 이에 마땅히 咨文으로 답장하오니 청컨대 살펴보시고 대신 上奏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문서번호 : 1-1-1-03 (3, 8a)

사안 : 조선국왕의 사은주접을 대신 전달합니다(錄送轉奏朝鮮國王謝恩摺).

첨부문서 : 1. 예부 주접(禮部奏摺).²⁵⁾ 조선국왕이 재목을 상으로 내려준 데 대해 감사를 표시한 것을 대신 상주합니다(轉奏朝鮮國王申謝賞給材木).

날짜 : 同治三年十月初一日(1864년 11월 29일)

발신 : 禮部

수신 : 總理衙門

十一月初一日, 禮部文稱.

主客司案呈.²⁶⁾

本部據咨轉奏朝鮮國王謝恩一摺. 於同治三年十一月初一日奏, 本日奉旨.

知道了.

欽此.

相應抄錄原奏知照.

(1) 照錄原奏.

禮部謹奏, 爲 據咨轉奏 事.

25) 주접(奏摺. 奏折)은 청대에 관리가 황제에게 上奏할 때 쓰던 공문·관문서를 가리키는데 종이를 접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주접(奏摺)이라고 하며, 접자(摺子), 접자주첩(摺子奏帖) 또는 접주(摺奏)라고도 부른다. 주접은 모두 각 행마다 몇 글자씩 쓰는지 엄격한 고정격식이 있었으며, 清代 康熙·雍正년간 이후 점차 보편화되었다.

同治三年六月, 准吉林將軍咨稱.

據琿春協領報稱.

朝鮮慶源地方官爲修理交易官房, 申請越圖們江界砍伐材木.

經臣部奏請

飭下吉林將軍遣匠代爲砍伐, 知照該國派員赴交界處所祇領.

等因.

奉旨允准, 當經行文朝鮮國遵照在案. 並知照該國王嗣後因公行文, 不得徑由該國地方官擅行, 應遵照定章辦理亦在案. 今該國王感激天恩, 恭伸謝悃, 移咨臣部懇乞轉奏, 理合²⁷⁾抄錄該國王原咨恭呈御覽.

爲此, 謹奏.

11월 1일, 禮部에서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主客司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문서를 올렸습니다.

禮部에서는 조선국왕의 謝恩咨文을 받아 대신 상주하였습니다. 同治 3년 11월 1일에 상주하여, 그 날로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알았다.

이에 따라 마땅히 原奏를 초록하여 (총리아문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1) 原奏의 초록

禮部에서 삼가 咨文을 받고 대신 상주합니다.

26) '主客司案呈' 부분은 공문의 형식적 시작부분이라 그 다음 구절부터 본문이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문장 들여 쓰기의 체제를 구성하였다.

27) '理合'은 '相應'·'合行'과 마찬가지로 '응당, 마땅히 ~해야 한다'는 뜻인데, '理合'은 상사에게 올라가는 上行文에, '相應'은 동급 기관 사이에 오가는 平行文에, '合行'은 부하·속하에게 보내는 下行文에 보통 사용된다.

同治 3년 6월, 吉林將軍의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琿春協領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선의 경원 지방관이 交易官房의 수리를 위해 圖們江을 넘어와 목재를 벌목할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예부에서는 이미

吉林將軍으로 하여금 목수를 보내 대신 벌목을 한 후, 조선에 알려 경계지역으로 인원을 파견해서 수령해가도록 알려라는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奏請하였습니다. 이를 윤택하는 유지를 받았으므로, 이미 조선국왕에게 공문을 보내 그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조선국왕에게 앞으로는 공무 때문에 문서를 보낼 때에는 조선 지방관이 곧장 멋대로 보내서는 안 되며, 마땅히 定章을 준수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알린 바 또한 있습니다. 지금 조선국왕이 天恩에 감격하여 공손히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며, 저희 예부로 咨文을 보내 와 대신 上奏해 줄 것을 간청하니, 응당 조선국왕의 原咨文을 초록하여 살펴보실 수 있도록 공손히 올리는 바입니다. 이에 삼가 上奏합니다.

(4) 문서번호 : 1-1-1-04 (5, 12a-15b)²⁸⁾

사안 : 吉林將軍이 조선 경원의 지방관이 벌목을 요청한 목재의 수량을咨文을 통해 알립니다(吉林將軍咨報朝鮮慶源地方官應需砍伐木植數目).

첨부문서 : 1. 吉林將軍 景綸의咨文(吉林將軍景綸咨). 알합리하 양안에서 조선에 필요로 하는 재목을 벌목할 예정입니다(擬於嘎哈哩河兩岸採伐朝鮮應用材木).

날짜 : 同治三年十一月二十五日(1864년 12월 23일)

발신 : 禮部

수신 : 總理衙門

十一月二十五日, 禮部文稱.

准吉林將軍景咨稱.

前據琿春協領呈報朝鮮慶源地方官懇祈越界伐木一案, 將應需木植徑長根件數目開單咨報.

等因. 前來.

相應抄錄原文知照貴衙查照可也.

(1) 照錄原咨.

爲 飛咨 事.

[이하 내용은 1-1-1-01 사안에 실린 첨부문서와 동일한 내용이라 생략한다]

28) 원문서 번호 4번은 원래 결락되어 있다.

11월 25일 禮部에서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吉林將軍 景綸의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앞서 조선 慶源의 지방관이 국경을 넘어와 벌목하기를 간청한다는 사안에 대한 琿春協領의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목재의 직경 및 길이, 그루 수의 목록을 咨文으로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마땅히 原文을 초록하여 귀 아문으로 보내니 참고하십시오.

(1) 原咨文의 초록

급히 咨文을 보냅니다.

[이하 내용은 1-1-1-01 사안에 실린 첨부문서와 동일한 내용이라 생략한다.]

(5) 문서번호 : 1-1-1-05 (6, 16a-16b)

사안 : 조선이 필요로 하는 큰 목재는 4백여 그루이고, 이미 지정된 장소에서 넘겨주었지만, 나머지 작은 목재는 아직 사람이 와서 받아가지 않았습니다(朝鮮需大材木料四百餘根業經點交, 其餘細小材木尙未來人收領).

날짜 : 同治三年十一月二十七日(1864년 12월 25일)

발신 : 吉林將軍 景綸

수신 : 總理衙門

十一月二十七日, 吉林將軍景綸, 副都統麟瑞文稱.

案查前據琿春協領台斐音阿呈報朝鮮慶源地方官懇祈越界伐木一案, 當經呈蒙示覆照辦.²⁹⁾

遵備文移照會慶源地方官查照, “即將應需木植徑長根件數目, 迅速核明開載文移賚送以備遣匠代爲砍伐”等因. 差派委官薩凌阿等賚送去後, 嗣據薩凌阿等回稱.

將其應需木植徑長根件數目開單携來.

當派驍騎交訥勒和帶同兵役, 前往與風水無礙之嘎哈哩河兩岸砍伐. 俟伐有成數交付該國人役自行轉運, 併將交付之處, 俟該員差旋之日, 再行呈報. 現將賚來木植數目抄錄飛報.

前來.

當經照抄單開細數, 於八月十七日先行呈報在案.

茲復據該協領呈.

據驍騎校訥勒和旋稱.

前詣嘎哈哩河兩岸偏僻山場與風水無礙, 採砍朝鮮國應需材木, 先將砍齊大材木

料四百餘根, 業經如數點交該國人役, 運入圖們江. 其餘椽櫟細小材木, 現因秋後
河水³⁰⁾消落難運. 該國尚未來人收領之處, 職等暫行回城, 俟該國來人收領之時,
再往該處如數點交. 除此並無濫行開採之弊.

等情. 呈據該協領轉報前來.

相應據情呈報總理各國事務衙門, 謹請查照可也.

11월 27일, 吉林將軍 景綸, 副都統 麟瑞가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살펴 보건대, “朝鮮 慶源의 地方官이 국경을 넘어와서 벌목하기를 간절하게 요청합니다”라고 琿春協領 台斐音阿가 보고한 사안은 이미 지시를 받아 그에 따라 처리하였습니다(그리하여 琿春協領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지시대로 공문을 갖추어 慶源의 지방관에게 照會하여 알리고, “즉시 필요한 나무의 직경과 길이 및 그루 수를 신속히 검토하여 공문에 적어 보냄으로써 (우리 쪽에서) 목수를 파견해 대신 벌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領催委官 薩凌阿, 多托哩 등에게 임무를 주어 공문을 전송하도록 파견하였는데, 뒤이어 이들은 돌아와

‘필요한 나무의 직경과 길이 및 그루 수를 첨부한 답장공문’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驍騎校 訥勒和를 파견하여 兵役을 데리고 가서 풍수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嘎哈哩河 양안에서 벌목을 하되, 그루 수를 모두 채우면 조선 役人에게 넘겨 그들이 스스로 운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넘겨주는 장소는 해당 역원이 돌아오는 날을 기다렸다가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현재 (조선이) 보내온 ‘필요한 나무의 직경과 길이 및 그루 수’ 목록을 한 장 초록하여 서둘러 보고합니다.

(吉林將軍은) 이미 그 목록에서 열거한 상세한 수량을 8월 17일에 미리 알린 바 있습니다. 이제 琿春協領이 다시 다음과 같이 보고해 왔습니다.

驍騎校 訥勒和가 돌아와서 곧 보고하였습니다.

29) 여기에는 원래 그 다음에 ‘茲據報稱’이란 구절이 들어 있는데, 과거의 문서를 요약해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구절이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사안 1-1-01의 원문을 참조).

30) 원문은 화(火)로 되어 있으나 문맥상 수(水)의 오자임이 확실하여 바로 잡았다.

嘎哈哩河 양안의 구석진 山場 중 風水의 지장을 받지 않는 곳으로 가서, 조선에서 필요로 하는 목재를 벌목하였습니다. 우선 큰 재목 약 400여 그루를 벌목했고, 이미 수량을 확인하여 조선 役人에게 넘겨 圖們江으로 운반하게 하였습니다. 그 나머지 서까래나 들보에 쓸 작은 목재는 현재 가을이 지났기 때문에 강 수위가 조금 낮아져 운반하기 어렵습니다. 조선에서 아직 사람을 보내 수령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잠시 성으로 돌아갔다가 조선에서 사람을 보내 수령하러 오면 다시 가서 수량대로 확인해서 넘기고자 합니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결코 쓸데없이 벌목한 일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琿春協領이 보고를 받아 서둘러 전달해 왔습니다.

마땅히 사실에 근거해 總理衙門에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삼가 검토해주시기를 청합니다.

(6) 문서번호 : 1-1-1-06 (7, 17a-17b)

사안 : 조선 경원의 지방관에게 작은 재목을 빠른 시일 안에 수령해 가라는 지시를 전달해주
시기를 청합니다(請轉飭朝鮮慶源地方官迅將細小材木剋期收領).

날짜 : 同治三年十一月二十九日(1864년 12월 27일)

발신 : 總理衙門

수신 : 禮部

十一月二十九日, 行禮部文稱.

前因朝鮮慶源地方官懇祈越界伐木一事, 曾經貴部將吉林將軍咨報應需木植徑長根件
數目清單, 照錄轉咨本衙門在案. 茲於十一月二十七日, 准吉林將軍咨報.

據驍騎校訥勒和呈稱.

前詣嘎哈哩河兩岸於風水無礙偏僻山場, 採砍朝鮮國應需材木. 先將砍齊大材木
四百餘根, 業經如數點交. 其餘椽櫟細小材木, 現值秋後河水稍落難運, 應俟該國
來人收領之時, 再行點交.

等情. 咨報前來.

查朝鮮越界伐木, 原屬有違定制, 業經奏明奉旨“賞給.” 既蒙格外恩施, 自應將材木採
齊, 令其承領, 以示寬大. 現據該將軍咨報, 大材木料業經點交, 其細小材木該國尚未
收領. 查係奏准之案, 似未便任令耽延. 惟事隸貴部, 應由貴部自行行文知照吉林將軍,
轉飭朝鮮慶源地方官, 迅將細小材木剋期如數收領, 並取該慶源地方官收清文據備案,
俟承領完竣後, 再由貴部奏結, 以完巨案.

再, 貴部此次行知吉林公文內, 不必敘及接到本衙門咨文, 徑作貴部出語自行備文知
照, 較爲妥善. 相應咨行貴部, 查照迅速辦理可也.

11월 29일, 禮部로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냈습니다.

이전에 조선 慶源의 지방관이 국경을 넘어와 벌목할 것을 간청한 사안에 대해, 귀 예부에서는 吉林將軍이 咨文으로 보고한 조선에서 필요한 목재의 직경과 길이 및 그루 수에 대한 목록을 초록하여 본 아문으로 알려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27일, 吉林將軍이 다음과 같은 咨文을 보내왔습니다.

驍騎校 訥勒和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嘎哈哩河 양안의 구석진 山場 중 風水의 지장을 받지 않는 곳으로 가서, 조선에서 필요로 하는 목재를 벌목하였습니다. 우선 큰 재목 약 400여 그루를 벌목했고, 이미 수량을 확인하여 넘겼습니다. 그 나머지 서까래나 들보에 쓸 작은 목재는 현재 가을이 지났기 때문에 강 수위가 조금 낮아져 운반하기 어렵습니다. 응당 조선에서 사람을 보내 수령하러 오기를 기다려 다시 확인해서 넘기고자 합니다.

(總理衙門에서) 살펴보건대 조선에서 국경을 넘어와 벌목하는 것은 원래 정해진 제도를 어기는 일이었지만, 이미 상주하여 “상으로 지급하라”는 유지를 받았습니다. 격외의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었으니, 자연히 목재를 벌목한 다음 수령하도록 넘겨주어 (황상의) 관대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금 吉林將軍의 咨文을 통한 보고를 받았는데, 큰 목재들은 이미 확인하여 넘겼고, 작은 목재들은 조선에서 아직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생각건대 이번 일은 상주하여 승인을 받은 사안이므로 임의로 늦장을 부리면서 늦추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일이 예부에 속하는 것이므로 응당 예부에서 吉林將軍에게 문서를 보내 알리고, 조선의 慶源 지방관에게 그 지시를 전달하여 신속히 작은 재목들을 기한 내에 수량대로 수령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해당 경원 지방관으로부터 수령을 모두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받아 보관해두었다가, 수령이 완료된 다음 예부에서 상주하여 완결시킴으로써 이 사안을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귀 예부에서 이번에 吉林將軍에게 보낼 공문 내용 안에 본 아문으로부터 받은 咨文을 언급할 필요는 없고, 곧바로 예부에서 내용을 작성하고 문서를 갖추어 알리는 것이 비교적 타당할 것입니다. 마땅히 귀 예부로 咨文을 보내 알리니 참고하시고 그에 따라 신속히 처리해 주십시오.

(7) 문서번호 : 1-1-1-07 (8, 18a-18b)

사안 : 이미 吉林將軍에게 조선 지방관에게 알려 신속하게 작은 목재를 수령해감으로써 사안을 상주해서 완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문서를 보냈습니다(已行文吉林將軍轉知朝鮮地方官速將細小木材領取以便奏結).

날짜 : 同治三年十二月初六日(1865년 1월 3일)

발신 : 禮部

수신 : 總理衙門

十二月初六日, 禮部文稱.

主客司案呈.

准吉林將軍咨稱.

朝鮮慶源地方官懇祈越界伐木, 當經備文移照會慶源地方官, 將應需木植徑長根件數目開載文移賚送, 以備遣匠代爲砍伐.

等因.

差派委官薩凌阿等回稱.

將其應需木植徑長根件數目開單携來, 當派驍騎校訥勒和帶同兵役, 前往與風水無礙之嘎哈哩河兩岸砍伐, 俟伐有成數, 交付該國人役自行轉運. 併將交付之處, 俟該員差旋之日, 再行呈報. 現將賚來木植數目抄錄飛報.

前來. 當經呈報在案.

茲復據驍騎校訥勒和敏³¹)旋稱.

前詣嘎哈哩河兩岸採砍. 先將砍齊大材木料四百餘根, 業經如數點交. 其餘椽櫨細小材木, 現因秋後河水消落難運. 該國尚未來人收領, 職等暫行回城, 俟該國來人收領

之時，再往該處如數點交。

等情。咨報前來。

查朝鮮越界伐木，原屬有違定制，業經奏明奉旨“賞給。”既蒙格外恩施，自應將材木採齊，令其承領，以示寬大。現據該將軍咨報，大木料業經點交，其細小材木，該國尚未收領。查係奏准之案，似未便任命耽延。相應知照吉林將軍，轉飭朝鮮慶源地方官，迅將細小材木，剋期如數收領。並取該處慶源地方官收清文據備案，俟承領完竣後，即行報部，以便奏結。除行文知照吉林將軍並該國王外，相應知照可也。

12월 6일, 禮部에서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主客司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문서를 올렸습니다.

吉林將軍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琿春協領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조선의 경원 지방관이 국경을 넘어와 벌목할 것을 간청하여, 慶源의 지방관에게 照會하여 알리고, 즉시 필요한 나무의 직경과 길이 및 그루 수를 공문에 적어 보냄으로써 (우리 쪽에서) 목수를 파견해 대신 벌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委官 薩凌阿 등을 파견하였는데, 이들은 돌아와

필요한 나무의 직경과 길이 및 그루 수를 첨부한 답장공문을 가지고 돌아왔기에, 이 때문에 驍騎校 訥勒和를 파견하여 兵役을 데리고 가서 풍수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嘎哈哩河 양안에서 벌목을 하되, 그루 수를 모두 채우면 조선 役人에게 넘겨 그들이 스스로 운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넘겨주는 장소는 해당 역원이 돌아오는 날을 기다렸다가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현재 (조선이) 보내온 ‘필요한 나무의 직경과 길이 및 그루 수’ 목록을 한 장 초록하여 서둘러 보고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이미 보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驍騎交 訥勒和가 다음과 같이 보고를 하였습니다.

嘎哈哩河 양안의 구석진 山場 중 風水의 지장을 받지 않는 곳으로 가서, 조선에서 필요로

31) 앞에는 모두 訥勒和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訥勒和敏으로 나와 있다.

하는 목재를 벌목하였습니다. 우선 큰 재목 약 400여 그루를 벌목했고, 이미 수량을 확인하여 넘겼습니다. 그 나머지 서까래나 들보에 쓸 작은 목재는 현재 가을이 지났기 때문에 강 수위가 조금 낮아져 운반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직 조선에서 수령하러 온 사람이 없으니, 저희는 잠시 섬으로 돌아가 있다가, 응당 조선에서 사람을 보내 수령하러 오기를 기다려 다시 확인해서 넘기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이 咨文으로 (예부에) 보고되어 왔습니다.

(예부에서) 살펴보건대 조선에서 국경을 넘어와 벌목하는 것은 원래 정해진 제도를 어기는 일이었지만, 이미 상주하여 “상으로 지급하라”는 유지를 받았습니다. 격외의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었으니, 자연히 목재를 벌목한 다음 수령하도록 넘겨주어 (황상의) 관대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금 吉林將軍의 咨文을 통한 보고를 받았는데, 큰 목재들은 이미 확인하여 넘겼고, 작은 목재들은 조선에서 아직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생각건대 이번 일은 상주하여 승인을 받은 사안이므로 임의로 늦장을 부리면서 늦추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일이 예부에 속하는 것이므로 응당 예부에서 吉林將軍에게 문서를 보내 알리고, 조선의 慶源 지방 관에게 그 지시를 전달하여 신속히 작은 재목들을 기한 내에 수량대로 수령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해당 경원 지방관으로부터 수령을 모두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받아 보관해두었다가, 수령이 완료된 다음 예부에 알리면 예부에서 상주하여 완결시킴으로써 이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吉林將軍 및 朝鮮國王에게 공문을 보내는 알리는 것 외에도, 마땅히 (총리아문에도) 알려야 할 것입니다.

(8) 문서번호 : 1-1-1-08 (9, 19a-19b)

사안 : 조선의 지방관은 기한 내로 작은 재목을 수령해가라는 공문을 감히 열어 볼 수 없기 때문에 (국왕에게 보냈으므로), 조선국왕의 지시를 받기를 기다려 다시 답장을 한다고 합니다(朝鮮地方官未敢拆視剋期收領細小材木文移, 俟奉該國王命再行移覆).

날짜 : 同治四年三月二十五日(1865년 4월 20일)

발신 : 吉林將軍 皂保

수신 : 總理衙門

同治四年三月二十五日, 吉林將軍皂保, 副都統安住文稱.

案查, 前准禮部咨.

據吉林將軍文稱.

朝鮮慶源地方官請伐木植等情一案, 琿春差員, 先將斫齊材木料, 業經如數點交, 其餘細小材木, 該國尚未來人收領.

等因.

本部查此案係屬奏准之件, 未便任令耽延. 應亟轉飭朝鮮慶源地方官, 迅將細小材木, 剋期如數收領. 並取該官收清文據, 俟承領完竣, 即行報部, 以便奏結.

等因. 奉此.

當即飭琿春協領.

刻即備具文移, 照會慶源地方官即將未領木植, 令其如數收領, 取字呈報, 以憑報部. 等因. 飭飭去後.

茲據報稱.

隨備文移差派委官薩凌阿等持文投遞, 旋據回稱.

前詣朝鮮卞倫，面見卡兵，將移文交給，並告明將細小材木，剋期如數收領，不得久延。伊等即將移文持送慶源地方去後，旋據回稱，“慶源官未敢析視原封，遞送我們國王”去訖。³²⁾ 詢其緣由情因。

前任地方官因輕具文移，擅自請伐木植，業經獲罪遠配三千里。故收領細小材木，並將收清之處，現任地方官實係不敢擅專，俟奉國王之命，務急備具文移費送，即行收領。

等語。

復向其索取回字，伊等再四不敢擅自移覆。

等情。呈由該協領轉報前來。

相應據情先行呈報總理各國事務衙門，謹請查核可也。

同治 4년 3월 25일, 吉林將軍 卞保, 都統 安住가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살펴보건대 이전에 禮部로부터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吉林將軍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公문을 받았습니다.

조선 慶源의 지방관이 목재의 별목을 청한 사안건에 대해 琿春에서 관원을 파견하여, 우선 큰 목재를 별목해서 이미 수량대로 확인한 후 넘겨주었고, 나머지 작은 목재는 조선에서 아직 사람을 보내 수령해가지 않았습니다.

본 예부에서 생각건대, 이번 일은 상주하여 승인을 받은 사안이므로 임의로 늦장을 부리면 서 늦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땅히 서둘러 조선 慶源의 지방관에게 지시를 전달하여 서둘러 작은 목재를 기한 내로 수량에 맞추어 수령해 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 지방관으로부터 수령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받아 보관해 놓았다가, 수령이 끝난 다음 즉시 예부로 알려 上奏를 해 완결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吉林將軍은) 이러한 예부의 咨文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琿春協領에게 箭文을 보내, 바로 公문을 갖추어 경원 지방관에게 照會하여, 곧바로 수령하지 않은 목재를 지금 수량대

32) 거홀(去訖)은 어떤 일이 완료되었음을 표현하는 관용구이다.

로 수령하게 한 다음 증명서를 받아 보고함으로써 예부에 알릴 수 있게 하라.
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러한 뒤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곧이어 공문을 만들고 倭官 薩凌阿 등을 파견하여 문서를 전달하게 했는데, 그들은 곧바로 돌아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조선의 변경초소로 가서 초소병을 만나 공문을 직접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재를 기한 내로 수량에 맞추어 수령해 가되 오랫동안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알렸습니다. 조선의 초소병들은 즉시 공문을 경원지방으로 보냈는데 곧바로 돌아와서 이르기를, “慶源官은 감히 밀봉한 공문의 봉투를 뜯어 볼 수 없어 우리 국왕께 올려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그 연유를 물어보니 사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前任 지방관이 경솔히 공문을 보내 멋대로 벌목을 청했다가 이미 벌을 받고 3천리 遠配 형에 처해졌습니다. 때문에 작은 목재의 수령과 수령증명서에 대해서는 현임 지방관이 실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국왕의 명령을 받기를 기다렸다가, 서둘러 공문을 보낸 다음 즉시 (목재를) 수령해가겠습니다.

다시 그들에게 답장공문을 요구하였으니 그들은 감히 자기 멋대로 답장을 보낼 수 없다고 거듭해서 거부하였습니다.

이상의 보고를 瑋春協領이 전달받아 본 장군아문에 보고해 왔습니다. 그에 따라, 마땅히 사실에 따라 먼저 총리아문에 보고하니 삼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9) 문서번호 : 1-1-1-09 (10, 20a-20b)

사안 : 조선 경원의 교역공소를 수리하는 데 필요한 작은 목재를 조선에서는 이미 벌목하였 습니다(朝鮮慶源交易公所修繕所需細小木材, 已在該國自行砍伐).

첨부문서 : 1. 조선 경원 지방관이 보내온 공문(朝鮮慶源地方官來文). 지방교역공소를 수리 하는 데 필요한 작은 목재는 이미 본국에서 스스로 벌목하여 사용하였습니다(修建地 方交易公所所需細小木植, 已在本國自行砍伐應用).

날짜 : 同治四年四月二十八日(1865년 5월 22일)

발신 : 吉林將軍

수신 : 總理衙門

四月二十八日, 吉林將軍阜保文稱.

據琿春協領台斐阿呈稱.

三月二十二日, 據查江官驍騎校額勒德穆具報.

茲有朝鮮人至圖門江界, 賫送該國慶源地方官移文一角, 祈爲接遞. 等因.

當經析視, 大概情形, 乃將細小材木, 已在該國地方自行砍伐. 報經該協領, 卽將 原文移附封呈送查核.

前來.

相應照錄來文, 粘連文尾呈報總理衙門, 謹請查照可也.

(1) 照錄來文一紙.

慶源地方官, 爲 回移 事.

今此開市館舍新建，建處小材木伐領以去之意，至承貴衙門移文，則其用不，不用卽爲回報，事體當然。而以一地方官擅自往復，有違法例，具由論報上司，以承回教之致至於今日矣。謹依貴衙門文移，細小材木固當砍取以來。而大材木卽蒙許施，實是悚感無地，況又肅請，萬萬未安。自小國地方爲砍伐，今方造成，而荷此又蒙格外恩施，到底感惶，貴衙門所在小材木，他無所用。故茲以回移，以此洞諒之地，幸甚。合行移關請照驗施行。須至關至。³³⁾

4월 28일, 吉林將軍 阜保가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琿春協領 台斐阿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3월 22일, 查江官인 驍騎校 額勒德穆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조선인이 圖門江 경계로 와서 조선국 慶源 지방관의 공문 한 통을 가지고 왔으니 받아서 전달해 주기 바란다고 간청하였습니다. 뜯어보니 대체적인 내용은 작은 재목들은 이미 조선 지역에서 스스로 벌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은 琿春協領이 즉시 원래의 공문을 첨부하여 (본 吉林將軍에게) 보고를 올려 검토를 요청해왔습니다.

(吉林將軍이) 마땅히 도착한 문서를 초록하고 문서 말미에 덧붙여 총리아문에 보고하오니, 삼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보내온 공문 초록

慶源 지방관이 답장을 보냅니다.

지금 이번 開市用 館舍를 새로 짓는데, 건설에 필요한 작은 목재를 벌목했으니 수령해 가라는 뜻의 귀 아문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목재를) 쓰든 쓰지 않든 간에, 쓰지 않는다면 즉시 답장을 하는 것이 이치상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낱 지방관이 멋대로 공문을 주고받는

33) “須至關至”(“須至關者”가 아마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에서 ‘須至~’는 공문의 관행상 끝에 붙이는 관용구이며, ‘~’는 보통 공문의 명칭·형식을 가리킨다.

것은 법례에 어긋나기에 사유를 갖추어 上司에게 보고했고, 답장 지시를 받는 것 때문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삼가 귀 아문의 공문에 의거해 작은 재목을 별목해서 받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큰 목재에 대해 바로 시혜를 받아 실로 황송하고 감격스러운데, 하물며 다시 요청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불편한 일입니다. 조선 지방에서 별목을 하던 일이 지금 바야흐로 마무리되었는데, 이렇게 또다시 격외의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되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황송합니다. 귀 아문에 있는 작은 재목은 달리 사용할 곳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답장을 보내니 이것으로 양해해주신다면 정말 다행이겠습니다. 마땅히 關文을 보내니, 살펴보시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0) 문서번호 : 1-1-1-10(11, 21a)

사안 : 조선에서 국경을 넘어와 벌목하겠다고 요청한 사안은 스스로 완결해주시요(朝鮮越界伐木案請自行奏結).

날짜 : 同治四年五月初五日(1865년 5월 29일)

발신 : 總理衙門

수신 : 禮部

五月初五日, 行禮部文稱.

所有朝鮮伐木一案, 前經本衙門咨行貴部, “轉飭將細小材木迅即承領, 以完奏案”等因. 茲准吉林將軍咨稱, “接據慶源地方官移文抄錄咨送”前來. 查慶源地方官原文內稱, “細小材木已在該國地方自行砍伐, 其中國伐給材木, 他無所用, 茲以移回”等情. 是大木前已給領, 小木現亦移回, 此業即可完結, 相應抄錄原文咨行貴部, 查照自行奏結可也.

5월 5일, 禮部로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냈다.

조선의 벌목에 대한 사안은 전에 본 이문에서 귀 예부로 咨文을 보내 “작은 목재를 서둘러 수령해가도록 지시를 전달함으로써 上奏한 안건을 완결” 짓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吉林將軍이 “慶源지방관의 공문을 받았으니 초록해서 咨文으로 보냅니다”라고 咨文을 보내왔습니다. 경원 지방관의 원문을 살펴보니, “작은 목재는 이미 조선 지방에서 스스로 벌목했기에 중국에서 벌목해 준 목재는 달리 쓸 곳이 없어 이번에 문서를 보내 답장을 합니다”고 하였습니다. 큰 목재는 전에 이미 지급하여 수령했고, 작은 목재에 대해서는 역시 답장을 받았으니, 이 일은 바로 완결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땅히 原文을 초록하여 귀 예부에 咨文으로 보내니, 검토하고 상주하여 완결하면 될 것입니다.

(11) 문서번호 : 1-1-1-11 (12, 21b-22a)

사안 : 조선에서 국경을 넘어와 벌목하겠다고 요청한 사안을 상주하여 완결한 주접을 초록하여 알립니다(鈔錄奏結朝鮮越界伐木摺旨知照).

첨부문서 : 1. 예부주접(禮部奏摺). 吉林將軍에게 작은 재목을 수량 그대로 보존하여 사안을 완결시키라고 지시합니다(令吉林將軍將細小材木如數收存結案).

날짜 : 同治四年五月十八日(1865년 6월 11일)

발신 : 禮部

수신 : 總理衙門

五月十八日, 禮部文稱.

主客司案呈.

本部具奏, 朝鮮請伐材木, 其餘剩細小材木, 飭令吉林將軍收存一摺. 於同治四年五月十七日具奏, 本日奉旨.

知道了.

欽此.

相應抄錄原奏知照總理衙門可也.

(1) 照錄原奏

禮部謹奏, 爲 奏聞 事.

前准吉林將軍咨稱.

據琿春協領報稱, 朝鮮慶源地方官請伐木修建交易官房.

臣部於同治三年六月十九日，據情具奏，酌量採給，奉旨，“依議。”欽此欽遵在案。旋據吉林將軍文稱。

朝鮮慶源地方官所伐大材木，業經如數點交，其餘細小材木，該國尚未來人收管。等語。

臣部當即行文咨催吉林將軍，轉飭朝鮮慶源地方官，迅將細小材木如數收領，俟承領完竣，即行報部，以便奏結去後。茲據朝鮮國王具文祇謝，並據吉林將軍咨稱。

慶源地方官原文內稱。

細小材木已在該國地方自行砍伐，其未領之細小材木，他無所用，茲已移回各等語。³⁴⁾

臣等查所伐大材木前已給，其餘細小材木，該國無用，現已移回。應令吉林將軍速派妥員，即將細小材木如數收存備案。

爲此，謹具奏聞。

5월 18일, 禮部에서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냈다.

主客司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문서를 올렸습니다.

본 예부에서는 조선에서 벌목을 청한 것 중 그 나머지 작은 목재는 吉林將軍으로 하여금 보존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상주하였습니다. 同治 4년 5월 17일에 상주하여 그날로 알았다.

는 유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마땅히 原奏文을 초록하여 총리아문에 알립니다.

(1) 원 상주문 초록

禮部에서 삼가 상주하여 알립니다.

34) ‘各等語’는 둘 이상의 공문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관용구이다. 보통 ‘等語’는 동급이나 하급의 공문을 인용할 때 사용한다.

전에 吉林將軍의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琿春協領의 보고를 받았는데, 조선 慶源의 지방관이 別幕하여 交易官房을 수리할 것을 청한다는 것입니다.

예부에서는 同治 3년 6월 19일 상황에 의거해서 적당하게 別幕해 줄 것을 上奏하였는데, “논의한대로 하라”는 유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뒤이어 바로 吉林將軍의 다음과 같은 문서를 받았습니다.

조선의 慶源 지방관이 別幕한 큰 목재는 이미 수량대로 확인해서 넘겼고, 그 나머지 작은 목재는 조선에서 아직 사람을 보내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예부에서는 즉시 吉林將軍에게 咨文을 보내 재촉하여, 조선 慶源 지방관에게 지시를 전달하여 서둘러 작은 재목을 수량대로 수령해 가게 하고, 수령이 완전히 끝나면 즉시 예부로 보고하여 상주하여 완결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이번에 조선국왕이 보내온 공손히 감사를 올리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吉林將軍의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慶源 지방관이 원문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작은 목재는 이미 조선 지역에서 알아서 別幕했기에, 아직 수령하지 않은 작은 목재는 달리 쓸 곳이 없어 이렇게 답장을 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吉林將軍의 咨文을 받았으므로 예부의) 신 등은 생각건대, 別幕한 큰 목재는 이미 지급하였고, 그 나머지 작은 목재는 조선에서 쓸 곳이 없다고 이미 답장이 왔습니다. 따라서 마땅히 吉林將軍으로 하여금 속히 적당한 관원을 파견하여 즉시 작은 목재를 수량대로 거두어서 보존하고, 증명서를 남겨두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삼가 상주하여 알리는 바입니다.

(12) 문서번호 : 1-1-1-12(12, 1615, 2894b-2895a)

사안 : 조선 회령부사가 무산에서 목재 5백 편을 벌목하였는데, 이미 길림·조선상무 및 화룡
육총국 서리에게 조사를 한 다음 통과시키라고 지시하였습니다(朝鮮會寧府使請於茂
山砍取木料五百片, 已飭吉朝商務和龍峪總局查驗放行).

날짜 : 光緒十七年五月二十四日(1891년 6월 30일)

발신 : 吉林將軍 長順

수신 : 總理衙門

五月二十四日, 吉林將軍長順文稱.

光緒十七年四月二十九日, 據署理吉朝商務和龍峪總局·兼辦越壑事宜·同知銜升用同
知·候選知縣王昌熾呈稱.

竊於光緒十七年四月十五日, 接准會寧府使·監理關北陸路通商洪時衡照開.³⁵⁾

照得, 昨秋雨水, 敝署房屋壞頹, 將擬經營改修, 必須料理工程. 且民人或致身死,
所有棺材, 均係關念. 板子限五百片, 自可砍取茂山地方. 所以今將僱人朴春甫·
朴利亨·池仕汝·楊旬汝·陣珍甫飭赴該處. 希即成送公文, 以便無滯砍取. 又於造
筏下江之日, 或慮貴差弁之盤詰禁阻. 請煩貴督理查照行文各口岸, 以憑無礙放
行, 是爲至要.

等因.

准此. 卑職檢查底案, 茂山俄人勾結韓民前年私砍料木, 已經幫辦憲接准憲台電
知,³⁶⁾ 委員查實封禁. 去秋雨水冲流, 又經前委員葉聯甲遵飭委員查禁在案. 前淮南
按撫使照請韓岸居民越江樵柴. 當已具文分報, 旋奉憲台批開.

查韓民私行越界, 例禁甚嚴. 上年燬私渡·禁越壑, 均已明申禁令. 茲該按撫使尚

以禁壑許樵爲請，不時私借樵薪，砍運邊木，勢必修橋越壑，仍踏前非。杜漸防微，斷不可再開此端，以弛邊禁。該局其速行禁止勿忽。除咨北洋大臣查核外，仰即遵照。繳。³⁷⁾

等因。業經照覆亦在案。

茲准前因。³⁸⁾

該會寧府使伐運料木，遠在茂山以上，應否照准，未敢擅專，除分報幫辦憲外，理合先行具文呈請，鑒示施行。

等情。到本督辦將軍。

據此。查土們江爲吉朝公共之江，該國會寧府使所稱，被災砍用之屋料棺材，旣在茂山，且有五百片爲限，自可量加體恤，以示我朝字小之意。應令該府使俟此項木料造符下江之時，先期照會該局照驗放行。該局仍確切查驗，勿稍大意，致滋影射之敝。³⁹⁾ 除批飭外，相應備文咨呈貴衙門，謹請查核施行。

5월 24일 吉林將軍 長順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光緒 17년 4월 29일에 길림·조선상무 화룡옥총국을 임시관리하고 아울러 월간 문제를 처리하는 동지직함의 승용동지인 후선지현 왕창치(王昌熾)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光緒 17년 4월 14일 會寧府使이자 監理關北陸路通商인 洪時衡의 다음과 같은 照會를 받았습니다.

살펴보건대 지난 가을에 비로 인해 저희 관서의 건물이 무너져 장차 개축하려면 반드시 공사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백성이 혹시 죽거나 하면 필요한 관을 만들 재목도 모두

35) 照開(照開)는 照會문의 내용이 다음과 같다는 뜻이다. 開는 실려 있다는 뜻으로 요약이나 인용이 시작될 때 쓰이는 단어이다.

36) 방관헌(幫辦憲)은 琿春副都統을 가리키고, 현대(憲台)는 吉林將軍을 가리킨다. 헌(憲)은 上司를 가리키는 말이다.

37) 격(繳)은 문서를 받아 본 다음 그 원문서를 보낸 사람에게 다시 돌려보내라고 지시하는 관용어이다.

38) 전인(前因)은 앞서 나오거나 인용된 공문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이다.

39) 영사(影射)는 감추거나 못된 수작을 부린다는 뜻.

엄려되는 바입니다. 이에 관자 5백 편(片)으로 제한해서 茂山 지역에서 벌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僱人 朴春甫, 朴利亨, 池仕汝, 楊旬汝, 陣珍甫를 그곳으로 보내도록 지시 하였습니다. 바라건대 즉시 공문을 보내주셔서 벌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뗏목을 만들어 강을 내려올 때 혹 귀 아문에서 파견한 관원이 따지며 금지할지도 모릅니다. 청컨대 번거롭겠지만 귀 督理께서 살펴보시고 각 口岸으로 문서를 보내,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照會를 받고 나서 저는 기존 선례에 관련된 문건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茂山에서 러시아인이 韓民과 결탁해 전년도에 불법적으로 나무를 벌목했던 일은 이미 琿春副都統이 吉林將軍으로부터 전보를 받아 관원을 파견해 사실을 조사한 다음 封禁하였습니다. 작년 가을에는 비가 내려 물이 넘치자 다시 前委員 葉聯甲이 적당한 사람을 보내 조사하게 한 다음 봉금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南按撫使가 조선 쪽 강변의 백성들이 두만강을 건너와 뗏감을 마련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照會를 보낸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문서를 갖추어 각기 알린 바 있고 곧바로 吉林將軍의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韓民이 몰래 국경을 넘어 오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법률이 아주 엄격했다. 작년에 개인나루터를 파괴하고, 몰래 넘어와 개간하는 것(越壘)을 금지시킨 것은 모두 금령을 명확히 다시 밝히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해당 按撫使가 개간은 금지하되 뗏감 베는 것은 허락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시도 때도 없이 불법적으로 뗏나무를 베어 가게 되면 반드시 그 다음은 다리를 만들고 넘어와서 개간하여, 여전히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할 터이며, 일이 커지기 전에 단속해야 하므로 이런 일은 결단코 다시 실마리를 열어 주어 邊禁을 해이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해당 총국은 속히 금지하고 소홀히해서는 안 된다. 이 내용을 北洋大臣에게 咨文으로 알려 검토하게 하는 것 외에, 응당 그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라. 이 문서를 반납할 것.

(이러한 지시를 받아 그에 따라) 이미 照會로 답장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앞서의 다음과 같은 공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會寧府使가 멀리 茂山 위쪽에서 나무를 벌목해 가져가겠다고 하지만, 이것을 허락할지 말지 멋대로 결정할 수 없어, 琿春副都統에게도 보고하는 것 외에, 마땅히 먼저 공문을 갖춰 (吉林將軍에게) 보고해야 할 것이니, 검토해보시고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이상과 같은 보고가) 本吉林將軍에게 전달되었습니다.

(吉林將軍이) 살펴보건대, 土們江은 길림과 조선이 공유하는 강입니다. 조선의 會寧府使가 말하길, 재해를 입어 벌목이 필요한 건축 자재와 棺材가 茂山에 있다고 하고, 또한 5백 片으로 한정하겠다고 했으니, 마땅히 헤아려서 體恤해줌으로써, 小國을 아껴주는 우리 清朝의 뜻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응당 해당 府使로 하여금 이번 목재를 뗏목으로 만들어, 강을 내려올 때를 기다려 미리 해당 總局에 照會를 보내 알리면, 해당 總局에서 확인한 다음 통과시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總局에서는 확실히 조사하되, 大意를 손상시키고 말썽을 피우는 폐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지시하는 것 외에도, 공문을 갖추어 올려 귀 아문에도 알려야 할 것이니, 검토한 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의 월경 벌목(韓民越界伐木)

(13) 문서번호 : 1-1-2-01 (1094, 1970b-1972b)

사안 : 중국 통화현 백성이 월경하여 벌목하고 아울러 조선인 박진평을 살해하였습니다(通化縣民越界砍木並殺害朝鮮人朴辰宏).

날짜 : 光緒十一年十一月十七日(1885년 12월 22일)

발신 : 盛京將軍 慶裕

수신 : 總理衙門

十一月十七日, 軍機處交出⁴⁰⁾盛京將軍慶裕抄摺稱.

爲 遵旨查明通化縣民邢克礫等越境砍木, 因朝鮮索稅致相爭鬧, 邢克潰藉詞復仇殺朝鮮人朴辰宏一案, 謹將起釁緣由暨辦理情形據實具陳仰祈聖鑒 事.

竊奴才⁴¹⁾於光緒十一年十一月初二日, 承准軍機大臣字寄.⁴²⁾

光緒十一年十月二十六日, 奉上諭.

禮部奏據朝鮮國王咨稱, 奉天通化縣民人偷伐該國樹株, 並有聚衆擅殺情事. 等因. 欽此.⁴³⁾

奴才伏查此案，前據通化縣知縣黃毓森具稟。⁴⁴⁾

以先後接准朝鮮厚昌節制使移稱。

縣屬九道溝民人邢克磔等聚眾越界砍木，該國飭令裨將等收稅，致相爭鬧。邢克磔等緝去金泰興等五人，邢克潰復將該國民人朴辰宏殺死。

經該縣迅飭帽兒山巡檢王其昌，就近傳同鄉約前往諭禁查拏，稟請飭派駐紮南圍之靖邊後營副將蕭成恒，帶隊馳往彈壓。

等情。並據東邊道暨興京同知具報前來。

奴才當以案關中國民人越境滋事，釀成人命，亟應嚴拏懲辦，即經飛飭蕭成恒揀帶所部馳赴九溝一帶，會同通化縣妥為籌辦，務將正兇邢克潰暨案內首要各犯悉數捕獲解究。一面飭令東邊道派弁密探確情，相機辦理。嗣據東邊道轉據副將蕭成恒呈報。

朝鮮人金泰興·朴文權·田仁俊·吳宗祐等四名，業據邢克潰之弟邢克祥伴送來營，當即備文移交厚昌節制使按名驗收。查知邢克潰並非糾夥劫掠，所有夥同砍木人等均已散去。邢克潰暨王魁山亦均隨同弁兵投案，並傳到姜書林，韓得基，同邢克祥等一共五名，解交通化縣收審。惟邢克磔，張廷選先已聞風逃逸。

等情。稟准。

奴才札飭該縣黃毓森嚴訊擬辦，仍責成該副將蕭成恒等，設法密拏邢克磔等務獲究報。黃毓森旋因面稟地方事宜晉省，適值縣屬被水，星馳署。現在查辦災賑，尚未將此案訊詳。此邢克潰一案先後辦理之情形也。

至其起釁之由，節據蕭成恒·黃毓森暨東邊道派員密加訪查，係因光緒九年二月間，朝鮮人韓貞珉等六人，越界通化縣九道溝偷木，值牌民侯廷至向阻不服，被韓貞珉等毆傷。報經邢克潰之父鄉約邢士英，帶領諳習語音之張鳳詳·張明玉，往投朝鮮厚昌郡台官稟訴未見。找至韓貞珉家理論，韓貞珉喝令十數朝鮮人，各持木棒亂毆，致將邢士英毆斃，張鳳詳等逃回。經前任通化縣知縣張錫鑾會驗，因兇逃無獲，屢次移提，迄未解送。邢克潰以父仇未報，久懷念恨。適十一道溝居民韓得基·姜書林·共木把邢克磔等越江砍木，朝鮮人仍前收取錢布，並未阻止。迨經砍竣，突有該國民人田仁俊出而攔阻，因索稅不給，率人將木值盡行砍損。木把等急即將朝鮮人金泰興等緝縛，希圖理論完

事. 詎該國官民索稅愈急, 木把等因知邢克潰挾有前仇, 遂將金泰興等送至邢克潰家. 邢克潰藉此向索兇犯, 復經朝鮮人將幫兇朴辰宏緝送, 邢克潰遂將朴辰宏擅行殺斃. 至木把砍伐木植, 多在深山窮谷, 爲豺虎出沒之區, 向須聚集人夫攜帶槍械防身. 及其放運木簾, 各用旗幟標記, 聯貫下駛, 藉資望遠, 實爲砍運木植之常, 初非與朝鮮爭鬪而然. 此訪查起釁之實在情形也.

奴才復查此案起釁始末, 業據各員密查具報, 核與該國王原咨所敘厚昌郡守牒報互有歧異. 案涉邊民越境滋事, 復仇擅殺, 自應澈底根究, 務成信讞, 以靖邊圉而安藩邦. 除飭派東邊提集犯證, 研訊確情, 按例擬辦, 並飭嚴禁沿邊民人, 不准再行越境, 暨勒拏邢克碌等務獲歸案訊辦外, 所有查明邢克潰一案起釁緣由暨辦理情形, 理合恭摺據實具陳, 伏乞皇太后皇上聖鑒.

謹奏.

光緒十一年十一月十七日, 軍機大臣奉旨.

據奏此案起釁緣由, 與該國原咨互異. 惟邊民越境滋事, 其所報復仇擅殺等情, 必須研訊確持平辦理. 著卽飭屬提集犯證, 並勒拏邢克碌等務獲歸案, 詳細研鞫, 按律擬辦. 一面嚴禁沿邊民人不准再行越境, 以靖邊圉而安屬藩.

欽此.

- 40) ‘交出’은 軍機處에서 황제의 결재를 받은 문서를 관련 부서로 내보내는 것을 가리킨다.
- 41) ‘奴才’는 八旗所屬의 旗人이 황제에 대해 자신을 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漢人의 경우 보통 ‘臣’을 칭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 42) 자기(字寄)는 軍機處의 軍機大臣이 황제를 대신하여 고위관료에게 上諭를 전달할 때 그 문서의 첫머리에 쓰는 용어이다. 보통 軍기대신자기(軍機大臣咨寄)라고 쓰는데, 기밀사건에 대해 특별한 관청에 내리는 기신상유(寄信上諭)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공개적으로 반포되는 상유는 명발상유(明發上諭)라고 한다.
- 43) “等因. 欽此.”의 경우는 諭旨를 원래 그대로가 아니라 요약해서 節錄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 44) 이하의 부분은 원래 성경장군이 간접인용의 형식으로 바꾸어 쓴 것 같은데, 이해를 돕기 위해 직접 인용의 형식으로 바꾸었다.

11월 17일, 軍機處에서 盛京將軍 慶裕의 抄摺을 받아 (총리아문으로) 보내왔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通化縣 백성 邢克礫 등이 월경하여 벌목을 하다가 조선에서 세금을 요구하자 서로 다툼을 벌였고, 邢克漬가 이를 구실로 원수를 갚고자 조선인 朴辰宏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삼가 다툼이 발생한 원인 및 처리 상황을 사실에 근거해 아뢰오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光緒 11년 11월 2일 다음과 같은 軍機大臣이 보낸 상유(字寄)를 받았습니다.

光緒 11년 10월 26일에 다음과 같은 上諭를 받았습니다.

禮部에서 조선국왕의 咨文을 받아 上奏하였는데, “奉天 通化縣의 백성이 몰래 조선국의 나무를 베고 아울러 무리를 모아 제멋대로 살인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成慶長군이) 삼가 생각건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앞서 通化縣知縣 黃毓森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뒤로 朝鮮 厚昌節制使의 다음과 같은 移文을 받았습니다.

(중국 통화현) 소속 九道溝의 백성 邢克礫 등이 무리를 모아 월경하여 벌목을 했는데, 조선에서 裨將 등으로 하여금 세금을 거두게 하자 서로 다툼이 생겼습니다. 邢克礫은 金泰興 등 5명을 묶어서 데려갔고, 邢克漬는 이 가운데 조선 백성 朴辰宏을 살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通化縣에서는 帽兒山巡檢 王其昌에게 서둘러 명령하여 근방의 鄉約을 불러서 함께 가서 禁令을 알리고 범인을 잡아들이게 하였습니다. 南圍에 주둔하는 靖邊後營의 副將 蕭成恒을 파견하여, 부대를 데리고 서둘러 가서 진정시켜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아울러 東邊道 및 興京同知도 이런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성경장군은) 사안이 中國 백성이 국경을 넘어가 문제를 일으키고 인명을 해친 일에 관계되므로 서둘러 엄히 잡아들이어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蕭成恒에게 부대를 끌라 이끌고 신속히 九(道)溝 일대로 가서 通化縣 知縣과 함께 적절하게 처리하고, 힘써 정범 邢克漬 및 사건관련 주요 범인들을 모두 잡아들이고 후 압송해서 처벌하도록 서둘러 지시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東邊道에도 하급무관을 파견하여 엄밀히 조사하고 상황에 맞게 처리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뒤이어 바로 東邊道에서 部將 蕭成恒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전달해 왔습니다.

조선인 金泰興, 朴文權, 田仁俊, 吳宗祐 등 4명을 邢克漬의 동생 邢克祥이 동반하여 저희 부대로 보내왔기에, 곧바로 문서를 갖추어 厚昌節制使에게 넘기면서 이름을 확인하여 데리고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조사해보니 邢克漬는 결코 무리를 지어 약탈하는 데 참가하지 않았으며, 함께 벌목한 나무꾼들은 이미 모두 흩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邢克漬 및 王魁山 역시 모두 하급무관 및 병사를 따라와 자수했고, 또한 姜書林, 韓得基 및 邢克祥 등을 소환하여 이들 모두 通化縣으로 넘겨 재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다만 邢克礫, 張廷選은 이미 소문을 듣고 도망쳐 달아났습니다.

이상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성경장군은) 通化縣 지현 黃毓森에게 엄정히 신문하여 처리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또한 副將 蕭成恒 등에게는 방법을 강구하여 邢克礫 등을 엄밀히 체포하여 보고하도록 독촉하였습니다. 黃毓森은 곧 지방사무를 직접 보고하는 일 때문에 省都에 왔는데, 마침 통화현이 수재를 당하여 급히 曙로 돌아갔습니다. 다만 현재 재난구휼 문제를 조사하여 처리하는 중이라, 아직 이 사안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고한 바 없습니다. 이것이 邢克漬 사안의 전후 처리 상황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蕭成恒, 黃毓森 및 東邊道에서 파견한 관원들이 엄밀하게 두루 수사한 바에 의하면, 光緒 9년 2월 조선인 韓貞珉 등 6명이 국경을 넘어와 通化縣 九道溝에서 나무를 훔치다가, 牌民 侯廷至가 이를 막으면서 저항하다가 韓貞珉 등에게 맞아 다친 데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를 邢克漬의 아버지인 鄉約 邢士英에게 알리자, 그는 조선어를 잘 아는 張鳳詳, 張明玉을 데리고 朝鮮 厚昌郡 台官에게 직접 가서 하소연하려 하였지만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韓貞珉의 집으로 찾아가 따졌는데, 韓貞珉이 십수 명의 조선인에게 지시하여 각기 몽둥이를 가지고 마구 때리게 해서 邢士英은 맞아 죽고, 張鳳詳 등은 도망쳐 돌아왔습니다. 뒤이어 전임 通化縣 知縣 張錫鑾이 함께 조사했지만 범인은 도망쳐 잡히지 않은 데다가, 여러 차례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지금까지 압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邢克漬는 부친의 원수를 갚지 못하여 오랫동안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침 十一道溝 거민 韓得基, 姜書林 등 나무꾼이 邢克礫 등과 함께 두만강을 넘어가 나무를 베자, 조선인은 이전처럼 錢布를 받고 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벌목이 끝날 무렵 갑자기 조선백성 田仁俊이 나타나 가로막으면서 세금을 요구했는데, 주지 않자 사람들을 데리고 목재들을 모두 파손해버렸습니다. 나무꾼 등은 당황해서 조선인 金泰興 등을 포박한 다음 시비를 가려 일을 마무리 짓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조선 관민이 세금을 요구하는 게 더욱 거세지자, 나무꾼 등은 邢克漬가

이전의 원한을 가지고 있음을 알기에, 마침내 金泰興 등을 邢克漬의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邢克漬가 이를 빌어 (아버지를 죽인) 범인을 요구하자, 조선인들이 다시 공범 朴辰宏을 잡아 보냈고 邢克漬는 끝내 朴辰宏을 멋대로 죽여 버린 것입니다.

나무꾼들이 벌목하는 목재는 대부분 깊은 산의 골짜기에 있어 승냥이와 호랑이가 출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종래 반드시 인부들을 불러 모으고 무기를 휴대하여 몸을 보호해 왔습니다. 그리고 뗏목을 운반할 때에는 각기 깃발을 이용하여 표시함으로써, 뗏목을 묶어서 하류로 몰고 갈 때 멀리서 보아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벌목해서 뗏목을 운반할 때 항상 하는 일이지, 애초에 조선과 문제가 발생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다툼이 발생한 실제상황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입니다.

(성경장군이) 다시 이 사건이 발생한 경과를 살펴보건대, 이미 각 관원들로부터 받은 비밀 조사 보고의 내용과 조선국왕이 咨文에서 서술한 厚昌郡守 牒報와는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사안은 변경 백성이 월경하여 말썽을 일으키고 복수 때문에 멋대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 응당 철저히 조사·처리함으로써 법 집행의 명확한 전례를 만들어 변경을 안정시키고 藩邦을 위로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東邊道를 파견해 범인과 증인들을 소환하고 정확한 상황을 심리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되, 아울러 沿邊 백성들에게 엄정하게 명령하여 다시는 월경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邢克碌 등을 힘써 잡아들여 사법처리를 하는 것 외에, 邢克漬 사건이 일어난 연유 및 처리상황에 대해서는 응당 공손히 주점을 갖추어 사실에 근거해 아뢰오니, 皇太后·皇上께서 살펴 봐주시길 옹호하야 청하는 바입니다. 삼가 상주하는 바입니다.

光緒 11년 11월 17일, 軍機大臣은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다.

상주에 따르면, 이 사안이 발생한 연유는 조선의 咨文에서 이야기하는 내용과 차이가 있다. 다만 변경 백성이 국경을 넘어가 말썽을 일으켰고, 복수 때문에 살인하였다고 한 상황은 반드시 확실하게 조사하여 공평히 처리해야 한다. 속하에게 명령하여 증인들을 소환하고, 아울러 邢克碌을 힘써 잡아들여 법정에서 세운 다음, 상세하게 심문하여 법률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라. 한편 변경 백성들에게 다시는 국경을 넘지 않도록 엄금하여, 변경을 안정시키고 屬藩을 위안하라.

(14) 문서번호 : 1-1-2-02(1363, 2500b-2501b)

사안 : 한민의 월경벌목은 금령 위반이므로 이미 원세개에게 지시하여 조선정부로 하여금
조사·금지시키라고 알렸습니다(韓民越界伐木有干禁令, 已札令袁世凱知照韓政府查禁).

날짜 : 光緒十四年七月初三日(1888년 8월 10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七月初三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六月二十七日, 准吉林將軍咨開.

邊務承辦處案呈.

本年六月初四日, 准琿春副都統咨開.⁴⁵⁾

茲據五道溝招墾分局委員書麟稟稱.

昨有韓民數名, 由紅溪河上游順流運下木板兩筏, 當即詢據該韓民言, “在土們子所伐, 欲運赴江西慶源府出售.” 竊維該韓民私自越界, 潛伐樹木, 似宜查禁, 故將木筏阻留.

等情. 稟請指示前來.

據此. 查華韓現在雖屬通商, 彼此應准採辦土貨, 然應查禁者固宜仍如定章, 不容出境. 至山場所產之樹, 卽本屬之人, 尚不准恣意採伐, 況通商章程又未載有准韓民越伐樹木之條, 豈容似此潛越江界, 深入我境, 盜伐樹木, 鋸板結筏, 順流公然而下, 竟欲出境, 運赴彼國慶源地方售賣? 應卽禁阻, 俾免後效. (等因)⁴⁶⁾ 正擬照知慶源府使究懲私越盜伐樹木之犯間, 准該府使來照內稱.

據屬下金斗福訴稱.

伊督工在琿界土們子山砍伐木板數百寸，順流運下，途被官兵查獲阻留。

請卽追還原主，領運回國。

等情。照會前來。

查該韓民既私擅越界潛伐樹木於先，而該管之官又復公然具照代索於後，殊屬不合。除具照如前據理辨駁外，惟本處偏鄰朝鮮，僅隔一江爲限，處處皆可渡越，原無扼要可阻。故江沿所居韓民，往往聚夥成羣，越入我界密占嘎雅河南崗一帶近邊各處，或伐木料，或鋸板片，抑或樵採，車載負運，竟絡繹不絕。一經查禁，則藉以通商准採土貨爲辭，婉言哀懇。每念其屬藩貧民，諭以准一而不准再，從寬恕去。奈江長地濶，此禁彼越，稽查終屬難週。今彼竟視若應行無忌，深入我界伐木鋸板，已至數百餘寸之多，結筏順流，公然下運。既經查禁，自宜走避不違，乃復敢訴彼公庭。卽該府使亦宜引咎自責，如不然，應卽申斥不予准理，乃竟具文代爲索還。是彼意在試探，得步進步之計。擬請申明禁令，嚴定科懲之條，認真巡緝，實力查拏，遇犯必懲，毋稍寬貸，俾韓民知所做戒。除將此次所獲之木板悉數查封外，理合咨請核示。

等因。前來。

查韓民擅自越界，伐木鋸板，在其民已干禁令，何其國官吏既已失察於先，及被阻其筏運，猶復爲民代請？且有追還原主之語，一若民之所應有而被人劫奪者，殊出情理之外。該副都統照覆辨駁辦理甚是。惟既越境干禁，自應明定科條，由琿春就近示諭韓民，禁其毋再越界私伐樹株，致被盤獲，不再輕貸。除咨覆該副都統查照辦理外，相應咨請查核施行。

等因。到本閣爵大臣。⁴⁷⁾

准此。除札袁升道世凱照知韓政府，轉飭府使等一體查禁外，相應咨會貴衙門，請煩查照。

45) 혼춘(琿春)은 오늘날 중국 길림성(吉林省) 연변조선족자치주(延邊朝鮮族自治州)의 동쪽에 위치한 현(縣) 단위 행정구역으로 청말 조선족의 유입으로 현재도 조선족(朝鮮族) 주민이 상당수에 달하는 지역이다. 혼춘의 책임자는 琿春協領이었는데, 강희 53(1714)년 설치되어 영고담부도통(寧古塔副都統)에게

7월 3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6월 27일, 吉林將軍의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邊務承辦處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문서를 올렸습니다.

올해 6월 4일 琿春副都統의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지금 五道溝 招墾分局委員 書麟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제 韓民 여러 명이 紅溪河 상류에서 물살을 따라 뗏목 두 판을 운반하기에 즉시 물어보았더니, “土們子에서 벌목한 것으로, 강 서쪽의 慶源府로 운반해가서 내다 팔려고 합니다”라는 답장이었습니다. 생각건대 해당 韓民들은 불법으로 월경하여 몰래 나무를 벌목하였으니, 마땅히 조사하여 금지해야 할 것 같기에, 뗏목을 가지 못하게 잡아두었습니다.

지시를 내려주기를 보고하여 요청해왔습니다. 조사해 보건대, 중국과 조선은 현재 통상을 하고 있으므로 서로 자국의 토산품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금지되는 것은 여전히 기존 章程대로 出境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산마루에 나는 나무의 경우, 현지인도 멋대로 벌채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通商章程에도 韓民의 越境 伐木을 허락하는 조항이 실려 있지도 않습니다. 어찌 이처럼 몰래 월경하여 우리 쪽 영역으로 깊숙이 들어와 樹木을 도벌하고, 뗏목으로 만들어 물길을 따라 공개적으로 내려가, 마침내 출경하여 조선의 慶源 지역에서 내다 파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즉시 금지시키고 이후에 따라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바야흐로 慶源府使에게 알려 몰래 월경하여 목재를 도벌한 범인들을 조사하여 처벌하게 하려던 차에, 경원 부사의 다음과 같은 照會를 받았습니다.

속하였다. 협령(協領)은 관직이름으로, 청대 주방팔기(駐防八旗)의 무직관원(武職官員)이다. 부도통(副都統) 아래, 좌령(佐領) 위의 직위로 종삼품(從三品)이다. 소속 관병(官兵)을 관할하면서 조련(操練)·수위(守衛)를 통해 방무(防務)를 돕는 역할을 맡는다. 琿春에는 광서 7(1881)년 4월 한 등급 위인 琿春副都統이 설치되었다. 그 정식 직함은 ‘황제의 명을 받아 길림변무의 처리를 돕고, 훈춘에 주재하면서 지키는 부도통(欽命幫辦吉林邊務鎮守琿春副都統)’이다.

46) 이 ‘等因’ 구절은 불필요하게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47) 閣은 내각대학사를 의미하며, 爵은 작위를 말한다. 즉 大學士이자 直隸總督이고 一等肅毅伯 작위를 지닌 北洋大臣 李鴻章을 가리킨다.

속하 金斗福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감독으로 琿春 지역의 土們子山에서 목관 수 백 촌(寸)을 벌목한 다음 물길을 따라 운반하다가, 도중에 중국 관병의 조사를 받고 저지당하였습니다. 청컨대 즉시 원주인에게 돌려주어 (목재를) 운반하여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상의 照會를 받았습니다. 조사해 보건대, 앞서 해당 韓民은 이미 몰래 월경하여 나무를 도벌했고, 뒤이어 해당 지역의 관원은 다시금 공개적으로 照會를 보내 돌려줄 것을 대신 요청하니, 정말 이치에 맞는 일이 아닙니다. 照會를 갖추어 앞서 말한 이치에 따라 논박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은 조선과 매우 가깝고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누어져 있어 곳곳에서 모두 건너다닐 수 있으므로 애당초 지켜서 막을 수 있는 요충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강변에 거주하는 韓民들은 왕왕 다수가 무리를 이루어 우리 지역으로 넘어 들어와 嘎雅河 남쪽 언덕 일대 가운데 변경과 가까운 곳들을 몰래 점유한 다음, 목재를 벌목하거나 아니면 톱질하여 목관을 만들었으며, 아니면 땔나무를 채집하여 수레에 싣거나 짊어지고 운반하는 일이 언제나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조사하여 금지시키자, 통상을 맺어 土貨의 판매를 허락 받았다는 말을 구실로 삼아 은근한 말로 애원하며 간청하고 있습니다. 매번 屬藩의 빈민을 생각해서 한 번은 허용하되 다시는 허용하지 않는다며 깨우쳐 너그럽게 용서해서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강은 길고 땅은 넓어, 여기서 금지하면 저기서 넘어가니, 단속하는 일이 끝내 두루 미치지 어렵습니다. 지금 사안의 경우 저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동해도 되는 것처럼 여겨서, 우리 쪽 지역으로 깊이 들어와 나무를 베고 목관을 자른 것이 이미 이윽고 수 백여 촌에 이르렀으며, 그것을 뗏목으로 만들어 물길을 따라 공개적으로 운반하였습니다. 그러다 조사를 받아 금지 당하자 당연히 달아나기에도 경황이 없어야 하는데, 감히 다시 저쪽 관아에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해당 부사 역시 마땅히 잘못을 인정하고 자책하거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응당 韓民을 꾸짖고 그 호소를 들어주어서는 안 되었는데, 마침내 문서를 보내 돌려 줄 것을 대신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그가 일단 탐색해 본 후, 가능하면 얻을 수 있는 만큼 얻어 보겠다는 계획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禁畝를 다시 밝히고 처벌 조항을 엄격히 정하여, 최선을 다해 순찰하여 힘들여 잡아들이되, 범인을 잡으면 반드시 징벌하고 조금도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韓民들로

하여금 경계할 바를 알게 하고자 간청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압류한 목관 전체를 확인하여 압수한 것에 대해서도 마땅히 咨文을 보내 검토와 지시를 청해야 할 것입니다. (吉林將軍이 생각건대) 韓民이 멋대로 월경하여 나무를 베고 목관을 잘랐는데, 그 백성이 이미 禁畝를 어긴 일에 대해, 어찌 그 나라 관원이 미리 조사하여 밝혀내지도 못하고, 뗏목이 저지당한 다음에도 도리어 그 백성을 위해 대신 나서 원주인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마치 원래 가지고 있다가 남에게 빼앗긴 것처럼 나서는데 정말 이치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琿春副都統이 照會를 보내 반박한 것은 아주 옳은 일이었습니다. 다만 월경이 금령을 어기는 것이라는 점은 자연히 명백한 처벌 조항이 정해져 있으니, 琿春에서 직접 韓民들에게 告示를 하여, 다시는 월경하여 몰래 나무를 베는 일이 없도록 금지하고, 다시 체포되면 결코 가벼이 용서하지 않겠다고 알려야 할 것입니다. 해당 副都統에게 咨文으로 답장하여 그에 따라 처리하게 하는 것 외에, 마땅히 咨文을 보내 검토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런 咨文이 本閣爵大臣 李鴻章에게 전달되어 왔습니다. 이미 升道 袁世凱에게 지시하여, 조선 정부에 알려 해당 府使 등에게 지시하여 모두 금지시키는 것 외에, 마땅히 咨文으로 귀 아문에 알리오니, 번거롭겠지만 참고해주십시오.

(15) 문서번호 : 1-1-2-03 (1371, 2516a)

사안 : 조선 조정에서는 변계 각 관원으로 하여금 앞으로는 변민이 몰래 월경하여 벌목하는 것을 금지시키도록 지시하였습니다(韓廷允飭邊界各官嗣後嚴禁邊民潛越伐木).

날짜 : 光緒十四年八月初八日(1888년 9월 13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八月初八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前准吉林將軍咨開.

琿春地方有韓民私自越界盜伐樹木, 迨查獲阻留, 韓官輒代請追還. 經琿春副都統照覆辯駁, 咨請查核.

等因.

當經札飭駐劄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升用道補用知府袁世凱照知韓政府, 轉飭府使等一體查禁在案. 茲據袁世凱申稱.

當即遵照照會朝鮮政府關飭查禁去後,⁴⁸⁾ 旋於七月十四日准該政府照覆.

查敵邦邊民越界伐木, 致干禁阻, 該慶源府使既不能究辦該犯, 乃反具照代索, 殊違向例, 實屬謬妄. 當即關飭通商衙門及沿邊各地方官申明查禁, 嗣後再不准邊民潛越伐木私運可也. 相應備文照覆, 請煩查照.

等因. 前來.

准此. 理合申復查核.

等情. 到本閣爵大臣.

據此. 除咨覆吉林將軍查照外, 相應咨明貴衙門, 請煩查照.

8월 8일, 北洋大臣 李鴻章의 다음과 같은 문서를 받았습니다.

전에 吉林將軍의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혼춘지방으로 韓民이 몰래 월경하여 나무를 도벌했고, 뒤이어 조사를 당해 그 나무들을 압류당하자 해당 지역 관원은 대신 돌려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르렀는데, 琿春副都統이 照會를 보내 반박을 하였고, (吉林將軍은 총리아문에) 咨文을 보내 검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咨文을 받았으므로 북양대신 이홍장은) 이미 駐朝鮮 總理交涉通商事宜 升用道補用知府 袁世凱에게 지시하여, 조선정부에 알려 府使 등에게 지시하여 모든 것을 조사·금지시키라고 한 바 있습니다. 지금 袁世凱가 이에 대해 다시 다음과 같이 보고를 해왔습니다.

곧바로 지시에 따라 조선정부에 照會를 보내어 엄격하게 조사·금지시키도록 공문(關文)을 보내 지시하라고 알렸습니다. 그 뒤 곧이어 7월 14일 조선정부가 다음과 같은 답장 照會를 보내왔습니다.

조사해 보건대, 조선 변민이 월경하여 벌목한 것은 금령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경원부사가 해당 범인은 처벌하지도 못한 데다가, 도리어 照會를 갖추어 그들을 대신해서 반환을 요구한 것은 특히 기존의 정례에 어긋나며, 정말 황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곧바로 통상아문 및 변경 주변 각 지방관에게 다시 한 번 금령을 확인하도록 관문을 보내 지시하여, 앞으로도 다시는 변민이 몰래 월경하여 벌목하고 운반하는 일을 허용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공문을 갖추어 답장 照會를 보내니 번거롭더라도 참고해주십시오.

이상과 같은 照會를 보내왔습니다. (원세개는) 이러한 照會를 받았으므로 응당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이 본각작대신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보고를 받았으므로 응당 吉林將軍에게 咨覆하여 참고하게 하는 것 외에도, 응당 귀 아문에 咨文을 보내 알려할 것이니, 번거롭더라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8) 關飭은 공문의 일종인 關文을 보내 지시한다는 뜻이다.

(16) 문서번호 : 1-1-2-04 (1469, 2669a-2671b)

사안 : 조선 변민 우적모 등이 월경하여 벌목하였으므로, 응당 조선관원에게 넘겨 죄를 처벌
하게 해야 합니다(朝鮮邊民禹績謨等越境伐木, 應飭交朝鮮官員治罪).

날짜 : 光緒十五年十月二十四日(1888년 11월 16일)

발신 : 吉林將軍 長順

수신 : 總理衙門

十月二十四日, 吉林將軍長順文稱.

邊務承辦處案呈.

光緒十五年九月二十二日, 准琿春副都統咨開.

左司案呈.

案查, 前准貴督辦將軍電開.

轉准電. 據駐紮朝鮮袁陞道稟稱.

朝民有越境在琿砍伐木植情事, 稟請咨查.

等情.

轉電到本幫辦.

准此. 當經飭據委章京定祿覆稱.

探明吉·朝毘連之大荒溝拐磨子溝兩處, 有朝民在彼伐木屬實, 卽經委派親軍哨官恩海, 差官童必勝前往該處, 將盜伐木植人犯挈解來琿, 以憑訊究. 旋於本年七月二十五日, 據該哨官等稟, “獲禹績謨、俞保汝二名, 僱工 蔡旬甲等六名, 扣獲木植三百一十根, 稟稱委審.” 隨卽委令署協領掌左司關防春陞, 訊據禹績謨供.

小的⁴⁹⁾年四十五歲, 係朝鮮甲山府民. 父母早故, 並無兄弟. 娶妻黃氏, 前年病

故，生有一子。小的向在本國庄農度日，合已獲俞保汝素識交好。於光緒十四年，不記月日，小的到俞保汝家探望，說起年荒難過。小的起意，商允俞保汝湊資來琿，偷砍木頭，運出江口，賣與俄人，得錢分用，俞保汝答應。各湊資本，遂於七月不記日期，各牽牛一頭，馱載米糧，潛至琿春管界拐磨子溝上掌大荒溝，蓋了草房兩間。

於八月初間，小的們採得木場，僱了本國民李枝烈·黃仁白·金四弘·趙仁彥們四人。小的帶領，於八月二十七日開山砍木。至十二月二十五日砍了木頭三百一十根。十五年正月間添僱本國人李姓·李吉玄·羅汝文·姜姓們四名，小的們帶領他們八人，將木頭運至河邊堆放，因河水過淺，欲俟下雨水漲，再運出口。至二月底，因河水淺小，就把李枝烈等辭去。

至七月二十二日雨降河漲，小的教俞保汝至本國金化縣僱來黃才明等六名，想把木頭結排由河運至土們江口，賣與俄人。不料至二十二日官兵走去，就把小的合黃才明們一同拿獲了，今蒙審訊。小的合俞保汝偷伐木頭只這一次，此外並沒為匪不法的事。官中亦無知情賄縱的人。李枝烈們現逃何處，小的不知道，求恩典。是實。

俞保汝供。

小的年四十歲，係朝鮮茂山府民。父母早故，並無兄弟。從未娶妻。於上年七月初十日，有本國素識交好之甲山府民禹績謨來小的家探望，說起年荒難過的話，他就起意，合小的商久湊資來琿，偷砍木頭，運出河口，賣給俄人，得錢分用，我就答應。各湊資本，遂於七月不記日期，各牽牛一頭，馱載米糧，潛至琿春管界拐磨子溝上掌大荒溝，搭蓋草房兩間。

於八月初間，小的們採得木場，僱了本國民李枝烈·黃仁白·金四弘·趙仁彥們四人。小的與禹績謨帶領着，於二十七日開山砍木，至十二月二十五日砍了木頭三百一十根。十五年正月間又添僱小國人李姓·李吉玄·姜姓·羅汝文們四名，將木頭運至河邊堆放，擬俟下雨漲水，順河下運。至二月底，因河水淺小，將李枝烈等八人均都辭去。

至七月十二日雨降河漲，禹績謨就令小的到本國金化縣地方，僱來黃才明等六名，欲想由河運放木排。不料至二十二日，官兵到去，就把小的合黃才明們一同挈來，今蒙審訊。委因小的合禹績謨偷伐木頭，只這一次，此外並沒為匪法的事。官中亦無知情賄縱的人。李枝烈們現逃何處，小的不知道。求恩典。是實。

質之蔡甸甲·姜仁行·裴四凡·慎憶萬·黃才明·金化成等，供認受僱，運放木排，甫經下河，尚未出口，並無幫同砍伐等供不諱。該協領等誠恐另有圖利包庇之人，復向究詰，堅稱實無圖利縱容之人。研訊至再，矢口不移，案無遁飾。查吉林朝鮮通商章程第二條內載，朝鮮商民在中國已開口岸，所有一切財產罪犯等案，無論被原告為何國人民，悉由中國地方官按律審斷。知照朝鮮委員備案，如所斷案件朝鮮人未服，許由該商務委員稟請大憲復訊，以昭平允。細核此項章程，專指商民一切財產罪犯而言。至越境盜伐木植，應如何訊斷，並未另有定章。復經本幫辦電准貴督辦將軍電開。

伐木與命盜異，毋須犯事地方辦理，應將該犯俞保汝·禹績謨，備文飭交韓官，解至該國王京，咨由敝處咨請總署行該國王治罪。其僱工可照‘不應重杖’⁵⁰⁾等因。

今吉林朝鮮通商章程既未備載，自應遵照辦理。此案禹績謨商允俞保汝湊資來瑣，僱集工人盜伐木植，數至三百餘株，已屬非是。據供運出江口，圖賣俄人，尤干法紀。章程既無議及治罪明文，自應酌量飭交朝鮮官員，解至該國王京治罪。蔡甸甲等六名雖無受僱伐木，而受僱幫運出口，亦有不合。應酌照，‘不應而為事理，重者杖八十’律，各擬杖八十折責後⁵¹⁾一併交韓官遞籍管束。所伐木植，全數入官。該犯等盜伐木植，訊無圖利縱容之人，應毋庸議。李枝烈等飭緝獲日另給。除將該犯等備文送交朝官外，所有審擬緣由，是否允協，理合呈請咨報。

等情。

相應咨會。為此合咨，請煩查照議覆施行。

等因。

准此。本督辦將軍查此案韓民越境私砍木植，偷運外洋，情節甚重。即使管轄之站官毫

無私弊，而平日失於覺察，咎亦難辭。前准該副都統訊明站官喜春及領催高明俊，均無受賄故縱知情隱報情事。取具供詞，咨經本督辦將軍覆核，供詞尚多遺漏，咨令覆訊在案。茲准前因，除俟該副都統訊取站官喜春等供詞到日再行核咨外，相應先行備文咨呈。爲此，咨呈貴衙門，請煩查照，轉咨朝鮮國王辦理施行。

11월 24일, 吉林將軍 長順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邊務承辦處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문서를 올렸습니다.

光緒 15년 9월 22일 琿春副都統의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左司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문서를 올렸습니다.

조사해 보건대 전에 貴督辦將軍의 다음과 같은 전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吉林將軍이 [북양대신으로부터] 받은) 전보를 전달합니다.

조선에 주재하는 원세개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선 백성이 월경하여 琿春에서 벌목한 일이 있으니, 咨文을 보내 조사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러한 전보가 琿春副都統에게 전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委章京 定祿에게 지시한 바 있는데, 다음과 같이 답장으로 보고해왔습니다.

길림과 조선이 맞닿아 있는 大荒溝와 拐磨子溝 두 곳을 확인해 보니 조선 백성이 그곳에서 벌목한 것이 사실이었기에, 즉시 親軍哨官 恩海와 差官 童必勝을 그곳으로 파견하여 盜伐한 범인들을 체포, 琿春으로 압송하여 심문하고자 하였습니다. 곧이어 올해 7월 25일에 해당 哨官 등의 보고를 받았는데, “禹績謨, 兪保汝 2명 및 품팔이 蔡旬甲 등 6명을 잡았고, 나무 310그루를 압수하였기에 심문처리를 요청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49) ‘小的’은 평민이나 差役이 官紳에 대해 스스로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노비가 주인에게 자신을 이를 때도 마찬가지이다.

50) ‘不應’은 살인 등의 안건 외에 모든 명칭을 짓기 어려운 범죄를 가리켜서 부른 것으로 重·輕의 구분이 있다. ‘不應重杖’은 이런 조항에 따라 곤장형으로 처벌하는 것을 가리킨다.

51) 절책(折責)은 곤장형(笞杖)의 경우 처벌을 경감해주는 방법이다. 이를테면 10대를 4대로 경감해주는 식인데, 이렇게 되면 80대의 곤장형은 32대가 된다.

이에 즉시 署協領 掌左司關防 春陞을 파견하여 禹績漢을 심문하여 다음과 같은 진술을 받았습니다.

제 나이는 45세로 조선 甲山府 백성입니다. 부모는 일찌감치 돌아가셨고 형제는 없습니다. 아내 황 씨는 작년에 병으로 죽었고 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본국의 농장에서 지낼 적에 兪保汝와 평소 안면이 있어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光緒 14년 어느 날(날짜는 기억 못합니다), 제가 兪保汝의 집으로 찾아가 살펴보고 흥년 때문에 지내기 어렵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의견을 내어, 兪保汝에게 돈을 모아 琿春으로 가서 나무를 몰래 벌목해서 江口로 운반한 후 러시아 사람에게 팔고 돈을 받아 나눠 쓰자고 했고, 兪保汝는 응낙하였습니다. 각기 돈을 모아 결국 7월 어느 날인가 각기 소를 한 마리씩 끌고 식량을 실은 다음 몰래 琿春 관할지역인 拐磨子溝 상류 大荒溝에 도착한 다음 초가집 두 칸을 지었습니다.

8월 초에 저희들은 木場을 확보한 후 조선인 李枝烈, 黃仁白, 金四弘, 趙仁彥 등 4인을 고용하였습니다. 제가 그들을 데리고 8월 27일 산에 들어가 벌목을 시작했고, 12월 25일까지 나무 310그루를 벌목하였습니다. 15년 정월쯤 본국인 李姓, 李吉玄, 羅汝文, 姜姓 등 4명을 추가로 고용하였습니다. 그들 8명 데리고 河邊으로 나무를 운반해 쌓아 놓았는데, 강물이 지나치게 얇아 비가 내려 물이 불어나기를 기다렸다가 하구로 운반하고자 하였습니다. 2월 말이 되었는데도 강물이 얇았기 때문에 李枝烈 등을 떠나보냈습니다.

7월 22일에 비가 내려 강이 불어나자, 저는 兪保汝를 본국 金化縣으로 보내 黃才明 등 6명을 고용하게 했고, 나무를 묶어 강을 통해 土們江口로 운반하여 러시아인에게 팔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22일 관병이 달려와 저와 黃才明 일행을 체포했고 지금 심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兪保汝는 단 한 차례 벌목했을 뿐 이외에는 결코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원 중에서도 사정을 알고 뇌물을 받아 눈감아 준 사람도 없습니다. 李枝烈 등은 현재 도망갔는데 어느 곳으로 갔는지 알지 못합니다. 은전을 베풀어주십시오. 이상의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兪保汝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저는 40세로 조선 茂山府 백성입니다. 부모는 어릴 적에 돌아가셨고 형제는 없습니다. 장가는 가지 않았습니다. 작년 7월 10일 평소 사이좋게 알고 지내던 甲山府

민인 禹績謨가 저의 집에 와서 살펴보고는 흉년이라 지내 어렵다는 말을 꺼내더니, 저와 함께 돈을 모아 琿春에 가서 나무를 몰래 벌목해서 江口로 운반한 후 러시아 사람에게 팔고 돈을 받아 나눠 쓰자고 제안했고, 저는 응낙하였습니다. 각기 돈을 모아 마침내 7월 어느 날인가 각기 소 한 마리씩을 끌고 식량을 실은 다음, 몰래 琿春 관할의 拐磨子溝 상류의 大荒溝에 도착하고, 다음 초가집 두 칸을 지었습니다. 8월 초에 저희들은 木場을 확보한 후 본국인 李枝烈, 黃仁白, 金四弘, 趙仁彥 등 4인을 고용하였습니다. 저와 禹績謨가 이들을 데리고 27일에 산에 들어가 벌목을 시작했고, 12월 25일까지 나무 310그루를 벌목하였습니다. 15년 정월쯤 다시 본국인 李姓, 李吉玄, 羅汝文, 姜姓 등 4명을 추가로 고용해 河邊으로 나무를 운반해 쌓아 놓았는데, 비가 내려 물이 불어나기를 기다렸다가 물길을 따라 아래로 운반하고자 하였습니다. 2월 말이 되었는데도 강물이 얕았기 때문에 李枝烈 등 8인을 모두 떠나보냈습니다.

7월 22일에 비가 내려 강이 불어나자, 禹績謨는 저를 본국의 金化縣 지역으로 보내 黃才明 등 6명을 고용하고, 강을 통해 뗏목을 운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22일에 관병이 도착해 저와 黃才明 일행을 체포했고 지금 심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저와 禹績謨는 단 한 차례만 벌목했을 뿐 이외에는 결코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원 중에서도 사정을 알고 뇌물을 받아 눈감아 준 사람도 없습니다. 李枝烈 등이 현재 도망간 곳이 어디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은전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상의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蔡甸甲, 姜仁行, 裴四凡, 愼憶萬, 黃才明, 金化成 등에게도 심문하였더니 (禹績謨 등에게) 고용되어 뗏목을 운반하려 이제 막 강에 내려간 참으로 江口를 벗어나지는 않았으며, 결코 함께 벌목한 일도 없다고 숨김없이 진술하였습니다. 해당 協領 등은 따로 이익을 노려 비호하는 사람이 있을까 다시 자세히 힐문했지만, 실로 이익을 노려 자신들을 풀어준 사람은 없다고 굳게 주장하였습니다. 재차 심문했지만 결코 말을 바꾸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 숨기거나 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사해보건대 吉林·朝鮮通商章程 제2조에 중국의 개항장에서 朝鮮商民이 일으키는 모든 財產犯罪 사안은 피고·원고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막론하고 모두 중국 지방관원이 법률에 따라 심판한다고 실려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의 委員에게 공문을 통해 알리고, 만일 사안에 대한 판결을

조선인이 승복하지 않는다면, 해당 商務委員이 上司에게 보고를 올려 요청함으로써 다시 심문하여 공평함을 밝히는 것을 허용할 것입니다. 이 항목의 章程을 상세히 살펴보니 오로지 商民의 모든 재산범죄만을 가리켜 이야기하고 있고, 월경하여 목재를 도벌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심문하여 판결할지 별도로 정해진 章程이 전혀 없습니다. 琿春副都統이 다시 貴吉林將軍에게 電報로 알렸더니 다음과 같은 貴吉林將軍의 전보를 받았습니다.

별목사안은 살인·강도와 다르니 반드시 범죄를 저지른 지방에서 처리할 필요는 없다. 응당 해당범인 兪保汝, 禹績謨 등에 대해 공문을 갖추어 韓官에게 넘겨 朝鮮國王 王京으로 압송한 다음, 本吉林將軍이 총리아문에 咨文을 보내 요청하면, 총리아문에서 朝鮮國王에게 처벌을 요청하는 咨文을 보낼 것이다. 품팔이노동자들은 ‘해서는 안 될 범죄’에 관련된 조항에 따라 무거운 곤장형을 베푸는 다음 석방하면 될 것이다. 지금 吉林·朝鮮通商章程에 처벌조항이 실려 있지 않으므로 당연히 위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禹績謨는 兪保汝와 상의해서 돈을 모아 琿春에 간 다음 노동자를 고용하여 몰래 벌목한 나무가 300그루에 이르니 이미 죄를 범한 것입니다. 진술에 따르면 江口로 운반해가서 러시아인에게 팔려고 했으니 더욱 법을 어긴 것입니다. 章程에는 이와 관련된 죄를 다스리는 명확한 조항이 없으므로, 마땅히 朝鮮官員에게 넘겨 王京으로 압송하여 죄를 다스리게 해야 할 것입니다. 蔡旬甲 등 6명은 비록 고용되어 벌목한 일은 없지만, (그들을) 도와 운반해 江口를 벗어나려 했으니, 역시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무거운 곤장 80대를 친다라는 조항에 비추어 각기 경감된 곤장 80대의 처벌을 내린 다음 모두 韓官에게 넘겨 원적지로 보내 관리하게 할 것입니다. 벌목한 나무는 모두 몰수하였습니다. 해당 범인들이 몰래 벌목했지만, 심문한 결과 이익을 노려 그들을 눈감아준 사람이 없으니 더 이상 따질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李枝烈 등은 체포한 다음 별도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범인 등에 대해 공문을 갖추어 조선관원에게 보내는 것 외에, 심문하여 판결을 내린 사정이 타당한지 아닌지 咨文으로 알려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琿春副都統이 생각건대) 이상의 내용은 응당 咨文으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咨文으로 청하오니 번거롭겠지만 검토해주십시오.

本吉林將軍이 조사해 보건대, 韓民이 월경하여 불법적으로 벌목한 후 몰래 外洋으로 운반하려

한 것은 무거운 범죄에 해당됩니다. 설사 관할 역참 관원이 전혀 불법적인 폐단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도, 평소에 알아차리지 못했으므로 역시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전에 瑋春副都統으로부터 역참관원 禧春 및 領催 高明俊을 신문한 내용을 받았는데, 모두 뇌물을 받고 고의로 눈감아 주었거나 상황을 알고서도 보고하지 않은 상황은 없었습니다. 진술서도 취합하여 보냈기에 다시 검토하였는데, 진술에 빠진 것들이 여전히 많았으므로, 咨文을 보내 다시 심문하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와 같은 답장을 받았으므로 瑋春副都統이 초소장 교 禧春 등을 다시 심문한 진술서가 도착하면 다시 알리는 것 외에, 마땅히 먼저 문서를 갖추어 咨文으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에 귀 아문에 咨文을 보내오니 번거롭겠지만 검토한 다음 조선국왕에게 전달하여 처리하도록 해주십시오.

(17) 문서번호 : 1-1-2-05 (1481, 2689a-2691b)

사안 : 한민 김윤문이 이전에 토문강가에서 별목한 관목으로 러시아에 부채를 상환하였는데, 이미 琿春副都統에게 지시하여 그를 붙잡아 재판에 부치고, 아울러 러시아 관원에게 照會를 보내 이치에 근거하여 반박하도록 하였습니다(韓民金允文以前在土門江子所伐官木抵償俄債, 已飭琿春副都統查拏審辦並照覆俄官據理駁詰).

첨부문서 : 1. 훈춘부도통이 러시아 烏蘇哩지역 界務官에게 보내는 照會(琿春副都統覆俄國烏蘇哩界廓米薩爾照會). 한민 김윤문은 결코 토문자에 거주하지 않으며, 훈춘경내 산지의 관목 역시 별목하여 국외로 운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韓民金允文並未在土門子居住, 琿境各山官木亦嚴禁砍伐運載出境).

2. 훈춘부도통이 러시아 烏蘇哩지역 界務官에게 보내는 照會(琿春副都統覆俄國烏蘇哩界廓米薩爾照會). 김윤문은 이미 광서 13년 가을 토문자를 떠나 행방불명이고, 관목을 도벌한 것은 금령을 어긴 것이라 이미 두루 지명수배 공문을 돌려 체포·처벌하고자 하였습니다(金允文已於光緒十三年秋離去土門子下落不明其偷砍官木尤于例禁, 已通咨查拏訊辦).

3. 러시아 烏蘇哩지역 界務官이 琿春副都統에게 보내는 照會(俄國烏蘇哩界廓米薩爾瑪照覆琿春副都統照會). 김윤문을 체포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請查拏金允文).

날짜 : 光緒十五年十一月十八日(1889년 12월 10일)

발신 : 吉林將軍 長順

수신 : 總理衙門

十一月十八日, 吉林將軍長順等文稱.

案照前准琿春副都統恩澤咨稱, 接據俄國烏蘇哩界廓米薩爾照會,⁵²⁾ 韓民金允文欠俄

商洋機布合帖子五百八十四吊，金允文言，“在土門子已伐木五百根，在伊蒙古街近處抵還”一案，當經本將軍以買係私債，木係官物，豈能相抵，電咨琿春副都統據理駁詰，並令派員查拏金允文，將所砍木植悉數扣留審辦去後，茲准覆稱。

俄官復照請續查，遂派員查明。韓民金允文即克木永莫呢，於光緒十三年在彼處伐過木植，賣與附近村人，并未運外境。即於是秋他往謀生，迄無下落。應即照復俄官自行托人尋討。擬稿咨請核示。

等因。

復經本將軍以所擬照覆俄官文稿，詞意未妥。電據該副都統將此案第一次照會文稿鈔咨前來，內有“照會俄官自向朝鮮官員嚴拏”一語，殊欠斟酌。但事屬既往，應毋庸議。茲另擬照覆文稿，咨由該副都統譯發外，相應鈔錄來往照會稿備文咨呈。為此咨呈貴衙門，謹請查照施行。

照錄粘單。

(1) 大清國琿春副都統衙門，為 照覆 事。

案准貴廓米薩爾照會內開。

有住居琿河邊土門子之朝鮮民人金允文，曾買貴國人謗帖里告伏洋機布兩包，合價帖子五百八十四吊，無錢歸還，聲稱“前在土門子伐有木頭五百根。擬以此木抵還布價”，請照十五株納稅。如果木植礙難出境，即追價付給。

等因。

准此。本幫辦副都統查琿境各山木植，係屬官物，本國人民尚不應私自砍伐運載出境，朝鮮人民尤為例所嚴禁。茲准前因，當即飭據差官覆稱。

遵即前往琿河邊土門子徧查，並無朝民金允文在彼居住，亦無砍有木頭五百根情事，實屬無從帶案。

等情稟覆前來。

本幫辦副都統覆查無異。爲此，照覆大俄國烏蘇哩界廓米薩爾，煩卽照會朝鮮官員嚴拿金允文追償可也。須至照覆者。

(2) 大清國吉林琿春副都統衙門，爲 照覆 事。

照得前准來照，以韓民金允文賒欠諦帖里告伏之洋機布二包，言由琿屬伐運木植抵還，祈卽查辦前來，當經查無其人照覆在案。

茲准來照內稱。

有無克木永莫呢在土門子伐木，不知的確。然確悉彼處實有房子住戶，請向克木永莫呢追究卽得著落。

等因。

復飭據委員查明。

克木永莫呢卽金允文，曾於光緒十三年在土門子地方伐過木植，卽於是秋他往謨生，不知去向。四外查拏，究無下落。

等情。

查該犯金允文卽克木永莫呢，胆敢偷砍琿屬官木，大干例禁，卽使並無賒欠諦帖里告伏布債，在我國亦屬不卸之罪。況犯禁罪重，追償事輕，本副都統豈有不從嚴拏之理？但該犯原係朝鮮無業游民，今去琿界已逾二載，萍踪無定，弋獲無期。現經咨行通緝，一俟拏獲治罪時，則布債之事，亦不能不代向該犯一問。第該犯既能與貴國商民貿易，其語言想亦相通，難保不潛逃貴境。并希貴廓米薩爾轉飭一體查拏，解交訊辦。是所至要。爲此，照覆。須至照會者。

右照會 大俄國烏蘇哩界廓米薩爾。

(3) 大俄國烏蘇哩界廓米薩爾瑪，爲 照覆 事。

照得前於八月初三日，准貴副都統來文，閱悉一切，即請飭屬再行續察爲妥。蓋因所稟貴副都統情形大概，有不實不盡之處。本廓米薩爾尙不知的確有無克木永莫呢在土門子砍伐林木。然確悉彼處實有房子住戶，倘貴副都統定於追究即向住家威帖爾廓甫者也。惟希貴副都統查辦此案，毋須向朝鮮官府究情，而向克木永莫呢即可得著落矣。貴副都統請煩查照可也。爲此照覆。須至照會者。

右照會 大清琿春副都統。

一千八百八十九年阿甫古斯特月，即八月二十九日。

11월 18일, 吉林將軍 長順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전에 琿春副都統 恩澤의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烏蘇哩 지역 界務官으로부터 照會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韓民 金允文이 러시아 상인에게 洋機布로 도합 帖子로 584吊의 빚을 졌지만, 김윤문이 “土門子에서 이미 500그루를 벌목해 놓았으니 그쪽의 蒙古街에서 상환 하였습니다”라고 주장한다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吉林將軍은 “산 것은 私債에 해당되지만, 나무는 官木이니 어떻게 이것으로 상환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여 琿春副都統에게 전보 咨文을 보내 이치에 근거하여 반박하라고 지시하고, 아울러 관원을 보내 金允文을 체포하며 벌목한 나무 전부를 압수한 후 재판에 붙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琿春副都統의 다음과 같은 답장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관원이 다시 照會를 통해 계속 조사할 것을 요청하기에, 관원을 파견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韓民 金允文, 즉 克木永莫呢는 光緒 13년 그쪽 지역에서 벌목을 하여 부근 촌민에게 팔았지만 국경 밖으로 운반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이번 가을에 그는 생계를 꾸리고자 탄 곳으로 가서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합니다. 응당 즉시 러시아 관원에게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수색하라고 답장으로 照會해야 할 것입니다.

52) 커미샤르(廓米薩爾)는 commissar(소련 시절에는 공산당의 통제위원이나 인민위원을 뜻했다)의 음역(音譯)인데, 중국 측 자료에서는 계무관(廓米薩爾)으로 번역되고 있어 이에 따랐다. 영어로는 community service officer라고도 번역된다.

이러한 초안을 작성하였는데, 검토하신 후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吉林將軍은 러시아 관원에게 보내는 이 답장 照會 초안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전보를 보내 琿春副都統으로부터 이 사안에 대해 최초로 보낸 照會의 草案을 모두 咨文으로 보내게 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보니) ‘러시아 관원에게 照會를 보내 조선 관원들로 하여금 엄밀히 체포하게 해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照會를 보낸 구절은 특히 온당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미 지난 일이라 더 이상 추궁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따로 답장 照會 초안을 작성해 咨文으로 琿春副都統에게 번역하여 발송하는 것 외에, 마땅히 오고간 照會文을 초록한 후 문서를 갖추어 咨文으로 올려야 할 것입니다. 이에 귀 아문에 咨文을 보내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답장 照會 문서를 첨부합니다.

(1) 大清國 琿春副統衙門이 照覆照會를 보냅니다.

귀 界務官의 다음과 같은 照會를 받았습니다.

琿河邊 土門子에 거주하는 조선 백성 金允文이 일찍이 러시아인 誘帖里告伏의 洋機布 2包도합 帖子로 584吊을 사고서는 돈을 내지 않으면서, “전에 土門子에서 나무 500그루를 벌목했는데, 이 나무로 布價를 상환할 것입니다”고 하였으니, 청컨대 15그루에 비추어 납세하게 해주십시오. 만일 나무를 국경 밖으로 운반하기가 어렵다면, 가격대로 돈을 지급 해주십시오.

본 副都統이 생각건대, 琿春境內 산의 나무는 모두 官物이므로, 중국 백성도 몰래 벌목하여 국경 밖으로 운반해서는 안 되는데, 조선의 백성은 더욱더 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照會를 받았으므로, 이미 인원을 파견하여 조사하게 하였더니, 돌아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지시를 받고 바로 琿河 주변 土門子에 가서 두루 조사했지만, 조선 백성 金允文은 거기에 거주하고 않으며, 500그루를 벌목한 일도 없다고 하므로 실로 잡아들여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본 副都統이 다시 조사를 해 보았지만 차이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귀 러시아 烏蘇哩 지역

界務官에게 照會하오니, 번거롭겠지만 조선 관원에게 照會를 보내 金允文을 엄밀히 잡아들여 값을 지불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 大清國 吉林 琿春副都統衙門이 답장 照會를 보냅니다.

이전에 보내주신 照會를 받았는데, ‘韓民 金允文이 譚帖里告伏의 洋機布 2包를 빚지고는 琿春 지역에서 벌목해 운반한 나무로 상환하겠다’고 했다는 일에 대해 조사·처리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그에 대해 조사해보았지만 그런 사람이 없다고 답장 照會를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보내주신 다음과 같은 照會를 받았습니다.

克木永莫呢가 土門子에서 벌목을 했는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히 그곳에서 실제로 집을 갖고 거주하였으니 청컨대 克木永莫呢를 추궁하여 마무리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관원을 파견해 확인할 결과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克木永莫呢, 즉 金允文은 일찍이 光緒 13년에 土門子 지역에서 벌목한 다음, 이번 가을에 생활을 꾸리기 위해 탄 곳으로 떠났는데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사방으로 조사하여 잡으려 했지만 소재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혼춘부도통이) 생각건대 범인 金允文, 즉 克木永莫呢은 대담하게도 감히 琿春 소속의 官木을 훔쳐 금령을 크게 어겼습니다. 설사 譚帖里告伏에게 布債를 빚지지 않았다고 해도, 중국에서 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금령을 어긴 것은 죄가 무겁고, 빚을 갚는 것은 사안이 가벼우니, 본 副都統이 어찌 엄히 잡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만 해당 범인은 원래 직업이 없는 조선 유민으로, 지금 琿春지역을 떠난 지 벌써 2년이 넘었고 거처도 정해진 것이 없어 언제 잡을 수 있을지 전혀 기약할 수 없습니다. 지금 咨文을 보내 두루 수배하였으므로, 체포하여 죄를 다스리게 될 때를 기다려, 布債에 관한 일도 또한 대신 해당 범인에게 추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범인이 귀국 商民과 무역을 하였으니, 아마도 말이 서로 통했을 것이므로, 귀국 지역으로 몰래 도망가지 않았다고 보장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울러 귀 界務官도 지명수배를 내리도록 지시하여, (체포될 경우) 저희 쪽으로 넘겨 심문·처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에 답장 照會를 보내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러시아 烏蘇哩지역 界務官에게 照會하는 바입니다.

(3) 러시아 烏蘇哩지역 界務官이 답장 照會를 보냅니다.

8월 3일에 귀 副都統이 보낸 문서를 받았습니다. 전체를 살펴보니, 계속 수배를 해주시도록 요청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생각건대, 副都統에게 올린 보고의 대체적인 상황을 보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 界務官은 克木永莫呢이 土門子에서 벌목을 했는지 아닌지에 대해 여전히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그곳에 실제로 집이 있어 거주하였으니, 아마도 귀 副都統이 반드시 추궁하겠다고 한다면, 그 거주하던 집에 가서 좀 힘을 쓰시면 될 것입니다.⁵³⁾ 다만 바라건대 귀 副都統께서 이 사안을 조사하면서 조선 관부에 처리를 떠밀어 요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克木永莫呢의 문제는 곧 마무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번거롭겠지만 청컨대 副都統이 참고해주십시오. 이에 답장 照會를 보내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의 照會를 大清 琿春副都統에게 보냅니다.

1889년 阿甫古斯特月, 즉 8월 29일.

53) 이 부분은 원문의 뜻이 분명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18) 문서번호 : 1-1-2-06 (1526, 2761b~2764b)

사안 : 韓民이 拐磨子溝에 월경하여 목재를 도벌한 일에 대해 穆克和兼密占⁵⁴⁾ 分站의 筆帖式 희춘 등을 심문하였는데, 결코 이를 알고 비호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韓民越界在拐磨子溝盜伐木植, 研訊穆克和兼密占分站帖筆帖式喜春等並無包庇情事).

날짜 : 光緒十六年三月二十一日(1890년 5월 9일)

발신 : 吉林將軍 長順

수신 : 總理衙門

三月二十一日, 吉林將軍長順文稱.

查前准琿春副都統咨.

准督辦將軍電.

據朝鮮袁升道稟稱.

朝民越境在琿伐木情事.

等因.

當飭往查吉朝毘連之大荒溝·拐磨溝兩處, 有韓民在彼伐木屬實, 並派員將該伐木人犯解琿究訊.

各等因.

當經本衙門據情分咨, 並咨覆該副都統覆提管轄之站官研訊確情, 取供咨覆再行核辦, 並分咨各在案. 茲准該副都統咨覆內開.

54) 본문에 穆克和兼密, 穆克德和兼密, 穆克德和兼密占 등 다양하게 나오는데 아마 筆寫의 착오인 것으로 보인다.

55) 필첩식(筆帖式, 筆帖士式)은 청대 각 아문에 설치된 하급 문관으로, 만주어로 문서·문건을 처리하는

遵將筆帖式⁵⁵⁾喜春·署領催高明俊等覆加嚴審，據喜春謹訴。

係穆克和兼密占分站筆帖式，琿春廂黃旗人。⁵⁶⁾ 竊職站原設穆克德和爲正站，兼管密站分站。⁵⁷⁾ 所有傳遞文報，應付差徭，一切重務皆屬正站，其分站僅司接轉公文，別無他事。故喜春自蒙授斯缺以來，卽居於正站，凡事皆親自經理，以冀稍免貽悞之虞。至分站事務輕減，向令領催委官居守。詎前於六月三十日接奉左司札職站之文一件，該署領催高明俊當以限緊，若遞正站，往返恐需多時，致有貽悞，遂析悉韓民偷伐木植，所關緊要。且木場相距正站二百五十餘里，不便查探，彼卽就近自行馳赴札內指飭之拐磨子溝上掌及大荒溝二處查探，在拐磨子溝上掌果有韓民十名伐就之松木樹三百一十根，堆集河岸，意在水漲下運。惟其木植似非近日砍，故當時問據稍通華語之韓民，言“此項木植係於今年正二月間砍就”等語。遂卽站，一面呈覆，一面達知正站。喜春因其已經遵札查報，意卽了事，遂致疎畧。不意該領催查報含混，彼復遵飭如前徑行查明呈覆，喜春事後始知。今奉札調歸案查訊，喜春不勝惶悚。緣該領催才拙學淺，乃將詢自韓人所訴正二月間伐木之語，竟未明白叙報，誤似喜春等素所諗悉，以致顯有知情匿報之弊，實由自取。然拐磨子溝上掌等處相距分站一百九十餘里之遙，原非職站所轄之境。且彼處係屬深山密林，向無人居。故該韓民得以潛至彼處，偷伐木植。該山場旣非站屬，樹木又非喜春等所應巡稽查禁。且無居人往來通其消息，若非遵奉指飭深入其地實力查探，究恐終無知者。今蒙復訊，所訊是實。

高明俊供。

年三十一歲，吉林蘇瓦延站站丁，在西路關防處充當外卽達差使。前因穆克德和兼密占分站領催周俊祖母病故，請假回家持服，於三月初一日蒙關防處派明俊代署，遂來琿春，照舊在密占分站居守。至六月三十日，忽接左司札文一件，外封批限甚緊，遂卽析閱係韓民越界偷砍木植之事。文內指明伐木之所，令卽星馳查明呈覆。明俊思想此事所關甚重，限又過緊要，若遞知正站，往返必須一日之久，反致遲悞，正分站均屬無益。且正站又離木場二百五十餘里，相距密占分站一百九十餘里，稍較就近。因此明俊就自行連夜馳赴札內指飭之拐磨子·大荒二溝查探。至拐磨子

溝果見有韓民十名，搭蓋草棚在彼住着，共計偷伐的木植三百一十根。遂向該民等訊問何時來此，內有稍通華語之韓民告稱，“我們於正二月間就砍的。”當即趕限旋站，自己寫了報呈飛遞左司，即函知正站。不意後又奉札，因查報含混，明俊益覺惶悚無地。遂即如前復至該處查訊明白，即旋回呈報訖，並達知正站。詎後奉札調蒙訊，至正二月之語，實詢據韓人所言，並非明俊等素所知情。委因明俊才拙學淺，筆不遂意，以致誤似明俊等顯有知情不報等弊。若非札內指飭深入其地查探，至今亦無從知覺。今又蒙覆審，明俊等並無知情匿報情弊。至拐磨子溝等處山場，實非站所管的界。所供是實。

各等供。

屢次研鞫，據各供如前，矢口不移。據查此案，緣遵如電囑，派員四出查拿，旋據稟稱，“風聞拐磨子溝上掌大荒溝一帶，有韓民偷伐木植情事。”當以該處相距密占站較近，遂即飭司札令該站筆帖式喜春等先行馳赴彼處查明呈覆。適值該筆帖式仍居於穆克德和正站，署領催高明俊接見札文，限緊事急，且拐磨子溝相距密占站一百九十餘里，較離正站尚近六十餘里，若遞知正站，尤恐緩不濟急。故該署領催即徑行馳至彼處，深入其地，查知韓人偷伐之木，旋即呈報，當以所報含混，遂復飭據查明呈覆前來。即時電達，繼遵奉咨示，將該筆帖式喜春等撤委調案，屢加研訊，堅稱“此項韓民伐木之事向不知情，實因奉札查知。該山場亦非站屬。至正二月間之語，委係詢自該韓民等所言，”質據俞保汝等所供，均屬相符。遂以該筆帖式等既無知情匿報之情，似無不合之處。即減叙其供，具文咨請核奪。旋奉咨駁，“情節種種支離，令即覆訊確情報核。”等因。令遵文覆加嚴審，屢次研鞫，據各供如前不諱，仍與原訊所稱無異。核與該韓犯俞保汝等所供，並無在官人役包庇之語，亦屬相合。即此可見該韓犯等原係潛越偷伐，而該筆帖式等素所不知也。且該處係深山密林，素為虎狼盤踞，以致向無居人，亦無行人露其消息。故該韓犯得以恣意砍伐。若非彼等由金華縣僱去工人稍為宣洩，則恐終難查獲。即此尤可知該筆帖式等向無包庇之弊也。至該山場木非該站所管之境，向因彼處歷無人烟，管界之官亦無可稽察，遂素所不至。今既再四覆審，該筆帖式仍無知情匿報之弊，且訊據韓犯俞保汝等僉稱，“潛越偷伐，實無在官

人役包庇。”詳核案情，是該筆帖式喜春等情多可原，可否令其歸站任事，至前派代署之額委筆帖式永廉札調回署，所有遵文覆審明確擬結緣由，是否允協，理合咨報將軍衙門核奪。

等因。

准此。查該筆帖式等既訊以實無包庇情弊，伐木山場又非該站所管之境，亟應飭令赴站仍舊供職。除咨覆該副都統查照，轉飭該筆帖式喜春等仍舊歸站任事外，相應咨呈貴衙門，謹請查核施行。

3월 21일 吉林將軍 長順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전에 받은 琿春 副都統의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吉林將軍의 다음과 전보를 받았습니다.

朝鮮에 있는 袁世凱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다.

조선인이 월경하여 琿春에서 벌목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琿春副都統은 이미) 吉林·朝鮮이 맞닿아 있는 大荒溝와 拐磨溝 두 곳에 가서 조사하게 했는데, 韓民이 그곳에서 벌목한 것이 사실이었고, 아울러 관원을 파견해 벌목한 범인을 혼춘으로 압송하여 심문하였습니다.

이상의 두 가지 보고를 받았으므로 본 將軍衙門에서는 사실에 근거해 각기 咨文을 나누어 보내고, 아울러 琿春副都統에게 다시 역참관원을 소환하여 확실한 사정을 심문하고, 진술서를 받아 咨文으로 보고함으로써 다시 검토할 수 있게 하라고, 각기 咨文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琿春副都統의 다음과 같은 답장 咨文을 받았습니다.

지시에 따라 筆帖式 喜春과 署領催 高明俊 등을 다시 엄정히 심문하였는데, 喜春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사람이란 뜻이다.

56) 廂은 아마 鑲과 같은 뜻인 것 같다. 둘 다 중국어발음은 xiang인데, 鑲黃旗는 八旗 가운데 하나이다.

여기서는 원문 그대로 따라 표기하겠다.

57) 穆克和兼密占, 穆克德和, 密站 등은 원문 대로이다.

(저는) 穆克和密占 分站(역참분소)의 문서관리인(筆帖式)이며, 琿春에 거주하는 廂黃旗人입니다. 담당하는 역참(站)은 원래 穆克德和를 正站으로 하고, 겸하여 密站 분참을 관리합니다. 공문 전달 및 요역(差徭)에의 대응 등 모든 중요한 업무는 모두 正站에 속하고, 分站에서는 공문을 접수하여 전달하는 것만을 담당하며 다른 일은 없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임명된 이후 正站에 머무르며 모든 일을 직접 처리하며 조금이라도 일을 그르치는 잘못을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分站의 사무는 보다 쉬운 편이라 領催로 임명된 사람이 머무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30일 (琿春副都統衙門의) 左司에서 저희 驛站에 보내는 지시공문 한 통을 받고, 署領催 高明俊은 기한이 촉박하기 때문에 만일 正站으로 보내면 왕복하는 사이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일을 그르칠 것 같다고 생각하고, 마침내 공문을 열어보았더니 韓民의 盜伐에 관한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관계된 바가 매우 중요하고, 또 木場과 正站과의 거리는 250여 리라 조사·처리하기가 불편하다고 판단하고, 가까이 있는 자신이 즉시 지시공문에 나오는 拐磨子溝 상류 및 大荒溝 두 곳으로 가서 조사해 보니, 拐磨子溝 상류에 韓民 10명이 소나무 311 그루를 벌목하여 河岸에 쌓아 놓았는데, 아마 물이 불어나면 하류로 운반할 작정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그 나무들은 최근에 벌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당시 중국어가 조금 통하는 韓民을 심문해보니, 이 나무들은 올해 1·2월 사이에 벌목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즉시 역참으로 돌아와 한편으로는 (琿春副都統衙門의 左司에) 보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正站에 알렸습니다. 저는 이미 지시에 따라 조사하여 보고했기 때문에 일을 완료했다고 생각하여 더 이상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해당 領催의 조사보고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 그는 다시 지시를 받고 것처럼 서둘러 가서 조사하여 돌아와 보고를 하였으며, 이런 상황을 저는 나중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시공문을 받고 소환되어 조사심문을 받게 되었으니 황송함을 가눌 수 없습니다. 해당 領催는 재주는 졸렬하고 학문이 천박해 韓人이 말한 1·2월 사이에 벌목했다는 내용을 결국 분명하게 서술하여 명백하게 보고하지 못했던 것인데, 이 때문에 저희들이 평소 잘 알고 지내면서 분명하게 도벌한 사정을 알고도 숨기고 보고하지 않는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오해를 받게 만들었으니, 이는 실로 스스로 허물을 취한 것입니다.

그러나 拐磨子溝 상류 등은 分站과의 거리가 190여 리 정도이며, 원래 해당 역참의

관할지역도 아닙니다. 또한 그 곳은 깊은 산 속의 밀림이라 종래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 습니다. 때문에 韓民이 몰래 그곳에 가서 도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해당 산마루는 애초에 역참 소속이 아니고 나무 또한 순찰해서 금지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아무도 살면서 왕래하는 일이 없기에 그쪽 소식을 전하는 일도 없어, 만일 지시를 받고 그곳에 깊이 들어가 철저히 수색하지 않았다면 끝내 아무도 모르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다시 심문을 받았는데, 아뢴 바는 모두 사실입니다.

高明俊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제 나이는 31세이며, 吉林 蘇瓦延站의 站丁(역참의 일꾼)이며, 西路關防處에서 外郎 達差使의 일을 맡고 있습니다. 전에 穆克德和 및 密占分站의 領催 周俊祖가 어머니의 病故로 휴가를 청하고 귀가하여 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3월 1일에 關防處에서 저를 임시로 대신하도록 하였으므로, 마침내 琿春에 와서 예전처럼 密占 分站에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월 30일에 이르러 갑자기 左司로부터 지시공문 한 통을 받았는데, 봉투 바깥에 적힌 시행기한이 너무 촉박한 것으로 되어 있어 마침내 봉투를 열어 보니, 韓民이 국경을 넘어와 몰래 벌목한다는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공문에서는 벌목한 장소를 명확히 지적하고 있었으므로 즉시 서둘러 가서 조사한 후 보고를 올렸습니다. 저는 이 일은 관계된 바가 매우 중요하고 기한이 또한 매우 촉박한 터라, 만일 正站에 알리면 왕복하는 데 반드시 하루 정도가 소요되어 도리어 일을 그르치고, 正站과 分站 모두에게 무익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正站은 木場과 250여 리 거리에 있지만 密占分站과는 190여 리 떨어져 있어 좀 더 가까웠습니다. 이 때문에 스스로 밤을 도와 말을 달려 공문에서 지적한 拐磨子 및 大荒溝로 가서 조사하였습니다. 拐磨子溝에 도착 해 보니 과연 韓人 10명이 움막을 짓고 거주하고 있었고, 몰래 벌목한 나무가 모두 310그루 있었습니다. 이에 그곳 백성들에게 언제 이곳에 왔는지 물어보자 그 중에 조금 중국어를 아는 韓民이 말하길, “저희들은 1·2월 사이에 와서 벌목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곧바로 기한에 맞추어 역참으로 되돌아와 스스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左司로 올려 보내는 한편 바로 正站에 편지로 알렸습니다.

뜻밖에도 이후 다시 지시공문을 받아 보니 조사 보고서가 모호한 점이 있다고 하여 황송하고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결국 전처럼 다시 해당 지역으로 가서 분명하게 조사 하고 돌아와 보고를 마치고, 아울러 正站에도 알렸습니다.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지시공문을 받고 소환되어 심문을 받게 되었는데, 1·2월 사이라는 말은 실로 韓人들에게 물어서 들은 것이며, 결코 제가 그런 실정을 알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재주는 졸렬하고 학문은 천박하기 때문에 글로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마치 저희가 분명하게 사정을 알고서도 보고하지 않은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일 지시공문에서 그 지역으로 깊이 들어가 조사하라고 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저희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다시 재심문을 받지만, 저희들은 결코 사정을 알고 보고를 숨긴 적이 없습니다. 拐磨子溝 등의 산마루 역시 실제로 저희 역참의 관찰 경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의 진술은 모두 사실입니다.

이상과 같이 각기 진술하였습니다. (琿春副都統이) 누차 심문을 하였지만, 각각의 진술이 이전과 같았고, 전혀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생각해보건대, 전보로 지시하신 대로 인원을 사방으로 파견하여 (범인을) 잡아들이도록 하였는데, 곧 돌아와서 “拐磨子溝 상류 및 大荒溝 일대에서 韓民들이 몰래 별목한 일이 있다는 소문이 도니”라고 보고하였습니다. 해당 지역은 密占站과 비교적 가까웠기에, 결국 左司를 통해 지시하여 해당 역참의 筆帖式 喜春 등으로 하여금 먼저 그 지역으로 가서 조사·확인한 다음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해당 筆帖式은 여전히 穆克德和의 正站에 머물고 있었기에, 署領催 高明俊은 지시를 받고 보니 기한은 촉박하고 사안은 긴급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拐磨子溝는 密占站과의 거리가 190리 정도로, 正站과 비교하여 60리 정도 가까웠으며, 만일 正站에 알리면 늦어서 급하게 처리할 수 없을까 우려하였습니다. 때문에 해당 領催는 즉시 곧바로 그곳으로 서둘러 가서 깊숙이 들어가 韓人들이 몰래 별목한 것을 확인하고는 돌아와 보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고한 내용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다시 재조사를 지시하였더니, 조사를 하여 보고를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琿春副都統은 吉林將軍에게) 즉시 전보로 알렸는데, 뒤이어 해당 筆帖式 喜春 등의 임무를 해제하고 소환하여 심문하라는 지시를 (吉林將軍의) 咨文을 통해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 누차 심문을 하였지만, “이번에 韓民이 별목한 일은 종래 알지 못하던 일이며, 실제로 지시공문을 받고서야 조사하여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산마루 또한 저희 역참 소속이 아닙니다. 1·2월 사이라는 말은 진실로 그곳의 韓民으로부터 들은 말입니다”라고 굳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俞保汝 등의 진술과 대조해보아도 모두 잘 들어맞았습니다. 결국 해당 筆帖式 등이 애당초 사정을 알고서도 보고를 은닉한 일이 없다는 판단이 아마도 이치에 맞는

것 같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즉시 그 진술서를 간략히 서술하고 문서를 갖춰, 咨文으로 검토한 다음 결정해주실 것을 咨文으로 (吉林將軍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곧이어 “상황이 종종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다시 심문한 후 확실한 사정을 알아낸 다음 보고하여 검토를 받으라”고 지시하는 (吉林將軍의) 咨文을 받았습니다. 이 지시에 따라 다시 엄밀히 조사하고 누차 심문하였는데, 각자의 진술이 여전히 이전과 동일하였고, 최초의 심문에서 이야기한 바와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韓民 범인 兪保汝 등의 진술에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비호해준 일은 전혀 없다고 진술한 바와도 역시 서로 들어맞습니다. 따라서 해당 韓民 犯人은 애당초 몰래 월경하여 벌목했으며, 해당 筆帖式은 평소 알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은 깊은 산중으로 평소 호랑이나 늑대가 살고 있기에 종래 거주하는 사람이 없었고, 또한 행인들이 그 소식을 전한 적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해당 범인이 몇대로 벌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金華縣에서 일꾼을 고용하며 조금이라도 소문을 내지 않았다면 아마도 끝내 조사하여 사로잡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로써 해당 筆帖式 등이 이전에 비호해준 부정을 저지른 적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산마루는 해당 역참이 관할하는 지역이 아니며, 종래 아무도 거기에 산 적이 없기에 경계를 관할하는 관원 또한 순찰도 하지 않고, 평소에 가보지도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모두 네 차례 재조사를 했는데, 해당 筆帖式에게는 사정을 알고 보고를 하지 않은 부정의 상황이 없으며, 또한 범인 兪保汝 등은 모두 “몰래 월경하여 벌목하였으며, 관원이 비호해준 일이 실제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건을 상세하게 검토해 보건대, 해당 筆帖式 喜春 등은 충분히 정상을 참작할 만하니, 역참으로 돌아가 임무에 복귀할지 아닌지, 그리고 이전에 대신 서리를 말도록 파견한 額委筆帖式 永廉에게 (琿春副都統) 衙門으로 복귀하도록 지시할 것인지, 그리고 지시공문에 따라 다시 심문하여 사안을 종결지으려는 연유가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응당 將軍衙門에 咨文으로 보고하여 결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琿春副都統의 보고를 받은 吉林將軍이) 살펴보건대, 筆帖式 등을 심문한 결과 진실로 범인을 비호한 폐단이 없고, 벌목을 한 산마루 역시 해당 역참의 관할 지역이 아니므로 역참으로 돌아가 이전처럼 직무를 수행하도록 신속히 지시해야 할 것입니다. 琿春副都統에게 답장 咨文을 보내 이에 따라 筆帖式 喜春 등이 이전처럼 역참에 돌아가 일을 말도록 지시를 전달하게 하는 것 외에, 마땅히 귀 아문으로 咨文을 올려 보내니 삼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중국과 조선의 변경 방어와 경계문제(中韓邊防界務)

한민월경(韓民越界)

길림의 월경한인 송환(吉林遣回越界韓人)

(19) 문서번호 : 1-2-1-01 (4, 9a-11b)¹⁾

사안 : 장보태가 몰래 러시아 경내로 월경한 사안은 이미 올례에 따라 판결을 내렸는데, 형부에 이에 대한 의견을 보내달라고 咨文으로 요청하고자 합니다(張保汰私越俄界案 已照律例科擬咨請刑部議覆).

날짜 : 同治三年十一月十五日(1864년 12월 13일)

발신 : 吉林將軍 景綸

수신 : 總理衙門

十一月十五日, 吉林將軍景綸·副都統麟瑞文稱.

案准刑司²⁾移開.³⁾

(……)

據琿春協領台斐音阿報稱.

- 1) 내용을 보면 이 사안에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은 漢人이 러시아 경내로 넘어간 사건이지만, 그 안에 러시아 경내로 월경하여 정착한 韓人의 이야기가 잠깐 언급되기에 여기에 수록된 것으로 보인다.
- 2) 刑司는 吉林將軍衙門에 속하는 詞訟 등 사법사무를 관할하는 부서인 刑司를 가리킨다.

四月二十八日，有摩闊歲俄人二名，扭送民人張保汰一名。據稱。

你們差人私越俄界棘心河地方，恐嚇墾地高麗，並畫地圖。
等語。

經查界官弁辨驗，並非本處官人，當告以“係屬無業流民，”立將張保汰眼同俄人鎖禁，俄人忿洩折回。隨派藍翎領催奇普松武，前赴該處詢據。

俄人比畫⁴⁾告稱，“張保汰携圖越界，別無叢端”等語，當以圖雖燬棄，情不可矜。

等情。稟報前來。

當提該犯嚴審，據張保汰供。

小的年五十九歲，是熱河建昌縣民。父母俱故，並沒弟兄妻子。早年由籍到琿春地方謀生。同治三年春間，小的因無營運，想起前在琿春界砍椽背山採木耳時，瞥見石色奇異，像有銀穴煤線。恐官處不用開採，風聞俄人能識銀穴煤線，並能袒護流民，起意勾引俄人夥同開採，四月裡小的潛赴砍椽背山，畫了圖式一紙。於二十日擎著地圖·食物到海沿棘心河地方，尋找通曉俄語的人引進，走到俄界摩闊歲，見有窩棚四處。小的走進一處，有高麗男人五名，婦女三口。小的向他們比畫說，你們有男婦子女五十餘人到此，開有二十餘畝地。小的又說，過來這些戶口，你們該管官知道，豈不捉殺？高麗們似乎害怕，均沒噴聲。小的因餓由懷掏取吃物，把圖紙帶出。高麗看見查問，小的告知地圖。就往棘心河東岸找了一箇窩棚存宿。次日仍過河西找人，當有俄人二名趕去，把紙圖要去，將小的帶到摩闊歲。見了俄官，向小的比畫查問，小的告知實情。奈俄官話語不通，反說小的是查探棘心河居住高麗去的，就把小的囚在地窖裡，第三天解送到案的。今蒙審訊，小的委因砍椽背山石色奇異，疑是銀線，畫了地圖，起意勾引俄人，夥同開採，致被送案，並沒另有不法別情。是實。

等情。

咨報到省。當經據情報明總理各國事務衙門，一面飭覆該協領，即將張保汰解省究辦。嗣准總理各國事務衙門，

以詳閱民人張保汰原供既稱，“素知俄人能識銀穴煤線，起意勾引，遂行繪圖給看，以為進身之計，”何復率稱“並非畫的棘心河地方”等語？其究係繪畫何處形勢，情詞殊覺矛盾。而彼此話語既屬不通，又何以知俄人疑其為查探棘心河居住高麗之人？語意尤其支離。令將該犯速提研審，務得確情，即由該將軍從重懲辦，於定案後咨覆本處備查可也。

等因。

(……)

轉移到司。

茲於八月初九日，據該協領揀差將張保汰詳解來省。隨即提犯覆審，據供前情不諱。詰以所繪究係何處形勢，據稱，“實係砍椽背山地圖，不過到棘心河地方欲尋俄人。”又詰以帶見俄官時，既然語言不通，從何而知俄人疑其查探棘心河居住高麗之人，又據供稱，“本屬意想之語，實在俄人是否疑其查探，不得而知”等語。反覆詰究，堅執不移。

審看得⁵⁾ 琿春協領審解民人張保汰繪畫地圖私越俄界一案。緣張保汰係熱河民，早年來至琿春謀食。同治三年春間，該犯因無營運，憶及前在琿春界砍椽背山採拾木耳，曾見石色奇異，似有銀穴煤線。又慮官處不准開採，風聞俄人能識銀線，且能袒護游民，起意勾引夥同開採。四月間潛赴砍椽背山，偷畫圖式一紙。二十日攜帶地圖·食物，赴棘心河一帶，尋覓通曉俄語之人引進。行至俄界摩闊歲，見棚四處，內住高麗男婦，該犯比畫詰問，內有一老高麗比畫答稱，“共來有男婦子女五十餘名口，至此墾地二十餘晌。”該犯復以“過來許多戶口，爾等上司知道，豈不捉殺？”等語，戲向嚇問，高麗等並無噴聲，似有懼色。該犯饑餓由懷掏取食物，致將圖紙帶出，高麗瞥見查問，該犯告係地圖。次日行至棘心河，有俄人二名趕上，要去地圖，將該犯帶至摩闊歲，往見俄官，向其查詢。該犯告知實情，俄官語言不通，疑其越界查探棘心河住居高麗，將該犯送回琿春協領衙，訊供詳解到省，

茲覆研鞠，犯供不諱，詰無不法別情。應照條約內載，仍以中國律例擬結。查例載，“交結外國及私通土苗互相買賣引惹邊釁者，問發邊遠充軍”等語。⁶⁾ 此案張保汰因見砍椽背山內石色奇異，彷彿銀穴煤線，輒畫圖越入俄界，希圖勾引護庇開採。雖無隱匿邊釁，

實與交結外國私通土苗無異，自應從嚴科斷，以示懲儆。張保汰應比照“交結外國私通土苗發邊遠充軍例，”擬發邊遠充軍。俟奉議覆，遞解熱河都統衙門，定地充配，至配折責安置。該犯所畫地圖，業經俄人燬棄，應毋庸議。案關俄夷交涉之件，是以訂封合併聲明，已於十月初六日咨報刑部核覆外，合亟備文移付知照前來。

查俄國續增和約第八條內載，“中國人在俄羅斯國內地或私住或逃往，該地方官亦當照此辦理。”又載“遇有大小案件，領事官與地方官各辦各國之人，”又第十條內載，“其審訊兩國所屬之人，俱照天津和約第七條各按本國法律治罪”各等語。今琿春民人張保汰携圖私越俄界一案，照例科擬咨部，是否允協之處，除俟奉准議覆，再行飭飭琿春協領，照會摩闊歲俄官遵照外，理合將訊擬緣由飛行呈報總理各國事務衙門，謹請查照可也。

11월 15일 吉林將軍 景綸, 都統 麟瑞가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냈습니다.

(吉林將軍衙門의) 刑司로부터 다음과 같은 공문을 받았습니니다.

(.....)

琿春協領 台斐音阿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니다.

4월 28일 摩闊歲에서 러시아인 2명이 백성 張保汰를 잡아 보내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당신들이 파견한 사람이 몰래 국경을 넘어 러시아의 棘心河 지방에 와서는 토지를 개간하는 고려인을 협박하고 아울러 지도를 그렸습니다.

국경을 조사하는 文武官員의 조사에 의해 그가 결코 현지 官人이 아님이 판별되자,

- 3) '移開'에서 移는 平行 公文, 즉 동급 간에 주고받는 공문의 일종을 가리킨다. 開는 "(펼쳐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移開'는 그 뒤의 내용과 담긴 平行 公문이 전달되어 왔다는 뜻이다.
- 4) 비화(比畫)는 비획(比劃)과 같은 뜻으로 손짓·발짓으로 말하거나 의사표현을 보조하는 것을 가리킨다.
- 5) '審看得'은 '看語', 즉 재판의 결과에 대한 評決(의 초안)이나 判決의 시작 부분을 알리는 관용어이다.
- 6) 『大清律例』 「兵律」 「關律. 盤詰姦細」의 條例(224.01), “交結外國及私通土苗互相買賣借貸誑騙財物引惹邊釁或潛住苗寨教誘爲亂[如打劫民財以強盜分別]貽患地方者除實犯死罪[如越邊關出外境將人口軍器出境賣與硝黃之類]外俱問發邊遠充軍.”

“직업이 없는 유민에 속한다”고 알려주고, 곧바로 張保汰를 러시아인 눈앞에서 쇠사슬로 묶어버리자, 러시아인은 몹시 분해하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곧이어 藍翎領催 奇普松武를 해당 지역으로 보내 러시아인에게 손짓·발짓을 하면서 자세히 물어보니, “張保汰는 지도를 지니고 국경을 넘었지만 달리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생각건대, 지도는 이미 불태워버렸다고는 해도 정상 참작의 여지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의 보고가 올라 왔습니다. 이에 해당 범인을 불러다가 엄히 심문하니, 張保汰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소인의 나이는 59세이며 熱河 建昌縣 백성입니다. 부모는 모두 죽었고 형제 및 처자도 없습니다. 일찌감치 본적을 떠나 琿春 지역에 온 다음 살길을 꾀해 왔습니다. 同治 3년 봄, 소인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전에 琿春지역의 砍椽背山에서 목이버섯을 채집할 때 바위 색깔이 특이한 것을 언뜻 보고 아마 銀穴(銀광산)의 煤線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官地에서 채굴할 수 없고, 풍문으로 듣건대 러시아인이 銀穴 煤線에 대해 잘 아는 데다가 유민을 보호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인들을 끌어들여 함께 채광을 하려고 작정을 하여 4월 중에 소인은 몰래 砍椽背山으로 가서 지도 한 장을 그렸습니다. 20일에 지도와 식량을 가지고 바닷가 棘心河 지역에 가, 러시아어를 잘 아는 사람을 찾아 끌어들이기 위해 러시아 지역의 摩濶歲로 걸어가다가 움집(窩棚) 네 채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인이 그 가운데 한 곳에 가보았더니 고려 남자 5명, 부녀 3명이 있었습니다. 소인이 손짓 발짓으로 말하길, “당신들 50여 명이 여기 와서 20여 晌의 땅을 개간했구만”이라고 하였고,⁷⁾ 또한 “이리 넘어 온 많은 사람들에게 대해 당신네 상사가 알 텐데, 어찌 잡아 죽이지 않겠소?”라고 물었습니다. 고려인들은 아마 두려운지 모두 짹 소리도 내지 못하였습니다. 소인은 배고파서 품속에서 식량을 꺼냈는데, 지도가 딸려 나왔습니다. 고려인들이 보고 물어보기에, 지도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棘心河 東岸으로 가서 움집 한 곳을 찾아 유숙하였습니다. 다음날 계속해서 강 서쪽으로 건너가 사람을 찾

7) 뒤에 나오는 부분으로 판단하건대, 이 내용은 해당 범인의 발언이 아니라 고려(즉 조선) 유민의 답변이다. 따라서 이 부분의 내용이 적절하게 작성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있었는데, 마침 러시아인 2명이 쫓아와 지도를 요구했고, 소인을 摩濶巖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러시아 관원을 만났는데, 소인에게 손짓 발짓으로 물어보자 소인은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러시아 관원과 말이 통하지 않았고, 그는 도리어 소인이 棘心河에 거주하는 고려인 사정을 조사해보려고 온 것이라면서, 바로 소인을 토굴 속에 가두었고 사흘째 되는 날 저를 압송하여 돌려보냈기에, 이 재판에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심문을 받건대, 소인은 砍椽背山の 돌 색깔이 특이한 것을 가지고 銀線이라고 의심하여 지도를 그린 후, 러시아인을 끌어들여 함께 채광을 하려다가 붙잡혀 재판에 붙여졌지만, 결코 불법적인 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이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성성(省城. 즉 省都인 吉林을 말하지만, 여기서는 실제 吉林將軍衙門을 가리킨다)으로 咨文을 통해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에 근거하여 총리아문으로 분명히 알리는 한편, 해당 協領으로 하여금 즉시 張保汰를 省都로 압송하여 처벌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뒤이어 총리아문에서는

백성 張保汰의 진술을 자세히 살펴보니, “본래 러시아인들이 銀穴 煤線을 잘 찾아낸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들을) 끌어들이려고 작정을 했고, 결국 지도를 그려 주어진 돈을 벌 궁리를 하였습니다”라고 했었는데, 어찌 다시 “결코 棘心河 지역을 그리지 않았습니다”라는 진술이 나올 수 있습니까? 지도가 도대체 어느 곳의 지형을 그렸는지 진술이 크게 모순됩니다. 그리고 피차 언어가 이미 통하지 않았는데 또 어떻게 러시아인이 棘心河에 거주하는 고려인을 탐색하는 것이라고 의심한다는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해당 범인을 서둘러 잡아들여 낱낱이 심문하여 정확한 사정을 알아낸 다음, 즉시 吉林將軍이 무겁게 징벌해야 할 것입니다. 사안을 처리한 다음 본처로 답장 咨文을 통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이상의 내용이 (吉林將軍衙門)의 刑司에게 전달되어 왔습니다. 이번 8월 9일 해당 協領이 사람을 파견하여 張保汰를 압송해 왔습니다. 그래서 즉시 범인을 불러 다시 심문하였는데, 진술은 이전의 내용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린 곳이 어떤 지형인지도 힐문하였더니, “砍椽背山の 地圖이며 棘心河 지역에 이르러 러시아인을 찾으려 한 것에 불과합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또한 러시아 관원을 만났을 때 언어가 통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棘心河에 사는

고려인들을 조사한다고 의심한다고 알 수 있었는지 힐문하자, 또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지, 실제로 러시아인이 조사한다고 의심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반복해서 따져 물었지만 고집스레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吉林將軍衙門의 刑司에서는) 琿春協領이 조사해서 보낸 ‘백성 張保汰가 지도를 그리고 불법적으로 러시아의 국경을 넘어간 안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리고자 합니다. 張保汰는 熱河의 백성으로 어린 나이에 琿春에 와서 목숨을 연명하고자 하였습니다. 同治 3년 봄 무렵 그는 생계를 영위할 방법이 없자, 전에 琿春지역의 砭椽背山에서 버섯을 채취하다 바위 색깔이 이상한 곳을 보고서 아마 銀穴의 煤線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官地에서 채굴이 허용되지 않고, 러시아인이 銀線을 잘 알고 또한 유민을 보호해준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들을 끌어들여 채굴을 하려고 작정하였습니다. 그는 4월 사이에 砭椽背山으로 잠입하여 몰래 그림 한 장을 그렸고, 20일에는 지도와 식량을 가지고 棘心河 일대로 가서 러시아어를 잘 아는 사람을 찾아 끌어들이려고 하였습니다. 러시아의 摩濶歲에 이르렀을 때 움집 네 채를 발견했는데, 안에는 남녀 고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해당 범인이 손짓 발짓으로 힐문하자, 안에 있던 고려 노인 한 명 역시 손짓 발짓으로 대답하길, “함께 온 사람들은 50여 명이고 여기에 도착해 20여 响을 개간했다”고 답하였습니다. 해당 범인이 다시 “넘어온 다수의 인구에 대해서 너희들의 上司가 안다면 어찌 잡아 죽이지 않겠는가?”라며 장난삼아 협박하는 척하자, 고려인들은 전혀 대꾸도 못하고 두려운 빛을 띠었습니다. 해당 범인은 배가고파 식사를 하려고 품속에서 음식을 꺼냈는데, 그때 지도가 함께 딸려 나왔습니다. 고려인들이 언뜻 보고서 물어 보니 지도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다음날 棘心河에 이르자 러시아인 두 명이 추적해 와서 지도를 요구하고, 해당 범인을 摩濶歲로 끌고 가 러시아 관원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가 조사하며 묻기에 해당 범인은 사정을 알렸지만, 러시아 관원은 언어가 통하지 않아 그가 월경하여 棘心河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을 조사하러 왔다고 의심하고는 琿春協領衙門으로 압송하여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 결과 그곳에서 심문을 하여 심문결과와 범인이 省都(吉林)로 보내져 왔습니다.

이에 다시 철저히 심문하였는데 범인의 진술은 숨기는 것이 없고, 힐문했지만 불법적인 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이 범인의 죄에 대해서는) 마땅히 條約에 실려 있는 내용에 따라 中國律例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大清)律例』를 조사해보니 “외국과 교류를 맺거나 불법적으로 현지인(토착 소수민족이나 남방의 소수민족인 苗族)과 내통하여 거래 하다가 변경의 문제

를 일으킨 자는 심판에 붙여 邊遠지방에 充軍하는 형벌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사안은 張保汰가 砍椽背山의 바위 색이 기이한 것을 보고 銀穴 煤線과 비슷하다고 여겨서, 그 지도를 그린 다음 월경하여 러시아로 들어가 도와줄 사람을 끌어들이 채굴하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변경의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외국과 교류를 맺거나 불법적으로 현지인과 내통한 것과 다름이 없으니, 당연히 엄중하게 처벌하여 경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張保汰는 마땅히 “외국과 교류를 맺거나 불법적으로 현지인(토착 소수민족이나 남방의 소수민족인 苗族)과 내통하여 거래 하다가 변경의 문제를 일으킨 자는 심판에 붙여 邊遠지방에 充軍하는 형벌에 처하는 전례”에 비추어 邊遠으로 보내 充軍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刑部의) 답장 의견을 기다렸다가 熱河都統衙門으로 보내 지역을 결정한 후 充軍시키되, 充軍 장소에서 (형량이 경감된) 곤장형을 받고 安置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범인이 그린 지도는 이미 러시아인이 태워버렸으니 더 이상 헛되이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 사안은 러시아 오랑캐와의 교섭에 관계된 건이므로 그것을 아울러 함께 밝혀야 할 것입니다.⁸⁾ 이미 10월 6일에 刑部에 咨文을 보내 검토를 요청한 것 외에, 마땅히 서둘러 공문을 갖추어 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조사하건대, 러시아와의 續增和約⁹⁾ 제8조 가운데 “중국인이 러시아 내지에서 불법적으로 거주하거나 혹은 도주하면, 해당 지방관이 또한 이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대소 사안이 있으면 영사관과 지방관이 각기 자국인을 처리한다”고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양국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심문할 때는 모두 天津和約 제7조에 비추어 각기 본국의 법률에 비추어 죄를 다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琿春 백성 張保汰가 지도를 가지고 불법적으로 러시아 지역으로 넘어간 사안에 대해서는, 『律例』에 비추어 판결하여 咨文으로 刑部에 알리니,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刑部의 답장 의견을 받기를 기다려 다시 琿春協領에게 지시하여 摩濶巖 러시아 관원에게 결과를 照會하여 참고하게 하는 것 외에, 마땅히 심문하여 판결한 경과를 서둘러 總理衙門에 올려 보고해야 할 것이니, 삼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 원문에 약간 불명한 곳이 있다.

9) 아마 ‘中俄續增條約’, 즉 北京條約(1860)을 가리키는 것 같다.

(20) 문서번호 : 1-2-1-02 (13, 22b-23b)

사안 : 刑部에서 張保汰가 몰래 러시아로 월경하여 그들을 끌어들이려 한 사안을 판결하여 吉林將軍에게 咨文으로 알리는 공문(咨送吉林將軍定擬張保汰私越俄界勾引案罪名鈔單).

첨부문서 : 1. 형부가 보내는 咨文(刑部咨文).

날짜 : 同治四年閏五月七日(1865년 6월 29일)

발신 : 刑部

수신 : 總理衙門

閏五月初七日, 刑部文稱.

奉天司案呈.

所有前事.¹⁰⁾

等因.

相應抄單行文各國通商事務衙門查照可也.

(1) 照錄粘單

據吉林將軍景咨稱.

琿春協領審解民人張保汰繪畫地圖私越俄界一案. 緣張保汰係河民, 早年來至琿春謀食. 同治三年春間, 該犯因無營運, 憶及前在琿春界砍椽背山採捨木耳, 曾見石色奇異, 似有銀穴煤線. 又慮官處不准開採, 風聞俄人能識銀線, 且能袒護游民, 起意勾引, 夥同開採.

四月間潛赴砍椽背山偷畫圖式一紙。二十日攜帶地圖食物，赴棘心河一帶，尋覓通曉俄語之人引進，行至俄界摩闊歲。見有窩棚四處，內住高麗男婦。該犯比畫詰問，內有一老高麗比畫答稱，“共來有男婦子女五十餘名口，至此墾地二十餘晌”，該犯復以，“過來許多戶口，爾等上司知道，豈不捉殺。”等語，戲向嚇問，高麗等並無嘖聲，似有懼色。該犯飢餓由懷掏取食物，致將圖紙帶出，高麗瞥見查問，該犯告係地圖。次日行棘心河，有俄人二名赶上，要去地圖，將該犯帶至摩闊歲，往見俄官。向其查詢，該犯告知實情，俄官語言不通，疑其越界查探棘心河住居高麗，將該犯送回琿春協領衙門訊供，詳解至省。

茲覆研鞫，犯供不諱，詰無不法別情，應照條約內載，仍以中國律例擬結。此案張保汰因見砍椽背山內石色奇異，彷彿銀穴煤線，輒畫圖越入俄界，希圖勾引護庇開採，雖無引惹邊釁，實與交結外國私通土苗無異，自應從嚴科斷，以示懲儆，張保汰應比照交結外國私通土苗發邊遠充軍例，擬發邊遠充軍，俟奉議覆，遞解熱河都統衙門，定地充配，至配折責案置，該犯所畫地圖，業經俄人燬棄，應毋庸議，相應咨送。

等因。前來。

據此。張保汰應如該將軍所咨辦理，仍令照例彙題¹¹⁾相應咨覆該將軍，併知照總理各國事務衙門可也。

윤5월 7일, 刑部가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奉天司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문서를 올렸습니다.

앞서의 공문 내용과 같습니다.

마땅히 첨부문서(粘單)을 초록한 후 총리아문에 보내니 참고해주시시오.

10) ‘所有前事’나 ‘前事’는 앞에 나온 공문이나 그 내용을 가리키는 줄임말이다.

11) 회제(彙題)는 여러 사안을 모아서 함께 題本이라는 형태의 상주문으로 보고한다는 뜻이다.

(1) 첨부문서 초록

吉林將軍 景綸의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琿春協領이 백성 張保汰가 지도를 그리고, 불법적으로 러시아 경내로 넘어간 사안을 심리하고 범인을 압송해 왔습니다. 張保汰는 熱河 백성으로 어린 나이에 琿春에 와서 먹고살고자 하였습니다. 同治 3년 봄 무렵, 해당 범인은 생계를 영위할 방법이 없자, 전에 琿春 지역의 斫椽背山에서 목이버섯을 채취하다 바위 색깔이 이상한 곳을 보았을 때 銀穴 煤線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官地는 채굴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염려하고, 러시아인이 銀線을 잘 아는데다가 유민을 보호해준다는 것을 소문으로 듣고, 그들을 끌어들여 함께 채굴하려고 작정을 하였습니다.

4월 경 그는 斫椽背山으로 잠입하여 몰래 지도 한 장을 그렸습니다. 20일에는 지도와 식량을 가지고 棘心河 일대로 가서 러시아어를 잘 아는 사람을 찾아 끌어들이기 위해 摩濶巖로 걸어가다가 움집(窩棚) 네 채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안에 고려인 남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손짓 발짓으로 힐문하였더니, “함께 온 男婦·子女는 50여 명이고 여기에 도착해 20여 晌을 개간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리 넘어 온 많은 사람들에게 대해 당신네 상사가 알 텐데, 어찌 잡아 죽이지 않겠소?”라고 장난삼아 위협을 하면서 물었더니, 고려인들은 아마 두려운지 모두 짝 소리도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배가 고파서 품속에서 식량을 꺼냈는데, 지도가 딸려 나왔습니다. 고려인들이 보고 물어보기에, 그는 지도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다음날 棘心河로 가는데 러시아인 2명이 쫓아와 지도를 요구했고, 그를 摩濶巖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러시아 관원을 만났는데, 물어보자 그는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러시아 관원과 말이 통하지 않았고, (러시아 관원들은) 棘心河에 거주하는 고려인 사정을 조사해보려고 온 것이라 의심하면서 그를 琿春協領衙門으로 돌려보냈고, (그는) 심문을 받고 자술서를 작성한 다음, 성도로 함께 올려 보내졌습니다.

다시 심문을 하니 그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다른 불법적인 일에 관해서도 힐문하였지만 없었다고 하였으므로, 마땅히 條約의 내용에 따라 中國律例로 논의하여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 안건은 張保汰가 斫椽背山의 바위 색이 기이한 것을 보고 銀穴 煤線과 비슷하다고 여겨 지도를 그리고 국경을 넘어 러시아 지역으로 들어간 다음, 도와줄 사람을 끌어들여 채광할 것을 기도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비록 변경에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

지만, 실제로는 외국과 교류하거나 불법적으로 현지인[土苗]과 내통한 것과 차이가 없으니, 마땅히 엄격히 처리하여 경계를 보여야 합니다. 張保汰는 마땅히 “외국과 교류하거나 불법적으로 현지인[土苗]과 내통한 경우 邊遠으로 보내 充軍하는” 律例에 따라 邊遠지방으로 보내 充軍하는 것으로 판결합니다. 형부의 답장을 기다렸다가 熱河都統衙門으로 보내 지역을 결정한 후 充配하며, 유배장소에 이르면 경감된 곤장형을 실시하고 안치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범인이 그런 지도는 이미 러시아인이 태워버렸으므로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咨文을 보내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은 咨文을 받았는데, 刑部에서 생각건대) 張保汰에 대해 응당 해당 將軍이 보낸 咨文대로 처리하고, 『律例』에 비추어 (다른 사안과 함께 묶어) 題本으로 上奏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해당 將軍에게 답장 咨文을 보내고, 아울러 총리아문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21) 문서번호 : 1-2-1-03 (14, 24a-25a)

사안 : 장보태가 몰래 지도를 그리고 러시아로 월경하여 그들을 끌어들이려 한 사안은 이미 변경의 먼 곳으로 보내 유배시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張保汰私繪地圖越界勾引俄人案, 已擬發邊遠充配).

날짜 : 同治四年九月初二日(1865년 10월 21일)

발신 : 署吉林將軍 阜保

수신 : 總理衙門

九月初二日, 署吉林將軍阜保文稱.

案准刑司移開.

八月初日, 准刑部咨開.

奉天司案呈. 前事.

等因.

相應抄單行文該將軍查照可也.

計單開.¹²⁾

據吉林將軍景綸咨稱.

琿春協領審解民人張保汰繪畫地圖, 私越俄界一案. 緣張保汰係熱河民, 早年來至琿春謀食, 同治三年春間, 該犯因無營運, 憶及前在琿春界砍椽背山採拾木耳, 曾見石色奇異, 似有銀穴煤線, 又慮官處不准開採, 風聞俄人能識銀線, 且能袒護游民, 起意勾引, 夥同開採.

四月間潛赴砍椽背山偷畫圖式一紙，二十日攜帶地圖食物，赴棘心河一帶，尋覓通曉俄語之人引進，行至俄界摩闊歲，見有窩棚四處內主高麗男婦，該犯比畫詰問，內有一老高麗比畫答稱，“共來有男婦子女五十餘名口，至此墾地二十餘晌。”該犯復以，“過來許多戶口，爾等上司知道，豈不捉殺等語”，戲向嚇問，高麗等並無噴聲，似有懼色，該犯饑餓，由懷掏取食物，致將圖紙帶出，高麗瞥見查問，該犯告係地圖。

次日行至棘心河，有俄人二名趕上，要去地圖，將該犯帶至摩闊歲，往見俄官，向其查詢，該犯告知實情，俄官語言不通，疑其越界查探棘心河住居高麗，將該犯送回琿春協領衙門，訊供詳解到省。

茲覆研鞫，犯供不諱，詰無不法別情。應照條約內載，仍以中國律例擬結，此案張保汰因見砍椽背山內石色奇異，彷彿銀穴煤線，輒畫圖越入俄界，希圖勾引護庇開採。雖無引惹邊釁，實與交結外國私通土苗無異，自應從嚴科斷，以示懲儆。張保汰應比照“交結外國私通土苗發邊遠充軍”例，擬發邊遠充軍，俟奉議覆，遞解熱河都統衙門，定地充配，至配折責安置。該犯所畫地圖，業經俄人燬棄，應毋庸議。相應咨達。

等因。前來。

據此。張保汰應如該將軍所咨辦理，仍今照例彙題，相應咨覆該將軍可也。

等因。

准此。除咨行寧古塔副都統衙門，即將擬軍人犯張保汰解省充配外，合亟備文移付。

等因。前來。

除咨飭琿春協領台裴音阿遵照徑備文移，轉行照會摩闊歲俄官知照外，相應呈報總理衙門，謹請查照可也。

9월 2일에 署吉林將軍 阜保가 다음과 같은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12) ‘計’는 본문 뒤에 첨부된 문서나 서류, 목록 등을 나열할 때 쓰는 용어이다.

刑司에서 다음과 같은 공문을 올려보냈습니다.

8월 1일, 刑部의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奉天司에서 앞서의 공문과 같은 사유로 기안문서를 올렸습니다.

마땅히 첨부문서를 초록하여 해당 將軍에게 보내 참고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粘單의 내용

吉林將軍 景綸의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琿春協領이 백성 張保汰가 지도를 그리고, 불법적으로 러시아 경내로 넘어간 사안을 심리하고 범인을 압송해 왔습니다. 張保汰는 熱河 백성으로 어린 나이에 琿春에 와서 먹고살고자 하였습니다. 同治 3년 봄 무렵, 해당 범인은 생계를 영위할 방법이 없자 전에 琿春 지역의 砍椽背山에서 목이버섯을 채취하다 바위 색깔이 이상한 곳을 보았을 때 銀穴 煤線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官地는 채굴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염려하고, 러시아인이 銀線을 잘 아는데다가 유민을 보호해준다는 것을 소문으로 듣고, 그들을 끌어들이어 함께 채굴하려고 작정을 하였습니다.

4월 경 그는 砍椽背山으로 잠입하여 몰래 지도 한 장을 그렸습니다. 20일에는 지도와 식량을 가지고 棘心河 일대로 가서 러시아어를 잘 아는 사람을 찾아 끌어들이기 위해 摩濶巖로 걸어가다가 움집(窩棚) 네 채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안에 고려인 남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손짓 발짓으로 힐문하였더니, “함께 온 男婦·子女는 50여 명이고 여기에 도착해 20여 晌을 개간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리 넘어 온 많은 사람들에 대해 당신네 상사가 알 텐데, 어찌 잡아 죽이지 않겠소?”라고 장난삼아 위협을 하면서 물었더니, 고려인들은 아마 두려운지 모두 짝 소리도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배가 고파서 품속에서 식량을 꺼냈는데, 지도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고려인들이 보고 물어보기에, 그는 지도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다음날 棘心河로 가는데 러시아인 2명이 쫓아와 지도를 요구했고, 그를 摩濶巖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러시아 관원을 만났는데, 물어보자 그는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러시아 관원과 말이 통하지 않았고, (러시아 관원들은) 棘心河에 거주하는 고려인

사정을 조사해보려고 온 것이라 의심하면서, 그를 琿春協領衙門에 돌려보냈고, (그는) 심문을 받고 자술서를 작성한 다음, 성도로 함께 올려 보내졌습니다.

다시 심문을 하니 그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다른 불법적인 일도 힐문하였지만 없었다고 하였으므로, 마땅히 條約의 내용에 따라 中國律例로 논의하여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 안건은 張保汰가 椶椽背山의 바위 색이 기이한 것을 보고 銀穴煤線과 비슷하다고 여겨 지도를 그리고 국경을 넘어 러시아 지역으로 들어간 다음, 도와줄 사람을 끌어들여 채광할 것을 기도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비록 변경에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외국과 교류하거나 불법적으로 현지인[土苗]과 내통한 것과 차이가 없으니, 마땅히 엄격히 처리하여 경계를 보여야 합니다. 張保汰는 마땅히 “외국과 교류하거나 불법적으로 현지인[土苗]과 내통한 경우 邊遠으로 보내 充軍하는” 律例에 따라 邊遠지방으로 보내 充軍하는 것으로 판결합니다. 형부의 답장을 기다렸다가 熱河都統衙門으로 보내 지역을 결정한 후 充配하며, 유배 장소에 이르면 경감된 곤장형을 실시하고 안치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범인이 그린 지도는 이미 러시아인이 태워버렸으므로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咨文을 보내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은 咨文을 받았는데, 刑部에서 생각건대) 張保汰에 대해 응당 해당 將軍이 보낸 咨文대로 처리하고, 『律例』에 비추어 (다른 사안과 함께 묶어) 題本으로 上奏하게 하되, 마땅히 해당 將軍에게 답장 咨文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刑司에서 생각건대) 이상과 같은 咨文을 받았으므로, 寧古塔副都統衙門에 咨文을 보내 즉시 充軍하기로 결정된 범인 張保汰를 省都로 올려 보내 充配하는 것 외에, 마땅히 서둘러 공문서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공문을 받았으므로 吉林將軍이 생각건대) 琿春協領 台裴音阿에게 箭文으로 명령하여, 공문에 따라 서둘러 문서를 보내 러시아 摩濶歲에 알리는 외에, 마땅히 總理衙門으로 보고해야 할 것이니, 삼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 문서번호 : 1-2-1-04 (98, 123a-125b)

사안 : 조선 아동 김 씨 등 3명을 찾아내어, 이미 조선국 경원부의 관원에게 수령해가도록 넘겨주었습니다(查獲朝鮮幼童金氏等三名已解交該國慶源府官收領).

첨부문서 : 1. 조선 경원부의 답장공문(朝鮮慶源府回文). 아동 김 씨 등 3명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申謝送回該國幼童金氏等三名).

날짜 : 同治九年七月十三日(1870년 8월 9일)

발신 : 吉林將軍 富明阿

수신 : 總理衙門

七月十三日, 吉林將軍富明阿等文稱.

案查, 本年正月初七日, 准寧古塔副都統烏勒興阿咨報.

據琿春協領訥穆錦報稱.

探聞漁採人等傳說, 有奸民陳離爾巴什私越俄界, 在棘心河拐出朝鮮幼童二名, 偷越邊卡, 逃往別城去訖. 聞悉隨即追緝未獲. 呈經塔城¹³⁾特派雲騎尉¹⁴⁾富春帶兵前往查拏. 旋據稟稱.

奉派查拏流民陳離爾巴什, 訪得陳離爾巴什上年十一月間, 由琿春旋回時, 新娶妻堂胡氏, 在東京城居住. 詢據胡氏聲稱, 伊夫周振興更名陳離爾巴什, 拐帶朝鮮幼童二名, 往赴省屬喇巴溝躲避去訖.

等因. 轉據該副都統咨報前來.

本衙門當即咨飭所屬各處, 一体出派官役前赴省屬喇巴溝一帶, 明查暗訪, 務將奸民周振興並所拐朝鮮幼童, 一併按名搜獲, 解省究辦, 毋得遲悞去後. 茲於四月初二日, 據管理十路屯界事務廂黃旗二品頂戴花翎協領海明稟稱.

前奉筭文，隨飭各管界官一体查緝去後。茲於三月二十八日，據廂黃旗界官領催委官富克錦旋稱。

曾於本月十八日，在喇巴溝地方帶路河，訪有奸民周振興之名，經該員親帶兵役堵緝，僅見幼童二名。周振興不知去向，隨在附近尋訪，仍是無踪。惟據房主周世金聲稱，周振興原係上年十二月間到此，留下幼童，本年正月間，復往東京城貿易去訖。經該界官將朝鮮幼童二名，並房主周世金一名，併獲帶省。

稟送前來。

據此，當覓通曉朝鮮國言語之人，詢悉幼童。一名朴事均，年十六歲，因係該國年景荒歉，逃難俄界，饑餓不能生活，經伊父換給民人周振興伺養求生。其一名金姓，年方七歲，諸事不知。各等語。查此朝鮮幼童二名，係因饑餓逃命，以求生活，尚非無故離伊本國者可比。惟民人周振興不應私帶外國難民，入境隱藏，除飭緝民人周振興，務獲解究外，理合將該界官送到朝鮮幼童二名，照依詢悉情形，記寫草供一紙，併房主民人周世金，一併稟請核辦施行。

等因。稟報前來。

查所獲朝鮮幼童二名，訊係實因該國年景荒歉，迫於饑餓投生，詎無私擅越界別情。審時奪勢，自宜由驛解交伊本國，以昭懷柔之仁。除飭所屬上緊嚴緝攜帶幼童之奸民周振興，獲日另結外，其訊屬無干之房主民人周世金，擬即取保開釋。

等情。

據此，除札派雲騎尉永安帶兵一名，將朝鮮幼童朴事均等二名，於四月初五日起解，由驛解交額穆赫索羅佐領處投交。更派官兵解赴寧古塔副都統衙門查收，另派弁兵轉送琿春協領衙門。再由該協領備具文移，送交朝鮮慶源府官接收。並筭西路驛站監督遵照，即行轉飭東路各站，“一体應付驛車一輛，並朝鮮幼童二名日需飯食，務須由站按日妥為供給，毋得缺之”等因。

咨筭去後，茲於六月二十一日，准寧古塔副都統烏勒興阿咨覆。

於四月二十日，據額穆赫索羅佐領處，差派五品藍翎開凌阿，帶兵將朝鮮幼童朴事均金姓等二名解送前來。

本衙門當即揀派花翎雲騎尉金貴帶兵富祿海山等，將朝鮮幼童二名，於四月二十五日由塔轉送琿春去訖。並將該朝鮮幼童等日需飯食馬匹，飭令沿途各台卡遵照，“妥爲供給，毋得缺之”等因。

筭行去後，茲於六月初一日，據琿春協領訥穆錦呈報。

五月初四日，據塔城差員雲騎尉金貴帶兵將朝鮮幼童朴事均、金姓等解送前來。本處併將於本月初三日據查界官雲騎尉成貴，由南阿拉屯盤獲之朝鮮婦人金氏一口，訊據該婦供稱。

今年二十三歲，係慶興府民人朴希京之妻，生子七歲。去年九月間，因饑餓難度，跟同伊父逃生至俄界棘心河。不意氏夫病故，幼兒被俄人搶去。小婦隻身無倚，流離到此。

等供。

據此，仍將朝鮮幼童朴事均·金姓·金氏等三名口，一併交派雲騎尉成貴押解。起行之際，朴事均等叩懇聲言，“今既送歸本國，必照法典示衆”，慟哭不起，職無可如何，僅備照會移知朝鮮慶源府官，今其差人領回，並寫明“大國上憲体卹懷柔之意，該國府官更當体量難民之情，飭其安歸本業，不可如法從事”等因。

移會去後，續於五月十二日，准慶源府地方官差派右兵房官蔡承默等四名來署，投交回文一角，隨將朴事均·金姓·金氏等三名口已交該國差官，於五月十三日領回。併將慶源府官送到回文一角，一併附封呈。

據該副都統烏勒興阿轉送咨報，前來。

除將該副都統送到朝鮮慶源府官回移一角，留存本衙門備查外，相應照錄粘單，並將被獲朝鮮幼童、金氏三名口，已竟解交該國慶源府官投文領回各緣由，據情呈報總理各國事務衙門，謹請查核可也。

(1) 照錄粘單。

慶源都護府衙門，爲 相考 事。

卽到貴衙門照會是置，本是法意嚴重，邊疆清明，雖隔一帶江水，莫敢任其來往。而或有暫自犯越者，期於摘發梟首警衆，亦置防守晝夜瞭察守直矣。近年以來，奸弊滋長，本國無賴人輩，從何乘隙潛越逃接于貴地方者亦有之。至於俄界棘心河，多至有千餘人聚居者云云。

揆以法網，萬萬警悚，以此等逃去人物逐送事，昨冬旣伏承大國咨文。在此，小國只伏俟逐送之日，而伏萬萬感祝，尤萬萬悚惶。而今有此男婦三人，犯越潛遁，大國將軍查寔捉人，以係幼童，至有供給飯食·車輻送回之境，尤萬萬感悚。詳問男婦，旣是本府所居者，則使之安接，如或他邑所居者，卽移文該邑，使之護送各別安接之地。而貴地方內近來逃接人物，并爲嚴查逐送，以明疆界之地。是遣合行。

7월 13일, 吉林將軍 富明阿 등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조사해보건대, 올해 정월 7일, 寧古塔副都統 烏勒興阿가 다음과 같은 咨文을 보내왔습니다.

琿春協領 訥穆錦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漁採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탐문했더니, 奸民 陳雛爾巴什이 몰래 러시아 국경을 넘어가 棘心河에서 조선 아동 2명을 유괴한 후 변경 초소를 몰래 넘어 다른 城으로 도망갔다고 하였습니다. 소식을 모두 듣고 즉시 추적했지만 체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寧古塔(副都統衙門)으로 보고하였더니, 거기서 雲騎尉 富春을 특별히 파견해서 조사·체포하게 하였습니다. 파견 인원이 곧 돌아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지시를 받고 流民 陳雛爾巴什을 조사·체포하기 위해 파견되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陳雛爾巴什이 작년 11월경에 琿春을 통해 돌아왔을 때 새로 胡氏를 아내로 맞아들여 東京城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胡氏에게 물어보니, 그 남편 周振興이 陳雛爾巴什로 개명하고 조선 아동 2명을 데리고 省 소속의 喇巴溝로 몸을 숨겼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寧古塔副都統이 받아서 본 吉林將軍에게 전해 왔습니다. 본 아문에서

13) '呈經塔城'은 '塔城, 즉 寧古塔에 보고를 하였더니 영고담쪽에서~'라는 뜻이다.

14) '雲騎尉'는 무관(武官)의 직명이다. 청대에는 정5품(正五品)의 세습작위(世爵)가 되었다.

는 즉시 소속 각 지역에 지시공문을 보내, 모두 官役을 省 소속의 喇巴溝 일대로 파견하여 공개적으로 조사하고 은밀히 탐방하여, 奸民 周振興과 함께 유괴된 조선 아동을 모조리 수색·체포하여 省으로 보내 처벌하게 하되, 지체하거나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된다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4월 2일 十路屯界事務를 관리하는 廂黃旗 소속 二品頂戴花翎協領 海明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앞서 지시를 받고 곧이어 각 관할 관아로 하여금 조사·체포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3월 28일 廂黃旗 소속 界官 領催委官 富克錦이 곧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일찍이 이번 달 18일에 喇巴溝 지역의 帶路河에서 奸民 周振興이란 이름을 찾았는데, 직접 兵役을 데리고 가서 포위했지만 겨우 아동 2명만을 발견하였습니다. 周振興은 행방을 알 수 없었고, 수시로 부근에서 수색했지만 여전히 종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집주인 周世金의 말을 들으니 周振興은 원래 작년 12월경 이곳에 와서 아동을 납켜두고 올해 정월쯤에 다시 東京城으로 장사하러 갔다고 합니다. 이에 저는 조선 아동 2명과 집주인 周世金 1명을 모두 잡아 省으로 압송하였습니다.

이상의 보고가 (海明에게) 도착하였습니다. 이를 받고 조선말을 잘 아는 사람을 찾아 아동에게 상세히 심문하였습니다. 한 명은 朴事均으로 나이는 16세였는데, 조선에 흉년이 들어 러시아로 도망갔다가 기아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자, 그 아버지가 백성 周振興에게 양육하면서 목숨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1명은 金姓이며 나이는 이제 7살로 아무것도 모릅니다. 생각건대, 조선 아동 2명은 기아 때문에 목숨을 건지고자 도망 온 것이니 아무 까닭 없이 그 본국을 떠난 경우와 비할 바는 아닙니다. 다만 백성 周振興은 부당하게 외국 난민을 몰래 데리고 들어와 숨겼으니, 그를 체포해 압송하여 처벌하는 것 외에, 해당 界官이 보내온 조선 아동 2명은 자세히 심문한 상황에 따라 진술서 한 장을 작성하고, 집주인 백성 周世金과 함께 처리방안을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의 보고를 받았으므로 (寧古塔副都統은) 잡아들인 조선 아동 2명은 모두 실제로 조선의 흉년 때문에 기아에 쫓겨 살길을 찾으려고 한 것이고,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다른 상황은 없는 것이 확실하므로, 시세를 고려하여 驛路를 통해 조선으로 송환함으로써 懷柔해주는 인자함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소속에게 지시하여 서둘러 아동을 데리고 온 奸民 周振興을 체포토록 하여 잡아들이는 날에 다시 사안을 완결 짓는 외에, 심문 결과 (사안과)

무관한 집주인 周世金은 보증인을 세운 후 석방시키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보고를 받고 (吉林將軍은) 雲騎尉 永安을 파견하여 병사 1명을 데리고 4월 5일에 출발하여 역로를 거쳐 조선의 아동 朴事均 등 2명을 額穆赫索羅 佐領에게 넘겨주고, 다시 관병을 파견하여 寧古塔副都統 아문으로 보내 조선인들을 확인하고 받아들이게 한 다음, 별도로 관병을 파견하여 琿春協領 衙門으로 넘기게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해당 協領이 공문을 갖추어 조선 慶源府의 관원에게 접수하도록 하고, 아울러 西路驛站 監督에게 지시공문을 명령에 따라 즉시 東路各站에게 전달하여, 각기 수레 1량을 제공하도록 하고, 조선 아동 2명이 하루에 필요한 음식도 역참에서 반드시 날짜에 따라 제공하여 빠뜨리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시공문을 보낸 다음 이번 6월 21일, 寧古塔都統 烏勒興阿의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4월 20일에 額穆赫索羅 佐領이 五品藍翎 開凌阿를 파견하여 병사를 데리고 조선의 아동 朴事均 등 2명을 보내왔습니다.

본 아문에서는 마땅히 花翎 雲騎尉 金貴를 파견하여 병사 富祿海山 등을 이끌고 4월 25일에 조선 아동을 寧古塔를 경유하여 琿春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해당 조선 아동이 날마다 필요로 하는 음식 및 마필을 沿途의 각 초소에서 지시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되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지시를 보낸 후 6월 1일, 琿春協領 訥穆錦이 다음과 같은 보고를 올렸습니다.

5월 4일 寧古塔에서 보낸 雲騎尉 金貴가 병사를 데리고 조선 아동 朴事均, 金姓 등을 보내왔습니다. 이곳에서 이번 달 3일에 查界官 雲騎尉 成貴가 南阿拉屯盤에서 조선 부인 김 씨 1명을 잡았다고 보고했는데, 신문하니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지금 나이는 23살이며 慶興府 백성 朴希京의 처, 아들이 7세입니다. 작년 9월 경, 기아 때문에 살아갈 수 없어 남편과 함께 살길을 찾고자 러시아의 棘心河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하게 남편은 병으로 죽고 어린 아이는 러시아인에게 빼앗겼습니다. 어린 여자가 혼자 의지할 곳 없이 떠돌다가 이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아동 朴事均, 金姓, 金氏 등 3명을 모두 함께 雲騎尉 成貴에게 보내 압송시켰습니다. 그런데 출발할 즈음에 朴事均 등이 간절히 말하길, “지금 본국으로 송환되면 반드시 법률에 따라 처형되어 梟示될 것입니다”라면서 통곡하고 일어서지 않으니, 저는 어쩔 수 없어 照會를 작성하여 조선 慶源府 관원에게 사람을 파견하여 이들을 데리고 돌아가라

하였습니다. 아울러 大國 상사의 懷柔한 뜻을 본받아 경원부의 관원은 마땅히 난민의 고충을 헤아려 본업에 安歸할 수 있도록 하되, 법대로 처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照會를 보낸 후 이어서 5월 12일, 경원부 지방관이 右兵房官 蔡承默 등 4명을 우리 관서로 보냈고 답장공문 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朴事均, 金姓, 金氏 등 3명을 그들에게 넘겨, 5월 13일에 데리고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慶源府 官員이 보낸 답장공문 한 통을 첨부하여 보고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寧古塔副都統 烏勒興阿가 咨文으로 보고해 왔습니다. 해당 副都統이 보낸 조선 慶源府 관원의 답장공문 1건을 본 아문에 보관하는 것 외에, 마땅히 그것을 초록하여 첨부함과 동시에, 체포한 조선의 아동 金氏 등 3명을 이미 조선의 慶源府 관원에게 넘겨 데리고 돌아가게 한 경과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여 총리아문에 올리니, 삼가 자세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첨부문서 초록

慶源都護府衙門에서 相考합니다.

귀 아문의 照會를 받았습니다. 본래 법의는 엄중하며 邊疆은 清明해야 하니, 비록 띠줄 같은 강을 사이에 두고 있어도 감히 멋대로 왕래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간혹 잠시 동안 범월을 한 경우라도 기필코 찾아내 효수한 후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였고, 또한 防守를 설치하여 밤낮으로 감시하며 지켰습니다. 근년 이래 못된 폐단이 점점 늘어나 본국의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이 틈을 타서 몰래 귀 지역을 넘어가는 경우도 역시 있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棘心河에서는 많게는 천여 명이 모여 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법의 기강을 헤아려 보면 너무 놀랍고 떨리는데, 이들 도망인을 송환하는 일로 작년 겨울에 大國의 咨文을 받았었습니다. 이에 小國은 단지 엎드려 송환해 오는 날을 기다리며 매우 감격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더욱 두렵고 황송하였습니다. 지금 이들 남녀 3인은 犯越하여 몰래 숨어 있다가 大國의 장군께서 조사하여 잡아들인 사람들인데, 아동임을 고려하여 음식과 수레까지 지급해 돌려보내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더욱 감격스럽고 황송합니다. 이들에게 자세히 물어본 후에 본부에 거주했던 자는 (본부에) 정착하게 하고 가령 혹시 다른 마을에 거주했던

자라면 즉시 문서를 해당 읍으로 보내 그곳에서 (이들이) 각기 정착할 지역으로 호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 지역으로 근래 도망가 살고 있는 사람들도 아울러 엄히 조사해서 송환해주심으로써 疆界지역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응당 공문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 이하 문서번호 : 1-2-1-05에서 15까지의 문서는 문서번호 : 1-2-3-32에서 43까지의 문서와 중복된다. 여기서는 목차만 남기고 본문은 문서번호 : 1-2-3-32~43 부분으로 넘긴다(-역자).

문서번호 : 1-2-1-05 (111, 143b-145a)

사안 : 查獲朝鮮逃人李青山已飭訊明確情後解交該國懲治

날짜 : 同治九年十一月十一日(1871년 1월 1일)

발신 : 護理吉林將軍

수신 : 總理衙門

※ 중복(3. 查拿及禁阻韓人越界 참고)

문서번호 : 1-2-1-06 (112, 145b-147b)

사안 : 輯獲朝鮮逃犯李東吉解交該國慶源府收禁沿江查無該犯招引匪類情事

날짜 : 同治九年十二月初十日(1871년 1월 30일)

발신 : 吉林將軍 奕榕

수신 : 總理衙門

※ 중복(3. 查拿及禁阻韓人越界 참고)

문서번호 : 1-2-1-07 (113, 148a-151a)

사안 : 朝鮮逃犯李東吉已解交該國慶源府收禁沿江一帶並無該犯超人匪類情事附一件-李東吉
供狀 供述私越江界情形

날짜 : 同治九年十二月十五日(1871년 2월 4일)

발신 : 署吉林將軍 奕榕

수신 : 總理衙門

※ 중북(3. 查拿及禁阻韓人越界 참고)

문서번호 : 1-2-1-08 (117, 157b)

사안 : 遵旨拏獲朝鮮逃犯李東吉等解交該國收禁一摺錄旨知照

날짜 : 同治十年正月十二日(1871년 3월 2일)

발신 : 署吉林將軍 奕榕

수신 : 總理衙門

※ 중북(3. 查拿及禁阻韓人越界 참고)

문서번호 : 1-2-1-09 (121, 161b-162b)

사안 : 續輯獲朝鮮逃犯李東吉之父母子媳等八口均先後解交朝鮮地方官收禁

날짜 : 同治十年正月二十九日(1871년 3월 19일)

발신 : 署吉林將軍 奕榕

수신 : 總理衙門

※ 중북(3. 查拿及禁阻韓人越界 참고)

문서번호 : 1-2-1-10 (122, 163a-164b)

사안 : 飭寧古塔副都統結報朝鮮乞食逃民有無驅逐淨盡

날짜 : 同治十年正月二十九日(1871년 3월 19일)

발신 : 署吉林將軍 奕榕

수신 : 總理衙門

※ 중북(3. 查拿及禁阻韓人越界 참고)

문서번호 : 1-2-1-12 (134, 173a)

사안 : 墊給遣回朝鮮逃民川資

날짜 : 同治十年四月十六日(1871년 6월 3일)

발신 : 吉林將軍 奕榕

수신 : 總理衙門

※ 중북(3. 查拿及禁阻韓人越界 참고)

문서번호 : 1-2-1-13 (184, 238b-240b)

사안 : 查禁朝鮮乞食難民已悉數予以遣回並飭邊卡防範勿再令偷越

날짜 : 同治十年十月十九日(1871년 12월 1일)

발신 : 吉林將軍 奕榕

수신 : 總理衙門

※ 중북(3. 查拿及禁阻韓人越界 참고)

문서번호 : 1-2-1-14 (185, 241a-242b)

사안 : 遵旨查禁朝鮮乞食難民已悉數遣回並嚴飭邊卡加意防範再有偷越

날짜 : 同治十年十月二十一日(1871년 12월 3일)

발신 : 吉林將軍 奕榕

수신 : 總理衙門

※ 중북(3. 查拿及禁阻韓人越界 참고)

문서번호 : 1-2-1-15 (193, 251a-251b)

사안 : 朝鮮歸還前墊接回難民辦買路米銀兩

날짜 : 同治十年十一月二十二日(1871년 1월 2일)

발신 : 吉林將軍奕榕

수신 : 總理衙門

※ 중북(3. 查拿及禁阻韓人越界 참고)

러시아인의 한인 개간 유인(俄人招引韓人開墾)

(23) 문서번호 : 1-2-2-01 (36, 50a-50b)

사안 : 러시아인이 한민을 끌어들이어 吉心河지방에서 개간을 하려 합니다(俄人招引韓民在吉心河地方開墾).

날짜 : 同治六年二月十四日(1867년 3월 19일)

발신 : 吉林將軍 富明阿

수신 : 總理衙門

同治六年二月十四日, 軍機處交出富明阿奏片稱.¹⁵⁾

再,¹⁶⁾ 奴才富明阿等奏. 適據署寧古塔副都統烏勒興阿報稱.

據署琿春協領事務佐領溫崇阿呈.

據查江恩騎尉額爾蘇勒·查界雲騎尉成貴等報稱.

本年正月初六日, 巡至琿春河口地方, 瞥見朝鮮國人男婦子女二百餘名, 坐車逕奔正東. 趕向查詢何往, 內有微通漢語聲言.

現今俄羅斯招引我國人數千名, 在吉心河地方開墾地畝. 我國屢次挑兵, 年景歉收, 課稅加倍, 交納無力, 實難度日. 無奈棄家逃出度命.

等語.

惟人數甚多, 原爲俄人招引過江, 若輒行阻滯, 尤恐滋生事端. 逕奔吉心河去訖. 報經該署協領, 仍飭查江查界各官尾巡, 不可任意竄入村屯, 亦不准滋事.

等情.

查朝鮮人等渡江奔投吉心河一帶, 乃爲俄人招引, 揆其情狀, 似有仗恃俄人之勢, 如其輒行阻止, 恐招兩國釁端. 惟俄人招引朝鮮人數甚鉅, 陸續奔投不絕, 兩國俱係外夷, 其意叵測.

等因. 咨報核辦前來.

詳查咸豐十一年分界圖載, 吉心河在紅線迤東, 係屬俄界. 現在俄人招引朝鮮人等, 旣在吉心河墾地, 並有續來不絕之狀, 其意叵測, 難保兩國不無勾結之虞. 奴才等當卽行令該副都統, 轉飭琿春協領, 嚴飭查江查界各卡官兵加意防範,¹⁷⁾ 說法阻止, 不准肇起釁端, 是爲至要. 除一面呈報總理各國事務衙門並咨照禮部查核外, 理合據情附片奏聞.

謹奏.

同治六年二月十三日, 軍機大臣奉旨.

該衙門知道.

欽此.

同治 6년 2월 14일, 軍機處에서 富明阿의 다음과 같은 奏片을 보내왔습니다.

- 15) '片'(또는 夾片)은 독자적인 주접으로 할 필요가 없거나 원 주접에서 서술하기 불편하여, 주접에 따로 끼워서 첨부하는 간단한 형식의 추가 상주문이다. 때문에 상주하는 사람의 성명, 날짜, 사유 등이 적히지 않으며, 보통 '再'라는 단어로 시작한다. '附片'이라고도 한다.
- 16) '再'는 본 상주문 뒤에 추가로 첨부한 片(夾片, 附片)의 처음 부분에 들어가는 단어이다.
- 17) 여기서 잡(卡)은 잡륜(卡倫)으로 중국 발음으로는 '카룬'인데, 청대 만주·몽골·신강 등지에 설치한 관병의 감시초소를 말한다. 이하 초소라고 약칭한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奴才 富明阿 등이 상주합니다. 署寧古塔副都統 烏勒興阿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琿春協領의 事務를 임시로 맡은 佐領 溫崇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查江恩騎尉 額爾蘇勒, 查界雲騎尉 成貴 등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¹⁸⁾

올해 정월 6일, 순찰을 하다가 琿春河口에 도착했는데 언뜻 보니 조선국 백성 200여 명이 수레를 타고 정동 방향으로 급히 가고 있었습니다. 쫓아가서 어디로 가는지 물어 보니, 그 중에 조금 漢語가 통하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조선사람 수천 명을 불러들여 吉心河 지역에서 토지를 개간하고자 합니다. 조선에서는 누차 균역을 부과하고 농사는 흉년인데 세금은 더욱 늘어나 납부할 힘이 없으니 실로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버리고 도망 나와 목숨을 잇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각건대, 숫자가 매우 많았고 애초에 러시아인에게 유인을 받아 강을 건너는 것이었기 때문에, 만일 바로 저지한다면 더욱 말썽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조선인들은) 서둘러 吉心河로 가버렸습니다.

(이상과 같은) 보고를 받았으므로, 저는 查江·查界 각 관원에게 명령하여 (조선인들의) 후미를 감시하되, 임의로 마을로 숨어들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끔 지시하였습니다. (寧古塔副都統 서리가) 생각건대, 조선인이 강을 건너 吉心河 일대로 몰려가는 것은 바로 러시아인들이 유인한 것입니다. 그 상황을 헤아려 보면 아마도 러시아인의 세력을 믿는 것같아, 만일 바로 저지한다면 아마도 양국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다만 러시아인이 유인하는 조선인의 숫자가 매우 많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넘어가는데, 양국은 모두 외부의 오락캐라 그 뜻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이상과 같은 咨文을 통한 보고가 왔으므로 吉林將軍이 생각건대) 咸豐 11년의 分界圖를 상세히 살펴보니, 吉心河는 紅線 이동이라 러시아 영역에 속합니다. 현재 러시아인이 유인한 조선인들은 吉心河에서 개간하고 있고, 아울러 연이어 끊임없이 오는 상황이니, 그 의도를 헤아리기 어려우며 양국에 분쟁이 생길 우려가 없지 않다고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奴才 등은 즉시 해당 副都統으로 하여금 琿春協領에게 지시를 전달하여 두만강과 국경 각 초소의 관병에게

18) 查江雲騎尉, 查界雲騎尉는 강이나 국경의 감시임무를 맡은 무관(雲騎尉)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 주의하여 단속하고 방법을 강구하여 저지함으로써 문제가 일어나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시하였습니다. 총리아문에 보고하는 한편, 아울러 禮部에 咨文으로 보내 검토하게 하는 것 외에, 마땅히 사리에 따라 附片으로 상주하는 바입니다. 삼가 주를 올립니다.

同治 6년 2월 13일에 상주하여, 軍機大臣은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아문에 알리라.

이상.

(24) 문서번호 : 1-2-2-02 (37, 51a)

사안 : 러시아인이 다수의 한민을 끌어들이어 吉心河지방에서 개간을 하려 하는데, 이미 각 초소의 관병에게 차단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俄人招引大批韓民在吉心河地方開墾, 已飭各卡官兵防範).

날짜 : 同治六年二月十五日(1867년 3월 20일)

발신 : 吉林將軍 富明阿

수신 : 總理衙門

二月十五日, 吉林將軍富明阿文.

[與十四日軍機交片同.]

2월 25일 吉林將軍의 문서.

[14일 軍機處에서 보낸 附片과 동일하다.]

(25) 문서번호 : 1-2-2-03 (44, 57a)

사안 : 러시아인이 조선 백성을 끌어들여 개간을 하려 한다는 일에 대해 총리아문에서 검토하여 처리해주시도록咨文을 보냅니다(俄人招引朝民開墾事, 咨由總署覈辦).

날짜 : 同治六年二月十九日(1867년 3월 24일)

발신 : 禮部

수신 : 總理衙門

二月十九日, 禮部文稱.

准吉林將軍咨稱, 俄人招引朝鮮人等, 在吉心河墾地等情. 查俄國事隸貴衙門, 相應鈔錄原文片送覈辦可也.

[原文詳二月十五軍機交片.]

2월 19일, 禮部の 문서는 다음과 같았다.

吉林將軍의咨文을 받았는데, 러시아인이 조선인들을 데리고 吉心河에서 개간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생각건대, 러시아 사안은 귀 아문에 관계되므로, 원 文片을 초록해서 보내오니 처리 해주십시오.

[원문은 2월 15일 군기처에서 보낸 附片에 상세하다.]

(26) 문서번호 : 1-2-2-04 (50, 60a)

사안 : 순방관병에게 한인이 러시아 경내로 넘어가 개간하는 것을 막으라고 엄격히 지시하
십시오(嚴飭巡防官兵禁阻韓人赴俄界開墾).

날짜 : 同治六年三月初五日(1867년 4월 9일)

발신 : 護理吉林將軍 富爾孫

수신 : 總理衙門

三月初五日, 護理吉林將軍富爾孫文稱.

本年二月初五日, 本衙門附片具奏, 爲“據報朝鮮國人二百餘名, 投奔俄界吉心河地方
度日”等因. 具奏之處, 當經照抄原片呈報在案. 茲於二月二十一日奉到廻片, 軍機大
臣奉旨.

該衙門知道.

欽此. 欽遵前來.

除飛咨寧古塔副都統衙門, 轉飭琿春協領, 務須凜遵前文事理, 嚴飭巡防官兵加意嚴
防, 說法阻止, 不得肇啓邊釁外, 相應恭錄諭旨, 呈報總理各國事務衙門, 謹請查核
可也.

3월 5일, 護理吉林將軍 富爾孫이 다음과 같은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올해 2월 5일, 본 아문에서 상주문의 附片으로 조선인 2백여 명이 러시아 지역인 吉心河로
도망가서 지낸다는 보고를 상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한 아문에서 원래의 附片도 함께
초록하여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월 21일에 황상께 올린 부편이 돌아왔는데, 그에

대해 軍機大臣이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아문에게 알리라.

이에 寧古塔副都統衙門에 긴급히 咨文을 보내, 琿春協領에게 지시하여 이전 공문의 지시를 따라 巡防官兵에게 엄격히 명령을 내려 더욱 주의하여 단속하고 방법을 강구해 저지함으로써 변경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게 한 것 외에, 응당 삼가 유지를 초록하여 총리아문으로 올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7) 문서번호 : 1-2-2-05 (61, 76b)

사안 : 조선국왕이 유지에 따라 보내온 답장을 (예부에서 대신) 상주하였는데, 이 주접을 유지와 함께 기록하여 알리는 바입니다(具奏朝鮮國王遵旨登覆原文摺, 錄旨知照).

날짜 : 同治六年五月十九日(1867년 6월 20일)

발신 : 禮部

수신 : 總理衙門

五月十九日, 禮部文稱.

主客司案呈.

所有鈔錄朝鮮國王遵旨登覆原文一摺, 於同治六年五月十九日具奏. 本日軍機處片交, 軍機大臣面奉諭旨.

該衙門知道.

欽此.

相應鈔錄該國王原文及本部原奏, 知照總理各國事務衙門可也.

[原奏詳二十一日軍機交片.]

5월 19일, 禮部에서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主客司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문서를 올렸습니다.

조선국왕이 유지에 따라 올린 답장 원문을 同治 6년 5월 19일 상주하였고, 오늘 軍機處에서 附片을 돌려받았는데, 軍機大臣은 이와 더불어 직접 다음과 같은 상유를 받았습니다.

해당 아문에게 알리라.

마땅히 조선국왕의 원문 및 본부의 原奏를 초록하여, 총리아문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原奏는 21일 근기처에서 보낸 附片에 상세하다.]

(28) 문서번호 : 1-2-2-06 (92, 111a-112b)

사안 : 조선 백성이 러시아로 잠입하여 巖杵河, 棘心河 등 지방에 천여 명이 모여있습니다
(鮮民越界潛投俄國, 聚集巖杵河, 棘心河等處達千餘人).

날짜 : 同治八年十月二十七日(1869년 11월 30일)

발신 : 吉林將軍 富明阿

수신 : 總理衙門

同治八年十月二十七日, 吉林將軍富明阿文稱.

本年十月十五日, 准寧古塔副都統烏勒興阿咨報.

十月初三日, 據琿春協領訥穆錦報稱.

職奉飭筭文, 於八月二十七日前往摩闊歲, 會晤俄國新設廓米薩爾之官, 面議兩國交涉事件. 詎該員前往海參崴辦公, 並未相見. 旋於中途遇有朝鮮國男婦子女四五十人, 陸續越界, 均由珠倫河地方前往海沿去訖. 問其來歷, 混行指畫, 彼此話語不通, 殊難知其究竟. 因係俄界, 未便攔阻. 卽於回城之日, 揀派雲騎尉吉爾洪阿等前往海沿一帶密查去後, 旋稱.

朝鮮國男婦子女, 現在海沿巖杵河棘心河等處, 相聚千有餘人, 適際仍有越界者, 陸續不止. 因與俄人互相交雜, 難以查問.

等語. 呈報前來.

據此. 詳思朝鮮國男婦子女, 任意越界, 而俄人無故容留, 現聚千餘人矣. 況有續越不止者, 自此愈聚愈多, 恐其恃衆作亂, 關繫匪輕. 是以嚴飭沿邊各卡一體防範之處, 理合飛報副都統衙門核奪可也.

等因. 呈報前來.

據此，詳查該協領所報，途遇朝鮮國男婦子女四五十人，均由俄界珠倫河地方，奔赴海沿巖杵河棘心河等處。嗣復派員探報，已竟聚有千餘之多，互俄人互相交雜，而俄人任意容留，況有續越者，恐其愈越愈多。乃該朝鮮國何以置之不問，任其潛往他邦。似此兩國撓越，難免不無構起釁端，實與中華將來大有邊礙。除一面仍飭該協領密派委員，前往俄界巖杵河棘心河一帶，訪探如何動作，實據(→據實)查報，並嚴飭沿邊一帶各卡官兵等，一體加意嚴防外，擬合據情咨報。爲此飛報將軍衙門查核可也。

等因。前來。

查朝鮮國素本禮義之邦，從無越界闖居之事。今中華與俄國議分疆界，卽有該國男婦子女紛紛潛投俄界。迨經派員查探，海沿巖杵河棘心河等處，已竟聚有千餘人之多，於俄夷互相交雜，而俄人並不分別任意容留，尤不知其意何居。況有續越者陸續不止，難免不無愈集愈多，殊不清厘邊疆善道，乃該朝鮮與自己國屬之人，致令男婦成羣，任意紛投外邦，何以置之不問，究不知該國意存何居。若任各國分投闖居，難免日久別生釁端，實與中外各有邊礙。

除咨覆寧古塔副都統烏勒興阿，遵照卽行轉飭琿春協領訥穆錦，刻卽親赴摩闊崙海參崴，會同該國新設廓米薩爾，將前項情事逐一告明，務將朝鮮國越界男婦子女，共念和好，悉數飭令逐回，不得久留俄界，以明疆界，而敦友誼。並飭該協領於所屬界之內外不動聲色，加意嚴防，仍密派妥幹兵役，查其有何動作，迅速飛報，不准稍有怠忽，致悞事機爲要。並呈請咨報禮部，煩請查核，希卽轉行朝鮮國王，卽將該國逃越俄界之男婦子女一千餘人，飭令邊界官悉數領回，各安本界，毋得再令闖行潛居，致滋邊患。相應據情呈報總理各國事務衙門，謹請查核可也。

同治 8년 10월 27일 吉林將軍 富明阿가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올해 10월 15일, 寧古塔副都統 烏勒興阿가 다음과 같이 咨文으로 보고하였습니다.

10월 3일, 琿春協領 訥穆錦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지시공문을 받고 8월 27일 摩闊崙로 가서 러시아에서 신설한 界務官을 만나, 직접 양국의 교섭 사건을 의논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관원이 海參崴(블라디보스

특)에 가서 공무를 처리 중이었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곧이어 중도에서 조선 백성 남녀노소¹⁹⁾ 4~50명이 연이어 국경을 넘는 것을 보았는데, 모두 珠倫河 지역을 거쳐 해안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내력을 물어보며 어지러이 손짓을 해 보았지만,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아 도대체 그 까닭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지역이었기 때문에 제가 저지하기 곤란하였습니다. 즉시 성으로 돌아와 雲騎尉 吉爾洪阿 등을 골라 해안 일대로 보내서 엄밀히 조사하게 했는데, 곧이어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선의 남녀노소가 현재 沿海의 巖杵河와 棘心河 지역에 천여 명이 모여 있으며, 최근에도 국경을 넘는 자들이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과 섞여 있었기 때문에 조사하며 탐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상과 같은 보고를 받고 자세히 살펴보건대, 조선 백성이 임의로 국경을 넘어 오는데 러시아인이 이유 없이 수용하고 있어 현재 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더구나 계속해서 끊이지 않으니, 이후로 갈수록 더 늘어날 것이고, 아마 그 무리를 믿고 난동을 피우면 관계된 바가 가볍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이 때문에 연변 각 초소에 엄격히 지시하여 철저히 단속시키는 문제에 대해, 副都統衙門에 서둘러 알리니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寧古塔副都統이) 해당 協領이 보고한 것을 자세히 살펴보건대, 도중에 조선 남녀노소 4~50인을 만났는데 모두 러시아 영역인 珠倫河 지역을 거쳐 沿海의 巖杵河, 棘心河 지역으로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이후 뒤이어 관원을 파견하여 탐문해 보니, 이미 천여 명 남짓 모여 있고 또한 러시아인과 섞여 있으며, 러시아인들이 멋대로 수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계속해서 월경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마 그 수는 갈수록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어째서 방치하고 문제삼지 않으며, 멋대로 다른 나라로 월경하는 것을 놔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들 양국이 본분을 넘어서는 일이 있으면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기 어려우니, 실로 中華의 장래에 큰 장애가 될 것입니다. 해당 協領에게 지시하여 적당한 관원을 은밀히 巖杵河, 棘心河 일대로 파견하여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지를 탐문한 후 사실에 근거해 보고하게 하고, 아울러 연변 각 초소 관병들에게 모두 엄밀히 단속하도록 엄격히 지시하는 것 외에, 마땅히 실정에 근거하여 咨文으로 보고해야 할 것임

19) 원문은 ‘男婦子女’라 ‘남자와 아내, 아들과 딸’이란 뜻이지만 편의상 남녀노소로 번역하였다. 이후에도 마찬가지로이다.

니다. 이에 서둘러 將軍衙門으로 보고하오니, 참고해주십시오.
 (吉林將軍이) 생각건대, 조선은 본래 예의의 나라이기에 국경을 넘어와 뒤섞여 거주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 中華와 러시아가 논의하여 국경을 정했는데, 조선 백성들이 분분히 러시아 지역으로 몰래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관원을 파견하여 조사해보니, 沿海의 巖杵河, 棘心河 지역에 이미 천여 명 정도가 모여 있는 데다가, 러시아인과 서로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인은 결코 가리지 않고 마음대로 받아들이고 있으니,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더욱 알 수 없습니다. 더구나 계속해서 국경을 넘는 자들이 끊이지 않으니 갈수록 더 늘어날 것이라, 결코 변경을 다스리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선은 자기 나라에 속한 백성이 무리를 이루어 멋대로 다른 나라에 분분히 몰려가는 데도 어찌서 방치하고 문제 삼지 않는지,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알 수 없습니다. 만일 각국의 백성이 서로 몰려가 뒤섞여 산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쟁의 실마리가 생기지 말란 법이 없으니, 실로 중국과 외국 사이에 변경 문제를 낳을 것입니다.

寧古塔副都統 烏勒興阿에게 咨文으로 보내, 즉각 그에 따라 바로 琿春協領 訥穆錦에게 지시하여 곧바로 摩澗崴·海參崴로 직접 가서 러시아에서 신설한 界務官을 만나 앞서의 사정을 하나 하나 분명히 알리고, 조선 월경민에 대해 양국 간의 우호를 위해 모두를 돌려보내 러시아 지역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경을 명확히 하고 우의를 돈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하게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 協領에게 명령하여 소속 지역 내외에서 은근하게 주의를 더해 엄밀히 단속하고, 적당한 兵役을 은밀히 파견하여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서둘러 보고하되,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여 일을 그르치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청컨대 禮部에 咨文으로 알려, 번거롭겠지만 검토한 다음 바로 조선국왕에게 공문을 보내, 즉시 러시아로 도망친 남녀노소 천여 명을 변경관원에게 지시하여 전부 데리고 돌아가 각기 본적에 정착하게 하되, 다시는 멋대로 섞여 들어 몰래 거주함으로써 변경의 문제가 불거지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응당 이상의 것을 사실에 근거하여 총리아문에 보고해야 할 것이니, 삼가 검토해주십시오.

(29) 문서번호 : 1-2-2-07 (93, 113a-114b)

사안 : 조선국왕에게 공문을 보내 변경관원에게 러시아 경내로 월경한 한민을 모두 송환하라고 지시해 주시기를 요청해 주십시오(請行文朝鮮國王, 飭邊官悉數領回越界投俄之韓民).

날짜 : 同治八年十一月初三日(1869년 12월 5일)

발신 : 總理衙門

수신 : 禮部

十一月初三日, 行禮部文稱.

同治八年十月二十七日, 准吉林將軍文稱.

[이하는 바로 앞의 문서번호 : 1-2-2-06 (92, 111a-112b)과 같은 내용이라 생략함. 다음 부분만 추가된 내용임.]

等因前來.

本衙門查朝鮮國男婦子女, 分投俄界, 應否轉行朝鮮國王, 飭令邊界官悉數領回, 相應咨行貴部查照酌核辦理可也.

11월 3일, (총리아문에서) 禮部로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냈습니다.

[이하는 바로 앞의 문서번호 : 1-2-2-06 (92, 111a-112b)과 같은 내용이라 생략함. 다음 부분만 추가된 내용임.]

총리아문에서 생각건대, 조선백성이 러시아 지역으로 분분히 몰려가는 것에 대해, 조선국왕에게 공문을 보내 邊界官에게 지시하여 모두 데리고 가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응당 귀 예부로 咨文을 보내오니, 참고하시고 적절히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30) 문서번호 : 1-2-2-08 (191, 248a-249b)

사안 : 러시아인이 조선의 월경민을 匣子지방으로 이주시켰습니다(俄人移朝鮮逃民於匣子地方).

날짜 : 同治十年十一月十九日(1871년 12월 30일)

발신 : 吉林將軍 奕榕

수신 : 總理衙門

十一月十九日, 吉林將軍奕榕文稱.

本年十月初十日, 准三姓副都統勝安咨.²⁰⁾

前准將軍衙門咨.

查朝鮮越界難民一案, 嚴飭各處, 寔力搜查, 毋得陽奉陰違, 一報塞責.

等語.

當經嚴飭所屬邊防各卡巡員, 嚴密訪探, 如有此項越界朝鮮難民, 查明飛報, 以憑核轉. 續於九月三十日, 據黑河口卡倫巡員驍騎校斐凌阿查報.

於是月十六日, 據巡哨弁兵旋卡報稱.

在黑河內阿穆地方, 見有俄夷火船一隻. 隨練大船一隻, 裝載男婦子女, 爲數甚多. 在彼停泊, 衣裝多是俄形, 話語不與俄國相同. 探詢俄人, 言說此項皆係高麗國人, 現隨俄國, 業已剪髮改裝, 奉紅土崖大官飭令船載送匣子地方, 與其建房屯居.

等語.

當經卡官斐凌阿往見徐爾固俄官, 所述言詞核與巡哨弁兵往探無異. 旋經該卡復派領催藍翎委官哈豐阿, 帶兵往赴匣子地方密探, 旋報.

奉派抵至匣子迤東龍江北岸，見有新蓋夷房五十一所，內住俱是朝鮮難民，均已剪髮，穿戴俄服。隨向其微通漢語之人盤詰，答說。

委因我國嶺北六邑，屢被天災，飢餓無救。故愿生活，萬不得已拋親老，棄墳墓，我們男子二百四十六名，婦女一百八十五口，無奈會合越界逃生。被紅土崖俄官收留撫養，令我等剪髮更衣服，不知因何。硬用火輪船將我等裝載送至此處，蓋房安插。適遇大清國貴官來此，我們甚屬喜歡，亦痛悉大國向與朝鮮唇齒昆連相近之情，感激難忘。

說及多時，其情甚苦。復經朝鮮人遞給文字一紙，携回到卡呈交。

等情。備文飛報前來。

本衙門詳查朝鮮國連被飢饉，以致難民困苦無告，越界逃生。俄國收撫養育，亦屬美意，何得將該民等剪髮更衣，其心叵測，寔屬不合。應將探明黑河北岸匣子迤東地方。現有朝鮮男婦子女所居房間人數，並朝鮮人交給文字一紙，一併咨報將軍衙門查核辦理可也。

等因。前來。

查朝鮮難民所遞文字內云。

朝鮮民等居沙末老爺謹拜書。大國惠書偶到此處，澳手啓視，喜眼先動。蓋是東國雖云禮義之鄉，然嶺北六邑之民，數運不幸，五六年間，疾厄太多，惡虎克成，況且連致大凶。故人民生命爲效，離親戚墳墓，棄而逃生。越江止接于俄囉國，定地食料，一時僅僅得生，是亦民而以食爲天然也。大清國與朝鮮國唇齒昆連相近之情，感此情勢，何以不悲乎。

等語。

本衙門查其詞句，本非有關公事，且其詞句多有不通，更難辦解。該卡官等已經接遞，該副都統尤當詳細斟酌，再行咨報。今既咨送前來，自應存記本衙門備案，未便據咨轉呈外。詳查前有俄人將朝鮮難民載往綏芬，經琿春協領屢次照會，令其放還。詎該俄酋答覆，不關你們之事，復向追討，仍行不理。是此項難民既非由中國屬界潛越，自無從攔阻，

且匣子地方亦屬俄界，又非姓城所轄，惟此處與姓城接壤，自應據實報聞，但不應不知詳查，輒接收所遞文字，殊欠斟酌，僅據一報了事，實屬不曉事體。除咨覆三姓副都統衙門遵嗣後遇有關係外國事件，務當詳細酌核，方昭慎重，不得草率塞責，一報了事外，相應據情呈報總理衙門，謹請查核可也。

11월 19일, 吉林將軍 奕榕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냈습니다.

올해 10월 10일, 三姓副都統 勝安의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전에 將軍衙門의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조사권대, 조선의 월경난민에 관한 사안은 각처에 엄히 지시하여 전력으로 수사하되, 앞에서는 따르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지시를 어기거나, 한번 보고한 것을 책임을 매워서 안 될 것입니다.

마땅히 소속 邊防의 각 초소 순찰관원에게 엄격히 지시하여, 엄밀하게 탐방을 하여, 만일 이러한 월경 조선 난민이 있다면 확인한 다음 신속히 알림으로써, 검토하여 전달할 수 있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9월 30일, 黑河口 초소의 巡員 驍騎校 斐凌阿의 다음과 같은 조사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달 16일에 巡哨弁兵이 초소로 돌아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黑河內 阿穆 지방에서 러시아 오랑캐의 운선 한 척을 보았습니다. 곧이어 大船 1척이 뒤따랐는데, 남녀노소의 많은 사람들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정박했는데, 옷차림은 대부분 러시아 모습이었지만 언어는 러시아와 같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인에게 탐문해보니, “이들은 모두 고려인이며, 현재 러시아로 와서 이미 머리를 자르고 옷을 바꿔 입었다. 紅土崖 大官의 명령으로 배로 실어 匣子 지역으로 보내 집을 짓고 거주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즉시 초소관원 斐凌阿가 徐爾固의 러시아 관원을 찾아갔는데, 하는 말이 巡哨弁兵이

20) 三姓은 清代 전기 동북지구의 重鎮 가운데 하나로, 지금의 黑龍江省 依蘭縣지구에 해당된다. 牡丹江과 松花江이 합류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康熙 53년(1714)에 400명의 병력과 協領이 파견되었고, 雍正 5年(1727)에는 부도통이 이를 대신하였다.

탐문한 것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곧 해당 초소에서는 다시 領催 藍翎委官 哈豐阿를
파견하여 병사를 데리고 匣子지역으로 가서 밀탐하게 했는데, 돌아와 다음과 같이 보고
하였습니다.

명령을 받고 匣子の 동쪽 龍江의 北岸로 가서 보니까, 새롭게 지은 오랑캐 건물
51채가 있었고,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모두 조선 난민으로 다들 머리를 자르고
러시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조금 漢語가 통하는 이에게 물어보니 다음과
같이 답하였습니다.

실로 조선의 嶺北 6군은 누차 재해를 입어 기아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살기 위해 정말 부득이 하게 친부모와 분묘를 버리고, 우리들 남자 246명, 부녀
185명이 어쩔 수 없이 모여 국경을 넘어 목숨을 건지고자 하였습니다. 이후 紅土
崖의 러시아 관원이 우리를 받아들여 돌봐주었고, 머리를 자르고 옷을 바꿔 입게
했는데 무슨 까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윤선을 이용해 우리들을 태우고
이곳에 보내 집을 짓고 정착하게 하였습니다. 우연히 大清國의 貴官께서 이곳에
오셨으니, 저희들은 매우 기쁘면서도 또한 大國에서 조선을 가까운 이웃나라로
여기시는 마음을 알게 되었으니 감격을 잊기 어렵습니다.

오랜 시간 이야기하였는데 그 상황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한편 조선인이 문서
한 통을 전해 주었는데, 초소로 가지고 돌아와서 보고하면서 함께 올립니다.

본 (三姓副都統) 아문에서 자세히 살펴보건대, 조선에서 연이어 기근이 생기자 난민들은
곤궁해도 호소할 곳이 없게 되어 월경하여 목숨을 건지고자 하였습니다. 러시아에서 (이들
을) 받아들여 돌보아 준 것은 좋은 뜻이지만, 어찌서 해당 백성들에게 머리를 자르고 옷을
바꿔 입게 했는지, 그 의도를 짐작할 수 없으며 도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응당
黑河 북안, 匣子 동쪽 지역을 탐색하여 알아낸 현재 조선 백성이 거주하는 건물과 인원의
수 및 조선인이 전달한 문서를 모두 將軍衙門으로 咨文으로 알려 검토해서 처리하시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보고를 받았으므로 吉林將軍이) 조선 난민이 보낸 문서를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조선민들이 居沙末 老翁께 삼가 글을 올립니다. 大國에서 보내신 문서가 우연히 이곳에
도착했기에 손을 씻고 봉투를 열어보니 기쁨에 (글을 읽는) 눈시울이 먼저 감동되었습니

다. 東國은 비록 예의의 나라라고 일컬어지지만 嶺北 6군의 백성들은 운수가 불행하여 5, 6년 사이 역병이 빈번했고 사나운 호랑이가 극성을 부렸으며, 게다가 연달아 큰 흉년이 발생하였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 친척과 분묘를 버리고 목숨을 건지고자 하였습니다. 강을 건너 러시아에 도착하였는데, 땅을 정해주고 식량을 제공해주어 일시나마 근근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는 역시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기 때문입니다. 大清國은 조선에 대해 가까운 이웃의 정을 가지고 있으니 이러한 상황을 아시고 어찌 슬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본(吉林將軍) 아문에서 살펴보건대, 본래 公事와 관계된 것이 아니고, 또 그 문장이 대체로 통하지 않아 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초소관병이 조선인의 문서를 받아서 전달했고, 해당 副都統이 다시 상세히 검토한 후 咨文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지금 이미 咨文이 도착하였는데, 마땅히 본 아문에 등록하여 보존하여 남겨두기는 하겠지만, 咨文에 근거하여 그대로 보고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세히 조사해보건대, 전에 러시아인들이 조선 난민을 緋芬으로 실어 보낼 때, 琿春協領이 그들을 돌려보내라는 照會를 여러 차례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러시아인의 우두머리는 너희들의 일과는 상관이 없다고 답장을 보냈고, 다시 따졌지만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 난민들은 중국에 속한 지역을 통해 몰래 넘어간 것이 아니면,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匣子지역은 러시아에 속하며, 三姓(副都統衙門)의 관할 지역이 아니지만, 그래도 三姓과 인접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사실에 근거해서 제대로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상세한 조사 내용을 제대로 하지도 않아, (이쪽에서) 그때그때 전달받는 문서로는 상황을 파악하기에 곤란하니, (저쪽에서) 단지 한번 보고하여 일을 끝내는 것은 실로 제대로 된 일 처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三姓副都統衙門에 답장 咨文을 보내, 이후 외국과 관계된 사건을 접하면 힘써 자세히 헤아리고 검토해야만 신중함을 드러낼 수 있고, 대충 책임을 면하고자 보고서 한 통으로 일을 마무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알리는 외에, 마땅히 사실에 근거하여 총리아문에 보고하오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31) 문서번호 : 1-2-2-09 (194, 252a-253b)

사안 : 한민이 러시아 경내로 도망쳐 들어간 일에 대해 러시아 공사가 서신을 보내왔는데, 위협적인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오로지 변경금령을 엄격히 하여 구실이 될 것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韓民逃入俄境事, 俄使來函意存要脅, 惟自嚴邊禁, 不令有所藉口).

날짜 : 同治十年十一月二十四日(1872년 1월 4일)

발신 : 總理衙門

수신 : 吉林將軍 奕榕

十一月二十四日, 致吉林將軍奕榕函稱.

本月十六日, 據駐京俄使函稱, 琿春協領行文廓米薩爾, 將高麗人送回本籍一節. 其意以朝鮮民人逃入俄界, 無與中國之事, 今琿春協領欲送回朝鮮, 不知是何意見, 頗露有要脅之意. 查同治八年十月間, 准前富將軍文稱.

朝鮮難民紛紛逃入俄界, 兩國邊防最關緊要.

等因.

本處以既係朝鮮難民, 應令該國邊界官自行辦理, 當即行經禮部, 奏奉諭旨.

行文該國王, 嚴飭該國沿邊官弁, 約束民人, 毋許再有逃越, 以重關防.

等因. 欽此在案.

嗣於上年九月間, 又據富將軍咨稱.

該國並未領回一名, 仍見該國逃民紛投俄界.

且據琿春協領訥穆錦報稱.

往見俄國廓米薩爾, 曲爲開導, 令其將朝鮮民人悉數逐回. 詎廓米薩爾答稱, “此事不干琿春之事, 如欲將朝鮮民人悉數領回, 須包補糜費.”

等語。

本處又以該國廓米薩爾之辭，心甚叵測，事關邊界，不可不預爲之防。該琿春協領第知朝鮮民人不宜逃入俄界，須知逃越之時，只問其是否由中國境內行走。如由中國境內行走，則中國邊界官自宜嚴行禁止。若本由朝鮮界內逃入俄界，中國原可不問。該協領屢令朝鮮邊官領回，而該邊官答以未奉該國王之命。又屢向俄國邊官索要，而該邊官復以不干琿春之事回覆，且有包補糜費等語。是兩國各存意見，而中國反爲所愚。本處遙隔數千里，究未知朝鮮民人逃入俄界，是否由中國境內行走，又未便置之不問。緣又奏奉諭旨。

迅卽行令朝鮮，自行說法招來，並飭邊界各員弁，隨時稽查，如有朝鮮民人由中國地界逃至俄國者，卽行查禁。

等因。欽此。

當由本處恭錄行知復在案。本處於抄寄諭旨之時，復添入，‘中外交涉，惟自嚴邊禁，毋稍疏漏，以期常弭釁端。嗣後惟飭邊界官從嚴稽查，如有朝鮮民人由中國地界內逃入俄境者，立即攔阻，不令兩國有所藉口等語。’本處思患預防，早慮及俄國包補糜費等詞，將來必有藉端饒舌之處。今俄使來函雖未明露，然其意存要脅，已可概見。本處酌復之詞，惟以中國邊務，大有關繫，一切皆係中國自防邊界起見。今將與俄使來往信函抄錄寄關，貴將軍自當洞悉其情也。

除俟俄使函復到日，再行咨達外，先此布泐，卽頌勛祉。正繕函間，適接准貴將軍十月二十六日咨稱。

據黑河口巡員報稱。

見有俄國火船將高麗國人載赴匣子地方屯居。並見匣子迤東有新房五十一所，俱是朝鮮難民居住。此項難民既非由中國屬界潛越，自無從攔阻。且匣子地方亦屬俄界，又非姓城所轄。咨請查核。

等因。

查貴將軍此次來文，朝鮮難民越界，分別由中國與非由中國。其俄人所給該難民屯居之地，亦分別係俄界與中國境界，最爲得當。此後務希嚴飭貴屬，照此辦理，以安邊界，

而泯事端, 是爲至要. 又泐.²¹⁾

11월 24일, (총리아문에서) 吉林將軍 奕榕에게 다음과 같은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번 달 16일 駐京 러시아 使臣의 서한을 받았는데, 琿春協領이 러시아 界務官에게 문서를 보내 고려인을 본적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한 문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서한의 취지는 조선 백성이 러시아 지역으로 도망 오는 것은 중국과 관계없는데, 지금 琿春協領이 조선으로 돌려보내고자 하니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는 것으로, 자못 위협적인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조사해보건대, 同治 8년 10월경에 前 吉林將軍 富의 다음과 같은 문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조선 난민이 분분히 러시아 지역으로 넘어가는데, 양국의 邊防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 총리아문에서는 조선의 난민과 관련되므로, 조선의 변경관원으로 하여금 스스로 처리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즉시 禮部에 문서를 보냈고, (예부에서) 상주하여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조선국왕에게 변경주변 관원에게 엄격히 지시하여 백성을 단속하고 다시는 월경하지 않게 함으로써 국경방어를 중시하게 하라고 문서를 보내도록 하라.

뒤이어 작년 9월 무렵 다시 將軍 富의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

조선에서는 1명도 데리고 돌아가지 않았고, 조선에서 도망치는 백성들이 분분히 러시아 지역으로 몰려가는 것을 그대로 보기만 하고 있습니다.

또 琿春協領 訥穆錦이 다음과 같이 보고를 하였습니다.

러시아 界務官을 만나러 가서 곡진히 타이르며, 조선 백성을 전부 돌려보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界務官이 답하길, “이 일은 琿春과 관계없는 일입니다. 만일 조선인을 전부 돌려보내고 싶다면, 반드시 그동안 그들을 돌봐준 비용을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본 총리아문에서는 또한 러시아 界務官이 한 말로는 심중을 헤아리기 어렵지만, 사안이 邊界에 관련된 만큼, 미리 방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琿春協領은 다만 조선 백성이 러시아 지역으로 도망가서는 안 된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 모름지기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도망가 국경을

21) ‘륙(泐)’은 ‘륙(勒)’과 통하는 글자로, 새기거나 글을 쓴다(書寫)는 뜻이다.

넘을 때 그들이 중국 경내를 거쳤는지 하는 점만을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중국 경내를 거쳤다면 중국 변경관원이 자연히 엄격히 금지할 수 있습니다. 만일 조선지역을 거쳐서 러시아로 도망하였다면 중국에서 애초에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해당 協領은 여러 차례 조선 변경관원에게 (조선인들을) 데리고 돌아가라고 했지만, 해당 변경관원은 국왕의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답하였습니다. 또한 러시아 변경관원에게 요청했지만, 그는 琿春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답하면서, 동시에 돌봐준 비용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양국에 각기 의견이 있고 중국은 가운데서 우롱을 당하는 꼴입니다. 총리아문은 (월경지역과) 수 천리 떨어져 있으므로 조선 백성들이 러시아 지역으로 도망갈 때 중국 경내를 거치는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그렇다고 방치해두고 불문에 붙일 수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상주하여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니다.

신속히 조선으로 공문으로 보내, 스스로 방법을 강구하여 (도망한 백성을) 불러들이고, 아울러 각 변경관원에게 수시로 조사하여 만일 조선 백성이 중국 경내를 통해 러시아로 도망간 경우가 있다면 즉시 금지시키도록 지시하게 하라.

이 유지는 당연히 총리아문에서 삼가 초록하여 알린 바가 있습니다. 총리아문에서는 유지를 초록하여 보낼 때, “中外 교섭은 자연히 邊禁을 엄정히 하고 조금도 소홀함이 없게 함으로써, 언제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후 변경관원에게 지시하여 엄밀히 조사하고, 만일 조선 백성 중에 중국 경내를 거쳐 러시아로 도망가는 경우가 있다면 즉시 저지하여, 양국에 구실이 될 일을 만들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을 첨가하였습니다.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으로, 러시아에서 돌봐준 비용 등을 말한 것을 보면 앞으로 반드시 구실로 삼아 혀를 놀릴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 使臣이 보내온 서한에는 비록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위협하려는 의도가 있음은 그래도 대략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총리아문에서 답장으로 보낸 문안은 “중국의 변경사무와 아주 크게 관계되므로, 모든 것들은 중국이 변경을 지키기 위한 의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러시아 사신과 왕래한 서한을 초록하여 보내오니, 귀 장군은 마땅히 그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使臣의 답장이 도착하는 날을 기다려 다시 咨文을 보내는 것 외에, 우선 이렇게 글을 써서 인사를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 서한을 작성하고 있는 사이에 마침 귀 장군이 10월 26일에 보낸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黑河口 巡員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러시아의 윤선이 고려인들을 싣고 匣子 지역으로 가서 거주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울러 살펴보니, 匣子 동쪽에 새로 지은 건물 51채가 있는데 모두 조선 난민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난민들은 중국소속 지역을 거쳐 국경을 넘지 않았으므로 자연스럽게 저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한 匣子 지역은 러시아 영역에 속하고 三姓이 관할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검토해주시길 咨文으로 요청합니다.

생각건대, 귀 장군이 이번에 보내온 공문에서, 조선 난민이 넘어온 지역에 대해 중국을 거친 것과 거치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인이 해당 난민에게 제공한 거주 지역 또한 러시아 지역인지 중국 지역인지를 구분하고 있으니 매우 타당한 지적입니다. 이후 귀 장군께서 속하에게 엄히 지시하여 이렇게 처리해주심으로써 변계를 안정시키고 말썽거리를 없애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월경한인의 체포 및 저지(查拿及禁阻韓人越界)

(32) 문서번호 : 1-2-3-01 (41, 55b)

사안 : 월경한 촌민의 체포를 요청하는 조선국왕의咨文을 상주한 주접과 그에 대한 유지 및 원 주접을 초록하여 통보해주실 것을咨文으로 요청합니다(據咨轉奏韓王請查拏逃越村民摺, 錄旨及原奏咨請知照).²²⁾

날짜 : 同治六年二月十七日(1867년 3월 22일)

발신 : 禮部

수신 : 總理衙門

二月十七日, 禮部文稱.

主客司案呈.

本部據咨轉奏, 朝鮮國王請查拏逃越村民一摺. 於同治六年二月十七日具奏, 本日軍機處片交, 軍機大臣面奉諭旨.

22) 동치(同治) 5년(고종 3년) 12월 9일(1867.01.14) 조선국왕이 보낸咨文(「朝鮮國王咨文[請慶源犯越人等嚴飭押還]」)은 국사편찬위원회, 『동문회고(同文彙考)』 4(국사편찬위원회, 1978) 「원속편(原續編) 범월(犯越) 이(二) 아국인(我國人)」, 14b-15b에 실려 있다.

該衙門議奏.

欽此.

相應抄錄本部原奏, 及朝鮮國王原咨, 知照總理各國事務衙門查照辦理可也.

[原奏並朝鮮咨文, 詳十八日軍機交片.]

2월 17일, 禮部의 문서는 다음과 같았다.

主客司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문서를 올렸습니다.

예부에서는 월경한 촌민들을 잡아달라고 청하는 조선국왕의 咨文을 받아 대신 상주하였습니다. 동치 6년 2월 17일 上奏하여, 그 날로 軍機處에서 附片을 돌려 보내왔습니다. 이때 軍機大臣은 이와 더불어 직접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아문에서 논의하여 상주하라.

마땅히 예부에서 올린 원 상주문과 조선국왕의 원 咨文을 抄錄하고 총리아문에 알려 검토하고 처리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원 상주문과 조선의 咨文은 18일에 軍機處에서 돌려보낸 附片에 詳細하다.]

(33) 문서번호 : 1-2-3-02 (42, 56a)

사안 : 월경한 촌민의 체포를 요청하는 조선국왕의咨文을 예부에서 상주한 주접과 그에 대한 유지를 초록하여 통보합니다(禮部奏韓王請查拏逃越村民摺, 錄旨知照).²³⁾

날짜 : 同治六年二月十八日(1867년 3월 23일)

발신 : 軍機處

수신 : 總理衙門

二月十八日, 軍機處交片稱.

本日, 禮部具奏, 據咨轉奏摺二件, 軍機大臣面奉諭旨.

該衙門議奏.

欽此.

相應知照貴衙門欽遵可也.

2월 18일, 軍機處에서 다음과 같은 附片을 보내왔습니다.

오늘 禮部에서 (조선국왕의) 咨文을 받아 주접 2건을 대신 상주하였고, 軍機大臣이 직접 (황상의) 유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아문에서 논의하여 상주하라.

마땅히 귀 아문에 알려져 삼가 따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3) 사실상 바로 앞의 문서와 같은 내용인데, 앞의 것은 황제의 상유를 받은 군기처에서 예부로 통보하자, 예부에서 총리아문에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고, 이 문서는 군기처에서 직접 총리아문으로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다.

(34) 문서번호 : 1-2-3-03 (43, 56b)

사안 : 러시아인이 경계비 부근에서 건물을 지으려 하여 조선국왕이 대신 상주해달라고 요청한 咨文에 따라 예부에서 대신 상주한 주접과 그에 대해 받은 유지(片交俄人欲在界牌近處築室, 朝鮮國王請代爲轉奏一摺, 所奉諭旨).

날짜 : 同治六年二月十八日(1867년 3월 23일)

발신 : 軍機處

수신 : 總理衙門

二月十八日, 軍機處交出全慶抄摺[詳見密檔].

草目 : 具奏俄國人欲在界牌近處築室,²⁴⁾ 朝鮮國王請代爲轉奏一摺, 抄錄原奏, 恭錄諭旨咨呈由.

24) '界牌'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康熙 28(1689)년 청·러시아 사이의 '尼布楚界約'으로 세워진 경계비이다. 이 조약문의 말미에 "중국·러시아·라틴 문으로 이 조약문을 새겨 兩國邊界에 두어 영원히 界牌로 삼는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中俄尼布楚界約」, 朱寶 等編, 『中國對外條約辭典(1689-1949)』(吉林教育出版社, 1994), p.807). 하지만 이때 양국 경계는 두만강 하구지역이 아니었으므로 본문의 界牌와 맞지 않는다. 따라서 두만강 하류 지역이 중국과 러시아의 경계로 설정된 다음에 세워진 것을 찾아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1860년에 체결된 「中俄北京條約」에 관련된 조항이 나온다. 즉 北京條約의 기초가 된 「天津條約」 제9조에서는 지도를 그리고 紅色으로 교계지역을 나누는데, 지도 위에는 러시아알파벳으로 阿·巴·瓦에서 啦·薩·土·烏까지를 표기"하기로 하였고, "계비를 세운 다음 영원히 바꾸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朱寶 等編, 위의 책, p.820). 그러나 오늘날 남아 있는 界牌는 1886년 吳大澂에 의해 다시 세워진 것이다. 1880년 이후 吉林督辦으로 일하면서 이 지역의 '建設'에 큰 공을 세운 그가 1885년 이후 琿春副都統 依克唐阿 등과 함께 다시 경계를 조사하고, 러시아 측과 담판하여 중·러 교계지역에 土字牌 등을 건립하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오늘날 琿春의 두만강 하구에는 그를 기념하기 위한 石刻이 최근 세워졌다.

2월 18일, 軍機處에서 (禮部尙書) 全慶의 주접을 초록한 것을 보내왔습니다[자세한 내용은 密檔을 참고할 것].

내용 요약 : 러시아인이 중국·러시아 경계비 근처에 건물을 지으려 하여 조선국왕이 대신 상주해달라고 청한 咨文 1건을 상주하였으며, (이에) 원 상주문을 초록하고, 유지도 삼가 초록하여 알려드린다는 내용.

(35) 문서번호 : 1-2-3-04 (45, 57b)

사안 : 월경한 촌민의 체포를 요청하고, 러시아인이 경계비 부근에서 건물을 지으려 한다고 알려진 조선국왕의 咨文에 대해, 吉林將軍에게 조사·처리를 지시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朝鮮國王請拏逃越村民及俄人欲在界牌近處築室, 請飭吉林將軍查辦).

날짜 : 同治六年二月二十二日(1867년 3월 27일)

발신 : 總理衙門

수신 : 同治帝

二月二十二日, 本衙門遞正摺[詳見密檔].

草目 : 議覆轉奏, 朝鮮國王請拏逃民, 俄人欲在界牌附近築室, 請飭吉林將軍查辦由.

2월 22일, 총리아문에서 다음과 같이 상주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密檔을 볼 것].

내용 요약 : 조선국왕이 逃民들을 잡아달라고 청하고, 러시아인이 경계비 부근에 건물을 지으려 하니 吉林將軍에게 명하여 조사·처리해달라고 청한 것을 대신 상주하자, 논의해서 답변하라는 유지가 내려왔는데, 이에 대해 총리아문에서 답변으로 상주를 올린다는 것.

(36) 문서번호 : 1-2-3-05 (46, 58a)

사안 : 월경한 백성의 체포를 요청하고, 러시아인이 경계비 부근에서 건물을 지으려한다고 알려진 조선국왕의 咨文을 대신 상주하고, 유지 및 원 주점을 초록하여 통보합니다
(具奏朝鮮國王請拏逃越村民及俄人欲在界牌近處築室摺, 錄旨及原摺知照).

날짜 : 同治六年二月二十四日(1867년 3월 29일)

발신 : 總理衙門

수신 : 禮部

二月二十四, 行禮部文[詳見密檔].

草目 : 具奏朝鮮國王請拏逃民, 俄人欲在界牌築室一摺, 恭錄諭旨, 抄錄原奏知照由.

2월 24일, 禮部로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密檔을 볼 것].

내용 요약 : 조선국왕이 逃民들을 잡아달라고 청하고, 러시아인이 경계비 부근에 건물을 지으려 하니 吉林將軍에게 명하여 조사·처리해달라고 청한 것을 대신 상주하자, 유지가 내려왔는데, 총리아문에서 원 상주문과 유지를 초록하여 예부로 보낸다는 것.

(37) 문서번호 : 1-2-3-06 (49, 59b)

사안 : 예부에서 咨文에 의거하여 대신 상주하여, “해당 아문에 알리라”는 유지를 받았습니
다(禮部據咨轉奏摺, 奉旨 該衙門知道”).

날짜 : 同治六年三月初一日(1867년 4월 5일)

발신 : 軍機處

수신 : 總理衙門

三月初一日, 軍機處交片稱.

本日, 禮部奏據咨轉奏摺一件, 軍機大臣面奉諭旨.

該衙門知道.

欽此.

相應知照貴衙門欽遵可也.

3월 1일, 軍機處에서 다음과 같은 附片을 보내왔습니다.

오늘 禮部에서 咨文을 받아 대신 주접 1건을 상주하였고, 軍機大臣이 직접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아문에 알리라.

마땅히 귀 아문에 알려져 삼가 따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8) 문서번호 : 1-2-3-07 (52, 62b)

사안 : 조선의 변계 주변 각 관원에게 지시하여, 월경하는 중국인을 엄히 단속케 하라(命沿朝鮮邊界各官, 嚴拏越界華民).

날짜 : 同治六年三月初九日(1867년 4월 13일)

발신 : 同治帝

수신 : 總理衙門

三月初九日, 軍機處交出同治六年三月初八日奉上諭.

總理各國事務衙門奏, 遵查朝鮮與俄人交兵情形一摺. 朝鮮國年十二月間有匪類渡江肆擾, 並俄人疊赴該處擾累, 立界牌, 投書契各情. 朝鮮臣服我朝, 最爲恭順, 越界之禁, 定例綦嚴. 上年十月間, 既有中國人數百名, 渡江搶掠, 不過月餘, 復有匪類過三洞山邊之事. 恐係中國游民, 偷越爲匪. 此等不法匪類, 經朝鮮官軍擊斃, 實屬罪所應得. 而中國亦當申明例禁, 認真查拏, 方爲妥協. 卽著富明阿·富爾孫, 嚴飭沿邊各卡員弁, 晝夜梭巡, 遇有偷越赴朝鮮民人, 卽行嚴拏懲辦. 並著按照朝鮮國王來咨, 詳查覆奏, 不准稍涉含混, 具俄人築屋之處, 究在河處界牌境內, 並著禮部轉咨朝鮮國王, 據實登覆, 以憑考覈. 嗣後中國匪徒, 私越邊境, 赴朝鮮搶掠者, 該國不妨拏辦, 以遏兇萌. 現在朝鮮多事之秋, 不得不從權辦理, 以示體恤也.

欽此.

3월 9일, 軍機處에서 동치 6년 3월 8일에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시다.

총리아문에서 지시에 따라 조선이 러시아인과 교전한 상황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상주 하였다. 조선에서는 작년 12월 비적의 무리가 두만강을 건너가 소요를 일으키고, 아울러 러시아인도 누차 그곳에서 소동을 일으키면서 경계비를 세우고 공문을 제출한 일이 있었다. 조선은 우리에게 臣服하여 가장 공순하고, 또한 월경 금령도 매우 엄격한 定例가 있다.

작년 10월중에 중국인 수백 명이 강을 건너가 약탈한 사건이 있는 지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또 비적들이 三洞山 주변을 넘어가는 사건이 일어났다. 아마도 중국의 游民이 몰래 넘어가 비적이 된 자들일 것이다. 법을 어긴 이 도적들은 조선 관군에 의해서 격퇴되어 죽었으니, 실로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았다. 하지만 중국에서도 또한 금령을 분명하게 밝히고 엄밀하게 단속해야만, 비로소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富明阿와 富爾孫 등은 변경지대 각 초소 관원들에게 주야로 순찰을 돌도록 엄히 지시하여, 만약 몰래 조선으로 월경하려는 백성이 있으면 곧바로 체포하여 처벌하게 하도록 하라. 또한 조선국왕이 보낸 咨文에 따라서 상세히 조사하고 다시 상주하게 하되, 조금도 모호한 바가 있어서는 안 된다. 러시아인들이 건물을 지은 곳이 도대체 어떤 경계비 안인지, 禮部로 하여금 조선국왕에게 다시 咨文을 보내서 사실대로 회신케 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라. 앞으로 중국의 비적 무리가 몰래 조선으로 월경하여 약탈을 하면, 조선에서 체포하여 처리함으로써 악의 씨앗을 예방해도 좋다. 지금 조선은 다사다난한 때이니, 부득불 임의로 처리하여 體恤의 마음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상.

(39) 문서번호 : 1-2-3-08 (56, 66b)

사안 : 조선국왕이 월경한 촌민의 체포를 재차 요청한 咨文을 대신 상주한 주접에 대한
유지를 초록하여 통보합니다(錄送轉奏朝鮮國王覆請查拏逃越村民摺旨知照).

날짜 : 同治六年五月初七日(1867년 6월 8일)

발신 : 禮部

수신 : 總理衙門

五月初七日, 禮部文稱.

主客司案呈.

所有本部抄錄朝鮮國王咨覆原文轉奏一摺, 於同治六年五月初七日具奏. 本日, 軍機處
片交. 軍機大臣面奉諭旨.

該衙門知道.

欽此.

相應抄錄該國王原文, 及本部原奏, 知照總理各國事務衙門可也.

[原奏, 詳初八日軍機交片]

5월 7일 禮部에서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主客司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문서를 올렸습니다.

예부에서 조선국왕이 회답한 咨文 원문을 초록하여 동치 6년 5월 7일 상주하였습니다. 오늘
軍機處에서 附片을 보내왔는데, 軍機大臣은 직접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아문에 알리라.

마땅히 조선국왕의 咨文 원문과 예부의 상주문을 초록하여, 총리아문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원 상주문은 8일 軍機處에서 돌려보낸 附片에 詳細하다.]

(40) 문서번호 : 1-2-3-09 (57, 67a-70a)

사안 : 조선국왕이 월경한 촌민의 체포를 요청하면서, 아울러 러시아인이 경계비 부근에서 건축을 하려 하므로 吉林將軍에게 지시하여 조사·처리하게 해달라라고 요청한 咨文 (朝鮮國王咨請查拏逃越村民, 並俄人欲在近界牌處築室, 請飭吉林將軍查辦).

첨부문서 : 1. 조선국왕의 원 咨文(朝鮮國王原咨)

날짜 : 同治六年五月初八日(1867년 6월 9일)

발신 : 軍機處

수신 : 總理衙門

五月初八日, 軍機處交出, 禮部尚書全慶等摺稱.

爲 據咨轉奏 事.

准盛京禮部²⁵送到朝鮮國王咨文一件. 臣等公同閱看, 係因本年二月總理各國事務衙門具奏, “朝鮮國王請查拏逃越村民, 並俄人欲近界牌築室, 請飭下吉林將軍, 確查辦理”等因. 該國王接准部文, 咨覆轉奏. 謹抄錄原咨, 恭呈御覽.

爲此, 謹奏.

同治六年五月初七日, 軍機大臣奉旨.

[]

欽此.

(1) 照錄朝鮮原咨.

朝鮮國王，爲咨覆事。

同治六年三月十八日，承准禮部咨。

節該主客司案呈。

准總理各國事務衙門謹奏。

爲遵旨議奏事。同治六年二月十四日，由軍機處交出吉林將軍富明阿等奏，朝鮮國人前往俄國吉心河墾地等因一摺，軍機大臣奉旨。

該衙門知道。

欽此。

臣等正擬繕摺具奏，請飭查辦間，二月十八日，復由軍機處交出，禮部據咨轉奏，朝鮮國王咨請查拏逃越村民一摺，朝鮮國王咨呈俄羅斯人欲在界牌近處築室一摺。二月十七日，軍機大臣奉旨。

該衙門議奏。

欽此。欽遵。

查富明阿原奏內稱。

據查江恩騎尉額爾蘇勒等報稱。

本年正月初六日，巡至琿春河口地方，瞥見朝鮮國人，男婦女子二百餘名，坐車逕奔正東。趕向查詢何往，內有微通漢語者聲言，“現今俄羅斯招引我國人數千名，在吉心河開墾地畝。我國屢次挑兵，年景歉收，課稅加倍，交納無力。實難度日，無奈棄家逃出度命。”

其時人數衆多，吉心河又屬俄國，若輒行阻止，恐滋事端。逕奔吉心河去訖。等因。

又查朝鮮國王咨文內稱。

同治五年十月二十五·六等日，有該國慶源府所管之阿山鎮白顏村居民尹才官等九名，先後越江逃去。三十日，上國人數百爲羣，渡江而來，在逃諸人之妻孥·財產·牛馬之留在本村者，盡爲搬運，村人金應哲等六名亦全家隨往。村民防禦之

際，爲流丸被傷者三人，江邊防守之幕，並被燒火三次。冒犯諸人，理宜一一查拏，而疆域所界，不敢擅便。煩乞禮部詳照轉奏，另飭守邊之官，申明條例，右項諸人，並爲押還。

又稱。

十一月二十日，異樣人十二名，來到慶興府東門外，一人以本國語音喝言，“俄羅斯將築室於界牌近處，恐貴府驚疑，我奉都統書，先來通知。”仍於當日，渡江而去。

各等因。

臣等查，同治三年六月初十日，據吉林將軍景綸咨報。

內地奸民張保汰，暗携地圖，赴吉心河地方，潛投俄人，欲開銀穴。曾見該處有高麗窩鋪四處，內有高麗男婦五十餘人，在吉心河開墾地畝。

等語。

嗣於四年十二月二十八日，復據吉林將軍德英咨報。

俄人招引朝鮮國人，比先益多，現在吉心河地方，聚有男婦一千數百人。該處山坡曠野，俱經高麗開墾。近日又經姜姓民人，崔姓高麗人，同引俄官，抵至圖們江口，上下遙望朝鮮地勢，繪畫地圖。又屢向朝鮮地方官，約求通商，未知曾否應允。

等因。前來。

當經臣等咨覆該將軍，“以俄人招引朝鮮開墾等處，如在俄國本境，祇有加意防範，各管各境，自未便越界往限，如在中國內地，自應按約阻止”等因，各在案。

茲據富明阿奏稱。

詳查咸豐十一年分界圖載，吉心河在紅線迤東，係爲俄界。是俄國開墾，在伊本境，中國固難越境往阻。而朝鮮居民願赴俄界，開墾地畝，應由朝鮮飭禁，中國亦未便率爾禁止。況俄國招引朝鮮居民，人至數千，時至數載。吉林巡江官弁，僅見此次二百餘人渡江。是其人民繞道前赴俄界，已非一次。朝鮮自宜早伸禁令，以免貽患將來。

至朝鮮來文所稱，“上國人數百爲羣，渡江而來，搬運逃人妻孥財產”一節，臣等查，朝鮮慶源府與琿春，隔江遙對，誠恐內地奸民，爲人所引，貪利助虐，抑或爲朝鮮逃人所邀，藉助聲援，均未可知。惟事關邊徼，憑陵屬國，必須徹底根究。相應請旨飭下吉林將軍，確切查明，是否果有中國民人，越界搬運該國逃人財產，並界牌近處築室結屋，係在何國地界。以及防禦之人被傷，防守之幕被燒，是否係中國人所爲，務須詳細確查，據實覆奏，毋許稍有迴護。並嚴飭查江各卡官弁，認真嚴密稽查，不准中國及朝鮮人民，彼此私行越界，以清疆域，而重邊防。至朝鮮所請將右項諸人，並爲押還，一併請旨飭查，如在中國地內，卽令該將軍，派委官弁，解赴朝鮮，交該處邊界官辦理。所有臣等遵旨議奏緣由，理合恭摺具陳。是否有當，伏乞皇太后·皇上，聖鑒訓示。謹奏一摺。

奉旨。

依議。

欽此。

抄錄原奏，咨行禮部查照。

等因。前來。

相應抄錄該衙門原奏，知照朝鮮國王查照辦理可也。

等因。

奉此。除將禮部咨內辭意一一承領，而小邦近與俄人相關因由，並畫隨事申咨，冀微寵靈。卽是小邦盡誠事大之義，不敢自阻於視同內服之恩者也。²⁶⁾ 小邦北地與上國地界，隔江遙對，犯越人口，理應往接於上國地界。故所以有另飭邊官，押還本境之請。而伊時搶掠之類，其或貪利財產，成羣剽劫，亦或被人引誘，藉助聲援，並未可知。冒禁越界，憑陵屬國，揆以典憲，不應饒貸。故所以有申嚴厲禁，永靖邊圉之請矣。今承咨辭，奉有徹底根究確切查明之諭，感載之極，不省所謝。第惟邊民之恣意犯越，實由小邦不能致慎於疆場之事。而猶復輒陳情形，欲望皇慈之照察者，豈不知其萬萬悚惕也。惟我大朝，優恤偏邦，申畫疆理，昔日訓戒越境窩鋪之亟撤，莽牛哨·地隙汛之勿設。²⁷⁾ 何莫非杜絕奸闖，思患預防之至仁大德！則小邦之憑仗遵守，保有今日，洪恩所覃，河海

莫量.

茲者, 遐陬速頑之氓, 譬不畏法, 逋播轉徙者, 數至數千, 數載之頃, 全未糾檢. 自顧漸惶, 益無所容措. 而尚賴我皇朝清疆域重邊防之政, 俾小邦將有以飭勵申嚴, 獲這大戾. 此小邦君臣之所以日夜攢祝, 而凡有疾痛悶阨, 不憚於奔走呼籲者也. 煩乞部堂諸大人, 將此情由轉奏天陛, 不勝至願大幸. 爲此, 合行咨覆, 請照驗施行.

5월 8일 軍機處에서 禮部尙書 全慶 등의 다음과 같은 주접을 보내왔습니다.

조선국왕의 咨文을 받아 대신 상주합니다.

盛京禮部에서 보내온 조선국왕의 咨文 1건을 받았습니다. 臣等이 함께 검토해보니, 올해 2월에 조선국왕이 월경한 촌민들을 체포해달라고 청한 것, 그리고 러시아인이 경계비 근처에 건물을 지으려 하니 吉林將軍에게 명하여 확실하게 처리해달라고 청한 내용 등을 총리아문에서 상주한 것에 대해서, 조선국왕이 예부의 咨文을 전해 받은 후 답장 咨文을 보내 회답하니, 그것을 대신 상주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삼가 원 咨文을 초록하여, 열람하실 수 있도록 올리는 바입니다. 이에 삼가 상주하는 바입니다.

동치 6년 5월 7일, 軍機大臣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25) 盛京은 後金과 淸의 都城으로 오늘날의 遼寧省 瀋陽市이다. 1625년 太祖 누르하치가 도성을 이곳 沈陽으로 옮겨 皇城을 건설하기 시작하였고, 1634년 太宗 홍타이지(皇太極)가 성경이라 이름을 바꾸었다. 順治元年(1644) 北京으로 수도를 옮김에 따라 盛京은 留都가 되었지만, 戶·禮·兵·刑·工 등 五部和 各部侍郎을 總管인 內大臣(乾隆 12년 盛京將軍으로, 光緒 33년 奉天巡撫로 바뀌었다)을 두어 留守하게 하였으며, 奉天이라는 이름도 추가되었다.

26) 내복(內服)은 왕기(王畿) 이내의 지방을 가리켜, 외복(外服)과 상대되는 말이다. 굳이 따지자면 ‘내지’와 비슷한 뜻이라 하겠다.

27) 와포(窩鋪)는 불법 이주·개간민의 소굴이나 움집을 가리키며, 망우초(莽牛哨)·지극신(地隙汛)은 압록강·두만강 북쪽에 설치된 청조의 초소 및 부대를 가리킨다. 康熙·雍正·乾隆 때 이러한 움집이나 초소·부대의 설치에 조선의 항의로 모두 중국 측에서 양보하여 철수한 바가 있는데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가리킨다. 이에 대해서는 배우성·구범진 역, 『국역 「同文彙考」 疆界史料』(동북아역사재단, 2008)에 관련 사료와 번역문이 실려 있다.

[유지의 내용은 원문에 빠져 있다.]

이상.

(1) 조선국왕의 원 咨文

조선국왕이 咨文을 보내 회답합니다.

동치 6년 3월 18일 다음과 같은 禮部의 咨文을 전해 받았습니다.

생략. 主客司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문서를 올렸습니다.

총리아문에서 다음과 같은 주접을 받았습니다.

유지에 따라 논의하여 상주합니다. 동치 6년 2월 14일, 軍機處에서 吉林將軍 富明阿 등이 올린, 조선인이 러시아의 吉心河로 가서 땅을 개간한다는 내용의 주접 1건을 보내 왔는데, (이에 더불어) 軍機大臣은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아문(총리아문)에 알리라.

臣等이 마침 주접을 작성하여 이 문제의 조사·처리를 지시해달라고 奏請하려던 차에, 조선국왕이 월경한 촌민들을 잡아달라고 보내 요청한 내용의 咨文, 그리고 러시아인이 경계비 근처에 건물을 지으려 한다고 알려진 咨文을 예부에서 대신 상주한 주접 2건을 軍機處에서 2월 18일에 다시 (총리아문에) 보내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2월 17일에 軍機大臣은 이미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아문에서 논의하여 다시 상주하라.

살펴보건대, 富明阿의 상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查江恩騎尉 額爾蘇勒 등이 다음과 같이 보고해 왔습니다.

올해 1월 6일, 순찰하다 琿春의 (두만강)河口지방에 이르렀을 때, 조선인 남녀 200여 명이 수레를 타고 급히 正東方으로 달러가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뒤쫓아가서 어디로 가느냐고 심문하였더니, 그중에 중국어를 약간 하는 자가 말하기를, “지금 러시아에서 조선인 수천 명을 불러들여서 吉心河에서 땅을 개간하고 있습니다. 조선에서는 계속해서 징병을 하고 있고, 한 해 농사는 흉년이 들었는데, 세금은 배로 늘어나서 이를 납부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살아가기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집을

버리고 도망쳐 살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수가 많았고, 게다가 吉心河는 러시아에 속하므로 자칫 저지했다가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吉心河 쪽으로 서둘러 가버렸습니다. 또 살펴보건대, 조선국왕이 보낸 咨文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동치 5년 10월 25일과 26일, 조선 慶源府 관할 阿山鎮 白顔村의 주민 尹才官 등 9명이 전후로 강을 건너 도망쳤습니다. 30일에는 중국인 수백 명이 무리를 이루어 강을 건너와서 본 마을에 남아 있던 도망자들의 처자식과 재산, 牛馬 등을 전부 가져갔고, 마을 사람 金應晫 등 6명도 온 집안이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게다가)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막던 중, 3명이 유탄에 맞아 부상을 당했고, 강변을 지키기 위한 막사도 세 차례에 걸쳐 불에 탔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범인들을 마땅히 하나하나 조사해서 잡아들여야 하겠지만, 국경이 구분되는 곳이라 감히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禮部에서 (이 내용을) 그대로 황상께 대신 상주해주시어, 변경을 지키는 관원들에게 따로 지시하여 범규를 분명히 하고 위의 여러 범인들도 압송하여 돌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었습니다.

11월 20일에는 이상한 외모의 사람들 12명이 慶興府 東門 밖으로 왔는데, (그중) 한 사람이 우리말로 소리 높여 이르기를, “러시아에서 경계비 근처에 건물을 지으려 하는데, 貴府에서 놀라고 의아해할 것 같아서 제가 都統의 공문을 받고 먼저 와서 알립니다.”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날로 강을 건너 돌아갔습니다.

臣等이 살펴보건대, 동치 3년 6월 10일에 吉林將軍 景綸이 다음과 같이 咨文으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內地의 奸民 張保汰가 몰래 지도를 가지고 吉心河 지방으로 가서 러시아인들을 끌어 들여 銀鑛을 열고자 하였습니다. 일찍이 그곳에는 고려인의 움집 네 곳을 보았는데, 그 안에는 吉心河에서 땅을 개간하고 있는 조선인 남녀 50여 명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동치) 4년 12월 28일에는 吉林將軍 德英이 다음과 같이 咨文을 보내 보고한 적도 있습니다.

러시아들이 조선인을 불러들이는 것이 이전보다 훨씬 늘어나 지금 吉心河 지방에는 (조선인) 남녀 1천 수백 여 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곳의 산비탈과 들판은 모두 조선

인들에 의해 개간되었습니다. 근래에는 또 姜씨 성의 중국 백성과 崔씨 성의 조선인이 함께 러시아의 관원을 인도하여 圖們江 입구에 이르러서는, (강의) 상류와 하류를 다니며 조선의 지세를 살피고 지도를 그렸습니다. 아울러 조선 지방관에게 대략 통상을 요구하였는데, (조선에서) 응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臣等은 해당 將軍에게 咨文으로 답장을 보내, 러시아인이 조선인을 불러들여 개간하고 있는 곳이 만약 러시아의 경내라면, 단지 주의하여 방비하면서 각기 자기 경내만 관리하면 될 뿐이고 국경을 넘어가 제지하기는 곤란하며, 만약 (그곳이) 중국 내지라면, 응당 협약에 따라서 저지해야 한다고 알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富明阿의 다음과 같은 상주문을 받았습시다.

합풍 11년의 分界地圖를 상세히 살펴보니, 吉心河는 紅線의 동쪽에 있어, 러시아의 경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번 러시아의 개간은 자기 경내에서 하는 것이니, 중국에서 월경하여 저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선 백성들이 러시아 경내로 가서 땅을 개간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조선에서 금지해야지, 중국 또한 쉽사리 금지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에서 조선 백성을 불러들인 것이 그 수가 수천 명에 이르고, 이미 수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강변을 순찰하는 吉林 관원은 이번에 200여 명이 강을 건너는 것을 봤을 뿐입니다. 이는 조선 백성이 길을 돌아 러시아 경내로 간 것이 이번 한 번뿐이 아니라는 뜻이니, 조선에서는 마땅히 신속히 금령을 밝혀 장래에 후환이 미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조선에서 보낸 공문에 “중국인 수백 명이 무리를 이루어 강을 건너와서 도망자들의 처자식과 재산을 가져갔습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臣等이 살펴보건대 조선의 慶源府는 琿春과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여 내지 奸民이 남에 이끌려 이익을 좇아 악행을 도왔던지, 아니면 조선 도망자들의 요청으로 그들을 도와주었는지, 모두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사안은 변경에 관계된 것으로서 속국을 침해한 일이니, 반드시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응당 吉林將軍에게 지시하여 정말로 중국 백성들이 국경을 넘어가 朝鮮 도망자들의 재산을 가져왔는지, 그리고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데 어느 나라의 경계인지를 분명히 조사하여 밝히게 해야 합니다. 아울러 방어하던 사람이 부상을 당하고 방어를 위해 세운 막사가 불탄 것이 중국인의 소행

인지 아닌지 상세하게 확실히 조사하여 사실대로 회답하되, 조금이라도 두둔하는 바가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강변을 지키는 각 초소 관원들에게 충실히 엄밀하게 단속하여 중국과 조선 백성이 피차간에 몰래 월경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강역을 분명히 하고 邊防을 튼튼히 하도록 엄격히 지시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에서 위의 범인들을 전부 압송하여 돌려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만약 중국 내지에 있다면 곧바로 해당 將軍에게 지시하여 文武官員을 파견해서 조선으로 압송하여 그곳 변경관원에게 넘겨 처리하도록 지시하는 유지를 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臣等이 유지에 따라 논의하고 상주하는 연유를 삼가 주접을 갖추어 아뢰니, 적절한지 아닌지 皇太后와 皇上께서 살펴보시고 지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주접 1건을 상주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논의한대로 하라.

원 상주문을 초록하여 禮部로 咨文을 보내니, 참고하십시오.

(이상과 같은 咨文을 받았으므로 예부에서는) 마땅히 해당 아문의 원 상주문을 抄錄하여 조선국왕에게 알리니, 그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예부의 咨文을 받았으므로 조선국왕은) 禮部 咨文의 내용을 하나하나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선에서 근래 러시아인과 서로 관계한 내용도 아울러 순서대로 咨文으로 보고하니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곧 조선이 事大의 뜻을 다하는 것이며, 감히 內服과 같이 대해 주시는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것일 터입니다. 조선 북쪽 땅은 중국 경계와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어, 犯越한 자들은 응당 중국 경내로 가서 데려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방의 관원에게 따로 지시하여 (범인들을) 압송하여 본국 경내로 돌려 보내주실 것을 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약탈을 한 무리들이 혹 이익과 재산을 탐하여 무리를 지어 침탈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자들에 의해 유인되어 도움을 준 것인지는 결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금령을 어기고 월경하여 속국을 침탈한 것은 법도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령을 다시 엄히 펼쳐 변경 지역을 안정시켜주시도록 청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咨文을 통해 철저히 밝혀내고 확실하게 조사하라는 유지를 받들게 되었으니, 정말로

감격하여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변경 백성이 함부로 월경한 것은, 실로 小邦이 국경 문제에 신중함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걸핏하면 상황을 아뢰며 황상의 어진 덕으로 살피주시길 바랐으니, 어찌 정말로 황송함을 몰라서이겠습니까? 우리 大朝께서 偏邦을 걱정해주시어 경계를 명확히 해주셨고, 또 과거에는 국경 부근에 세워진 주민의 움집을 모두 신속히 철거하게 해주셨고, 초소나 수로 방어부대(水路汎防)를 세우지 말라고 훈계해주셨습니다. 이 어찌 간악한 자들을 두절하고 (장래의) 근심거리를 생각하시어 예방해주시는 지극한 大德이 아니겠습니까! 小邦은 이러한 것을 그대로 의존하면서 지켜 오늘날까지 보존할 수 있었으니, 그야말로 바다처럼 넓은 은혜를 입은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변경의 간악한 백성이 망령되어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아나 이주해버린 수가 수천 명에 이르는데, 몇 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잡아들여 단속하지 못하였습니다. 스스로 돌아보기에 정말로 부끄러울 따름이며, 더더욱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우리 皇朝에서 강역을 명확히 해주시고 변경 방어를 튼튼히 해주시는 정치를 펼쳐주시어, 小邦은 엄격한 법령을 다시 펼침으로써 대죄를 짓는 것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小邦의 君臣이 밤낮으로 함께 기리는 바로서, 아픔과 번민이 있을 때마다 달려가 도움을 청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禮部의 여러 대신께서 이러한 내용을 황상께 대신 상주해주신다면, 큰 다행이겠습니다. 이에 마땅히 咨文을 보내 회답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1) 문서번호 : 1-2-3-10 (58, 70b)

사안 : 예부에서 조선국왕의 咨文을 받아 대신 상주한 주접에 대해 유지를 받았으므로 삼가
초록하여 알립니다(禮部據朝鮮國王咨轉奏一摺, 奉旨恭錄知照).

날짜 : 同治六年五月初八日(1867년 6월 9일)

발신 : 軍機處

수신 : 總理衙門

五月初八日, 軍機處片交本日禮部據咨轉奏一摺.

軍機大臣面奉諭旨.

該衙門知道.

欽此.

相應傳知貴衙門欽遵可也.

5월 8일, 軍機處에서 禮部에서 이 날 咨文을 받고 대신 상주한 주접 1건의 附片을 보내왔습니
다. 軍機大臣은 이와 더불어 직접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아문에 알리라.

마땅히 귀 아문에 알리니 삼가 따라주십시오.

(42) 문서번호 : 1-2-3-11 (59, 71a-75b)

사안 : 조사해보니, 변경지역 중국인이 무리를 지어 조선에서 말뽕을 부리거나, 조선 월경민을 구류한 일이 없습니다(查沿邊華民竝無結夥侵擾朝鮮及羈留該國逃人情事).

날짜 : 同治六年五月十六日(1867년 6월 17일)

발신 : 吉林將軍 富明阿

수신 : 總理衙門

五月十六日, 吉林將軍富明阿文稱.

本年五月十一日, 本衙門由驛具奏.

爲 查明朝鮮國逃人, 並無內地游民羈擄情事, 謹由驛覆奏, 繪圖貼說, 恭呈御覽 事. 竊查前准總理各國[事務衙門]·禮部等衙門先後咨稱, 具奏朝鮮國王咨請查拏逃越村民, 俄人欲在界牌築室等因, 各一摺恭錄諭旨, 行令奴才等欽遵辦理前來. 奴才等檢查原摺內稱.

朝鮮國慶源府所管河山鎮白顏村居民尹才官等九名, 先後越江逃去. 有上國人數百爲羣, 渡江而來, 在逃諸人妻孥·財產·牛馬之留在本村者, 盡爲搬運, 村人金應哲等六名, 亦全家隨往. 村民防禦之際, 爲流丸被傷者之人, 江邊防守之幕, 並被燒火三次. 冒犯諸人, 理宜查拏, 而疆域所界, 不敢擅便. 煩乞轉飭守邊之官, 申明條例, 將右項諸人, 並爲押還.

又稱.

有異樣人十二名, 來到慶興府東門外, 一人以本國語音喝言, “俄羅斯將築室於界牌近處, 恐貴府驚疑, 我奉都統書, 先來通知.” 仍於當日, 渡江而去.

等情。

及准聲覆。查列歷任將軍咨報邊夷情形並稱。

復查朝鮮慶源府，與琿春隔江遙對，誠恐內地奸民，爲人所引，貪利助虐，抑或爲朝鮮逃人所邀，藉助聲援，均未可知。惟事關邊徼，憑陵屬國，必須澈底根究，查明是否果有中國民人，越界搬運該國逃人財產，並界牌近處築室結屋，係在何國地界。以及防禦之人被傷，防守之幕被燒，是否係中國人所爲，務須詳細確查，據實覆奏，毋許稍有迴護。並嚴飭查江各卡官弁，認真嚴密稽查，不准中國人及朝鮮人民，彼此私行越界。至朝鮮所請將右項諸人，並爲押還，此項人如在中國地內，卽令該將軍，派委官弁，解赴朝鮮，交該處邊界官辦理。

各等因。

准此。奴才等因思我皇上撫綏萬方，務使各國其地，斷不令越界滋擾，遺害鄰邦，且朝鮮臣服我朝，最爲恭順，當彼多事之秋，尤應加意體恤，以期仰副國家懷柔遠人之至意。奴才等當於本年三月先後奉文之日起，疊次咨劄寧古塔副都統·琿春協領，確切詳查，據實咨報。“所有上年結夥成羣，越界搬運朝鮮國逃人財產，是否實係中國人等，如果屬實，務要查明此係何項人，共有若干名，平日散居何處，有事在何處嘯聚，能否聚殲，或設法驅拏，並界牌近處，有無其人築室結屋，及築室結屋者，均係何項人，在於何國地界，又朝鮮防禦之人，是否經何項人所傷，防守之幕，係又被何項人燒火，果有其事，是否均係中國人所爲，抑或實由異樣人藉端，及有奸民羈留朝鮮之人，現在何處，一面攫獲此項奸匪，一面將被羈之朝鮮逃人，押還該國，交該界官。”各等因，咨劄寧古塔副都統·琿春協領等，遵查文內事理，趕緊由六百里據實詳細報明，毋許迴護，致干參辦去後。

乃自二三月以來，游騎紛紛東竄，金匪相繼勾釁。其寧古塔·琿春在防兵練，悉經各官弁分帶防剿，轉致應查前項事件，路旣梗阻，官亦不暇他顧，是以稽遲。迨經奴才等疊次嚴催，於五月初七日，始據寧古塔副都統烏勒興阿，轉據佐領松恒稟報。

職於會同琿春派出之防禦永祥，帶通曉兩國語言弁兵，先在圖門江邊接界一帶，細訪所屬界內，並無民籍。該處雖有素習種地之人，亦甚無幾，尚無不法。其餘皆

是旗戶。訪查幾遍，實無越界搬運朝鮮逃人財產情事。現在界內亦無羈留此項在逃朝鮮人等。遂取具“並無前項爲匪不法情弊·及容留游民越界滋事”各旗屯嘎山達等甘結。²⁸⁾至於朝鮮防禦之人，曾經何項人所傷，暨防守之幕又被何人人燒火，沿江細訪，實無知而可問之人。竊意事起江南，必須渡江照會慶源府使，面爲究詰，方期水落石出。佐領松恒·防禦永祥，當卽帶兵渡江，與府使閔文鎬覲面查訊，具字回稱。

河山鎮白顏村，係在敝府東南百餘里，前被穿大國服色之人，連在逃諸人，攙雜渡江，搬去在逃妻孥財產，金應哲等亦全家隨去。當時有防守村民金益三·金允儉·尹成習等攔阻，被搬物之人放銃，致金益三等爲流丸所傷。德促之際，無暇問答，是以未能辨出，是何項人等。又江邊防守之幕，卽被此項人所燒。

等語。

復向究詰該國，於上年十二月間，有匪類十百成羣，來過三洞山邊，被擊敗走各情事。該使又稱。

此事原屬慶興府，各有所管，曾經聞之而已。

佐領松恒等因事無確據，無可証詢。當卽囑令該使，嗣後如有匪類，既經越界，不可聽其騷擾，卽爲殄除，以副各守疆界之例。佐領松恒旋擬由慶源再赴慶興府，據實確訪，而該府使，因無奉有明示，不敢導引。佐領松恒等遂卽折回，抵至俄夷界牌處，仍在琿春西南一百五十餘里，卽與慶興府隔江遙對之處。該處界牌迤東半里許，有俄人新建卡房一所，戍守人十四名，此外並無別項人等，亦無另築房屋。佐領松恒等欲由該處對渡過江，再赴慶興府，查勘三洞山界情事。乃因陰雨水漲，適值慶興府隔江望見，遣人二名，繫坐草筏，渡來江北，具字聲說，“明日調來海船接渡。現今無有船隻。”佐領松恒等正在對答間，卽自俄夷界牌處，跑來戍守俄人，盤詰所交何語。佐領松恒等卽稱“因查界牌，適有朝鮮捕魚人到岸，所以盤查。”而俄國之人恐隨渡江，拼命攔阻，不容松恒等再向朝鮮人交言，當在該府所具原字內註寫，“日毋庸再會。”佐領松恒等是日住在海岸罕奇地方，次早赴棘心河·嚴杵河查看。朝鮮逃人均在該二處，築室結屋。男婦子女約共一千多人。惟衣中服色概不一

樣。其間有穿中國衣帽者，有穿俄國衣帽者，亦有穿朝鮮國衣帽者居多。又查類皆高麗之牛·車輛·雞犬·傢俬無數。密詢該逃人，內有黃丹畢·朴廣畢·尹戈金者三人僉稱。

伊等係被早年逃人崔姓·韓姓勾來種地，因本國連年歉收，又兼調兵加捐，無奈逃出，均係陸續自俄國界牌山，逃過到此，不意俄人並不給牛犁料種，僅給以地，迫令自己蓋房，此時即欲回國，不敢遽回。

等語。

佐領松恒等又恐該逃人內藏有中國之人，即由穿三項服色人內，逐一細問，各操高麗土音，實無內地浮民乘勢夾藏。佐領松恒等密令仍回故國，許即與之押送。乃因俄官依度克什，遂來盤問諸多疑惑，雖經佐領松恒等告知俄官，係為清查交界而來，但朝鮮逃人係均在於俄國管下，查其情狀，未便肯令佐領松恒等強行干預。事關邊界要務，恐啓釁端，未敢擅令勒還。

再，棘心河·嚴杆河一帶，除有朝鮮此項逃人外，罕奇地方尚有打漁窩鋪，以漁養生，稱為漁夫者十七八名。家徒四壁，衣履皆無。此項漁夫亦實非強擄滋事，羈留男婦之人。每逢查界，必皆見面。並又訊取該漁夫等供結，一併呈報寧古塔。

轉據烏勒興阿咨請查核辦理前來。

奴才等復行按圖詳核，現在界線迤內，係屬琿春協領衙門旗屯，界線迤外，為俄國交界。圖門江西朝鮮各地方，雖與我界多所毗連，除卡倫以外，人跡罕到，即卡倫之設，亦實鞭長莫及之勢。且河山鎮白顏村，又貼近界線，興源府又在界線連界之外，逃人一江往返，朝發夕至，勢難周查。抑且界線內旗屯，既不容游民佔踞，而界外游民，更無所托足。其為渡江搶擄及羈留逃人各情事，自非中華人所為，已可証據。乃又據佐領松恒等查明，該逃人內衣帽雜處，難保非逃奸自作，藉助聲援。至又稱，“曾經俄人在慶興府東門，喝言將築室於界牌近處，”其界牌屯居處，牛車繁盛，雞犬傢俬無數，情節顯然，更可概見。今朝鮮逃人財產，既非中國人渡江搶擄，亦無中國人羈留該逃民妻孥。暨該逃民等現住之界牌近處所築屋室，並又非在我界。而我與之接界處所，亦無游民為人所引，貪利助虐，各情事應請俱毋庸議。惟事關邊徼，自應遵照條

約, 各管各界, 毋任越界干預, 致生枝節.

除嚴飭查江查界各卡官弁, 嗣後務當認真嚴密稽查, 不得互相越界, 以清疆域, 而重邊防, 暨在珠渾珠河·歡綽霍河, 沿圖門江東南一帶, 再為酌量兵力, 增設卡倫二道, 俾資協同各卡弁兵, 一體稽察外, 所有奴才等遵旨查明棘心河·嚴杵河等處俄國界內, 招集朝鮮逃人礙難押還各情形, 謹由驛覆奏, 並繪圖貼說, 恭呈御覽, 伏乞兩宮皇太后·皇上聖鑒.²⁹⁾

謹奏.

等因.

具奏之處, 相應照抄原摺, 呈報總理各國事務衙門, 謹請查核可也.

5월 16일, 吉林將軍 富明阿가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 왔습니다.

올해 5월 11일, 본 아문에서 驛站을 통해 다음과 같이 상주하였습니다.

조선국의 逃人들을 결코 내지 유민들이 억류·약탈한 적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 내용을 삼가 역참을 통해 상주하여 회답하면서, 지도를 그리고 부연설명도 덧붙여 열람하실 수 있도록 삼가 올리는 바입니다. 살펴보건대, 이전에 총리아문과 예부 등의 아문에서 전후로 咨文을 보내서, 조선국왕이 도망간 촌민들을 잡아달라고 요청한 것과, 러시아인이 경계비 지역에 건물을 지으려 한다는 것을 (알려 온 咨文을 대신) 상주한 주접을 (그에 대해 내려진) 유지와 함께 삼가 초록하여 奴才 등에게 보내어, 그에 따라 처리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奴才 등이 원 주접을 검토하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선 慶源府 관할 阿山鎮 白顏村의 주민 尹才官 등 9명이 전후로 강을 건너 도망쳤습니다. 30일에는 중국인 수백 명이 무리를 이루어 강을 건너와서, 본 마을에 남아 있던 도망자들의 처자식과 재산, 牛馬 등을 전부 가져갔고, 마을 사람 金應哲 등 6명도 온

28) ‘甘結’은 어떠한 사항에 대해 확인·보증을 하면서, 이를 어겼거나 거짓을 말했을 경우 달게 처벌을 받겠다고 서명하는 확인서·보증서를 가리킨다.

29) 兩宮皇太后는 나이 어린 同治帝를 대신해서 垂簾聽政을 하던 東·西太后, 즉 慈安太后와 慈禧太后를 가리킨다.

집안이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게다가)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막던 중, 3명이 유탄에 맞아 부상을 당했고, 강변을 지키기 위한 막사도 세 차례에 걸쳐 불에 탔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범인들을 마땅히 하나하나 조사해서 잡아들여야 하겠지만, 국경이 구분되는 곳이라 감히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禮部에서 (이 내용을) 그대로 황상께 대신 상주해주시어, 변방을 지키는 관원들에게 따로 지시하여, 법규를 분명히 하고 위의 여러 범인들도 압송하여 돌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었습니다.

외국인 12명이 慶興府 東門 밖으로 와서, (그중) 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말로 소리 높여 이르기를, “러시아에서 界牌 근처에 건물을 지으려 하는데, 貴府에서 놀라고 의아해할 것 같아서, 내가 都統의 문서를 받들고 먼저 와서 알리는 것입니다.”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날로 강을 건너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보고를 받고, 역임 吉林將軍이 변방 오랑캐의 상황에 대해 보고한 바를 찾아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시 살펴보건대, 조선의 慶源府는 琿春과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여, 내지 奸民이 남에 이끌려 이익을 좇아 악행을 도왔던지, 아니면 조선 도망자들의 요청으로 그들을 도와주었는지, 모두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사안은 변경에 관계된 것으로서 속국을 침해한 일이니, 반드시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응당 吉林將軍에게 지시하여 정말로 중국 백성들이 국경을 넘어가 조선 도망자들의 재산을 가져왔는지, 그리고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데 어느 나라의 경계인지를 분명히 조사하여 밝히게 해야 합니다. 아울러 방어하던 사람이 부상을 당하고 방어를 위해 세운 막사가 불탄 것이 중국인의 소행인지 아닌지 상세하게 확실히 조사하여 사실대로 회답하되, 조금이라도 두둔하는 바가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강변을 지키는 각 초소 관원들에게 충실히 엄밀하게 단속하여, 중국과 조선 백성이 피차간에 몰래 월경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강역을 분명히 하고 邊防을 튼튼히 하도록 엄격히 지시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에서 위의 범인들을 전부 압송하여 돌려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만약 중국 내지에 있다면 곧바로 해당 將軍에게 지시하여 文武官員을 파견해서 조선으로 압송하여 그곳 변경관원에게 넘겨 처리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볼 때) 奴才 등은 황상께서 만방을 위무하시는 것을 염두에 두어,

각국이 자기 땅에서 단연코 월경을 하여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이웃 나라에 해를 끼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힘써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선은 我朝에 대해 가장 공순하였으므로, 바야흐로 다사다난한 시절을 맞이하고 있는 그들을 더욱 體恤해 주어, 먼 곳의 사람들을 회유하시려는 황상의 지극한 뜻에 부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奴才 등은 올해 3월 전후로 문서를 받은 날부터 누차 寧古塔副都統과 琿春協領에게 공문(咨文과 箭文)을 보내, 정확하고 상세하게 조사하여 사실대로 咨文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즉 “작년에 무리를 이루어 월경하여 조선 도망자들의 재산을 가져온 사람들이 정말로 중국인들인지, 만약 사실이라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두 몇 명인지, 평소에 어느 지역에 흩어져 살다가 일이 있을 때 어느 곳에서 모이는지, 포위해서 섬멸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방법을 강구하여 쫓아내거나 사로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경계비 근처에 건물을 짓고 집을 지은 자들이 있는지, 그리고 건물을 짓고 집을 지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느 나라의 경내에 있는지, 또한 조선에서 (그들을) 막던 사람들은 누구에 의해 부상을 당했는지, 방어하기 위해 세운 막사는 또 어떤 자들에 의해 불태워졌는지,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모두 중국인들의 소행인지 아닌지, 또는 실체는 외국인들이 구실을 만든 것인지, 그리고 奸民이 조선인들을 구류했다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등등의 문제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이러한 간사한 무리들을 체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억류된 조선 도망자들을 조선으로 송환해서 해당 관원에게 넘기도록 하였습니다. 즉 이상의 각 내용에 대해서는 寧古塔副都統과 琿春協領 등에게 각기 咨文과 箭文을 보내어 그 지시에 따라 조사하여, 하루 6백 리의 속도로 서둘러 사실대로 상세하고 분명하게 보고하되, 결코 그들을 두둔해서 탄핵을 당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2·3월 이래 떠돌던 마적들이 분분히 동쪽으로 옮겨가자, 金을 노리던 비적 무리들까지 잇따라 말썽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寧古塔과 琿春에서 훈련을 받던 부대는 모두 文武官員의 지휘 아래 이들을 막고 토벌하는데 동원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응당 조사해야 할 위의 사안들이 길이 막혔을 뿐만 아니라, 관청에서도 돌아볼 틈이 없어서 지연되었고, 결국 奴才 등이 누차 엄격히 독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5월 7일에야 비로소 寧古塔副都統 烏勒興阿가 佐領 松恒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아 전달해왔습니다.

저는 琿春에서 과견된 防禦 永祥과 함께 양국의 언어를 알고 있는 장교와 병사를 데리고 먼저 圖門江 주변 접경지대에서 관할 지역을 상세히 살펴보았는데, (旗民이 아닌) 일반

백성의 戶籍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곳에 비록 평소에 농사를 짓던 사람은 있었지만 얼마 되지 않았으며, 또한 불법을 저지른 바도 없었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旗人들이었습니다. 몇 차례 돌아다니며 조사하였지만, 월경하여 조선인 도망자들의 재산을 가져온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현재 경내에는 이러한 도망해온 조선인을 억류한 일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위와 같이 비적이 되어 불법을 저지르거나, 游民을 받아들여 월경해서 말썽을 일으킨 적이 결코 없다”는 보증서를 各 旗屯의 嘎山達들에게서 받아냈습니다. 조선에서 방어하던 사람들이 누구에 의해 부상을 당했는지, 그리고 방어를 위해 세운 막사는 또 누가 불태워졌는지 강변을 따라가면서 상세히 조사를 다녔으나,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 정말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사건이 강의 남쪽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강을 건너가 慶源府使에게 照會하여, 직접 대면하여 조사해야만 비로소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佐領 松恒과 防禦 永祥이 곧바로 병사를 거느리고 강을 건너가 府使 閔文鎬와 대면하여 소식을 탐문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답하였습니다.

河山鎮 白顏村은 저희 府 동남쪽 100여 리쯤에 있는데, 일전에 大國의 복식을 갖춘 사람들이 도망쳤던 여러 사람들과 함께 뒤섞여 강을 건너와, 도망 중인 사람들의 처자와 재산을 옮겨갔으며, (이때) 金應哲 등도 온 가족이 함께 따라 갔습니다. 당시 이들을 막고 있었던 촌민 金益三과 金允儉, 尹成翥 등이 저항하자, 물건을 가져가던 사람들이 총을 쏘서 金益三 등이 유탄에 맞아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다급한 상황이라 심문을 할 겨를이 없어서 어떤 자들인지는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아울러 강변에 방어하기 위해 세운 막사도 이들에 의해 불태워졌습니다.

다시 질문하였더니, 작년 12월중에 비적 수십·수백이 무리를 이루어 三洞山 부근에 몰려온 적이 있고, 격퇴를 당해 도망간 일도 있었습니다. 해당 府使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원래 慶興府 소관으로, 각자 관할하는 바가 있어 (저는 이에 대해) 단지 듣기만 했을 뿐입니다.

佐領 松恒 등은 사건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없어서 더 이상 증명이나 탐방을 할 수가 없어, 해당 府使에게 앞으로 비적이 월경을 한다면 소요를 일으키도록 놔두지 말고 곧바로 섬멸하여, 각자 국경을 지키는 정례를 지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다. 佐領 松恒은 바로 뒤이어 慶源에서 慶興府로 가서 확실한 탐방을 하려 하였지만, 慶源府使는 공문을 받은 적이 없어 그리로 감히 안내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佐領 松恒 등은 결국 길을 꺾어서 러시아와의 경계비가 있는 곳으로 향하였는데, 琿春 서남쪽 150여 리쯤 되는 곳에 慶興府와 강을 사이에 둔 곳이었습니다. 그곳의 경계비로부터 동쪽으로 반 리 정도 되는 곳에 러시아인들이 새로 지은 초소건물 하나와, 지키는 사람 14명이 있었으며, 그 외에 다른 사람이나 따로 지은 건물은 전혀 없었습니다. 佐領 松恒 등은 거기서 맞은편으로 강을 건너가 다시 慶興府로 가서 三洞山 부근의 사건을 조사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려 강물이 불어서 건너지 못하고 있던 차에, 마침 慶興府에서 강 건너를 보다가 두 사람을 뗏목을 타고 강북으로 건너게 해서 는, “내일 海船을 보내서 안내하겠습니다. 지금은 배가 없습니다.”라는 문서를 전달해 왔습니다. 佐領 松恒 등이 막 답장을 하려던 순간 러시아 경계비가 있는 곳으로부터 지키던 러시아인이 달려오더니,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 물었습니다. 佐領 松恒 등은 이에 경계비를 조사하던 중 조선의 어부가 건너왔기에 조사한 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인은 함께 강을 건널 것을 우려하여 결사적으로 훼방하면서 松恒 등이 다니는 조선인과 말을 나누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그는 해당 府에서 보낸 원래의 문건에 ‘내일 다시 만날 필요 없겠습니다’라고 적어서 보냈습니다.

佐領 松恒 등은 그 날 해안가의 외진 곳에 머물고, 다음 날 아침 棘心河와 嚴杵河 일대를 살펴보았는데, 조선의 도망자들이 모두 이 두 곳에서 집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남녀 노소가 모두 약 천여 명이었습니다. 다만 그 복색과 모자는 다양하였습니다. 중국식 의관을 한 사람도 있었고, 러시아식 옷을 입은 사람도 있었지만, 역시 조선식 복식을 갖춘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 살펴보건대 조선의 소와 수레, 가축, 세간과 비슷한 것들이 무수하였습니다. 그 도망자들에게 몰래 물었더니 黃丹畢과 朴廣畢, 尹戈金이라는 세 사람이 모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일찍이 崔씨와 韓씨 姓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와서 경작하고 있는데, 본국에서 연이어 흉년이 들고 징병과 징세가 늘어 어쩔 수 없이 도망쳐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경계비가 있는 산을 거쳐 모두 이곳으로 도망쳤는데, 뜻밖에도 러시아인들이 소와 쟁기, 씨앗 등은 지급하지 않고 단지 땅만 주면서 집도 스스로 짓게 하였습니다. 이때는 고국으로 돌아가려 해도 감히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佐領 松恒 등은 도망자들 속에 중국인이 숨어 있을까 걱정하여 세 가지 의복을 입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상세히 심문하였는데, 모두가 조선 방언을 쓰고 있었으며, 내지 유민으로서 틈을 타서 끼어 든 경우는 없었습니다. 佐領 松恒 등은 몰래 그들에게 돌아 가라 권하면서, 원한다면 압송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관원 依虔克什이 와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佐領 松恒 등이 “교계지역을 조사하기 위해 온 것”이라고 알렸지만, 조선의 도망자들이 모두 러시아의 관할 아래 있어, 상황을 살펴보면 佐領 松恒 등이 간섭을 강행하기는 곤란하였습니다. 일이 변방의 국경과 관련된 중요한 업무이므로, 자칫하면 말썽을 일으킬까 두려워 감히 그들을 강제로 송환시키려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棘心河와 嚴杆河 일대에는 조선의 이러한 도망자들 외에도 외진 곳에 고기 잡는 사람들의 임시숙소가 있어 고기잡이를 하며 생활을 하는 어부라 칭하는 사람들이 17·8명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을 겨우 사방을 막을 뿐이고, 옷과 신발도 없을 정도인데, 이 어부들 역시 실로 조선에 들어가 노략질하거나 구류하는 일을 할 형편은 아닌 것입니다. 매번 국경지대를 조사할 때마다 항상 만나는 사람들로, 이 어부들의 진술서와 확인서도 받아 함께 寧古塔으로 보고를 올립니다.

(吉林將軍은 寧古塔副都統이 대신 전해온) 烏勒興阿가 咨文을 보내 조사·처리해달라고 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奴才 등이 다시 지도를 상세히 검토하였더니, 현재 경계선 안쪽은 琿春協領衙門의 旗屯에 속하고, 경계선 바깥은 러시아와의 경계입니다. 圖門江 서쪽 조선 각 지방은 비록 우리 국경과 많은 곳에서 맞닿아 있지만 초소 이외에는 인적이 거의 없고, 설사 초소가 있더라도 실제로는 힘이 제대로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河山鎮 白顏村 역시 우리 경계선에 인접해 있고 慶興府·慶源府 역시 바로 경계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도망자들은 강을 왕복할 때는 아침에 떠나서 저녁에 돌아올 정도라 두루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한편 경계선 안쪽의 旗屯에서는 游民이 들어오는 것을 불허하여 경계선 바깥의 游民이 발을 붙일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강을 건너가 약탈하거나 도망자들을 억류한 사건들은 당연히 중국인(中華人)의 소행이 아니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佐領 松恒 등의 조사에 따르면, 그 도망자 중에는 여러 나라의 복식이 뒤섞여 있어, 그들이 자작극을 벌려 그 힘을 보태려는 것이 아니라고 보장하기도 어렵습니다. 아울러 이전에 러시아인들이 慶興府 동문에서 경계비 부근에 건물을 지을 것이라고 했다는 문제에 이르러서는, 경계비 인근의 거주지에 우마차가 많고, 닭이나 개 등 가축과 세간 등도

아주 많아 사정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지금 조선 도망자들의 재산은 중국인이 강을 건너가 약탈한 것도 아니고, 중국인이 그 도망자들의 처자식을 억류한 사실도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 도망자들이 현재 경계비 근처에 세운 건물들은 우리 경내에 있지도 않으며, 우리와 경계가 닿아 있는 곳에서 游民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 이끌리거나 이익을 탐하여 악행을 도운 일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마땅히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변경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조약에 비추어 각자의 경계를 각자 관리하면서, 경계를 넘어 간섭하여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있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강변과 국경을 단속하는 각 초소 관원에게 엄격히 지시하여, 앞으로는 충실하고 엄밀하게 단속하여 서로 월경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강역을 분명하게 하고 변경 방어를 두텁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珠渾珠河와 歡綽霍河, 圖門江 주변 동남 일대에 대해 재차 병력을 헤아려 초소 두 곳을 증설함으로써, 각 초소의 장교·병사들과 협동하여 함께 단속하도록 하는 것 외에, 棘心河와 嚴杵河 등지는 러시아 경내이고, 거기서 불러들인 조선의 도망자를 압송하기는 힘들다는 점을 奴才 등이 유지에 따라 확인한 경과를 驛站을 통해 긴급히 답장으로 上奏하고, 아울러 지도를 그리고 부연 설명도 덧붙여 열람하시도록 올려, 兩宮皇太后와 皇上께서 열람해주시기를 옹드려 요청하는 바입니다. 삼가 주를 올립니다.

이러한 上奏에 대해서, 마땅히 원 주점을 초록하여 총리아문으로 올려 검토해주시기를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43) 문서번호 : 1-2-3-12(60, 76a)

사안 : 변경지역 중국인이 무리를 지어 조선에서 말썽을 부린 적도 없고, 조선 월경민을
구류한 일도 없음을 상주합니다(具奏華民竝無結夥侵擾朝鮮, 亦未羈留該國逃民).

날짜 : 同治六年五月十九日(1867년 6월 20일)

발신 : 軍機處

수신 : 總理衙門

五月十九日, 軍機處交出富明阿抄摺.[與十六日吉林將軍來文同.]

5월 19일, 軍機處에서 富明阿의 주접 초록을 보내왔습니다[16일에 吉林將軍이 보내온 문건과 같다].

(44) 문서번호 : 1-2-3-13 (65, 80b-82b)

사안 : 비적들이 조선의 변경지역을 침범한 실제 상황에 대한 조선국왕의咨文을 상주합니다(具奏朝鮮國王咨覆匪類侵擾邊界實情).

첨부문서 : 1. 조선국왕 원咨文(朝鮮國王原咨).

날짜 : 同治六年五月二十一日(1867년 6월 22일)

발신 : 軍機處

수신 : 總理衙門

五月二十一日, 軍機處交出禮部尚書全慶等摺稱.

爲 據咨轉奏 事.

准盛京禮部送到朝鮮國咨文一件. 臣等公同閱看, 因本年三月臣部接准軍機大臣字寄³⁰) 欽奉上諭一道, 令臣部轉咨朝鮮國王, 據實登覆. 該國王接准部文, 咨覆轉奏. 謹抄錄原咨, 恭呈御覽.

爲此, 謹奏.

(1) 照錄朝鮮原咨.

朝鮮國王, 爲 咨覆 事.

同治六年三月二十四日, 承准禮部咨.

節該. 主客司案呈.

准軍機大臣字寄.

同治六年三月初八日，奉上諭。

總理各國事務衙門奏，遵查朝鮮與俄人交兵情形一摺。

等因。欽此。

相應恭錄知照朝鮮國王可也。

等因。

奉此。除將禮部咨內辭意，一一承領，而去年十二月間三洞山邊匪類之肆擾，在於昏夜，不能以服著物色之別，竟未知為何處人。故陳咨之際，稱以匪類矣。驟鑿格闖，彼此傷損，卽事勢之必至，而查究根著，拏獲解送，亦事勢之不可得也。謹稽雍正五年，因內地人偷採於小邦地方事，奉有世宗憲皇帝聖旨，飭令拏殺越境生事者。若曰粵在昔年，聖祖仁皇帝特頒諭旨於朝鮮國王。

儻有盜賊前往伊國劫掠，該國王卽行追拏殺戮。自朕卽位以來又降諭旨，若漂風船隻人內，有無票妄生事者，著該國王卽照伊律。

小邦承茲綸綍之德音，作為金石之典憲。今又蒙渙發溫諭，深憫疆域之多事，特許拏辦之從權，寬大之洪恩，體恤之茲念，不知所以圖酬萬一。而頃因俄人之築室於界牌近處，咨請憑仗威靈永綏邊疆者，非不知有事輒達致煩酬應之，為萬萬悚栗。小邦仰恃皇慈，祇守教條，有不當徒懷嚴畏自阻控因也。竊伏念康熙五十三年上國人等結屋墾田於土門江越境，因小邦陳咨，聖祖仁皇帝亟命撤毀。乾隆十三年，上國人等就沿江近處蓋房種地，因小邦陳咨，高宗純皇帝亟賜撤毀。道光二十二年及二十六年，上國人等造舍墾田於江界府越邊，亦因小邦陳咨，宣宗成皇帝並令焚毀窩棚平毀田地。大抵邊界近處蓋房種地者，嚴行禁止，已有天朝成憲。慎固封疆，慮至遠也，軫念藩服，恩至厚也。小邦恪遵聖旨，可幸無罪。小邦北地慶源慶興等府，俱在於土門江下流西南，而慶源越邊，直上國琿春界。自慶源一百二十里為慶興。慶興越邊，無人之境，有小阜名莎草峯者。在府東隔江五里之地，卽界牌所立處，登府後望德峯，可以瞭望。而俄人結屋在於莎草峯之南。以慶源慶興相距里數較之，莎草峯之距琿春，似當為百里許。而一帶長江防限截嚴，既無以越界而周審，則只將瞭望形便，懸度為說，極涉未妥，所以從前陳咨，不得趕緊指的。

今伏承據實登履之諭，滿心懷惶，莫省容惜。惟我大朝仰述列聖字小之恩，外內均視，柔遠之德，前後同揆。遂令左海一區，偏荷覆燾之私，十行聖諭，德音藹然。攢手瞻雲，滋不覺涕泗之被面。煩乞禮部，將此感激叩謝之情，轉達天聽，不勝至幸。爲此，合行咨覆，請照驗施行。

5월 21일, 軍機處에서 禮部尙書 全慶 등이 올린 다음과 같은 주점을 받아서 (총리아문으로) 보내왔습니다.

(조선국왕의) 咨文을 받고 (예부에서) 대신 상주합니다.

盛京禮部에서 보내온 조선국왕의 咨文 1건을 받았습니니다. 臣等이 함께 검토해보니, 올해 3월에 軍기대신의 字寄를 통해 臣部에서 유지를 1건 받았는데, 臣部로 하여금 조선국왕에게 咨文을 보내어 사실대로 답장케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조선국왕이 臣部の 咨文을 받고 대신 상주해달라고 답장 咨文을 보내 온 것입니다. 삼가 원 咨文을 抄錄하여, 열람하실 수 있도록 올리는 바입니다. 이에 삼가 주를 올립니다.

(1) 조선국왕의 원 咨文 초록

조선국왕이 咨文을 보내 회답합니다.

동치 6년 3월 24일, 다음과 같은 예부의 咨文을 전해 받았습니니다.

생략. 主客司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문서가 올라왔습니다.

다음과 같은 軍기대신의 字寄를 받았습니니다.

동치 6년 3월 6일, 다음과 같은 상유를 받았습니니다.

30) ‘字寄’는 ‘廷寄’라고도 한다. 淸 皇帝의 諭旨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內閣에 보내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明發上諭라고 하며, 軍機處에 보내 軍機大臣이 外省의 將軍·督撫 등 고위관료에게 전달하는 것을 寄信上諭라고 한다. 즉 기밀사건에 대해 특별한 관청에 내리는 것이 바로 기신상유인데, 字寄는 그 문서의 첫머리에 쓰는 용어이다. 보통 軍기대신자기(軍機大臣字寄)라고 쓰며, 앞부분에 보통 “軍機大臣奉面諭旨” 등의 문자가 있어 구분이 된다.

총리아문이 (상유에) 따라 조선이 러시아와 교전한 상황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의 주접 1건을 상주하였다.

이상.

마땅히 이를 삼가 초록하여 조선국왕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조선국왕은) 이상의 咨文을 받았습니다. 예부 咨文 내의 단어를 하나하나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하지만 작년 12월 중 三洞山 부근 비적들의 소요는 어두운 밤에 일어난 일이라 옷과 외관으로는 구별할 수 없어, 결국 어느 곳 사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咨文에서는 비적들이라고만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쫓아가서 대적하다가 서로 상해를 입는 것은 추세상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만, 철저히 조사하고 잡아서 압송하는 것 역시 추세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가 雍正 5년의 일을 되새겨보면, 내지인이 조선 땅에서 몰래 採伐한 사안에 대해서, 월경하여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잡아다 죽이도록 하신 世宗 憲皇帝(雍正帝)의 聖旨를 받든 바 있습니다. 만약 그보다 오래 전 일을 이야기하자면, 聖祖 仁皇帝(康熙帝)께서도 조선국왕에게 다음과 같은 유지를 내리신 바 있습니다.

만약 도적이 조선에 가서 약탈을 한다면, 조선국왕은 즉시 잡아다 죽여도 좋다. 짐이 즉위한 이래 또한 유지를 내려, 만약 표류한 선박의 사람들 가운데 증명서도 없이 멋대로 행동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면, 조선국왕은 즉시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처리해도 좋다.

조선에서는 이러한 恩詔를 받들어 金石과 같은 법령으로 삼아 왔습니다. 지금 또다시 따사로운 유지를 내리시어 조선의 다사다난함을 심히 걱정해주시고, 임의로 포획하여 처리하도록 특별히 허락하시었으니, 관대한 은혜와 자애로운 體恤에 대해, 어찌 만에 하나라도 보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러시아인이 경계비 부근에 건물을 지은 일 때문에 예부에 咨文을 보내어, 중국의 威靈에 의지하여 변강을 영원히 안정시키고자 한다고 요청하였던 것은, 일이 있을 때마다 호소하면 번거롭더라도 응해주시는 것임을 모르는 바 아니니, 대단히 황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선은 황상의 자애로움을 우러러 믿으며 단지 가르침을 지킬 뿐이며, 마땅하지 않은 바가 있으면 다만 嚴畏하는 마음을 갖고 스스로 호소하기를 주저하는 것입니다.

앞드려 생각하건대, 강희 53년에 上國人이 土門江 건너편에 집을 짓고 개간하였고, 조선에서 이를 咨文으로 보고하자, 聖祖 仁皇帝께서 바로 명하여 허물어 버린 적이 있습니다. 건륭

13년에는 上國人이 江 근처에 집을 짓고 경작을 하자, 조선에서 이를 咨文으로 보고하여 高宗 純皇帝께서 바로 부쉬 버리게 해 주신 바 있습니다. 도광 22년과 26년에는 上國人이 江界府 건너편에 집을 짓고 개간을 하였는데, 이 역시 조선에서 咨文으로 보고하여 宣宗 成皇帝께서 모두 명령하여 움막을 불사르고 토지를 평탄히 해버린 적이 있습니다. 대개 邊界 근처에 집을 짓고 경작하는 일을 엄격히 금지했다는 점은 이미 天朝에서 확실한 成憲이 되어 있었으니, 封疆을 신중히 굳게 해주셔서 멀리까지 걱정해주셨고, 藩服을 염려해 주시면서 두텁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조선은 삼가 聖旨를 준수하면서, 죄가 없음을 심히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조선의 북쪽 지방 慶源부와 慶興부 등은 모두 토문강 하류 서남쪽에 있고, 慶源부의 건너 변경은 바로 중국의 혼춘지역입니다. 慶源부에서 1백 20리 되는 곳이 慶興부입니다. 慶興부 건너 변경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작은 언덕이 하나 있는데 莎草峰이라고 부릅니다. 慶興부 동쪽으로 강에서 5리 떨어진 곳이 바로 경계비를 세운 곳인데, 慶興부 뒤쪽의 望德峰에 오르면 멀리까지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인이 집을 지은 곳은 莎草峰 남쪽입니다. 慶源과 慶興 사이의 거리로 비교하자면 莎草峰에서 琿春까지의 거리는 100리쯤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나긴 두만강이 확실하게 가로막고 있어 건너가 두루 살필 수 없으므로 단지 멀리서 바라본 형편으로 어림잡작하여 이야기한 것이니, 그렇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하여 예전에 咨文으로 보고할 때 확실하게 지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사실대로 다시 답장하라”고 지시하신 유지를 받들고는, 마음속으로 매우 황공하여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생각건대 우리 大朝에서는 列聖께서 작은 나라를 아껴주신 은혜를 그대로 본받아 內服과 外夷를 동등하게 살피 주시니, 먼 곳을 위무하시는 덕이 전후로 한결같았고, 그리하여 마침내 저희 조선으로 하여금 밝게 비추어주시는 은혜를 입게 하시니, 열 줄의 성유에 德福이 가득합니다. 두 손 모아 높은 구름을 쳐다보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얼굴을 덮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貴部에서 이러한 감격과 깊은 감사의 마음을 황상께 전달해 주신다면 정말 다행이겠습니다. 이에 마땅히 咨文으로 회답하니, 검토해 주십시오.

(45) 문서번호 : 1-2-3-14(66, 83a)

사안 : 조선국왕의 답장 咨文을 대신 상주한 원 주접과 유지를 초록하여 알립니다(鈔送轉奏 朝鮮國王咨覆原摺並錄旨知照).

날짜 : 同治六年五月二十七日(1867년 6월 28일)

발신 : 禮部

수신 : 總理衙門

五月二十七日, 禮部文稱.

主客司案呈.

所有本部鈔錄朝鮮國王咨覆原文轉奏一摺, 於同治六年五月二十七日具奏. 本日軍機處片交, 軍機大臣面奉諭旨.

該衙門知道.

欽此.

相應鈔錄本部原奏及朝鮮原文, 知照總理各國事務衙門可也.

[原奏, 詳二十八日軍機交片.]

5월 27일, 禮部에서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主客司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문서가 올라왔습니다.

예부에서 조선국왕의 답장 咨文을 초록하여 동치 6년 5월 27일에 대신 상주하였습니다. 그 날로 軍機處에서 附片을 보내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軍機大臣은 직접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아문에 알리라.

마땅히 本部의 원 상주문과 조선의 咨文 원문을 초록하여, 총리아문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원 상주문은 28일 軍機處에서 보낸 附片에 詳細하다.]

(46) 문서번호 : 1-2-3-15 (67, 83b)

사안 : 예부에서 조선국왕의 咨文에 따라 대신 상주한 주접에 대해서 받은 유지를 알립니다

(禮部據朝鮮國王咨轉奏摺, 奉旨知照).

날짜 : 同治六年五月二十八日(1867년 6월 29일)

발신 : 軍機處

수신 : 總理衙門

五月二十八日, 軍機處交片稱.

本日, 禮部據咨轉奏一摺, 軍機大臣面奉諭旨.

該衙門知道.

欽此.

相應知照貴衙門欽遵可也.

5월 28일, 軍機處에서 다음과 같은 附片을 보내왔습니다.

오늘 예부에서 咨文을 받아 주접 1건을 轉奏하였고, 군기대신이 직접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아문에 알리라.

마땅히 귀 아문에 알리니 삼가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47) 문서번호 : 1-2-3-16 (68, 84a)

사안 : 러시아인과의 교섭은 총리아문에서 처리하고, 조선에 관계된 여러 사항은 응당 예부에서 적절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與俄人交涉, 由本衙門辦理, 關係朝鮮各節, 應由貴部酌辦).

날짜 : 同治六年五月二十八日(1867년 6월 29일)

발신 : 總理衙門

수신 : 禮部

五月二十八日, 行禮部文稱.

同治六年五月十九日, 准貴部咨送, 轉奏朝鮮登履俄人越界築室羈留逃人原文, 抄送前來. 復查五月十六日, 據吉林將軍咨送覆奏.

查明俄人並無越界築室及內地游民亦無羈擄朝鮮逃人.

等因.

覈與朝鮮原咨, 微有不符. 惟既據該將軍查覆, 朝鮮逃人財產, 並非中國人搶擄, 亦無羈留該國逃民情事. 除交涉俄人事宜, 由本衙門隨時覈辦外, 其關繫朝鮮各節, 可否將該將軍原奏轉行朝鮮之處, 應由貴部自行酌覈辦理. 相應摘錄吉林將軍原奏, 咨行貴部查照可也.

5월 28일, (총리아문에서는) 禮部로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냈습니다.

동치 6년 5월 19일, 귀 예부에서 보내온 咨文을 받았는데, 조선에서 러시아인이 월경하여 건물을 지은 일과 도망자들을 억류한 일에 관하여 보낸 答章 咨文을 대신 상주하고, 그것을

초록하여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다시 조사해 보니, 5월 16일에 吉林將軍이 보내온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은 바 있습니다.

러시아인은 결코 월경하여 건물을 지은 적이 없으며, 내지 유민 역시 결코 조선 도망자를 억류한 적이 없습니다.

조선의 원 咨文과 대조해 볼 때 조금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吉林將軍의 조사에 따르면 조선 도망자들의 재산을 결코 중국인이 약탈하지도 않았고, 또한 조선 도망자들을 억류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러시아인과의 교섭 문제는 총리아문에서 수시로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 외에도, 조선과 관련된 각 사항에 대해서 吉林將軍의 원 상주문을 조선에 전해줄 것인지 여부는, 응당 귀 예부에서 검토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吉林將軍의 원 상주문을 초록하여 귀 예부에 보내니, 검토해 주십시오.

(48) 문서번호 : 1-2-3-17 (70, 88b)

사안 : 조선의 도망자 문제와 내지 유민이 결코 약탈을 한 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查明朝鮮國逃人並無內地游民竊擄情形).

날짜 : 同治六年六月初七日(1867년 7월 8일)

발신 : 吉林將軍

수신 : 總理衙門

六月初七日, 吉林將軍文[詳見密檔].

草目 : 查明朝鮮國逃人並無內地游民竊擄情形事由.

6월 7일, 吉林將軍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습니다[자세한 내용은 密檔을 참고할 것].

내용 요약 : 조선의 도망자 문제와 내지 유민들이 결코 약탈을 한 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내용.

(49) 문서번호 : 1-2-3-18 (71, 89a)

사안 : 조선국왕은 이미 중국 백성이 약탈을 한 적도 없고, 조선 유민을 구류한 적도 없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朝鮮國王已知中國人並無搶掠, 或存留該國逃人情事).

날짜 : 同治六年九月初五日(1867년 10월 2일)

발신 : 禮部

수신 : 總理衙門

九月初五日, 禮部文[詳見密檔].

草目 : 具奏朝鮮國王接准咨文, “知中國人并無搶掠存留該國逃人情事, 懇求代奏”等因. 抄錄原奏, 恭錄諭旨知照由.

9월 5일, 예부에서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습니다[자세한 내용은 密檔을 참고할 것].

내용 요약 : 중국인은 결코 조선의 도망자를 약탈하고 억류한 적이 없음을 알리는 咨文을 조선국왕이 전해 받고, 대신 상주해 줄 것을 간절히 요구하여 주접을 갖추어 올렸으며, 원상주문을 초록하고 유지도 아울러 초록하여 알린다는 내용.

(50) 문서번호 : 1-2-3-19 (72, 89b)

사안 : 조선국왕은 이미 중국 백성이 약탈을 한 적도 없고, 조선 유민을 구류한 적도 없음을 알고 있다고 예부에서 상주하였으며, 그 상주문과 유지를 초록하여 알립니다(禮部具奏朝鮮國王知中國人並無搶掠及存留該國逃人情事鈔交摺旨知照).

날짜 : 同治六年九月初六日(1867년 10월 3일)

발신 : 軍機處

수신 : 總理衙門

九月初六日, 軍機處交片[詳見密檔].

草目 : 具奏朝鮮國王接准咨文, “知中國人并無搶掠存留該國逃人情事, 懇求代奏”等因. 抄錄原奏, 恭錄諭旨知照由.

9월 6일, 군기처에서 다음과 같은 附片을 보내왔습니다[자세한 내용은 密檔을 참고할 것].

내용 요약 : 중국인은 결코 조선의 도망자들을 약탈하고 억류한 적이 없음을 알리는 咨文을 조선국왕이 받은 다음, 대신 상주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여 주접을 갖추어 올렸으며, (이에) 원 상주문을 초록하고 유지도 삼가 초록하여 알린다는 내용.

(51) 문서번호 : 1-2-3-20 (73, 90a)

사안 : 유지에 따라 산에 들어가 조사할 것이니, 인원을 파견하고 장소를 지정하여 접견하도록 미리 조선에 지시해주십시오(遵旨進山查勘, 先令朝鮮派員定地接見).

날짜 : 同治六年九月十五日(1867년 10월 12일)

발신 : 軍機處

수신 : 總理衙門

九月十五日, 軍機處交出都興阿抄摺[詳見密檔].

草目 : 遵旨進山查勘, 先令朝鮮定地接見由.

9월 15일, 軍機處에서 都興阿의 주접을 초록한 것을 보내왔습니다[자세한 내용은 密檔을 참고할 것].

내용 요약 : 유지에 따라 산에 들어가 조사할 예정이므로, 우선 조선으로 하여금 지역을 정하여 접견하도록 지시해달라는 내용.

(52) 문서번호 : 1-2-3-21 (94, 115a-b)

사안 : 조선국왕에게 공문을 보내 러시아로 월경한 백성을 모두 되돌려 받고, 아울러 금령을 다시 밝혀 다시 몰래 월경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예부에 지시한다(令禮部行文朝鮮國王, 將逃赴俄界民人悉數領回, 並申明禁令, 毋許再有逃越).

날짜 : 同治八年十一月初五日(1869년 12월 7일)

발신 : 同治帝

수신 : 總理衙門

十一月初五日, 軍機處交出字寄禮部·總理各國事務衙門·吉林將軍富。

同治八年十一月初五日, 奉上諭。

前因總理各國事務衙門議覆, 富明阿等奏, 朝鮮國人往俄界墾地, 應由朝鮮早申禁令, 當諭禮部行文該國王, 妥爲辦理。

茲據禮部奏稱。

准富明阿轉據寧古塔副都統咨報。

琿春協領訥穆錦奉飭前往摩澗歲, 會晤俄官面議兩國交涉事件。於中途遇朝鮮國男婦四五十人, 陸續越界, 均由珠倫河前往海沿。問其來歷, 言語不通, 因係俄界, 未便攔阻。旋密查海沿嚴杵河棘心河等處, 已聚集千餘人, 續投者尚紛紛不止。請由該部行文該國王, 飭令邊界官, 悉數領回。

等語。

朝鮮國民人潛投俄界, 男婦成羣, 竟至千餘名口之多, 難保不愈聚愈衆。該國王自應及早禁止, 庶不至別滋釁端。著禮部迅即行文該國王, 將逃赴俄界民人, 飭令該國邊界官, 悉數領回。並由該國王, 申明禁令, 嚴飭該國沿邊官弁, 約束民人, 毋許再有

逃越, 以重邊防. 並著富明阿, 飭令訥穆錦會商俄國廓米薩爾, 務將朝鮮越界民人悉行逐回, 不得久留俄界, 以致別生枝節. 原摺著抄給富明阿閱看. 將此諭知禮部·總理各國事務衙門, 並由五百里³¹⁾諭令富明阿知之. 欽此. 遵旨寄信前來.

11월 5일, 軍機處에서 예부·총리아문·吉林將軍 富明阿에게 다음과 같은 字寄를 보냈습니다.

동치 8년 11월 5일,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니다.

조선 백성들이 러시아 경내로 가서 개간한 일을 富明阿 등이 상주한 것에 대해서 전에 총리아문에서 논의하여 답장을 올리기를, 마땅히 조선에서 서둘러 禁畝를 펴야 하는 일이므로 응당 예부에 유지를 내려, 조선국왕에게 咨文을 보내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금 예부의 다음과 같은 주접을 받았다.

富明阿가 寧古塔副都統의 咨文을 전달받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琿春協領 訥穆錦이 지시를 받고 摩闊崴로 가서, 러시아 관원과 만나 양국 교섭사건을 직접 논의하였습니다. 도중에 조선인 남녀 4·50명을 만났는데, 모두 계속해서 월경하면서 珠倫河에서 沿海지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배경을 물었으나 언어가 통하지 않고, 러시아 경내라서 가로막기 어려웠습니다. 곧이어 몰래 연해지역의 嚴杵河·棘心河 지역을 조사하였는데, 이미 천여 명이 모여 있었고, 계속해서 몰려드는 사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청컨대 예부에서 조선국왕에게 咨文을 보내어, 조선의 변경 관원에게 그들 모두를 거두어들이도록 지시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선 백성이 몰래 러시아 경내로 넘어가 남녀가 무리를 이룬 것이 마침내 천여 명이나 되는 수에 이르렀으니, 갈수록 모여들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 조선국왕은 자연히 서둘러 금지하여 다른 말썽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예부는 신속히 조선국왕에게 咨文을 보내어, 러시아 경내로 도망간 백성에 대하여 조선 변경관원으로 하여금 모두 거두어들이도록 지시하게 하라. 아울러 조선국왕은 금령을 다시 밝히고

31) 五百리는 하루 동안 驛站으로 문서가 전달되어야 하는 거리(속도)를 가리키는데, 청대 역참을 통한 공문 전송의 최고 속도는 약 9백 리였다.

조선의 변경 부근 文武官員에게 엄격히 지시하고 백성을 단속하여, 다시는 도망하여 월경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변경 방어를 신중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吉林將軍) 富明阿로 하여금 (琿春協領) 訥穆錦에게 지시하여, 러시아 界務官과 만나 상의하여 조선의 월경민을 모두 되돌려 보내, 오래도록 러시아 경내에 머무름으로써 작은 문제라도 달리 일으키지 않게 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원 주접을 초록하여 富明阿에게 보내어 열람하게 하라. 이 유지는 예부와 총리아문에 알리고, 아울러 하루 5백 리 속도로 보내 富明阿에게 알리도록 하라.

이상과 같은 (寄信)유지가 전달되어 왔습니다.

(53) 문서번호 : 1-2-3-22 (95, 116a-117b)

사안 : 조선 백성이 월경하여 러시아로 넘어간 것에 대해, 조선국왕이 응당 금령을 다시
밝히고 변경의 지방관원에게 백성을 통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상주하였습니다(具奏
朝鮮民人越界投俄情形, 應由該國王申明禁令, 嚴飭沿邊官弁約束民人).

날짜 : 同治八年十一月初六日(1869년 12월 8일)

발신 : 軍機處

수신 : 總理衙門

十一月初六日, 軍機處交出, 禮部密奏摺稱.

爲 奏聞請旨 事.

同治八年十月二十八日, 准吉林將軍富明阿等咨稱.

本年十月十五日, 准寧古塔副都統烏勒興阿咨報.

據琿春協領訥穆錦報稱.

八月二十七日, 奉飭前往摩濶歲, 會晤俄國新設廓米薩爾之官, 面議兩國交涉事件. 於中途遇有朝鮮國男婦子女四五十人, 陸續越界, 均由珠倫河地方前往海沿去訖. 問其來歷, 混行指畫, 彼此話語不通, 殊難知其究竟, 因係俄界, 未便攔阻. 卽於回城之日, 揀派雲騎尉吉爾洪阿等, 前往海沿一帶密查去後, 旋據呈報.

朝鮮國男婦子女, 現在海沿嚴杵河棘心河等處, 相聚千有餘人, 適際仍有越界者, 陸續不止. 因與俄人互相交雜, 難以查問.

等語.

理合飛報副都統衙門, 據情轉報將軍衙門查核.

等因. 前來.

查朝鮮國男婦子女，紛紛潛投俄界。迨經派員查探，海沿嚴杵河·棘心河等處，已竟聚有千餘人之多，與俄人互相交雜，況有續越者，陸續不止。難免不愈集愈多，殊非清理邊疆善道。該朝鮮，自己國屬之人，致令男婦成羣，任意紛投他邦，何以置之不問。若任各國分投闖居，日久或別生釁端，實與中外大有邊礙。除咨行寧古塔副都統烏勒興阿，即行轉飭琿春協領訥穆錦。刻即親赴摩瀾歲，會同該國新設廓米薩爾，將前事逐一告明，務將朝鮮國逃越男婦子女，共念和好，悉數飭令逐回，不得久留俄界，以明疆界，而敦友誼。並飭該協領，於所屬界之內外，加意嚴防，仍密派妥幹兵役，查其有何動作，迅速飛報外，應咨禮部，轉行朝鮮國王，即將該國逃越俄界之男婦子女一千餘人，飭令邊界官，悉數領回，各安本界。

等因。

到部。旋於十一月初三日，准總理各國事務衙門抄錄前件咨送前來。臣等查同治六年二月，吉林將軍富明阿等奏，“朝鮮國人前往俄界棘心河墾地”等因一摺，經總理各國事務衙門議覆，“朝鮮國居民願赴俄界開墾地畝，應由朝鮮早伸禁令，以免貽患將來”等因。奉旨，“依議。”欽此。由臣部行知朝鮮國王在案。

今該國民人潛投俄界，復聚至千餘名之多，續投者仍紛紛不止，洵難免不別生釁端。既據該將軍咨稱。

已飭琿春協領訥穆錦，會商俄國廓米薩爾，務將朝鮮國男婦子女，悉數飭令逐回，不得久留俄界，以明疆界，而敦友誼。

等語。

除擬由臣部行知朝鮮國王，即將逃越俄界之男婦子女一千餘人，飭令邊界官悉數領回外，應仍由該國王，申明禁令，嚴飭沿邊官弁，約束民人，毋得再有逃越，以清疆域而重邊防。事關邊徼，臣等未敢擅便。

爲此，謹密奏請旨。

同治八年十一月初五日，軍機大臣奉旨。

[]

欽此.

11월 6일, 군기처에서 다음과 같은 예부의 비밀상주(密奏)를 보내왔습니다.

상주하여 유지를 청합니다.

동치 8년 10월 28일, 吉林將軍 富明阿 등의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올해 10월 15일, 寧古塔副都統 烏勒興阿가 다음과 같은 咨文을 보내 보고하였습니다.

琿春協領 訥穆錦이 다음과 같이 보고해 왔습니다.

8월 27일에 지시에 따라 摩濶歲로 가서, 러시아 관원과 만나 양국 교섭사건을 직접 논의하였습니다. 도중에 조선인 남녀 4·50명을 만났는데, 모두 계속해서 월경하면서 珠倫河에서 沿海지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배경을 물었으나 언어가 통하지 않고, 러시아 경내라서 가로막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城으로 돌아오는 날, 雲騎尉 吉爾洪阿 등을 뽑아서 연해지역 일대로 파견하여 몰래 조사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곧바로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선의 남녀노소는 현재 연해지역 嚴杵河·棘心河 등지에 천여 명 정도가 서로 모여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갔을) 당시에도 월경하는 자가 계속해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러시아인과 서로 섞여 있기 때문에 조사하여 심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琿春副都統은 이상과 같은 보고를 받았으므로) 마땅히 副都統衙門에 빨리 보고하여, 사실에 의거하여 장군아문에 전달하여 알림으로써 검토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吉林將軍이) 살펴 보건대, 조선의 남녀노소가 잇달아 러시아 경내로 몰래 몰려들고 있습니다. 인원을 파견하여 조사해 보니, 연해 지역 嚴杵河·棘心 등지에 이미 천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러시아인과 서로 섞여 있고, 더구나 이어서 월경하는 자들이 계속하여 그치지 않습니다. 갈수록 모여들어 늘어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우니, 이것은 특히 변강을 다스리는 바른 방도가 아닙니다. 해당 조선국은 스스로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남녀가 무리를 이루어 제멋대로 다른 나라에 넘어가게 하면서 어찌 불문에 부친다는 말입니까? 만약 각 나라 백성들이 제각각 다른 나라에 몰려가서 살게 한다면, 오래될 경우 또 다른

말썽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으니, 실로 중국과 외국 사이에 커다란 변경 문제가 될 것입니다.

寧古塔副都統 烏勒興阿에게 咨文을 보내, 즉시 琿春協領 訥穆錦에게 지시를 전달하여, 곧바로 직접 摩瀾崃로 가서 러시아가 신설한 界務官과 만나 앞의 일에 대하여 하나하나 분명히 밝히도록 하고, 도망하여 월경한 조선의 남녀노소에 대해서는 힘써 양국 간의 우호를 위해 모두 돌려보내 오래도록 러시아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함으로써, 疆界를 분명히 하고 우의를 돈독히 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 協領에게 소속 경계의 안팎에 대하여 더욱 엄밀히 방비하고, 비밀리에 적당하고 유능한 兵役을 파견하여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조사하여 신속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 외에도, 마땅히 禮部에 咨文을 보내어 조선국왕에게 전달케 함으로써, 러시아 경내로 월경한 조선의 남녀노소 천여 명을 변경관원에게 지시하여 모두 거두어 들여 각기 본적지에 안착시키게 해야 할 것입니다.

(禮部는 이상과 같은 吉林將軍의 咨文을 받았습니다). 곧 뒤이어 11월 3일에 총리아문에서도 앞의 사안을 초록하여 咨文으로 보내왔습니다. 臣等이 조사해 보건대, 동치 6년 2월에 吉林將軍 富明阿 등이 “조선 사람들이 러시아 경내 棘心河로 가서 개간하고 있습니다”라는 사유로 주접 1건을 상주하였고, 총리아문에서 (이에 대해) 논의하여 “조선의 거주민들이 러시아 경내로 들어가 토지를 개간하려 하니, 마땅히 조선에서 조속히 禁畝를 펼침으로써 장래에 근심을 끼칠 것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회답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논의한대로 하라”는 유지가 내려졌으므로 臣部에서 조선국왕에게 咨文을 보내 알린 바 있습니다.

지금 조선의 백성이 몰래 러시아 경내로 몰려들고, 또한 모여든 사람이 천여 명에 이른다고 하며, 계속 몰려드는 사람들이 분분하여 잇달아 그치지 않으니, 진실로 다른 말썽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吉林將軍의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미 琿春協領 訥穆錦에게 지시를 전달하여, 곧바로 직접 摩瀾崃로 가서 러시아가 신설한 界務官과 만나, 조선의 남녀노소를 모두 돌려보내 오래도록 러시아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함으로써 疆界를 분명히 하고 우의를 돈독히 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禮部에서는 조선국왕에게 咨文을 보내어, 도망하여 러시아 경내로 넘어간 남녀노소 천여 명에 대해서 변경관원에게 지시하여 모두 거두어들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마땅히 조선국왕은 禁畝를 다시 밝혀 변경의 文武官員에게 엄격히 지시하여 백성을 단속하도록 하고, 다시는 도망하여 월경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疆界를 명확히 하고 변경 방어

를 중시해야 할 것입니다. 사안이 변경에 관련된 것이라, 臣等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에 삼가 비밀리에 상주하여 유지를 청하는 바입니다.

동치 8년 11월 5일, 군기대신이 (유지를) 받았다.

(54) 문서번호 : 1-2-3-23 (96, 118a-b)

사안 : 조선 백성이 몰래 러시아로 월경하였다는 것을 알리는 吉林將軍의 咨文을 상주하고,
유지를 초록하여 알립니다(具奏吉林將軍咨, 朝鮮民人私越俄界一摺, 錄旨知照).

날짜 : 同治八年十一月初七日(1869년 12월 9일)

발신 : 禮部

수신 : 總理衙門

十一月初七日, 禮部文稱.

主客司案呈.

所有本部據咨轉奏, 吉林將軍咨朝鮮民人私越俄界一摺, 於同治八年十一月初五日奏,
本日准軍機大臣字寄, 奉上諭.

前因總理各國事務衙門議覆, 富明阿等奏“朝鮮國人往俄界墾地,” 應由朝鮮早申禁
令, 當諭禮部行文該國王, 妥爲辦理. 茲據禮部奏稱.

准富明阿轉據寧古塔副都統咨報.

琿春協領訥穆錦奉飭前往摩瀾巖, 會晤俄官, 面議兩國交涉事件. 於中途遇朝鮮
國男婦四五十人, 陸續越界, 均由珠倫河前往海沿. 問其來歷, 言語不通, 因係
俄界, 未便攔阻. 旋密查海沿巖杵河棘心河等處, 已集聚千餘人, 續投者尚紛紛
不止. 請由該部行文該國王, 飭令邊界官, 悉數領回.

等語.

朝鮮民人潛投俄界, 男婦成羣, 竟至千餘名口之多, 難保不愈聚愈衆. 該國王自應及
早禁止, 庶不致別滋釁端. 著禮部迅即行文該國王, 將逃赴俄界民人, 飭令該國邊界
官, 悉數領回. 並由該國王申明禁令, 嚴飭該國沿邊官弁, 約束民人, 毋許再有逃越,

以重邊防。並著富明阿飭令訥穆錦，會商俄官廓米薩爾，務將朝鮮越界民人悉行逐回，不得久留俄界，以致別生枝節。原摺著抄給富明阿閱看。將此諭知禮部·總理各國事務衙門，並由五百里諭令富明阿知之。

欽此。遵旨寄信前來。

相應抄錄原奏，恭錄諭旨，知照總理各國事務衙門可也。

原奏[詳見初六日軍機交片]。

11월 7일, 禮部에서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主客司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문서가 올라왔습니다.

조선 백성이 몰래 러시아 경내로 넘어간 일에 대해 吉林將軍이 咨文을 보내온 것을 禮部에서 대신 받아 동치 8년 11월 5일에 상주하였습니다. 이 주점에 대해 그 날로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다는 군기대신의 字寄를 받았습니다.

조선 백성이 러시아 경내로 들어가 개간한다고 富明阿 등이 상주한 것에 대해, 마땅히 조선에서 조속히 禁畝를 펼쳐야 하므로, 응당 예부에 유지를 내려 조선국왕에게 咨文을 보내어 적절히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에 총리아문에서 논의하여 회답한 바 있다. 그런데 이에 예부에서 다음과 같이 상주하였다.

富明阿가 다음과 같은 寧古塔副都統의 보고를 전달하여 왔습니다.

琿春協領 訥穆錦이 지시를 받고 摩闊崴로 가서, 러시아 관원과 만나 양국 교섭사건을 직접 논의하였습니다. 도중에 조선인 남녀 4·50명을 만났는데, 모두 계속해서 월경 하면서 珠倫河에서 沿海지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배경을 물었으나 언어가 통하지 않고, 러시아 경내라서 가로막기 어려웠습니다. 곧이어 몰래 연해지역의 嚴杵河·棘心河 지역을 조사하였는데, 이미 천여 명이 모여 있었고, 계속해서 몰려드는 사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청컨대 예부에서 조선국왕에게 咨文을 보내어, 조선의 변경 관원에게 그들 모두를 거두어들이도록 지시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선 백성이 몰래 러시아 경내로 몰려가 남녀가 무리를 이룬 것이 마침내 천여 명이나

되는 수에 이르렀으니, 갈수록 더 많이 모여들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 조선국왕은 마땅히 서둘러 금지하여 다른 말썽이 생겨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예부는 신속히 조선국왕에게 咨文을 보내어, 러시아 경내로 도망간 조선 백성을 조선의 변경관원이 모두 거두어들이도록 지시하게 하라. 아울러 조선국왕은 다시 禁畵를 밝혀 조선의 변경 주변 文武官員에게 엄격히 지시함으로써, 백성을 단속하여 다시는 도망하여 월경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변경 방어를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富明阿로 하여금 訥穆錦에게 지시하여, 러시아의 界務官과 만나 상의하여 조선의 월경민을 모두 돌려보내게 하여, 이들이 오래도록 러시아 경내에 머무르면서 또 다른 문제를 낳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禮部의 원 주접은 초록하여 富明阿에게 보내어 열람하게 하고, 이 유지는 禮部와 總理衙門에 알리되, 아울러 하루 5백 리 속도로 전달하여 富明阿에게도 이를 알리라.

(유지에 따라 이상과 같은 유지가 전달되어 왔습니다). 마땅히 원 상주문과 유지를 삼가 초록하여 총리아문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원 상주문[자세한 것은 6일 軍機處에서 돌려보낸 附片을 보라].

(55) 문서번호 : 1-2-3-24 (97, 119a-122b)

사안 : 조선국왕이 월경민을 되돌려 받고 변경 금령을 다시 밝히는 문제에 대해 상주를 요청하여, 예부에서 대신 상주하고 유지를 받아 알립니다(具奏朝鮮國王請代奏領回逃民, 申明邊禁一摺, 錄旨知照).

첨부문서 : 1. 조선국왕의 답장 咨文 원문(朝鮮國王咨覆原文).
2. 예부의 원 주첩(禮部原奏摺).

날짜 : 同治九年二月二十五日(1870년 3월 26일)

발신 : 禮部

수신 : 總理衙門

同治九年二月二十五日, 禮部文稱.

主客司案呈.

所有本部抄錄朝鮮國王原文, 轉奏一摺, 於同治九年二月二十四日, 具奏, 本日, 軍機處片交, 軍機大臣奉旨.

知道了.

欽此.

相應抄錄該國王原文及本部原奏, 知照總理各國事務衙門可也.

(1) 照錄粘單

朝鮮國王, 爲 咨覆 事.

同治八年十一月二十二日，承准禮部咨。

節該。主客司案呈。

本部謹密奏，為 奏聞請旨 事。同治八年十月二十八日，准吉林將軍富明阿等咨稱。

本年十月十五日，准寧古塔副都統烏勒興阿咨報。

據琿春協領訥穆錦報稱。

八月二十七日，奉飭前往摩瀾歲，會晤俄國新設廓米薩爾之官，面議兩國交涉事件。於中途遇有朝鮮國男婦子女四五十人，陸續越界，均由珠倫河地方前往海沿去訖。問其來歷，混行指畫，彼此話語不通，殊難知其究竟，因係俄界，未便攔阻。即於回城之日，揀派雲騎尉吉爾洪阿等，前往海沿一帶密查去後，旋據呈報。

朝鮮國男婦子女，現在海沿嚴杵河棘心河等處，相聚千有餘人，適際仍有越界者，陸續不止。因與俄人互相交雜，難以查問。

等語。

理合飛報副都統衙門，據情轉報將軍衙門查核。

等因。前來。

查朝鮮國男婦子女，紛紛潛投俄界。迨經派員查探，海沿嚴杵河棘心河等處，已竟聚有千餘人之多，與俄人互相交雜，況有續越者，陸續不止。難免不愈集愈多，殊非清理邊疆善道。該朝鮮自己國屬之人，致令男婦成羣，任意紛投他邦，何以置之不問。若任各國分投闌居，日久或別生釁端，實與中國大有邊礙。除咨覆寧古塔副都統烏勒興阿，即行轉飭琿春協領訥穆錦，刻即親赴摩瀾歲，會同該國新設廓米薩爾，將前事逐一告明，務將朝鮮國逃越男婦子女，共念和好，悉數飭令逐回，不得久留俄界，以明疆界，而敦友誼，並飭該協領，於所屬界之內外，加意嚴防，仍密派妥幹兵役，查其有何動作，迅速飛報外，應咨禮部，轉行朝鮮國王，即將該國逃越俄界之男婦子女一千餘人，飭令邊界官，悉數領回，各安本界。

等因到部。

旋於十一月初三日，准總理各國事務衙門抄錄前件咨送前來。臣等查同治六年二月，

吉林將軍富明阿等奏，“朝鮮國人前往俄界棘心河墾地”等因一摺，經總理各國事務衙門議覆，“朝鮮國居民願赴俄界開墾地畝，應由朝鮮早伸禁令，以免貽患將來”等因，奉旨。

依議。

欽此。由臣部行知朝鮮國王在案。

今該國民人潛投俄界，復聚至千餘名之多，續投者仍紛紛不止，洵難免不別生釁端。既據該將軍咨稱。

已飭琿春協領訥穆錦，會商俄國廓米薩爾，務將朝鮮國男婦子女，悉數飭令逐回，不得久留俄界，以明疆界，而敦友誼。

等語。

除擬由臣部行知朝鮮國王，即將逃赴俄界之男婦子女一千餘人，飭令邊界官悉數領回外，應仍由該國王申明禁令，嚴飭沿邊官弁，約束民人，毋得再有逃越，以清疆域而重邊防。事關邊徼，臣等未敢擅便。

爲此，謹密奏請旨一摺，於同治八年十一月初五日奏，本日准軍機大臣字寄，奉上諭。

前因總理各國事務衙門議覆，富明阿等奏，‘朝鮮國人往俄界墾地’，應由朝鮮早申禁令，當諭禮部行文該國王，妥爲辦理。

茲據禮部奏稱。

准富明阿轉據寧古塔副都統咨報。

琿春協領訥穆錦奉飭前往摩瀾巖，會晤俄商，面議兩國交涉事件。於中途遇朝鮮國男婦四五百人，陸續越界，均由珠倫河前往海沿。問其來歷，言語不通，因係俄界，未便攔阻。旋密查海沿巖杵河棘心河等處，已聚集千餘人，續投者紛紛不止。請由該部行文該國王，飭令邊界官，悉數領回。

等語。

朝鮮民人潛投俄界，男婦成羣，竟至千餘名口之多，難保不愈聚愈衆。該國自應及早禁止，庶不致別滋釁端。著禮部迅即行文該國王，將逃赴俄界民人，飭令該國邊界官悉數領回。並由該國王申明禁令，嚴飭該國沿邊官弁，約束民人，毋許再有逃

越，以重邊防。並著富明阿飭令訥穆錦，會商俄國廓米薩爾，務將朝鮮越界民人，悉行逐回，不得久留俄界，以致別生枝節。原摺著抄給富明阿閱看。將此諭知禮部總理各國事務衙門，並由五百里諭令富明阿知之。

欽此。遵旨寄信前來。

相應抄錄原奏，恭錄諭旨，知照朝鮮國王可也。

等因。

奉此。除將禮部咨，一一承領外，竊念小邦北境，接連上國地界，只隔琿春河，衣帶一水，³²⁾荒邊窮藪，樂生安業，數百年晏然無事，無往非天朝庇覆洪恩。而一自俄人之占居設卡以來，凡係邊情，恒存虞憂，終未能遇絕匪類之窺覘，懷保愚民之疾苦，致令越界潛投，已多厥數，興擾滋事，極有深慮。今此邊奏纖悉，實據目驗。上諭諄複，特紆宸衷，俯慚藩屏之不職，仰頌階庭之無間，感惶攢祝，曷有其極。蓋此邊民犯越之弊，誠非一朝一夕之故，逃避徭役者有之，陷溺利誘者有之，乘間漏逸，馴致千百。本年十月初十日，據咸鏡道觀察使李興敏馳啓備。

慶興府使李鼎鎬呈稱。

阿吾鎮民十九戶，渾率家眷，掠取銃礮，一齊越境逃走。

等語。

該地方年穀不幸大歉。官所賑調，雖未及時，惟彼多戶之齊逃，總由邊界之溺職。見方究核事情，嚴行懲辦。第念琿春協領所睹流入俄界之男婦子女，無若卽是此次逃去之人衆歟，巖杵河棘心河等處，計以千數者，都是此等漸次流入之類也。縱恨防範之疎失，而從今務加嚴密，如欲逋藪之搜剔，則亦難力致容易，何幸天鑒洞澈聖慮深遠，銷釁於未萌，防患於未然。特飭邊臣會商俄官，越界民人之悉行逐回，小邦邊官之悉數領回，並將恪遵聖旨，迅速奉行。海邦從此而無虞，邊政從此而益嚴，不敢猥煩陳請，乃蒙曲軫恩眷。感激之極，惶恐彌切。謹當申飭北境一帶邊官，恭候逐回民人，一一領取，再申邊禁，期無因循頹情。煩祈禮部將此情實，轉達天聽，千萬至祝。

爲此，合行咨覆，請照驗施行。

(2) 照錄原奏

禮部謹密奏，爲 據咨轉奏 事。

准盛京禮部送到朝鮮國王咨文一件。臣等公同閱看，係因上年臣部具奏，朝鮮國民人紛紛逃往俄界，欽遵諭旨行文該國王。

將逃赴俄界民人，飭令該國邊界官，悉數領回，並由該國王申明禁令，以重邊防。等因。

今准該國王咨覆。

恪遵聖旨，感激天恩，謹當申飭邊官，恭候俄界逐回民人，一一領取，再申邊禁。等情。咨乞轉奏前來。

謹抄錄原文，恭呈御覽。

爲此，謹密奏聞。

동치 9년 2월 25일, 禮部에서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主客司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문서가 올라왔습니다.

禮部에서 조선국왕의 원 咨文을 초록하여 동치 9년 2월 24일에 대신 상주하였습니다. 그 날로 軍機處에서 附片을 보내왔는데, 軍機大臣은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알았다.

마땅히 조선국왕의 원 咨文과 禮部의 원 상주문을 초록하여 총리아문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1) 첨부문서의 초록

조선국왕이 咨文을 보내 답장합니다.

- 32) '衣帶一水'는 '一衣帶水'와 마찬가지로의 뜻으로, 한 가닥의 허리띠만한 강물을 가리킨다. 즉 아주 좁거나 가깝다는 것을 비유한다.

동치 8년 11월 22일, 다음과 같은 禮部의 咨文을 전해 받았습니다.

생략. 主客司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문서가 올라왔습니다.

禮部에서 삼가 비밀상주를 올려 유지를 청합니다. 동치 8년 10월 28일, 吉林將軍 富明阿 등이 다음과 같은 咨文을 보내왔습니다.

올해 10월 15일, 寧古塔副都統 烏勒興阿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琿琿協領 訥穆錦이 다음과 같이 보고해 왔습니다.

8월 27일에 지시를 받고 摩濶歲로 가서 러시아에서 신설한 界務官을 만나, 직접 양국의 교섭 사건을 의논하고자 하였습니다. 중도에 조선 백성 남녀노소 4~50 명이 연이어 국경을 넘는 것을 보았는데, 모두 珠倫河 지역을 거쳐 연해지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내력을 물어보며 어지러이 손짓을 해 보았지만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아 도대체 그 까닭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지역이었기 때문에 제가 저지하기 곤란하였습니다. 즉시 성으로 돌아와 雲騎尉 吉爾洪阿 등을 골라 해안 일대로 보내서 엄밀히 조사하게 했는데, 곧이어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선의 남녀노소가 현재 沿海의 巖杵河와 棘心河 지역에 천여 명이 모여 있으며, 최근에도 국경을 넘는 자들이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과 섞여 있었기 때문에 조사하며 탐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상과 같은 보고를 받았으므로 응당 副都統衙門에 서둘러 알리니, 사실에 근거하여 將軍衙門에 알려 검토를 받아주십시오.

(吉林將軍이) 검토해보건대, 조선 백성이 분분히 러시아 지역으로 몰래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여 관원을 파견하여 조사해보니, 沿海의 巖杵河·棘心河 지역에 이미 천여 명 정도가 모여 있는 데다가, 러시아인과 서로 섞여 있습니다. 더구나 계속해서 국경을 넘는 자들이 끊이지 않으니, 갈수록 더 늘어날 것이라 결코 변경을 다스리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선은 자기 나라에 속한 백성이 무리를 이루어 멋대로 다른 나라에 분분히 몰려가는 데도 어찌서 방치하고 문제 삼지 않는지,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도 도대체 알 수 없습니다. 만일 각국의 백성이 서로 몰려가 뒤섞여 산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쟁의 실마리가 생기지 말란 법이 없으니, 실로 중국과 외국 사이에 변경 문제를 낳을 것입니다.

寧古塔副都統 烏勒興阿에게 咨文을 보내, 즉각 그에 따라 바로 琿春協領 訥穆錦에게 지시하여 곧바로 摩潤崴·海參崴로 직접 가서, 러시아에서 신설한 界務官을 만나 앞서의 사정을 하나하나 분명히 알리고, 조선 월경민에 대해 양국 간의 우호를 위해 모두를 돌려보내 러시아 지역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경을 명확히 하고 우의를 돈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하게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 協領에게 명령하여 소속 지역 내외에서 은근하게 주의를 더해 엄밀히 단속하고, 적당한 兵役을 은밀히 파견하여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서둘러 보고하게 하는 것 외에, 禮部에 咨文을 보내 즉시 러시아로 도망친 남녀노소 천여 명을 변경관원에게 지시하여 전부 데리고 돌아가 각기 본적에 정착하게 하라고 조선국왕에게 공문을 보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吉林將軍의 咨文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11월 3일, 총리아문에서 앞의 사안을 초록하여 咨文으로 보내왔습니다. 臣等이 검토해 보니, 동치 6년 2월에 吉林將軍 富明阿 등이 “조선 사람들이 러시아 경내 棘心河로 가서 개간하고 있습니다”라는 사유로 상주한 주점에 대해서는, 마땅히 조선에서 조속히 禁畝를 펼쳐야 하므로 응당 예부에 유지를 내려 조선국왕에게 咨文을 보내어 적절히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에 총리아문에서 논의하여 회답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논의한 대로 하라.

禮部에서는 이것을 조선국왕에게 알린 바 있습니다. 지금 조선의 백성이 몰래 러시아 경내로 몰려들어, 모여든 자가 천여 명에 이른다고 하고, 이어서 몰려가는 사람이 여전히 잇달아 그치지 않으니, 실로 또 다른 말썽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다음과 같은 해당 장군의 咨文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미 琿春協領 訥穆錦에게 지시하여, 러시아 界務官과 함께 상의하여 조선의 남녀노소를 모두 돌려보내 오래도록 러시아 경내에 머물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疆界를 분명히 하고 우의를 돈독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禮部에서는 조선국왕에게 咨文을 보내어, 도망하여 러시아 경내로 넘어간 남녀노소 천여 명에 대해서는 변경관원에게 명령하여 모두 거두어들이도록 하는 것 외에도, 마땅히 조선국왕은 禁畝를 다시 밝히고 변경의 文武官員에게 엄격히 지시하여 백성을 단속하고, 다시는 도망하여 월경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강역을 명확히 하고 변경 방어를 중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알리고자 합니다. 다만 사안이 변경에 관련된 것이라, 臣等이 감히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에 삼가 비밀리에 상주하여 유지를 청하는 주접을 동치 8년 11월 5일에 상주하였고, 그 날로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다는 군기대신의 字畵를 받았습니다.

조선 백성이 러시아 경내로 들어가 개간한다고 富明阿 등이 상주한 것에 대해, 마땅히 조선에서 조속히 禁畵를 펼쳐야 하므로, 응당 예부에 유지를 내려 조선국왕에게 咨文을 보내어 적절히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에 총리아문에서 논의하여 회답한 바 있다. 그런데 이에 예부에서 다음과 같이 상주하였다.

富明阿가 다음과 같은 寧古塔副都統의 보고를 전달하여 왔습니다.

琿春協領 訥穆錦이 지시를 받고 摩濶巖로 가서, 러시아 관원과 만나 양국 교섭사건을 직접 논의하였습니다. 도중에 조선인 남녀 4·50명을 만났는데, 모두 계속해서 월경하면서 珠倫河에서 沿海지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배경을 물었으나 언어가 통하지 않고, 러시아 경내라서 가로막기 어려웠습니다. 곧이어 몰래 연해 지역의 嚴杵河·棘心河 지역을 조사하였는데, 이미 천여 명이 모여 있었고, 계속해서 몰려드는 사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청컨대 예부에서 조선국왕에게 咨文을 보내어, 조선의 변경관원에게 그들 모두를 거두어들이도록 지시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선 백성이 몰래 러시아 경내로 몰려가 남녀가 무리를 이룬 것이 마침내 천여 명이나 되는 수에 이르렀으니, 갈수록 더 많이 모여들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 조선국왕은 마땅히 서둘러 금지하여 다른 말썽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부는 신속히 조선국왕에게 咨文을 보내어, 러시아 경내로 도망간 조선 백성을 조선의 변경관원이 모두 거두어들이도록 지시하게 하라. 아울러 조선국왕은 다시 禁畵를 밝혀 조선의 변경 주변 文武官員에게 엄격히 지시함으로써, 백성을 단속하여 다시는 도망하여 월경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변경 방어를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富明阿로 하여금, 訥穆錦에게 지시하여 러시아의 界務官과 만나 상의하여 조선의 월경민을 모두 돌려보내게 함으로써, 이들이 오래도록 러시아 경내에 머무르면서도 다른 문제를 낳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禮部의 원 주접은 초록하여 富明阿에게 보내 열람하게 하고, 이 유지는 禮部와 總理衙門에 알리되, 아울러 하루 5백 리 속도로 전달하여 富明阿에게도 이를 알리라.

(유지에 따라 이상과 같은 유지가 禮部에 전달되어 왔습니다). 마땅히 원 상주문과 유지를

삼가 초록하여 조선국왕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禮部의 咨文을 받았으므로 조선국왕은) 禮部 咨文의 내용을 하나하나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삼가 생각건대, 조선의 북쪽 지역은 淸國의 경계와 맞닿아 있고 단지 琿春河를 사이에 두고 있어 정말로 가까운 데다가, 황막한 변방의 빈곤한 백성들도 樂生安業하면서 수백 년 동안 편안히 아무 일이 없었으니, 天朝에서 감싸주신 크나큰 은혜 덕분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인이 점거하여 초소를 설치한 이래, 무릇 변경 상황에 항시 우려가 있게 되었고, 결국 비적이 틈을 엿보는 것을 막지 못하고 백성의 고통을 풀어주지 못하여 그들이 몰래 월경하여 넘어간 데다가, 이미 그 수가 많고, 소요와 문제를 일으킬 우려도 아주 커졌습니다. 이번 변경에 관한 상주문은 매우 자세한데, 실제 모두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반복하여 上諭로 깨우쳐주시면서 황상의 속뜻을 보여주시니, 직무를 다하지 못한 藩屏으로서 부끄러운데도, 우러러 더할 나위 없는 배려를 내려주신 것에 대해 황송해하며 송축하는 마음에 어찌 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건대 이들 변경 백성의 범월 문제는 실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까닭 때문만은 아니며, 요역을 도피한 경우도 있고 이익에 꺾여 빠져 들어간 경우도 있는데, 기회를 엿보아 도망간 사람이 순식간에 千百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올해 10월 10일, 威鏡道觀察使 李興敏이 다음과 같이 급히 狀啓를 올렸습니다.

慶興府使 李鼎鎬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阿吾鎮 거민 19戶가 온 집안 가솔을 이끌고 총포를 약탈하여 일제히 월경하여 도주하였습니다.

해당 지역은 올해 수확에 불행히도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官에서 진휼하였는데 비록 때를 맞추지는 못하였다고는 하나, 이렇게 많은 백성이 일제히 도주한 것은 모두 변경 담당 관원이 직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야흐로 사정을 조사하여 엄격히 징벌할 예정입니다. 다만 琿春協領이 목격했다고 하는 러시아 경내로 유입한 남녀노소는 아마도 바로 이번에 도주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巖杵河·棘心河 등지의 천여 명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점차적으로 유입된 무리일 것입니다. 방법을 느슨히 하여 놓친 것은 한스럽지만, 앞으로는 힘써 더욱 엄밀하게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도망가 버린 백성들을 찾아내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어찌나 다행인지 황상께서 깊이 꿰뚫어보시고 깊고 넓게 걱정해 주셔서, 일어나기 전에 말썽을 없애 주시고, 미연에 근심을 막아 주셨습니다. 특히 변경관원에

게 지시하여 러시아 관원과 함께 상의하여 월경한 백성들을 모두 돌려보내어 조선의 변경관원이 모두 거두어들이도록 해 주시면서, 아울러 장차 聖旨를 삼가 준수하고 신속하게 받들도록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海邦은 지금부터 걱정이 없을 터이고 邊政 역시 더욱 엄밀해질 것인데, 번거로움을 두려워하여 감히 간청하지 않아도 곡진한 은혜를 입게 되었으니, 감격함이 그지없고, 황공함이 이를 데 없습니다. 삼가 마땅히 북쪽 일대의 변경관원에게 지시하여, 백성이 모두 돌려보내지기를 기다려 하나하나 거두어들이고, 다시 변경의 금령을 펼쳐 과거의 잘못을 다시 따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예부에서 이러한 사정을 황상께 전달해 주신다면 천만 다행이겠습니다.

이에 마땅히 咨文을 보내어 회답하니, 청컨대 참고해주십시오.

(2) 원 상주문 초록

예부가 咨文을 받아 대신 상주하는 일로, 삼가 비밀상주를 올립니다.

盛京禮部에서 조선국왕의 咨文 1건을 보내왔습니다. 臣等이 함께 검토해 보니, 조선 백성이 잇달아 러시아 경내로 도망가는 일에 관한 것이었는데, 작년 臣部에서 이에 대해 상주하였고, 삼가 유지를 받들어 조선국왕에게 다음과 같이 咨文을 보낸 바 있었습니다.

러시아 경내로 도망간 백성들에 대하여, 조선의 변경관원에게 지시하여 모두 거두어들이도록 하고, 아울러 조선국왕은 禁畝를 다시 펼침으로써 변경 방어를 신중히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에 대한 조선국왕의 다음과 같은 답장 咨文을 받았습니다.

삼가 聖旨를 따르고 天恩에 감격하여, 곧바로 변경관원에게 지시하여, 러시아에서 백성을 돌려보내기를 기다려 하나하나 거두어들이도록 하였으며, 다시금 변경의 禁畝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국왕이 이상과 같은) 咨文을 보내어 대신 상주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삼가 원 咨文을 초록하여 올리니 살펴봐 주십시오.

이에 삼가 비밀상주를 올리는 바입니다.

(56) 문서번호 : 1-2-3-25 (98, 123a-125b)

사안 : 조선 아동 김 씨 등 3명을 찾아내어, 이미 조선국 경원부의 관원에게 수령해가도록
넘겨주었습니다(查獲朝鮮幼童金氏等三名已解交該國慶源府官收領).

첨부문서 : 1. 조선 경원부의 답장(朝鮮慶源府回文).

날짜 : 同治九年七月十三日(1870년 8월 9일)

발신 : 吉林將軍 富明阿

수신 : 總理衙門

[(56)은 앞서 나온 (22) 문서번호 : 1-2-1-04 (98, 123a-125b)와 같은 내용이라 생략함.]

(57) 문서번호 : 1-2-3-26 (104, 135b-137a)

사안 : 러시아로 도망한 조선 난민은 응당 조선에서 더욱 마음을 써서 위무해줌으로써 감격하여 복귀하게 해야 하며, 아울러 금령을 다시 밝혀 전철을 밝게 해서는 안 됩니다(朝鮮逃俄難民, 宜由該國加意撫輯, 使其懷德復歸, 並嚴申禁令免蹈前轍).

날짜 : 同治九年十月初一日(1870년 10월 24일)

발신 : 總理衙門

수신 : 同治帝

十月初一日, 本衙門遞正摺稱.

爲 朝鮮民人潛投俄界, 已由臣衙門咨行禮部, 轉咨該國, 自行酌核辦理. 恭摺密陳, 仰祈聖鑒 事.

同治九年九月十三日, 准軍機處抄出禮部密陳, 朝鮮民人潛投俄界, 請旨飭臣衙門, 可否轉令俄人, 盡數逐回之處, 揆度情形, 斟酌辦理一摺. 奉旨.

該衙門知道.

欽此.

查此案, 臣衙門於同治九年九月初五日, 據吉林將軍富明阿咨稱.

本年三月間, 筭飭琿春協領訥穆錦, 親晤俄官, 令將朝鮮越界人等, 悉數逐回. 而若輩乘間偷入, 人數既衆, 不勝驅逐. 該協領復往海沿密探, 但聞俄人揚言, “朝鮮人等, 素經俄國, 供給口食. 若令回國, 必須色補糜費.” 現今未見朝鮮邊官領回一名. 仍有男婦子女, 公然投奔俄國. 該協領復向俄官, 再三開導, 據稱, “該國已將朝鮮逃民, 載往綏芬等處, 飭令耕作, 扣抵糜費.” 並稱“已達知朝鮮國王, 嗣後不關琿春之事.” 該協領復往見朝鮮慶源府邊界之員, 詎該員答稱, 並非慶源府一處之人, 又未

奉該國王之旨，伊實不敢承領。案關邊界，呈請核辦。

等因。

臣等公酌核此案，上年八月間，據富明阿咨稱。

朝鮮國民，紛投俄界，恐日久生釁，當由臣衙門行經禮部，奏奉上諭。

迅卽行文該國王，將逃赴俄界民人，飭令該國邊界官，悉數領回。並由該國王，申明禁令，嚴飭該國沿邊官弁，約束民人，毋許再有逃越，以重關防。並著富明阿，飭令訥穆錦，會商俄國廓米薩爾，務將朝鮮越界民人，悉行逐回，不得久留俄界，以致另生枝節。

等因。欽此。

該國欽奉諭旨，自宜將已逃民人，設法領回，一面嚴申禁令，通飭該國官弁，毋許再有民人潛投外國，方為仰體聖意，敬謹遵行。乃查該國復文，有“俟俄界逐回民人，一一領取，再申邊禁”等語。是該國不能禁本國之民，逃往外國，轉望外國，自將收留之民逐回，方行領取。且謂“領取後，再申邊禁。”是一日未有逐回之民，與伊領取，卽一日不申邊禁，聽其復逃。若由中國，代向俄國索取，在俄國方有，“朝鮮人等平素供給口食。若令回國，必須色補糜費”等詞，明向琿春協領訥穆錦回覆。臣衙門已於本月十二日，將此情形咨行禮部酌核，轉咨該國自行辦理在案。

今禮部奏請，“飭下臣衙門，揆度可否，轉令俄人，盡數逐回之處，斟酌辦理”等因，自係尚未接到臣衙門咨文。可否請旨，飭下禮部，仍照臣衙門前咨各情，酌核轉咨朝鮮，令其自行設法辦理。已逃者，果能加意撫輯，固可令其懷德復歸。未逃者，從此嚴申禁令，亦可不致復蹈前轍。如此辦理，縱不能將從前逃民一一領回，而此後總可禁其不復再往矣。除由臣衙門，再行移咨富明阿，嚴飭邊界官，隨時稽查，毋任朝鮮民人，由中國地界逃至俄國，致滋紛擾外，所有臣等核議，朝鮮民人潛投俄界辦理緣由，理合恭摺具奏。伏乞皇太后皇上聖鑒，訓示遵行。

謹奏。

同治九年十月初一日，軍機大臣奉旨。

另有旨.
欽此.

10월 1일, 본 총리아문에서 다음과 같은 주접을 올렸습니다.

조선 백성이 몰래 러시아의 경계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臣 아문에서는 이미 禮部로 咨文을 보내, 조선에 咨文을 전달해서 조선에서 스스로 조사·처리하게끔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삼가 주접으로 갖추어 비밀리에 올리오니, 열람해주시기 바랍니다.

同治 9년 9월 13일, 禮部에서 비밀리에 올린 주접을 軍機處에서 抄錄해 보내왔습니다. 즉 조선 백성이 몰래 러시아의 경계로 넘어가고 있으니, 臣 아문에 지시하여 러시아인들에게 그들을 모두 돌려보내도록 전달하는 것이 어떤지, 상황을 헤아려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주접이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아문에 알리라.

이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총리아문은 同治 9년 9월 5일에 吉林將軍 富明阿로부터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 3월 중에 琿春協領 訥穆錦에게 지시하여, 직접 러시아 관원을 만나서 월경한 조선인들을 모두 되돌려 보내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빈틈을 타서 몰래 러시아 경계로 들어갔고, 인원수 또한 많아서 이루다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해당 協領이 다시 연해지역으로 가서 몰래 정탐하였는데, 다만 러시아인들이 “조선인들은 평소에 러시아에서 식량을 제공해주었으므로, 만약에 그들을 귀국하게 하려면, 반드시 그 비용을 변상해 주어야 한다”라고 큰소리치는 것을 들었을 뿐입니다. 지금 조선의 변경관원이 한 사람이라도 다시 데려가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며, 여전히 조선의 남너노소는 공공연하게 러시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해당 協領이 다시 러시아 관원에게 재삼 타이르자, 러시아에서는 이미 그들 逃民을 綏芬 등지로 데려가 땅을 경작하게 했으니, (러시아에서 지출한)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르기를, “이미 조선국왕에게 일렸으니, 앞으로는 琿春에서 관여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協領이 다시 가서 조선 慶源府의 변경관원을 만났더니, 오히려 그들이 결코 慶源府

한 곳의 백성들만이 아니며, 또한 아직 국왕의 유지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감히 인수할 수도 없다고 하는 답장을 해왔습니다. 이 사안은 邊界에 관한 것이라, 보고하여 검토해주시길 것을 청하는 바입니다.

(총리아문의) 臣 등이 함께 이 사안에 대해서 검토해보니, 작년 8월중에 다음과 같은 富明阿의 咨文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이 분분히 러시아 경계로 넘어가니, 오래되면 말썽이 일어날까 염려되어, 이미 臣 아문에서 禮部로 문서를 보내서 대신 상주토록 하여,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곧바로 조선국왕에게 문서를 보내, 朝鮮의 변경관원에게 지시하여 러시아 경계로 도망쳐 넘어간 백성을 모두 데려오도록 하라. 아울러 조선국왕이 禁畵를 다시 펼치고, 朝鮮의 변경관원에게도 엄격히 지시하여 백성들을 단속하고, 다시는 넘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변경 방어를 중시하도록 하라. 아울러 富明阿는 訥穆錦에게 지시하여, 러시아 界務官과 상의해서 경계를 넘은 조선 백성을 모두 돌려보내, 그들이 오랫동안 러시아 경내에 머물러 또 다른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이상.

조선에서는 유지를 받았으므로, 마땅히 방법을 강구하여 러시아로 도망쳐간 백성들을 데려오고, 또 한편으로는 禁畵를 엄격히 펼치고 朝鮮의 文武官員에게 두루 명하여, 다시는 백성이 외국으로 몰래 넘어가지 못하게 해야만 비로소 황상의 뜻을 받드는 것이니, 삼가 주의하여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의 답장 공문을 보니, “러시아에서 백성을 돌려보내기를 기다려 하나하나 모두 받아들인 다음, 다시 변경의 禁畵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조선이 본국 백성이 외국으로 도망쳐 가는 것을 금지할 수 없으며, 도리어 외국에서 스스로 거두어들인 백성을 돌려 보내주어야만 비로소 받아들일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받아들인 다음, 다시 변경의 禁畵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는 것은 하루라도 러시아에서 백성을 돌려보내주지 않는다면, 하루라도 변경의 금령을 펼치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다시 넘어가도록 놔두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중국에서 조선을 대신하여 러시아에 독촉하면, 러시아에서는 “조선인은 평소 러시아에서 식량을 공급해주었으므로, 만약 귀국시키시려면 반드시 지출한 비용을 변상해주어야 합니다”와 같은 말로 琿春協領 訥穆錦에게 답할 것입니다. 臣 아문에서는 이미 이번 달 12일, 이러한 상황을 禮部로 咨文을 보내 검토하게 한 다음, 조선으로 그것을 전달하여 조선에서

스스로 처리하게 한 바 있습니다.

지금 禮部에서 주청하기를, “총리아문에 지시하여 가부간을 헤아려본 다음, 러시아인에게 그것을 전하여 조선인을 모두 돌려보내는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분명히 臣 아문의 咨文을 아직 받아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방안의 가부에 대해서는 禮部에 지시하여 총리아문에서 이전에 咨文으로 보낸 각 내용을 검토한 후, 조선으로 다시 咨文을 보내 조선 스스로 방법을 강구하여 처리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유지를 내려주실 것을 청합니다. 즉 이미 도망간 사람들은 더욱 마음을 써서 위무해 준다면, 실로 그들로 하여금 감격하여 돌아오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도망하지 않은 사람들은 앞으로 禁令을 엄격히 펼친다면, 또한 다시는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못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처리한다면, 설령 이전에 도망친 백성을 하나하나 모두 거두어들이 수는 없을지라도, 앞으로는 결국 백성이 다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총리아문에서 재차 富明阿에게 咨文을 보내, 변경의 관원에게 엄격히 지시하여 수시로 단속하게 함으로써, 조선 백성이 다시는 중국 영토를 거쳐 러시아로 도망쳐 말썽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것 외에, 臣等이 조선 백성이 러시아 경계로 몰래 넘어가는 문제를 검토·처리한 경과에 대해서는 마땅히 삼가 주접을 갖추어 상주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皇太后와 皇上께서 열람하신 후 훈시를 내려주시면, 삼가 따르고자 합니다.

이에 삼가 주를 올립니다.

同治 9년 10월 1일에 軍機大臣은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다.

따로 유지를 내리겠다.

이상.

(58) 문서번호 : 1-2-3-27 (105, 137b)

사안 : 조선 백성이 러시아 경내로 몰래 월경하였으므로, 예부에서 조선에 알려 단속시키고 틈을 타서 몰래 넘어가지 못하게 하라(朝鮮民人潛越俄界, 著禮部行知該國查禁約束, 毋任乘間偷越).

날짜 : 同治九年十月初二日(1870년 10월 25일)

발신 : 同治帝

수신 : 總理衙門

十月初二日, 軍機處交出. 同治九年十月初一日, 奉上諭.

總理各國事務衙門奏, 朝鮮民人潛逃俄界, 請飭該國自行辦理一摺. 前有旨, 諭令禮部行知朝鮮國王, 將逃赴俄界民人, 悉數領回約束, 毋許再有逃越. 並由總理各國事務衙門咨行禮部, 轉咨該國. 即著該部按照前咨, 迅即行令朝鮮, 自行設法招徠, 使已逃者, 懷德復歸, 嗣後尤當嚴申禁令, 不可復蹈前轍. 並著該部行知該國王, 遵照辦理. 至邊防, 必應嚴密, 著奕榕, 毓福飭邊界各員弁, 隨時認真稽查. 如有朝鮮民人, 由中國地界, 逃至俄國者, 即行查禁, 毋任乘間偷越.

欽此.

10월 2일, 軍機處에서 同治 9년 10월 1일에 다음과 같은 상유를 받아 보내왔습니다.

총리아문에서 조선 백성이 몰래 러시아 경계를 넘어가고 있으므로, 조선에 지시하여 스스로 처리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상주를 하였다. 이전에 이미 유지를 내려 禮部에 지시하여, 조선국왕에게 문서를 보내 러시아 경계로 넘어간 백성을 모두 받아 데려오고, 다시는 넘어

가지 못하게 단속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총리아문에서 禮部로 咨文을 보내고, 禮部에서 다시 조선으로 咨文을 전달하게 한 바 있다. 禮部는 이전의 咨文에 비추어 서둘러 조선에 문서를 보내, (조선에서) 스스로 방법을 강구하여 백성을 불러들이게 하라. 이미 도망친 사람들은 감격하여 복귀하게 하고, 앞으로는 더욱 금령을 엄격히 펼쳐서 다시는 전철을 밟지 않게 하라. 또한 禮部는 조선국왕에게 이에 따라 처리하도록 문서를 보내 알리라. 변경 방어의 업무는 반드시 엄밀해야 하므로, 奕榕과 毓福은 변방의 각 관원들에게 지시하여 수시로 엄밀하게 단속하게 하라. 만약에 중국의 영토를 거쳐 러시아로 도망치는 조선 백성이 있으면, 곧바로 단속함으로써 빈틈을 타서 몰래 넘어가지 못하게 하라.

이상.

(59) 문서번호 : 1-2-3-28 (106, 138a)

사안 : 조선 백성이 몰래 러시아 경내로 월경하는 일은 응당 조선에 알려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고 총리아문에서 논의하여 상주하였고, 유지를 받아 알립니다(議奏朝鮮民人潛投俄界, 應轉咨該國自行辦理一摺, 錄旨知照).

날짜 : 同治九年十月初四日(1870년 10월 27일)

발신 : 總理衙門

수신 : 禮部

十月初四日, 行禮部文稱.

本衙門議奏, “朝鮮民人潛投俄界, 應轉咨該國, 自行辦理”等因一摺, 於十月初一日具奏, 本日軍機大臣奉旨.

另有旨.

欽此.

相應鈔錄原奏, 恭錄諭旨, 咨行貴部, 欽遵辦理可也.

10월 4일, 禮部로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냈다.

본 아문(총리아문)에서, 조선 백성들이 몰래 러시아 경계로 넘어가고 있으므로, 마땅히咨文을 보내어 조선 스스로 처리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상주하였습니다. 10월 1일에 상주하여, 그 날 軍機大臣이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따로 유지를 내리겠다.

마땅히 상주문 원문을抄錄하고 유지를 옮겨서 禮部로咨文을 보내오니, 그에 따라 처리해 주십시오.

(60) 문서번호 : 1-2-3-29 (107, 138b-139b)

사안 : 조선 백성이 몰래 러시아 경내로 월경하는 일은 예부에 지시하여 조선에 알려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고 총리아문에서 논의하여 상주하였고, 유지를 받아 알립니다(議奏朝
鮮民人潛越俄界, 飭下禮部行文該國自行辦理一摺, 錄旨知照).

날짜 : 同治九年十月初四日(1870년 10월 27일)

발신 : 總理衙門

수신 : 吉林將軍

十月初四日, 行吉林將軍文稱.

同治九年九月初五日, 准貴將軍咨稱.

本年三月, 准禮部咨開, 鈔錄朝鮮國王原文轉奏一摺. 當經筭飭琿春協領, 親晤俄官, 令將朝鮮越界人等, 悉數逐回. 該俄官聲稱, “該國所招朝鮮難人, 奉東悉畢爾總督札飭, 載往綏芬等處耕作, 扣抵所需糜費.” 及向討要, 該酋答說, “伊不能專主.” 並稱, “已將此情, 達知朝鮮國王, 嗣後不關你們琿春之事”等語. 該協領復往, 會朝鮮慶源府邊界之員, 該邊界官答稱, “該國男婦子女, 如若領取, 俄國不准,” 再, “並非慶源府一處之人, 又兼未奉該國王之旨, 伊實不敢承領”等語. 此案, 前准禮部咨, 抄朝鮮國王復文內稱.

已經申飭北境邊官, 恭候俄界逐回民人, 一一領取, 再申邊禁.

等情. 在案.

今該邊官何以聲稱“未奉該國王之旨”, 該國既已申飭北境, 豈不通文各處, 一律照辦.

何至“並非一府之人?” 視其兩國互相推諉, 甚為叵測. 呈請查核辦理.

等因. 前來.

本衙門於九月十二日，將此情形咨行禮部，酌核轉咨該國，自行辦理。旋於九月十三日，准軍機處抄出，禮部密陳，“朝鮮民潛投俄界，請旨飭總理衙門，可否轉令俄人，盡數逐回之處，揆度情形，斟酌辦理一摺，”奉旨。

該衙門知道。

欽此。

本衙門當於十月初一日，密陳請旨，“飭下禮部，仍照前咨各情，轉咨朝鮮，令其自行設法辦理。”等因具奏。奉旨。

另有旨。

欽此。

查朝鮮國民人，逃赴俄界，前經禮部奏奉諭旨。

令該國王飭邊界官，悉數領回。並由該國王申明禁令。

並據該國王復文，“謹當申飭北境”，而該國邊界官，乃謂“未奉該國王之命，不敢承領。”且謂“非一府之人。”是該國屬民，逃赴他國，該國王竟置不問。至俄官又堅執，不肯將朝鮮逃民逐回，並謂“不關你們琿春之事。”似此兩國互相推諉，一時難以爭論。凡中外交涉，惟自嚴邊禁，毋稍疏漏，以期常弭釁端。嗣後惟飭邊界官，從嚴稽查，密為防範，如有朝鮮民人，由中國地界，逃入俄境者，立即攔阻，不令兩國有藉口。除抄錄原奏，恭錄諭旨，咨行禮部欽遵辦理外，相應抄錄原奏，恭錄諭旨，咨行貴將軍欽遵辦理可也。

10월 4일, 吉林將軍에게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냈습니다.

同治 9년 9월 5일, 귀 장군의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올해 3월에 禮部의 咨文을 받았는데, 조선국왕의 咨文 원문을 대신 상주한 주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琿春協領 訥穆錦에게 지시하여, 직접 러시아 관원을 만나서 월경한 조선인들을 모두 되돌려 보내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인은 “자신들이 끌어들이는 조선 난민은 이미 동시베리아 총독의 지시를 받아 그들 逃民을 緋芬 등지로 싣고 가서 그곳 땅을 경작하게 하였으니, (러시아에서 지출한) 비용을 변상해야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요구를 제시하자 그 우두머리는 “당신이 전적으로 주관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하면서 아울러 “이미 이런 사정을 조선국왕에게 일렸으니, 앞으로는 琿春에서 관여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協領이 다시 가서 조선 慶源府의 변경관원을 만났더니, “조선의 남녀노소를 되돌려 받고자 해도 러시아가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들이 모두 慶源府 한 곳의 백성들만이 아니며, 더구나 아직 국왕의 유지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감히 인수할 수도 없습니다”라고 답장을 해왔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전에 조선국왕의 답장 咨文을 초록해서 보내준 다음과 같은 예부의 咨文을 받은 바 있습니다.

(조선국왕은) 이미 북방의 관원에게 지시하여, 러시아 경계에서 되돌려 보내주는 백성들을 삼가 기다렸다가 하나하나 받아들인 다음, 다시 변경 금령을 펼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지금 그곳의 변경관원이 아직 국왕의 유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선은 이미 북방의 관원에게 지시를 하였는데, 어찌 각지에 공문을 돌려 일률적으로 그에 따라 처리하게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어찌 결코 같은 府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조선과 러시아가 서로 책임을 떠미는지 정말로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정을 보고하면서 검토하여 처리해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은 吉林將軍의 咨文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리아문에서는 9월 12일, 이러한 상황을 咨文으로 禮部에 알렸고, 禮部에서는 그것을 검토한 다음 조선에 다시 咨文을 보내어 스스로 처리하게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9월 13일에 軍機處에서 禮部에서 비밀리에 상주하였던 주접과 유지를 초록하여 보내왔습니다. 상주문은 조선 백성이 몰래 러시아 경계로 넘어가고 있으니, 총리아문에 지시하여 러시아인들로 하여금 그들을 모두 돌려보내도록 하는 것이 좋을지, 상황을 헤아려 적절하게 처리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아문(총리아문)에 알리라.

그래서 총리아문에서는 이미 10월 1일에 禮部에 지시하여 이전 咨文의 각 내용에 비추어 조선에 다시 咨文을 보내,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방법을 강구하여 처리하게 해달라고, 비밀리에 유지를 청하는 주접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따로 유지를 내리겠다.

살펴보건대, 조선 백성이 러시아 경계로 도망쳐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전에 禮部에서 상주 하여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조선국왕으로 하여금 변경관원에게 지시하여 그들을 전부 데려오게 하고, 아울러 조선국왕이 다시 금령을 펼치라.

또한 해당 국왕의 회신 문건에 의하면, “삼가 이미 북방 변경에 지시하였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조선의 변경관원은 아직 국왕의 유지를 받들지 못했기 때문에 월경 난민을 감히 인수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같은 府의 사람만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선 백성이 타국으로 도망치는 것에 대해서 조선국왕이 불문에 부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결국 러시아 관원이 또한 고집을 부리면서 도망쳐 온 조선 백성을 돌려보내려 하지 않고, 나아가 “당신들의 瓊春과는 무관한 일입니다”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양국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며, 일시에 논쟁을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무릇 中·外의 교섭에서는 오로지 스스로의 변경 금령을 엄격히 하여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함으로써, 언제나 말썽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변경관원에게 지시하여 엄격하게 단속하고 면밀하게 防犯하도록 하여, 만약 조선 백성이 중국의 영토를 통해서 러시아 경계로 넘어가려 한다면, 곧바로 차단하여 양국에 핑계거리를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주문 원문과 유지를 삼가 초록하여, 禮部로 咨文을 보내어 삼가 그에 따라 처리하게 하는 것 외에, 마땅히 상주문 원문과 유지를 抄錄하여 귀 장군에게 咨文으로 보내니, 삼가 그에 따라 처리해 주십시오.

(61) 문서번호 : 1-2-3-30(108, 140a-140b)

사안 : 이미 변경 초소의 관원에게 수시로 엄밀하게 수색하여, 조선 백성이 중국 땅에서 러시아로 몰래 월경하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지시하였습니다(已飭邊卡員弁隨時認真稽查, 嚴禁朝鮮民人由中國地界逃越俄國).

날짜 : 同治九年十月二十二日(1870년 11월 14일)

발신 : 吉林將軍

수신 : 總理衙門

十月二十二日, 吉林將軍毓福文稱.

於本年十月初九日, 承准軍機大臣字寄禮部·署吉林將軍奕·護理吉林將軍副都統毓.

同治九年十月初一日, 奉上諭.

總理各國事務衙門奏, 朝鮮民人, 潛逃俄界, 請飭該國, 自行辦理一摺. 前有旨, 諭令禮部, 行知朝鮮國王, 將逃赴俄界民人, 悉數領回約束, 毋許再有逃越. 由總理各國事務衙門, 咨行禮部, 轉咨該國. 即著該部, 按照前咨, 迅即行令朝鮮, 自行設法招徠. 使已逃者, 懷德復歸, 嗣後尤當嚴申禁令, 不可復歸前軌. 並著該部, 行知該國王, 遵照辦理. 至邊防, 必應嚴密. 著奕榕·毓福, 嚴飭邊界各員弁, 隨時認真稽查, 如有朝鮮民人, 由中國地界, 逃至俄國者, 即行查禁, 毋任乘間偷越. 將此諭, 知禮部. 並諭令奕榕、毓福知之.

欽此.

遵旨寄信前來.

除飛行密咨寧古塔副都統衙門, 並劄琿春協領訥穆錦等遵照, 務須欽遵諭旨, 嚴飭邊界各卡員弁, 隨時認真稽查, 如朝鮮民人, 由中國地界, 逃至俄國者, 即行查禁, 毋任乘

間偷越，仍須實力奉行，萬勿視爲具文，致干咎戾外，相應呈報總理各國事務衙門，謹請查核可也。

10월 22일, 吉林將軍 毓福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올해 10월 9일, 군기대신이 禮部와 署吉林將軍 奕榕, 護理吉林將軍·副都統 毓福에게 보내는 다음과 같은 廷寄를 받았습니다.

同治 9년 10월 1일, 다음과 같은 上諭를 받았습니다.

총리아문에서 조선 백성들이 몰래 러시아 경계로 넘어가고 있으니 조선에 명하여 스스로 처리하게 해줄 것을 주청하였다. 이에 대해 이전에 유지를 내려 禮部에 지시하여, 조선국왕에게 러시아 경계로 도망쳐간 백성들을 전부 데려와서 단속하고, 다시는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고 알리도록 한 바 있다. 총리아문에서 禮部로 咨文을 보내서, 다시 禮部에서 朝鮮에 咨文을 보냈던 것이다.

禮部는 앞서 보낸 이 咨文에 비추어 서둘러 조선에 지시하여, 스스로 방법을 강구하여 월경백성을 초무하게 하라. 이미 도망친 사람들은 감격하여 다시 복귀하게 하고, 이후로는 더욱 금령을 엄격히 펼쳐서 다시는 전철을 밟지 못하게 하라. 아울러 禮部는 조선 국왕에게 문서를 보내, 그대로 따라서 처리하게 하라. 변경 방어는 반드시 엄밀해야 한다. 奕榕과 毓福은 변방 각 관원들에게 엄격히 지시하여 수시로 엄밀하게 단속하며, 만약에 조선 백성이 중국 영토를 통해서 러시아로 도망치려는 자가 있으면, 곧바로 단속하여 빈틈을 타서 몰래 넘어가지 못하게 하라. 이 유지를 禮部에 알리라. 그리고 奕榕과 毓福에게도 알리라.

이상.

유지에 따라 이상과 같은 廷寄가 전달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신속하게 寧古塔副都統衙門에 서둘러 咨文을 보내고, 아울러 琿春協領 訥穆錦 등에게도 지시공문을 보내, 삼가 힘써 유지를 따를 것입니다. 또한 변방의 각 초소 관원들에게 엄격히 지시하여 수시로 엄밀하게 단속하며, 만약에 조선 백성이 중국 영토를 통해서 러시아로 도망가려 한다면, 곧바로 단속하여 빈틈을 타서 몰래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데 반드시

전력을 다해 받들어 행함으로써, 만에 하나라도 이러한 지시를 상투적인 공문으로 보아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 외에, 마땅히 총리아문에 보고해야 할 것이니, 삼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62) 문서번호 : 1-2-3-31(109, 141a-141b)

사안 : 속하에게 조선 월경민 이동길과 그 무리를 엄밀히 체포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飭屬嚴拏朝鮮逃民李東吉及其黨徒).

날짜 : 同治九年十月二十二日(1870년 11월 14일)

발신 : 吉林將軍 毓福

수신 : 總理衙門

十月二十二日, 吉林將軍毓福文稱.

於本年十月初八日, 本衙門承准軍機大臣字寄禮部·署吉林將軍奕榕·護理吉林將軍副都統毓福.

同治九年九月二十九日, 奉上諭.

據禮部奏, 接准盛京禮部送到朝鮮國王咨文內稱.

該國慶源府農圃社居民李東吉, 逃往琿春地方, 蓋屋墾田, 嘯聚無賴. 該國民口, 時有犯越, 皆李東吉招誘所致. 琿春人與之慣熟, 不肯舉發, 籲懇查拏.

今李東吉潛往琿春, 招引該國民人, 逃越內地, 豈可任其溷迹, 毫無見聞. 著毓福密飭琿春協領, 確查該國匪犯, 如在所屬境內潛匿, 卽行購線躡緝, 務將朝鮮匪犯李東吉等, 盡數拏獲, 解交該國懲治. 奕榕抵署任後, 並著會同毓福, 飭屬隨時稽查, 毋任匪徒再行逃匿, 以肅邊防. 此次朝鮮逃越人犯, 已諭令吉林將軍等, 嚴拏解交. 著禮部行知該國王, 遵照辦理. 將此諭知禮部, 並諭令奕榕·毓福知之.

欽此.

遵旨寄信前來.

除飛行密劄琿春協領訥穆錦遵照, 刻卽督同該處儘先協領花翎佐領文福, 務須欽遵諭

旨, 親密確查該朝鮮逃犯李東吉, 並嘯聚無賴匪犯, 究有若干查明, 如在琿春所屬境內潛匿, 卽行購線踞緝, 務須悉數拏獲, 解交該國懲治, 不准遺漏. 倘有容隱不拏情事查出, 定行嚴究不貸. 仍不時密派員弁, 在於屬界隨時稽查, 毋任該國匪徒, 再行逃匿, 以靖邊陲. 並咨行寧古塔副都統衙門, 一體飭屬嚴防外, 相應呈報總理各國事務衙門, 謹請查核可也.

10월 22일, 吉林將軍 毓福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올해 10월 8일, 본 아문에서는 軍機大臣이 禮部와 署吉林將軍 奕榕, 護理吉林將軍 副都統 毓福에게 보낸 다음과 같은 廷寄를 받았습니다.

同治 9년 9월 29일에 다음과 같은 上諭를 받았습니다.

盛京禮部에서 보내온 조선국왕의 咨文을 이어 받아, 禮部에서 다음과 같은 상주문을 올렸다.

조선 慶源府 農圃社의 주민 李東吉이 琿春지방으로 도망가서, 집을 짓고 밭을 일구며,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조선 백성이 때로 월경하는 것은 모두 李東吉이 불러들이는 바입니다. 琿春 사람들은 이를 잘 알면서도 고발하지 않으니, 조사해서 체포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지금 李東吉이 몰래 琿春으로 가서 조선 백성을 불러들이 內地로 넘어오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가 숨어 지내며 조금도 발각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인가? 毓福은 琿春協領에게 비밀리에 지시하여, 朝鮮의 범인을 확실하게 수사하여 만약 관할 경내에 숨어 있다면, 곧바로 탐문해서 체포함으로써, 조선 범인 李東吉 등을 모두 체포하여 朝鮮에서 처벌받게 하라. 奕榕은 吉林將軍 署任의 직무에 취임한 뒤, 毓福과 함께 속하에게 지시하여 수시로 단속함으로써, 匪徒들이 다시는 도망쳐 숨어들지 못하게 하여 변경 방어를 바로잡으라. 이번에 도망쳐 넘어온 조선 범인에 대해서는, 이미 吉林將軍 등에게 엄밀히 잡아들여 넘기도록 하였으니, 禮部는 조선국왕에게 문서를 보내 알려, 이에 따라 처리하게 하라. 이 유지를 禮部에 알리고, 아울러 奕榕과 毓福에게도 알려주도록 하라. 이상.

유지에 따라 이상과 같은 延壽가 전달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吉林將軍은) 琿春協領 訥穆錦에게 서둘러 비밀지시를 보내 그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즉 곧바로 그곳의 儘先協領·花翎佐領인 文福과 함께, 유지에 따라 직접 비밀리에 해당 조선인 도망자 李東吉과 그가 불러들인 의지할 곳 없는 무리들이 도대체 몇 명인지를 몰래 확실하게 조사하고, 만약 琿春 경내에 숨어 있다면 곧바로 탐문하고 모조리 체포하여 조선에 넘겨 처벌을 받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만약에 숨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체포하지 않은 일이 발각되면, 반드시 엄히 처벌하여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계속해서 불시에 비밀리에 관원을 파견하여 관할 경내에서 수시로 단속함으로써, 朝鮮의 匪徒들이 다시는 도망쳐 숨지 못하게 하여 변경 방어를 바로잡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寧古塔副都統衙門에게도 咨文을 보내어, 마찬가지로 屬員들에게 지시하여 방비를 엄밀히 하도록 하는 외에, 마땅히 총리아문에도 보고를 올리는 바이오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63) 문서번호 : 1-2-3-32 (111, 143b-145a)

사안 : 조선 월경민 이청산을 체포하였으므로, 이미 명확한 사정을 심문하여 알아낸 다음, 조선에 넘겨 처벌을 받게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查獲朝鮮逃人李青山, 已飭訊明確情後, 解交該國懲治).

날짜 : 同治九年十一月十一日(1871년 1월 1일)

발신 : 護理吉林將軍 毓福

수신 : 總理衙門

十一月十一日, 護理吉林將軍毓福文稱.

查本年十月初八日, 承准軍機大臣字寄, 禮部·署吉林將軍奕·護理吉林將軍副都統毓. 同治九年九月二十九日, 奉上諭.

據禮部奏, 接准盛京禮部送到朝鮮國王咨文, 內稱.

該國慶源府農圃社居民李東吉, 逃往琿春地方, 蓋屋墾田, 嘯聚無賴. 該國民口, 時有犯越, 皆李東吉招誘所致. 琿春人與之慣熟, 不肯舉發, 籲墾查拏.

等語.

朝鮮匪徒, 潛入關隘, 沿邊官吏, 卽應如數查拏. 今李東吉潛住琿春, 招引該國民人, 逃越內地, 豈可任其匿跡, 毫無見聞. 著毓福密飭琿春協領, 確查該國匪犯, 如在所屬境內潛匿, 卽行購線躡緝, 務將朝鮮匪犯李東吉等, 盡數拏獲, 解交該國懲治. 奕榕抵署任後, 並著會同毓福, 飭屬隨時稽查, 毋任匪徒再行逃匿, 以肅邊防. 此次朝鮮逃越人犯, 已諭令吉林將軍等, 嚴拏解交. 著禮部行知該國王, 遵照辦理. 將此諭知禮部, 並諭令奕榕·毓福知之.

欽此.

遵旨寄信前來。

當經本衙門一面密筭琿春協領訥穆錦，務須欽遵諭旨，親密訪拏，一面據情呈報總理各國事務衙門查核，在案。嗣准禮部咨同前因，當經本衙門，分行咨·筭亦在案。後於閏十月初四日，據琿春協領訥穆錦報稱。

遵奉密筭，督同儘先協領花翎佐領文福，親往琿春沿邊各處，嚴密躡緝。於十月二十三日未刻，在於琿春西南，土們江邊霍隆溝裡，盤獲朝鮮慶源地方民李姓，報名李青山，身穿中國衣服，在於該處隱匿，即將該犯拏獲。是否該國逃犯李東吉，自應從實究明。將該犯審明之日，或解交朝鮮慶源地方官，轉交該國王，或送省辦理之處，呈請示遵。

前來。

查該協領拏獲朝鮮慶源地方民李姓，報名李青山一名，無論是否匿名逃犯李東吉，及其無賴夥匪，自應由該協領，從實審明，遵奉前旨，解交該國懲治，以昭核實。當經本衙門筭覆該協領訥穆錦遵照。

即將拏獲朝鮮慶源地方民李青山一名，從實甄訊，是否即係著名要犯李東吉，匿名李青山，抑或無賴夥匪，務須究出確情，錄供呈報，以憑轉咨總理各國事務衙門。如訊非要犯李東吉，仍將在逃之李匪，並其夥犯，即由該協領，實力密訪，設法躡緝，務期弋獲，解交該國懲治外，並將獲犯備照，解交朝鮮邊界官，以憑懲辦。

等因。筭飭去後。

茲於閏十月二十三日，復據琿春協領訥穆錦報稱。

前將拏獲朝鮮匪犯李青山一名，呈請核辦後，正值審訊該犯之際，於閏十月初九日，據堆撥房值班雲騎尉永慶呈稱。

職奉派看守朝鮮匪犯李青山，偶染傷寒時症，飲食不進，甚屬沉重。

等情。呈報前來。

據此，飭派檔房值班驍騎校永魁，復行勘驗，屬實。據此詳查，李青山係奉諭旨嚴拏之要犯，現今染病，漸覺沉重，又兼本處並無醫官調治，礙難耽壓。是以，合行備文呈報將軍衙門查核可也。

等因.前來.

查拏獲朝鮮匪犯李青山一名, 無論是否匿名李東吉, 及其無賴夥匪, 自應即時問明真名, 一面解交該國邊界官, 解回懲治, 一面具報, 以憑轉詳, 方昭慎重. 今該協領, 何將該犯李青山拏獲數日, 並未即時詢明, 解交該國, 復以“現染時疾, 甚屬沉重, 該處並無醫官調治, 礙難耽壓”等情, 聲明具報? 實屬顛預, 不知緩急. 第關奉旨緝拏外國逃犯, 未便含混稽延. 除飭覆琿春協領訥穆錦遵照, 即將拏獲朝鮮匪犯李青山一名, 迅即問明, 是否匿名李東吉, 抑或無賴夥匪, 務即一面解交該國邊界官, 解回懲治, 一面具覆, 以憑轉報, 毋得含混延宕. 仍將在逃首夥, 務須盡數嚴拏, 實力訪緝, 解交該國懲治. 並咨行寧古塔副都統銜門道照外, 相應據情呈報總理各國事務衙門, 謹請查核可也.

11월 11일, 護理吉林將軍 毓福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조사해보니, 올해 10월 8일에 軍機大臣이 禮部와 署吉林將軍 奕榕, 護理吉林將軍 副都統 毓福에게 보낸 다음과 같은 廷寄를 받았습니다.

同治 9년 9월 29일에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盛京禮部에서 보내온 조선국왕의 咨文을 이어 받아 禮部에서 올린 다음과 같은 상주문을 받았다.

조선 慶源府 農圃社의 주민 李東吉이 琿春지방으로 도망가서 집을 짓고 밭을 일구며, 의지할 곳 없는 匪徒를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조선 백성이 때로 월경하는 것은 모두 李東吉이 불러들인 바입니다. 琿春 사람들은 이를 잘 알면서도 고발하지 않으니, 조사해서 체포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조선의 匪徒가 변경의 關隘에 숨어들었으니, 주변의 관리는 응당 즉시 그 수를 파악하여 모두 체포해야 할 것이다. 지금 李東吉이 몰래 琿春으로 가서 조선 백성을 불러들여 內地로 넘어오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가 숨어 지내며 조금도 발각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인가? 毓福은 琿春協領에게 비밀리에 지시하여, 朝鮮의 범인을 확실하게 수사하여, 만약 관할 경내에 숨어 있다면 곧바로 탐문해서 체포함으로써, 조선 범인 李東吉 등을 모두 체포하여 朝鮮에서 처벌받게 하라. 奕榕은 吉林將軍 署任의 직무에 취임한

뒤, 毓福과 함께 속하에게 지시하여 수시로 단속함으로써, 匪徒들이 다시는 도망쳐 숨어들지 못하게 하여 변경 방어를 바로잡으라. 이번에 도망쳐 넘어온 조선 범인에 대해서는, 이미 吉林將軍 등에게 엄밀히 잡아들이 넘기도록 하였으니, 禮部는 조선국왕에게 문서를 보내 알려, 이에 따라 처리하게 하라. 이 유지를 禮部에 알리고, 아울러 奕榕과 毓福에게도 알려주도록 하라.

이상.

유지에 따라 이상과 같은 延壽가 전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본 吉林將軍衙門에서는 한편으로는 琿春協領 訥穆錦에게 비밀리에 지시 공문을 보내, 삼가 유지에 따라 직접 몰래 현지를 탐방하여 범인을 잡아들이도록 힘쓰고, 다른 한편으로는 총리아문에서 검토하도록 사실에 근거하여 보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 이어서 禮部에서 위의 사유로 보낸 咨文을 받았고, 이에 본 아문에서는 각기 咨文과 劄文을 따로 나누어 보낸 바 있습니다. 나중에 윤10월 4일, 琿春協領 訥穆錦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니다.

비밀지시를 받들어, 儘先協領·花翎佐領 文福과 함께 직접 琿春 주변의 각지로 가서 엄밀하게 단속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0월 23일 未時에 琿春 서남쪽의 土門江邊 霍隆溝에서 李氏 성을 가진 조선 慶源 백성을 잡았는데, 이름이 李靑山이라고 하였으며, 중국 복장을 하고 그곳에 숨어 지내고 있었으므로 곧바로 체포하였습니다. 그가 조선의 도망자 李東吉인지 아닌지는 사실대로 밝혀낼 것입니다. 해당 범인을 분명히 심문한 다음, 조선 慶源府의 지방관에게 넘겨주어 조선국왕에게 압송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省都인 吉林으로 보내 처리할 것인지, 지시를 내려주시면 그에 따르고자 청합니다.

吉林將軍이 살펴보건대, 琿春協領이 李氏 성을 가졌고 이름을 李靑山이라고 알려진 조선 慶源 지방 백성 한 명을 체포하였습니다. 그가 이름을 위장한 도망자 李東吉인지, 아니면 의지할 곳 없는 무리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協領이 마땅히 사실대로 명확하게 조사하여, 위의 유지에 삼가 따라 조선으로 넘겨 처벌받게 함으로써, 일 처리를 분명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아문에서는 해당 協領 訥穆錦에게 다시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려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체포한 조선 慶源지방 백성 李靑山 1명을 곧바로 사실대로 심문해서, 지명수배된 주범 李東吉이 李靑山으로 위장한 것인지 아닌지, 아니면 의지할 곳 없는 무리인지 아닌지 정확한 사정을 밝히는데 힘쓰고, 진술을 초록해서 보고함으로써 그에 의거하여 총리아문으로 다시 咨文을 보낼 수 있게 하라. 만약 심문한 결과 주범 李東吉이 아니라면, 여전히 도망

중인 李東吉과 그 무리를 해당 協領은 계속 힘을 기울여 비밀리에 탐방하고 방법을 강구해서 힘써 체포함으로써 조선으로 넘겨 처벌받게 하고, 체포한 범인은 照會를 갖추어 조선의 변경관원에게 넘겨 그쪽에서 처벌할 수 있게 하라.

이상의 내용을 箭文을 보내 지시하였습니다. 이어 윤10월 23일, 다시 琿春協領 訥穆錦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전에 포획한 조선 범인 李靑山 1명에 대해 보고를 올려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하고, 바로 그 범인을 심문하고 있던 중, 윤10월 9일 堆撥房의 당직이었던 雲騎尉 永慶이 다음과 같이 보고를 해왔습니다.

제가 지시를 받들어 조선 범인 李靑山을 감시하고 있는데, 우연히 傷寒症에 걸려 음식을 넘기지 못하고 있어, 매우 위중합니다.

이상의 보고를 받고, 檔房의 당직 驍騎校 永魁를 파견하여 다시 조사해보라고 하였더니, 과연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세히 살펴보건대, 李靑山은 유지를 받들어 체포한 중요 범인으로, 지금 병에 걸려 점차 위중해지는 상태인 데다가, 이곳에는 치료할 醫官도 없어서 병을 다스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에 將軍께서 이 문제를 검토해주시도록 문서를 갖추어 보고를 올려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보고를 받고 살펴보건대, 체포한 조선 범인 李靑山이 이름을 위장한 李東吉이든, 아니면 의지할 곳 없는 무리이든 상관없이, 마땅히 곧바로 진짜 이름을 밝혀내고, 한편으로는 조선의 변경관원에게 넘겨주어 처벌을 받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고를 올려야만 신중한 일 처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당 協領은 어찌하여 범인 李靑山을 체포한 지 수일이 지났는데도, 곧바로 심문을 해서 朝鮮으로 넘기지 않고, “지금 時疾에 걸려서 매우 위중하며 그곳에는 치료할 醫官도 없어서 병을 다스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는 보고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는 실로 고지식한 것으로, 일 처리의 완급을 모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은 유지를 받들어 외국의 도망자를 잡아들인 것으로, 얼렁뚱땅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琿春協領 訥穆錦에게 다시 지시를 보내, 곧바로 체포한 조선 범인 李靑山을 서둘러 심문해서, 李東吉이 이름을 위장한 것인지, 아니면 의지할 곳 없는 匪徒인지를 밝히고, 한편으로는 朝鮮의 변경관원에게 넘겨 처벌을 받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고를 올려 본 아문에서 그에 근거하여 다시 보고할 수 있도록 하되, 얼렁뚱땅 시간을 지연시키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중인 범인 무리를 전부 잡아들이기 위하여, 전력을 기울여

현장을 탐방하며 단속하고, 그 후 범인을 朝鮮에 넘겨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寧古塔 副都統衙門으로 咨文을 보내서 알리는 것 외에도, 마땅히 총리아문에 사실에 근거하여 보고를 올림으로써, 검토해주시기를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64) 문서번호 : 1-2-3-33 (112, 145b-147b)

사안 : 조선 월경민 이동길을 체포하여 조선 경원부에 수감하도록 넘겼으며, 두만강 주변에서 그가 匪徒를 끌어들이는 일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緝獲朝鮮逃犯李東吉解交該國慶源府收禁, 沿江查無該犯招引匪類情事).

날짜 : 同治九年十二月初十日(1871년 1월 30일)

발신 : 吉林將軍 奕榕

수신 : 同治帝

十二月初十日, 軍機處交出署吉林將軍奕榕奏稱.

爲 遵旨拏獲朝鮮匪犯李東吉, 並伊妻室, 一併解交該國收禁. 暨查明沿江一帶, 實無該犯招引匪類. 恭摺覆奏, 仰祈聖鑒 事.

竊奴才毓福, 於本年十月初八日, 承准軍機大臣字寄.

同治九年九月二十九日奉上諭.

據禮部奏, 接准盛京禮部送到朝鮮國王咨文, 等因.

欽此.

遵旨寄信前來.

奴才跪讀之下, 仰見聖慮周詳, 綏靖邊圉之至意. 奴才毓福, 當即一面密飭琿春協領訥穆錦, 迅即欽遵諭旨, 確查該國逃犯李東吉, 如在琿春所屬境內潛匿, 即行購線躡緝, 並查明嘯聚無賴匪犯, 究有若干, 務須悉數拏獲, 解交該國懲治, 不准遺漏. 仍不時密派員弁, 在於所屬境內, 隨時認真稽查, 毋任該國匪徒, 再行逃越. 並一面知照奴才奕榕一體欽遵在案.

茲奴才等於十一月十九日, 接據琿春協領訥穆錦呈報.

遵奉密筭，督同儘先協領花翎佐領文福，親往琿春屬境，嚴密躡緝。於十月二十三日未刻，在於琿春西南，土門江邊霍隆溝裏，盤獲朝鮮慶源地方民李姓，報名李青山，身穿中國衣服，在於該處隱匿，即將該犯拏獲。訊據該犯供稱。

李青山即李東吉，年五十八歲，是朝鮮慶源府民。於咸豐三年間，因在本國慶源府滋事，恐被官兵拏獲，更名李青山，逃越江東各處遊蕩。於是年夏間，有伊族弟李姓，帶領李東吉之妻蔡氏，偷越江界，各處乞食，不意撞遇，彼此相認，隨與族弟，二人互相剪髮改裝，帶領伊妻蔡氏，逃奔南邊霍隆溝裏隱藏，刨地兩畝，搭蓋窩棚存住，撈魚度命。伊本名，委係李東吉，更名李青山屬寔。除此，並無招引無賴夥匪情事，後伊族弟李姓，已投俄界。伊於今年十月間，被大國官兵，將我及我妻蔡氏，一併拏獲審訊。至本國逃民自何處越界，逃奔俄界，伊均不知情。

等供。

據此。查該犯所供伊族弟李姓，已投俄界，無憑緝獲。隨訊李東吉之妻蔡氏，委因言語不通，未能取供。僅將該犯錄取確供，並伊妻蔡氏，一併備文知照，飭交佐領溫崇阿·驍騎校永魁等，於閏十月二十日，帶兵解送該國，面交慶源府官收禁。並索取該國收付照會存案。復飭查界雲騎尉成貴，“帶兵前赴霍隆溝裏沿江一帶，搜查該犯有無招誘該國逃匪，在各處藏匿情事。並將該犯所搭窩棚，及所刨地畝二畝，一併焚燬平棄。”等情。去後。

旋據該員回稱。

遵即在於霍隆溝山裏幽僻處所，及沿江一帶，嚴密搜查，實無該犯李東吉招引匪類。惟將李東吉所搭窩棚，及所刨地畝，均已焚燬平棄。

等情。呈據該協領訥穆錦轉報前來。

奴才等復查，該協領已將朝鮮逃犯李東吉，並伊妻室拏獲，解交朝鮮慶源府官收禁。並將該犯所搭窩棚，及其所刨地畝，一併焚燬平棄。暨查明沿江一帶，實無該犯李東吉招引匪類情事。惟訊據獲犯李東吉所供，伊族弟李姓，已投俄界，應請毋庸查緝外，現在雖據該協領呈報，沿江一帶，實無李東吉招引匪類藏匿情事，仍恐續有竄越，允宜認真稽查，以期仰副朝廷肅靖邊疆之至意。除檄飭琿春協領訥穆錦，並寧古塔副都統烏勒興

阿, 嚴飭所屬沿江各處, 邊巡卡台官弁兵役, 不時嚴密稽查, 毋任朝鮮匪徒, 再行逃匿, 以肅邊防, 而清界限.

除鈔錄拏獲朝鮮逃犯李東吉供招, 咨報禮部, 並總理各國事務衙門, 暨呈報軍機處查覆外, 合將奴才等遵旨密飭琿春協領, 拏獲朝鮮匪犯李東吉, 並伊妻室, 一併解交該國收禁, 暨查明沿江一帶, 實無該犯李東吉招引匪類, 並嚴飭所屬邊卡, 一體嚴查逃越, 各緣由, 理合恭摺覆奏, 伏乞兩宮皇太后皇上聖鑒.

謹奏.

同治九年十二月初九日, 軍機大臣奉旨.

該衙門知道.

欽此.

12월 10일, 軍機處에서 署吉林將軍 奕榕이 올린 다음과 같은 상주문을 보내왔습니다.

유지에 따라 조선의 범인 李東吉과 그 부인을 체포하여, 함께 조선으로 압송하여 감금시키도록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강변 일대를 조사하였는데, 그 범인이 匪徒를 불러들인 일은 실제 없었습니다. 삼가 주접을 갖추어 답하오니, 열람해주시기 바랍니다.

奴才 毓福은 올해 10월 8일, 軍機大臣의 다음과 같은 廷寄를 전달받았습니다.

同治 9년 9월 29일, 다음과 같은 上諭를 받았습니다.

盛京禮部에서 보내온 조선국왕의 咨文을 받아 禮部에서 올린 상주문을 받았다.

이상.

奴才는 삼가 무릎 꿇고 유지를 읽은 다음, 폐하의 사려 깊은 마음과 변방을 안정시키시려는 지극한 뜻을 우러러 볼 수 있었습니다. 奴才 毓福은 이에 한편으로는 琿春協領 訥穆錦에게 비밀리에 지시하여, 서둘러 삼가 유지에 따라 조선의 도망자 李東吉을 확실하게 조사하여, 만약 琿春 관할 경내에 숨어 있다면 곧바로 탐문하여 체포하게 하였으며, 아울러 그가 불러들인 의지할 데 없는 匪徒가 몇 명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조사하여, 전부 잡아들인 다음 朝鮮으로 넘겨주어 처벌받게 하고,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힘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시에 비밀리에 관원을 파견하여, 관할 경내에서 수시로 충실하게 단속하여, 朝鮮의 匪徒가 다시는 몰래 넘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다른 한편으로는 奴才 奕榕에게 알려, 유지의 내용을 삼가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奴才 등은 11월 19일, 琿春協領 訥穆錦이 올린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비밀지시를 받들어, 儘先協領·花翎佐領 文福과 함께 직접 琿春 주변의 각지로 가서 엄밀하게 단속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0월 23일 未時에 琿春 서남쪽의 土門江邊 霍隆溝에서 李氏 성을 가진 조선 慶源 백성을 잡았는데, 이름이 李靑山이라고 하였으며, 중국 복장을 하고 그곳에 숨어 지내고 있었으므로 곧바로 체포하였습니다. 그 범인을 심문하여 다음과 같은 진술을 받았습니다.

李靑山이 곧 李東吉이며, 나이는 58세로 조선 慶源府 백성입니다. 咸豐 3년에 본국 慶源府에서 일을 저지르고 관병에 체포될까 두려워, 李靑山으로 이름을 바꾸고 두만강 동쪽으로 몰래 넘어가 각지를 유랑하였습니다. 올해 여름에는 李氏 성을 가진 族弟가 제 처 蔡氏를 데리고 몰래 강을 넘어와 각처에서 걸식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만나 서로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族弟와 함께 들어서 머리를 변발로 바꾸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저는 부인 蔡氏를 데리고 토문강 남쪽의 霍隆溝에 숨어서, 2晌의 토지를 일구며 움집을 짓고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본명은 틀림없이 李東吉로 李靑山으로 이름을 바꾼 것이 분명합니다. 이 밖에는 결코 의지할 곳 없는 匪徒를 불러 모은 적이 없으며, 族弟 李氏는 이미 러시아 경계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올해 10월에 중국 관병에 의하여 부인 蔡氏와 함께 체포되어 심문을 받았습니다. 조선의 도망 백성이 어느 곳에서 경계를 넘어가 러시아로 달아나는지는 저희들도 알지 못합니다.

살펴보건대, 범인이 진술한 그의 族弟 李氏는 이미 러시아 경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체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李東吉의 부인 蔡氏를 심문했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술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범인의 확실한 진술만 抄錄하고, 그의 부인 蔡氏와 함께 照會를 갖추어 알림으로써, 佐領 溫崇阿와 驍騎校 永魁 등에게 넘겨주어, 윤10월 20일에 병사들을 거느리고 조선으로 압송시키고, 慶源府 관원을 직접 만나 감금시키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아울러 朝鮮에 요구하여 照會를 받았다는 증명서를 받아와 보관 하였습니다. 또한 查界雲騎尉 成貴에게 “병사들을 데리고 霍隆溝 강변 일대로 가서, 이동길이 朝鮮의 도망자를 불러들여 각처에서 숨겨준 일이 있는지 조사하고, 범인이 지은 움집과

경작한 2晌의 토지는 모두 불태우고 평평하게 갈아엎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곧이어 查界雲騎尉 成貴가 돌아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지시에 따라서 곧바로 霍隆溝의 산 속 깊은 곳과 강변 일대를 엄밀하게 수사하였는데, 정말로 범인 李東吉이 불러들인 匪徒는 없었습니다. 오직 李東吉이 지은 움집과 경작한 토지만 전부 불태우고 평평하게 갈아엎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琿春協領 訥穆錦의 보고를 받아 (寧古塔副都統이) 전달해 왔습니다. 奴才 등이 다시 살펴보았는데, 琿春協領은 이미 조선의 도망자 李東吉과 그의 부인을 체포하여 조선 慶源府의 관원에게 감금시키도록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이 지은 움집과 경작한 토지도 모두 불태우고 갈아엎었습니다. 아울러 강변 일대를 분명하게 조사하였는데, 정말로 범인 李東吉이 불러들인 匪徒는 없었습니다. 체포한 범인 李東吉이 진술한 바에 의하면, 그의 族弟 李氏는 이미 러시아 경계로 넘어갔으므로, 더 이상 그를 체포하려 할 필요가 없다고 청하는 것 외에, 지금 비록 琿春協領이 강변 일대에 李東吉이 불러들인 匪徒가 숨어 있는 일은 없다고 보고했지만, 혹시라도 뒤이어 넘어오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마땅히 충실하게 단속하여 변방을 안정시키려는 조정의 지극한 뜻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琿春協領 訥穆錦과 寧古塔副都統 烏勒興阿에게 지시하여, 관할 경내 강변 각처에 있는 변경 초소의 文武官員과 兵役들에게 엄격히 지시하여, 수시로 엄밀하게 단속하여 조선 匪徒가 다시는 도망쳐 숨어들지 못하게 하여, 변경 방어를 바로잡고 경계를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까. 조선의 도망자 李東吉의 진술을 抄錄하여 禮部와 총리아문으로 咨文을 보내 알리고, 아울러 軍機處에 보고하여 검토를 받는 것 외에, 마땅히 奴才 등이 유지에 따라 琿春協領에게 비밀리에 지시하여 조선의 도망자 李東吉과 그의 부인을 사로잡아 함께 조선으로 넘겨주어 감금시켰으며, 아울러 강변 일대를 조사해보니 범인 李東吉이 불러들인 匪徒는 실제 없었고, 또한 관할 변경 초소에 지시하여 엄격하게 도망자들을 단속하도록 한 각각의 사정을, 마땅히 삼가 주점을 갖추어 상주해야 할 것입니다. 엎드려 삼가 兩宮皇太后와 皇上께서 열람해주시기를 청합니다.

이에 삼가 주를 올립니다.

同治 9년 12월 9일, 군기대신이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아문에 알리라.

이상.

(65) 문서번호 : 1-2-3-34 (113, 148a-151a)

사안 : 조선 월경민 이동길을 체포하여 조선 경원부에 수감하도록 넘겼으며, 두만강 주변에서 그가 匪徒를 끌어들이는 일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朝鮮逃犯李東吉已解交該國慶源府收禁, 沿江一帶並無該犯招引匪類情事).

첨부문서 : 1. 이동길의 진술서(李東吉供狀).

날짜 : 同治九年十二月十五日(1871년 2월 4일)

발신 : 吉林將軍 奕榕

수신 : 總理衙門

十二月十五日, 署吉林將軍奕榕文稱.

[이하 상주문의 내용은 바로 앞의 (64) 문서번호 : 1-2-3-33 (112, 145b-147b)과 동일하므로 생략함]

等因.

具奏之處, 除咨寧古塔副都統烏勒興阿, 並飭飭琿春協領訥穆錦等, 一體遵照, 務須嚴飭所屬沿江各處, 邊巡卡台官兵兵役, 不時嚴密稽查, 毋任朝鮮匪徒, 再行逃匿, 以肅邊防, 而清界限外, 相應照抄原摺, 並錄拏獲朝鮮逃犯李東吉供招, 粘連文尾, 呈報總理各國事務衙門, 謹請查核可也.

(1)照錄粘單

李青山, 卽李東吉供.

小的年五十八歲，是朝鮮慶源府民。祖父母俱故，父李陽恩，母崔氏，現在我們兄弟三個，長兄李東明已故，三弟李名山，不知逃往何處。小的居次，娶妻蔡氏。於咸豐三年間，因在本國慶源府滋事，恐被官兵拏獲，更名李青山，逃越江東各處遊蕩。於是年夏間，有族弟李姓，帶領我妻蔡氏，偷越江界，各處乞討，不意撞遇我妻，彼此相認，隨與族弟二人互相剪髮改裝，帶領我妻蔡氏，逃奔南邊霍隆溝裡隱藏，刨地兩晌，搭蓋馬架存住，撈魚度命。

小的本名委係李東吉，更名李青山，屬實。除此，並無招引無賴夥匪情事。後我族弟李姓，已投俄界。

小的於今年十月間，由山裏前往邊江一帶，仍是撈魚。始回到自己馬架住處，忽去大國官兵，將小的及我妻蔡氏，一併拏獲。今蒙審訊，委因小的實在本國滋事，逃越江界，躲避山裏無人處隱藏，更名李青山。並無嘯聚無賴夥匪。今問本國逃民，自何處越界逃奔俄界，小的均不知情。所供是實。

12월 15일, 署吉林將軍 奕榕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올해 12월 1일, 본 아문에서는 삼가 주접을 갖춰 驛站을 통해 다음과 같이 上奏하였습니다.

[이하 상주문의 내용은 바로 앞의 (64) 문서번호 : 1-2-3-33 (112, 145b-147b)과 동일하므로 생략함.]

이상의 내용으로 상주하고, 寧古塔副都統 烏勒興阿에게 咨文을 보내어, 琿春協領 訥穆錦 등에게 모두 유지에 따라 관할지역 강변 각처에 있는 변방 초소의 문무관원과 병사들에게 엄격히 지시하여, 수시로 엄밀하게 단속하여 조선의 匪徒가 다시는 도망쳐 숨어들지 못하게 함으로써, 변경 방어를 바로잡고 경계를 명확히 하도록 힘쓰게 한 것 외에, 마땅히 원 주접을 초록하고, 체포한 조선 逃犯 李東吉의 진술서도 文尾에 첨부하여, 총리아문에 보고하니 검토해주십시오.

(1) 첨부문건 초록

李靑山, 즉 李東吉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소인은 58세로 조선 慶源府의 백성입니다. 조부모는 모두 돌아가셨고, 아버지 李陽恩과 어머니 崔氏는 살아 계십니다. 저희 형제는 셋으로, 큰형 李東明은 이미 사망하였고, 셋째인 동생 李名山은 어디로 도망갔는지 모릅니다. 저는 둘째로, 蔡氏를 처로 맞았습니다. 咸豐 3년에 본국 慶源府에서 일을 저지르고 관병에 체포될까 두려워, 이름을 李靑山으로 바꾸고 두만강 동쪽으로 몰래 넘어와 각지를 유랑하였습니다. 그 해 여름에 李氏 성을 가진 族弟가 제 처 蔡氏를 데리고 몰래 강을 넘어와 각처에서 걸식을 하다가, 저와 우연히 만나게 되어 서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族弟와 함께 둘이서 머리를 변발로 바꾸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제 처 蔡氏를 데리고 남쪽의 霍隆溝로 도망가서 숨어살면서, 2响의 토지를 일구며 움집을 짓고 물고기도 잡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의 본명은 분명히 李東吉이며, 李靑山으로 이름을 바꾼 것은 사실입니다. 이 밖에, 결코 의지할 곳 없는 匪徒를 불러 모은 적은 없습니다. 나중에 李氏 성을 가진 제 族弟는 러시아 경내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올해 10월 산 속에서 강변 일대로 나아가 물고기를 잡다가 원래 머물던 움집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大國의 관병이 나타나 저와 제 처 蔡氏를 함께 체포하였습니다. 지금 심문을 받게 된 것은 제가 실제로 본국에서 일을 저지르고 몰래 강 경계를 넘어와, 산 속에 사람이 없는 곳으로 피신하여 숨어살면서 이름을 李靑山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코 의지할 곳 없는 匪徒를 불러 모으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본국의 도망 백성이 어느 곳에서 경계를 넘어가 러시아 경계로 달아났는지 물으시지만,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이상의 진술은 모두 사실입니다.

(66) 문서번호 : 1-2-3-35 (114, 151a-153b)

사안 : 이미 변경 각 초소의 문무관원에게 러시아로 도주하는 조선 백성을 철저히 저지하
라고 지시하였습니다(已飭邊界各卡員弁認真攔阻逃往俄界之朝鮮民人).

날짜 : 同治九年十二月十六日(1871년 2월 5일)

발신 : 吉林將軍 奕榕

수신 : 總理衙門

十二月十六日, 署吉林將軍奕榕文稱.

本年十一月二十九日, 准寧古塔副都統衙門咨開.

於十一月初十日, 據琿春協領訥穆錦報稱.

遵卽僉派佐領溫崇阿·驍騎校永魁, 及查街官員等, 在於本處所屬街市村屯, 嚴密常川搜查, 遇有乞討之朝鮮男婦子女, 按名驅逐. 並飭查界雲騎尉成貴, 及土門江迤東, 霍蘭溝·瑪爾佳河·二道河·灣溝, 及密占通衢大路各卡, 並臨江切近赫西和路一帶各卡官弁等遵照, 務須欽遵諭旨, 在於各屬邊界, 嚴密常川搜查, 如有朝鮮男婦子女, 由中國地界, 逃往俄界者, 立即攔阻, 勿任乘間逃越, 是否淨盡, 隨時結報.

惟查朝鮮城鄉, 均與琿春所屬之密占·斐由霍吞·雍安莽喀歲子各屯切近, 雖有土門江之隔, 上下接壤百有餘里. 茲又兼江河封凍, 尤恐該朝鮮人等, 不免此防彼越, 履查難週. 是以復行添派管帶演練官兵之記名協領花翎佐領委參領德玉, “帶領兵役, 不時馳往, 會同臨江切近各卡官弁, 常川檢查, 仍須實力奉行, 萬勿視爲具文, 遷就了事, 致干究戾”等因. 均經飭飭在案. 茲據出派前往俄界, 與該俄酋辦理交涉事件之佐領富全, 旋回聲稱.

職在於俄界珠倫河等處，遇有朝鮮男婦子女十數餘人，奔赴俄界。職卽向伊等詢問，由何處經過至此。據伊等言說，俱由該國山裡逃出，俱赴俄國棘心河等處，逃奔乞食，等語。職因在於俄界，又兼所帶兵役寡少，碍難攔阻。

等因。聲稱前來。

據此。詳查凡琿春所屬沿江一帶各卡及街市村屯等處，俱以出派官弁，遇有朝鮮乞討男婦子女，隨時驅逐江界，及由中國界址，逃往俄界者，亦俱隨時按名查禁。職揆度，此次逃往俄界，朝鮮男婦子女十數餘人，俱由該國山裡，逃往俄國。該朝鮮邊界各官弁等，素常毫無查禁，以致逃往俄國。

等情。由該協領據情呈請轉詳。

據此。詳查該協領報稱，現至江河封凍，尤恐彼防此竄，履查難週，確是寔在情形。惟寧古塔一境，前奉諭旨，當卽疊飭守卡官弁，不時嚴查，密爲防範，如有由中國地界，逃往越界者，立即攔阻，隨時呈報等因，遵卽嚴查在案。

茲據西南各卡呈報，現今朝鮮男婦子女，陸續不絕，在於各屯，遇戶強進乞討，隨經阻止，卽滾地撒賴，一任推擁，仍然旋回乞食。問訊則言語不通，揆情則飢饉所迫，將來愈聚愈多，難免日久不無滋生事端。

是以出派四品頂戴領催、儘先防禦花翎恩壽，帶兵前往所屬各屯，嚴密搜查驅逐去訖。俟該員呈報到日，有無驅逐淨盡，再行咨報外，理合將該協領呈報情形，暨寧古塔各卡呈報朝鮮越境乞食男婦子女，可否徑咨該國王派員來塔，如數領取，抑或咨呈總理各國事務衙門，轉咨該國領回之處，希爲示遵可也。

等因。前來。

查此項越界乞食朝鮮難民，並由中國地界，逃入俄境各項高麗，前經疊次明奉諭旨，檄令嚴飭巡防邊界各卡員弁，不時嚴密稽查，如有越界潛逃者，立即攔阻，隨時呈報等因，行令遵辦在案。茲准咨稱。

該朝鮮男婦子女，有由該國山裡，逃赴俄國乞食者，有在於各屯，遇戶強進乞討者，雖經驅逐，仍然旋回，陸續不絕。現在派員搜查驅逐。

等情。

自應由該副都統，派員認真攔阻，並按名查點實數，就近送交該國慶源府官查收，以期便捷，而免延悞。若俟咨行朝鮮國王，派員前來，收領回國，或咨總理各國事務衙門，轉移該國，再行領取，未免多需時日。並恐愈集愈多，更難查辦。

除咨覆寧古塔副都統衙門遵照，務須出派妥寔員弁，刻即分赴所屬各處以及各屯，嚴密查禁，如有朝鮮越界難民，無論潛赴俄國，或在塔春各界，乞食逗留，務須按名攔截，悉數送交該國慶源府官收管，以淨邊圉，而免滋生事端，仍隨時呈報本衙門，以憑轉詳，毋得陽奉陰違，含混了事，致干未便，並飭飭琿春協領訥穆錦，一體遵辦，暨咨報禮部，煩為查照，轉行朝鮮國王，以俟中國委員，將該國越界男婦子女解到時，希即照數收管，仍希見覆外，相應據情呈報總理各國事務衙門，謹請查核可也。

12월 16일, 署吉林將軍 奕榕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올해 11월 29일, 寧古塔副都統衙門의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11월 10일, 琿春協領 訥穆錦이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시에 따라 곧바로 佐領 溫崇阿와 驍騎校 永魁, 그리고 查街官員 등을 선발·과견하여 本處 소속의 街市와 村屯에서 지속적으로 엄밀하게 수색함으로써, 걸식하는 조선의 남녀노소들을 발견하면 전부 쫓아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查界雲騎尉 成貴와 土門江 동쪽의 霍蘭溝·瑪爾佳河·二道河·灣溝·密占의 大路上에 있는 각 초소, 그리고 강변에 가까운 赫西和路 일대의 각 초소 文武官員들에게, 삼가 유지에 따라 각 관할 邊界에서 지속적으로 엄밀하게 수색하게 하였습니다. 즉 만약 조선의 남녀노소가 중국 영역을 통해 몰래 러시아 경계로 넘어가는 것을 발견하면, 곧바로 제지하여 틈을 노려 몰래 월경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고, 이러한 일이 모두 일소되었는지의 여부를 수시로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다만 조선의 城鄉을 살펴보건대, 모두 琿春 관할의 密占·斐由霍吞·雍安·莽喀崴子 등 각 村屯과 인접해 있어, 비록 토문강을 사이에 두고 있지만, 위 아래로 100여 리 정도가 맞닿아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강이 얼어붙었으니, 조선인들이 이곳을 막으면 저쪽에서 월경하여 두루 단속하여 막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그래서 관병의 관리와 훈련의 책임을

지명 받은 協領인 花翎佐領 委參領 德玉을 추가로 파견하여, 병사들을 거느리고 곧바로 달려가, 강변에 가까운 각 초소의 문무관원과 함께 상시적으로 수색하도록 하였고, 반드시 전력을 다하여 지시를 받들되, 결코 상투적인 문서로 간주하여 얼버무려 처리함으로써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모두 지시공문을 보내 알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 경계로 파견하여 그곳 러시아 관원과 교섭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佐領 富壽이 곧바로 돌아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제가 러시아의 珠倫河 등지에서 러시아 경내로 급히 달아나는 조선의 남녀노소 십수 명과 맞닥뜨렸습니다. 그들에게 어느 곳을 경유하여 이곳을 지나게 되었는지 묻자, 그들은 “모두 朝鮮의 산 속에서 도망쳐 나와 러시아의 棘心河 등지로 가기 위해 도망치며 구걸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러시아 영역에 있었고, 대동한 병사도 너무 적어서 그들을 제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상세히 검토해보니, 무릇 琿春 관할의 강변 일대 각 초소와 街市, 村屯 등지에는 모두 관병을 파견하여, 걸식하는 조선의 남녀노소를 발견하면 그때그때 江界에서 쫓아냈으며, 그리고 중국 경계를 거쳐 러시아로 도망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모두 단속하여 금지하였습니다. 제가 헤아려보건대, 이번에 러시아로 도망친 조선의 남녀노소 십수 명은 모두 朝鮮의 산을 거쳐 러시아로 향하였습니다. 조선의 각 변경의 문무관원이 평소에 조금도 단속하여 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러시아로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해당 協領이 사실대로 보고하여, 본 寧古塔副都統衙門에서 다시 장군에 보고해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상세히 검토해보니, 해당 協領이 지금 강이 얼어붙어서 저곳을 막으면 이곳에서 도망쳐 두루 단속하기 어려울까 더욱 염려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확실한 실제 상황입니다. 다만 寧古塔 지역에서는 이전에 유지를 받들어, 곧바로 초소를 지키는 관병들에게 누차 지시하여 수시로 엄히 단속하여 엄밀하게 방비하도록 하였고, 만약 중국의 경계를 거쳐 도망쳐 월경하려는 자를 발견하면 곧바로 제지하고 수시로 보고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곧바로 엄밀하게 단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남지역 각 초소의 보고를 받았는데, 요즈음 조선의 남녀노소가 끊임없이 밀려와 각 村屯에서 민가에 함부로 들어가 걸식을 하고 있으며, 저지를 당하면 땅바닥을 구르며 억지를 부르고, 한 번 쫓겨났는가 싶으면 여전히 다시 돌아와 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 심문하려 해도 말이 통하지 않지만, 사정을 헤아려보건대 기근에 쫓긴 것 같은데, 장차 이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수가 늘어날 것이니, 오래 되면 다른 말썹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四品頂戴領催·儘先防禦花翎 恩壽를 파견하여, 병사를 거느리고 관할 각 村屯으로 가서 엄밀하게 수색하여 그들을 쫓아내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관원의 보고가 도착하면 그들을 남김없이 쫓아냈는지 여부를 나중에 다시 咨文으로 보고하는 것 외에, 마땅히 해당 協領이 보고한 상황과 寧古塔의 각 초소에서 월경하여 걸식하고 있는 조선의 남녀노소에 대해 보고한 내용을 곧바로 朝鮮王에게 咨文으로 보내어, 寧古塔으로 사람을 보내 그들을 모두 데려가게 할 것인지, 아니면 총리아문으로 咨文을 올린 다음 (총리아문에서) 다시 朝鮮에 咨文을 보내게 할 것인지,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이 도착하였습니다.

살펴보건대, 월경하여 걸식하는 이러한 조선 난민, 그리고 중국 경계를 거쳐 러시아로 도망치는 조선인에 대해서는, 이전에 누차 명확히 유지를 받은 바 있으므로, 변경을 순방하는 각 초소 관병에게 엄격히 지시하여 수시로 엄밀하게 단속하여, 만약에 월경해서 몰래 도망치는 자를 발견하면, 곧바로 저지하고 그때그때 보고하게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내용의 咨文을 받았습니다.

조선의 남녀노소 가운데 朝鮮의 산을 거쳐 러시아로 도망쳐 걸식하는 사람도 있고, (중국의) 각 村屯에서 민가에 함부로 들어가 걸식하는 사람도 있는데, 쫓겨나더라도 계속 돌아오며, 끊임없이 이런 사람이 밀려듭니다. 현재 관원을 파견하여 수색해서 쫓아내는 중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해당 副都統으로 하여금 관원을 파견하여 월경 조선인을 충실하게 저지하고, 아울러 모두를 일일이 조사하여 가까운 곳의 朝鮮 慶源府 관원에게 넘겨줌으로써, 신속함을 도모하여 시간의 지체를 피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조선국왕에게 咨文을 보내어 관원을 파견해 와서 데려가기를 기다린다가, 아니면 총리아문에 咨文을 보내어 다시 朝鮮으로 알리게 한 다음 데려가게 한다면, 시간이 아주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모일수록 사람들이 늘어나 단속하여 처리하기가 더욱 어려워질까 염려됩니다.

寧古塔副都統衙門에 답장 咨文을 보내고, 그에 따라 적절한 문무관원을 파견하여, 곧바로 관할 각지와 각 村屯에 가서 엄밀하게 단속을 실시하되, 만약에 월경한 조선 난민을 발견하면, 러시아로 몰래 넘어가든, 아니면 寧古塔과 琿春 각 경계에서 걸식하며 머무르든 간에 힘써

하나하나 저지하고, 모두 朝鮮 慶源府의 관원에게 반아가게 함으로써, 변경을 안정시키고 말썽이 커지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아울러 수시로 본 衙門에 보고케 하고, 이에 근거하여 다시 총리아문으로 보고할 것입니다. 또한 겉으로는 지시를 받들면서 속으로는 어김으로써 얼렁뚱땅 일을 마무리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함과 동시에, 琿春協領 訥穆錦에게도 모든 지시를 그대로 따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禮部에도 咨文으로 보고하니, 번거롭더라도 검토하신 다음, 중국 관원이 월경한 朝鮮의 남녀노소를 압송해 가면 모두를 반아가고 아울러 답장을 주도록 조선국왕에게 전해주시실 것을 요청하는 것 외에, 마땅히 사실대로 총리아문에 보고하니 삼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67) 문서번호 : 1-2-3-36 (117, 157b)

사안 : 상유에 따라 조선 월경민 이동길 등을 체포하여 조선에 수감하도록 넘겼다고 상주한 주접을 초록하여 알립니다(遵旨拏獲朝鮮逃犯李東吉等解交該國收禁一摺, 錄旨知照).

날짜 : 同治十年正月十二日(1871년 3월 2일)

발신 : 吉林將軍 奕榕

수신 : 總理衙門

同治十年正月十二日, 署吉林將軍奕榕文稱.

於本年十二月初一日, 本衙門恭摺由驛具奏, “爲遵旨拏獲朝鮮匪犯李東吉並伊妻室, 一併解交該國收禁, 暨查明沿江一帶, 實無該犯招引匪類”等因一摺, 當經照抄原摺呈報在案.

茲於本月十七日, 奉到廻摺, 軍機大臣奉旨.

該衙門知道.

欽此欽遵前來.

相應恭錄諭旨, 呈報總理各國事務衙門, 謹請查核可也.

同治 10년 정월 12일, 署吉林將軍 奕榕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올해 12월 1일, 본衙門에서는 유지에 따라 조선의 범인 李東吉과 그의 처를 체포하여 함께 朝鮮으로 압송해 수감하도록 넘겨주었으며, 아울러 강변 일대를 명확하게 조사했는데 그 범인이 불러들인 匪徒는 실제 없었다는 내용을 삼가 주접을 갖추어 驛站을 통해서 상주한 바 있습니다. 이때 주접 원문을 抄錄하여 (총리아문으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달 17일에 주접을 돌려받았는데, 軍機大臣은 그때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아문에 알리라.

이러한 유지를 받았으므로, 마땅히 유지를 삼가 초록하여 총리아문으로 보고하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68) 문서번호 : 1-2-3-37 (121, 161b-162b)

사안 : 이동길의 부모·자식 등 8명을 뒤이어 체포하고, 앞뒤로 모두 조선 지방관에 넘겨 수감하게 하였습니다(續緝獲朝鮮逃犯李東吉之父母子媳等八口, 均先後解交朝鮮地方官收禁).

날짜 : 同治十年正月二十九日(1871년 3월 19일)

발신 : 吉林將軍 奕榕

수신 : 總理衙門

正月二十九日, 署吉林將軍奕榕文稱.

本年正月初七日, 准寧古塔副都統烏勒興阿咨.

據琿春協領納穆錦報稱.

前在琿春土們江霍隆溝裡, 拏獲朝鮮匪犯李東吉, 伊妻蔡氏, 飭交佐領溫崇阿·驍騎校永魁等, 於同治九年閏十月二十日, 帶兵起解間, 又獲得李東吉之子李尚海, 媳邦氏, 僱工蔡諾彌.

當訊, 李尚海供.

係朝鮮慶源府民, 年十五歲, 於同治七年間, 逃越土們江霍隆溝裡李東吉家乞討, 將我容留, 認爲義子. 九年夏間, 有本國幼女邦氏, 亦來乞討. 李東吉將他留下, 與我爲媳.

邦氏供.

係朝鮮小金溝地方人, 年十七歲, 父故, 母李氏. 九年夏間, 因本國荒歉難度, 偷越土們江, 各處乞討. 至李東吉家, 將我留下, 與伊義子李尚海爲媳.

蔡諾彌供.

係朝鮮中城地方民，年三十歲。本國年景荒歉，無有過度，因此偷過江來，各處乞討。於九年五月間，至霍隆溝裡，遇本國民李東吉，我就與他僱工。不意閏十月間，李東吉被大國官弁拏獲，我等懼怕藏匿，復被官兵將我等攫獲。

隨即一併解往琿春，飭交佐領溫崇阿等，解交本國慶源府官收禁，索取回收照會。復飭查界雲騎尉成貴，帶兵前赴霍隆溝裡搜查，又搜得李東吉之父李陽恩，母崔氏，又婦人一口。復訊，李陽恩供。

年八十歲，崔氏供年八十一歲，俱是朝鮮慶源府民。生子三個，長子李東明已故，次子李東吉，三子李明山，不知逃往何處。於咸豐三年間，次子李東吉，將本國慶源府地方官李姓毆打，恐被官兵拏獲，更名李青山，偷越土們江。於同治九年夏間，因本國荒歉，李東吉將我夫婦一併接來。後因李東吉被大國官兵拏去，我等即投山林隱匿，復被官兵搜獲。

等供。

惟婦人一口，訊其來歷，混行指畫，語言不辨，未能錄供。隨同李陽恩·崔氏，均飭交雲騎尉成貴，帶兵解往朝鮮去後。茲據佐領溫崇阿·驍騎校永魁·雲騎尉成貴等回稱。

已將朝鮮匪犯李東吉等八名口，於九年閏十月二十一·二十五等日，先後如數點交該國慶源府官收訖，索取收付二件。

呈遞轉咨前來。

除將佐領溫崇阿·驍騎校永魁·雲騎尉成貴等，解到朝鮮匪犯李東吉等八名口收付二件，存留本衙門備查外，合將遵旨拏獲朝鮮匪犯李東吉，並伊妻蔡氏，暨續搜獲李東吉之父李陽恩·母崔氏·子李尚海·媳邦氏·僱工蔡諾彌·不知姓氏婦人一口，共八名口均已解交朝鮮慶源府官，如數收訖各緣由，據情先行呈報總理各國事務衙門，謹請查核可也。

1월 29일, 署吉林將軍 奕榕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올해 1월 7일, 寧古塔副都統 烏勒興阿의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琿春協領 納穆錦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전에 琿春 土們江의 霍隆溝에서 조선 범인 李東吉과 부인 蔡氏를 체포하여, 佐領 溫崇阿와 驍騎校 永魁 등에게 인계하여 同治 9년 윤10월 20일에 병사를 거느리고 압송하려던 차에, 다시 李東吉의 아들 李尙海와 며느리 邦氏, 일꾼 蔡諾彌를 체포하였습니다. 심문하자, 李尙海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저는 조선 慶源府의 백성으로 나이는 15세이며, 同治 7년에 土們江 霍隆溝에 있는 李東吉의 집에 구걸하였는데, 그는 저를 머물게 해주면서 양자로 삼았습니다. 9년 여름, 조선의 어린 여자아이 邦氏가 건너와 구걸하자, 李東吉은 그녀를 머물게 해주고, 제게 부인으로 주어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邦氏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저는 조선 小金溝 지방 사람으로, 나이는 17세이며, 아버지는 작고하시고 어머니는 李氏입니다. 同治 9년 여름, 본국에서 흉년이 들어 살아가기 어려워지자, 몰래 土們江을 넘어와 각지에서 걸식하였습니다. 그러다 李東吉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저를 머물게 해주고, 그의 양자 李尙海에게 저를 주어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蔡諾彌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저는 조선 中城 지방의 백성으로, 나이는 30세입니다. 본국에서 흉년이 들어 살아갈 방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몰래 강을 건너와 각지에서 걸식하였습니다. 同治 9년 5월에 霍隆溝에 이르렀다가, 조선백성 李東吉을 만나게 되었고, 저는 바로 그에게 일꾼으로 고용되었습니다. 뜻밖에도, 윤10월에 李東吉이 대국의 관병들에게 체포되자 저희는 무서워서 숨어 있었지만, 다시 관병에게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뒤이어 이들을 함께 琿春으로 압송하여 佐領 溫崇阿 등에게 인계함으로써 조선 慶源府 관원에게 압송해서 수감하도록 하고, 그들로부터 월경 난민을 회수했다는 照會를 받아 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또 查界雲騎尉 成貴에게 지시하여 병사를 거느리고 霍隆溝로 가서 수색시켰더니, 李東吉의 아버지 李陽恩과 어머니 崔氏, 또 다른 부인 1명을 더 찾아내 다시 심문하자, 다음과 같이 답하였습니다.

李陽恩은 80세, 崔氏는 81세로 모두 조선 慶源府의 백성이었습니다. 아들 셋을 낳았는데, 큰아들 李東明은 이미 죽었고, 차남은 李東吉이며, 삼남은 李明山인데, 어디로 도망갔는지 모릅니다. 咸豐 3년에 차남 李東吉이 李氏 성을 가진 조선 慶源府의 지방관을 구타했다가, 관병에게 붙잡힐 것이 두려워 이름을 李靑山으로 바꾸고

물래 土們江을 넘어왔습니다. 同治 9년 여름에 본국에 흉년이 들자, 李東吉은 저희 부부를 함께 이곳으로 데려왔습니다. 나중에 李東吉이 대국의 관병에 붙잡혀가자, 저희는 산 속으로 들어가 숨었다가 다시 관병에게 붙잡혔습니다.

다만, 부인 1명은 그 내력을 심문하였지만 엉뚱한 곳을 가리키고 말도 알아들을 수 없어서 진술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李陽恩과 崔 氏와 함께 雲騎尉 成貴에게 인계하여, 병사를 거느리고 조선으로 압송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뒤 佐領 溫崇阿와 驍騎校 永魁, 雲騎尉 成貴 등이 돌아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조선 범인 李東吉 등 8명을 (同治) 9년 윤10월 21일과 25일에 전후로 모두 朝鮮 慶源府의 관원에게 인계하여 수감하도록 하였으며, 증명서 2건을 받아 왔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보고 받은 寧古塔副都統이 다시 咨文으로 그 내용을 吉林將軍衙門에 전달해 왔습니다. 佐領 溫崇阿와 驍騎校 永魁, 雲騎尉 成貴 등이 조선 범인 李東吉 등 8명을 압송했다는 증명서 2건은 본 衙門에 남겨두어 참고하도록 하는 것 외에, 유지에 따라 조선 범인 李東吉과 그의 부인 蔡 氏를 체포하고, 이어서 李東吉의 아버지 李陽恩과 어머니 崔 氏, 아들 李尙海, 며느리 邦 氏, 일꾼 蔡諾彌, 姓氏를 모르는 부인 1명 등 총 8명을 체포하여 모두 조선 慶源府 관원에게 압송해서 수감시킨 사정 등을 마땅히 먼저 사실대로 총리아문에 보고하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69) 문서번호 : 1-2-3-38 (122, 163a-164b)

사안 : 寧古塔副都統에게 조선의 걸식 월경민을 모두 쫓아 보냈는지에 대해 결과를 보고하
도록 지시하였습니다(飭寧古塔副都統結報朝鮮乞食逃民有無驅逐淨盡).

날짜 : 同治十年正月二十九日(1871년 3월 19일)

발신 : 吉林將軍 奕榕

수신 : 總理衙門

正月二十九日, 署吉林將軍奕榕文稱.

本年正月初四日, 准禮部咨開.

主客司案呈.

同治九年十二月十八日, 准吉林將軍等咨稱.

據寧古塔副都統咨開.

據琿春協領訥穆錦報稱.

遵卽簽派佐領溫崇阿等, 在本處所屬街市村屯, 嚴密搜查, 遇有乞討之朝鮮男
婦子女, 按名驅逐. 並飭飭查界雲騎尉成貴及各卡官弁等遵照, 務在各屬邊
界, 嚴密搜查, 如有朝鮮男婦子女, 由中國地界, 逃往俄界者, 立卽攔阻, 毋
任乘間逃越, 隨時結報. 復派委參領德玉, 帶領兵役, 不時馳往各卡檢查.

茲據各卡呈報.

現今朝鮮男婦子女, 在各屯遇戶強進乞討, 隨經阻止, 卽滾地撒潑, 一任推擁,
仍然旋回. 將來愈聚愈多, 難免不滋生事端. 是以出派領催恩壽, 帶兵前往驅
逐, 去訖. 俟該員呈報到日, 有無驅逐淨盡, 再行咨報外, 合將各卡呈報朝鮮
乞食男婦子女, 可否徑送該國王, 派員來塔領取之處, 希卽示遵.

等因。

查此項越界朝鮮難民，自應由該副都統，派員認真攔阻，並按名查點實數，就近送該國慶源府官查收，以期便捷。除咨覆寧古塔副都統，務須出派妥員，刻赴所屬各處，嚴密查禁，如有朝鮮越界難民，按名攔截，悉數送交該國慶源府官收禁，並翁琿春協領，一體遵照外，應咨報禮部，查照轉行朝鮮國王，俟中國委員，將該國男婦子女解到時，希即照數收管，仍希見覆。

等因。前來。

查本年十月初一日，准軍機大臣字寄，奉上諭。

總理各國事務衙門，奏朝鮮民人潛逃俄界，請飭該國自行辦理一摺。著該部行知該國王，遵照辦理。至邊防，必應嚴密。著奕榕、毓福，嚴飭邊界各員弁，隨時認真稽查，如有朝鮮民人，由中國地界，逃至俄界者，即行查禁，毋任乘間偷越。

等因。欽此。

本部遵即行知吉林將軍並朝鮮國王，遵照辦理在案。茲據該將軍咨稱。

此項越界朝鮮難民，應派員查點實數，就近送交朝鮮慶源府官查收，並由禮部，轉行朝鮮國王，照數收管。

等語。

究竟朝鮮難民實數若干，該委員曾否驅逐淨盡，原文內並未聲敘。是現無實在人數，本部即碍難行知該國王，照數收管。查此件係該將軍等，奉旨查禁之件，應俟該委員查出朝鮮難民實數，就近已送交朝鮮慶源府官查收後，由該將軍等據實覆奏，再由本部，行知朝鮮國王，以昭核實。相應咨覆吉林將軍查照可也。

等因。前來。

查前據寧古塔副都統咨報，朝鮮男婦子女，越界乞食。當經本衙門，咨令該副都統，出派妥員，分赴各處，務將此項難民，悉數送交該國收管，隨時咨報，去後。茲據寧古塔副都統，轉據琿春協領呈報。

先後拏獲朝鮮越界匪犯李東吉等八名口，已派佐領溫崇阿等，先後解交朝鮮屬慶源府官收管，取有收付。

等情. 咨報前來.

至此項逃民, 有無拏獲驅逐淨盡, 文內並未聲敘, 茲復准部咨. 此件係奉旨查禁之件, 應將拏獲解交該國之李東吉等八名口, 已交該國收訖, 此外有無拏獲驅逐淨盡之處, 除再行飛咨寧古塔副都統, 務須遵照前文, 暨現准部咨事理, 即將前項乞食朝鮮男婦子女, 除被獲解交該國收管不計外, 現在屬境有無淨盡, 並朝鮮民人, 有無復行由中國地界, 逃往俄國, 逐層詳細查明聲覆, 加具印結具報,³³⁾ 以憑奏報, 毋得仍前含混塞責, 致滋他岐, 仍嚴飭守卡官兵, 實力週查, 如有續行潛逃者, 務在邊卡要隘處所, 隨時攔截阻回, 毋令越界他往, 致滋饒舌外, 合將據報前因, 先行呈報總理各國事務衙門, 謹請查核. 其朝鮮越界難民, 現在有無驅逐拏獲淨盡之處, 容俟查報到日, 再行呈報可也.

1월 29일, 署吉林將軍 奕榕의 다음과 같은 문서를 받았습니다.

올해 1월 4일, 다음과 같은 禮部의 咨文을 받았습니다.

主客司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문서를 올렸습니다.

同治 9년 12월 18일, 吉林將軍의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寧古塔副都統衙門의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琿春協領 訥穆錦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시에 따라 곧바로 佐領 溫崇阿 등을 선발·파견하여 本處 소속의 街市와 村屯에서 지속적으로 엄밀하게 수색함으로써, 걸식하는 조선의 남녀노소들을 발견하면 전부 쫓아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查界雲騎尉 成貴와 각 초소 文武官員들에게 각 관할 邊界에서 지속적으로 엄밀하게 수색하게 하였습니다. 즉 만약 조선의 남녀노소가 중국 영역을 통해 몰래 러시아 경계로 넘어가는 것을 발견하면, 곧바로 제지하여 틈을 노려 몰래 월경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고, 이러한 일이 모두 일소되었는지의 여부를 수시로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參領 德玉을 파견하여 兵役을 이끌고 불시에 각지 초소를 찾아가 조사하게 하였습니다.

33) '印結'은 官印을 찍은 보증서나 확인서를 가리킨다. 즉 문서에 실린 내용이 틀림이 없고 거짓이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인 셈이다.

(寧古塔副都統이 생각건대), 지금 서남지역 각 초소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요즈음 조선의 남녀노소가 끊임없이 밀려와 각 村屯에서 민가에 함부로 들어가 걸식을 하고 있으며, 저지를 당하면 땅바닥을 구르며 억지를 부르고, 한 번 쫓겨났는가 싶으면 여전히 다시 돌아와 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수가 늘어날 것이니, 오래 되면 다른 말썽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領催 恩壽를 파견하여 병사를 거느리고 가서 그들을 쫓아내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관원의 보고가 도착하면 그들을 남김없이 쫓아냈는지 여부를 나중에 다시 咨文으로 보고하는 것 외에, 마땅히 각 초소에서 월경하여 걸식하고 있는 조선의 남녀노소에 대해 보고한 내용을 곧바로 朝鮮王에게 咨文으로 보내어, 寧古塔으로 사람을 보내 그들을 모두 데려가게 할 것인지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吉林將軍이) 살펴보건대, 월경하여 걸식하는 이러한 조선 난민은 마땅히 해당 副都統으로 하여금 관원을 파견하여 충실하게 저지하고, 아울러 모두를 일일이 조사하여 가까운 곳의 朝鮮 慶源府 관원에게 넘겨줌으로써, 신속함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寧古塔副都統衙門에 답장 咨文을 보내고, 그에 따라 적절한 문무관원을 파견하여 곧바로 관할 각지에서 엄밀하게 단속을 실시하되, 만약에 월경한 조선 난민을 발견하면 하나하나 제지하여 모두 朝鮮 慶源府의 관원에게 받아가게 하고, 동시에 琿春 協領 訥穆錦에게도 모든 지시를 그대로 따르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禮部에도 咨文으로 보고하여, 그에 따라 중국 관원이 월경한 朝鮮의 남녀노소를 압송해 가면 모두를 받아가고, 아울러 답장을 주도록 조선국왕에게 전해주실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禮部에서) 조사해보니, 올해 10월 1일에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다는 軍機大臣의 廷寄를 받은 적 있습니다.

조선의 백성이 러시아 경계로 몰래 도망쳤으니, 조선에 지시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주접을 총리아문에서 상주하였다. 禮部로 하여금 조선국왕에게 문서를 보내 알려서 그에 따라 처리하게 하라. 변경의 방어는 반드시 엄밀해야 하므로, 奕榕과 毓福으로 하여금 변방의 각 문무관원에게 엄격히 지시하여, 수시로 충실하게 단속하되, 만약 조선 백성이 중국 경계를 거쳐 러시아로 도망치려 한다면, 곧바로 단속

하여 틈을 타서 몰래 넘어가지 못하게 하라.

本部에서는 이에 따라 곧바로 吉林將軍과 조선국왕에게 문서를 보내, 이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吉林將軍의 咨文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월경 조선 난민은 마땅히 관원을 파견하여 일일이 조사하고 가까운 곳의 朝鮮慶源府 관원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禮部에서도 咨文으로 그들 모두를 받아가도록 조선국왕에게 알려주십시오.

도대체 조선 난민이 전부 몇 명인지, 업무를 맡은 관원이 그들을 전부 쫓아냈는지, 원문에는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 인원수를 모르니 本部에서 조선국왕에게 문서를 보내 전부 거두어들이게 하는데 곤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펴보건대, 이 사안은 해당 將軍 등이 유지를 받들어 단속한 사안으로서, 마땅히 업무를 맡은 관원이 조선 난민 전체 수를 조사하여 가까운 곳의 조선 慶源府 관원에게 넘긴 다음, 해당 將軍 등이 사실대로 상주하면 다시 禮部에서 朝鮮國王에 알려 일 처리를 분명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땅히 吉林將軍에게 답장 咨文을 보내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과 같은 禮部の 咨文이 (吉林將軍에게) 전달되어 왔습니다. 살펴보건대, 이전에 조선의 남녀노소가 월경하여 걸식하고 있다고 寧古塔副都統이 咨文으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본 아문에서는 곧바로 해당 副都統에게 咨文으로 지시하여, 적당한 관원을 각지로 나누어 파견해서 이들을 모두 朝鮮으로 압송하여 넘겨주고, 그때그때 咨文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寧古塔副都統이 다음과 같은 琿春協領의 보고를 받아 전달해 왔습니다.

전후로 조선의 월경한 범인 李東吉 등 8명을 체포하여, 이미 佐領 溫崇阿 등을 파견하여 전후로 조선의 慶源府 관원에게 압송하여 수감하게 하였고, 증명서를 받아 왔습니다. 이 보고에는 이러한 逃民들을 모두 체포하여 쫓아냈는지에 대해서는 문서에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았습니. 그런데 이번에 다시 禮部の 咨文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은 유지를 받들어 단속한 사안이니, 응당 체포하여 朝鮮으로 압송하기로 한 李東吉 등 8명은 이미 넘겨주어 수감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월경 난민을 모두 체포하고 쫓아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寧古塔副都統에게 서둘러 咨文을 보내서, 앞서의 지시 및 지금 받은 禮部 문서 내용에 따라서, 체포하여 朝鮮으로 압송한 사람을 제외하고 위에서 언급한 걸식하는 조선의 남녀노소를 지금 관할 영역에서 모두 쫓아냈는지, 그리고 또한 조선 백성이 중국 경계를 거쳐 러시아로 도망쳤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상세히 조사하여 회신하되, 관인을 찍은 보증서를 함께 갖추어

보고함으로써, 그에 근거하여 상주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전처럼 대충 얼버무리 다른 문제를 낳게 해서 안 된다고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아울러 초소를 지키는 관병들에게도 엄격히 지시하여, 전력을 다하여 두루 단속을 하고, 만약 계속해서 몰래 도망치는 자가 있다면, 변경 초소 등 요충지에서 그때그때 제지하고 돌려보내도록 하여, 월경하여 다른 곳으로 감으로써 소문을 부풀리지 못하게 하는 것 외에, 마땅히 보고 받은 위의 내용을 먼저 총리아문으로 보고하여 검토를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의 월경 난민이 현재 모두 쫓겨나거나 체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보고가 도착하기를 기다려 다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70) 문서번호 : 1-2-3-39 (34, 173a)

사안 : 조선 월경민을 송환하는 여비를 빌려주었습니다(墊給遣回朝鮮逃民川資).

날짜 : 同治十年四月十六日(1871년 6월 3일)

발신 : 吉林將軍 奕榕

수신 : 總理衙門

四月十六日, 吉林將軍宗室奕榕文稱.

適准寧古塔副都統衙門來咨, 以“朝鮮國王遣使金光雨等, 來塔領取伊國逃民, 因道路遙遠, 逃民數衆, 該使等又未携來盤川路米, 礙難回歸, 懇請借給接濟銀兩, 備辦路米及馱價等項, 銀二百九十三兩, 俟回國後再行歸楚”等情, 咨請示覆前來.

查塔屬相距朝鮮, 遠在數百里之遙, 該國逃民, 既經逃入我境乞食. 人衆路遠, 斷難令其枵腹回歸. 自應准如所請, 暫行接濟, 以廣皇仁之至意. 除咨覆寧古塔副都統衙門遵照, 即將朝鮮所借銀兩, 即由該衙門如數發給, 該國送還時, 再行歸款, 並派妥員, 沿路照料護送, 以免別生枝葉, 俟該國遣使押解出境後, 仍將所送人數, 暨界內淨盡之處, 速爲加結呈報, 以憑轉奏外, 相應據情呈報總理各國事務衙門, 謹請查核可也.

4월 16일, 吉林將軍 宗室 奕榕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마침 寧古塔副都統衙門에서 보내온咨文을 받았는데, 조선국왕이 사신 金光雨 등을 寧古塔으로 파견하여 朝鮮逃民들을 인계해 가려 하는데, 길이 멀고 逃民의 수가 많은 데다가, 여비와 식량도 가져오지 않아 돌아가기가 어려울 듯하여, 식량과 운송비 등을 준비할 은 293량의 비용을 빌려주면 귀국한 후에 다시 상환하겠다고 간청했다는 내용으로, 지시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살펴보건대 寧古塔 지역과 조선은 수백 리나 떨어져 있으며, 朝鮮逃民이 이미 몰래 우리 경계로 들어와 걸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많고 길은 멀어 결코 굶주린 채로 돌아가게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마땅히 그들이 요청한대로 잠시 자금을 제공해주어, 황상의 어진 뜻을 널리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寧古塔副都統衙門에서 이에 따라 시행하도록 咨文으로 답장을 하여, 곧바로 조선에서 빌리겠다고 한 銀兩을 해당 衙門에서 전액 지급하고, 逃民을 송환한 다음 다시 돌려받아 채워 넣도록 하고, 아울러 적당한 관원을 파견하여 이동 중에 돌보아주면서 호송하여 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朝鮮 사신이 압송해서 出境을 하면, 돌려보낸 사람의 수와 경계 내에서 그들을 모두 쫓아냈다는 내용을, 官印을 찍은 확인서와 함께 신속히 보고함으로써 본 衙門에서 다시 상주할 수 있도록 한 것 외에, 마땅히 총리아문에 사실대로 보고하니 검토해주십시오.

(71) 문서번호 : 1-2-3-40 (177, 216b-218b)

사안 : 조선의 이상득 등 3인이 경내에 들어와 무역을 한 것은 금령을 어긴 것으로, 이미 병사한 이상득 외에 도망친 2명을 수하에게 지시하여 체포하도록 하였고, 아울러 계속해서 몰래 월경하는 일이 없도록 엄금해야 합니다(朝民李尙得等三人濟入境內貿易有干邊禁, 除李已病故外, 飭屬查緝逃逸二人, 並嚴禁續有私越).

날짜 : 同治十年八月二十八日(1871년 10월 12일)

발신 : 吉林將軍 奕榕

수신 : 總理衙門

八月二十八日, 吉林將軍奕榕文稱.

於本年八月初十日, 據雙城堡總管事務·參領常海報呈.

左·右司會案呈.

於六月二十八日, 據右翼協領銜花領·委協領富興呈.

據屬翼廂紅旗佐領富勒洪阿·委驍騎校慶恩報呈.

於六月初二日, 據本旗查界藍翎領催·委官連陞聲稱.

情因³⁴⁾奉派赴界巡查屯務, 於五月十四日, 查至二甲喇. 據總屯達財興, 併五屯屯達德祿等報稱, 五月十二日日落時, 那屯有外來三人, 約年均四十餘歲, 並未薙髮, 頭戴紗織青色網帽, 身穿白布小衫, 背負藥匣·錢裕等物進屯, 說話多有不懂. 因無宿店, 即投在那屯東, 屯丁潘廷謨早年搭蓋看守, 未稼空閑房內住下.

十四日一早, 屯達德祿, 家長劉印生, 醫生那常保, 屯丁潘廷謨等, 前去瞧看, 伊等指比告說, 是高麗人氏, 名叫金銀喜·安得榮·李尙得, 由他國出來, 各處

賣清心完藥貿易，因李尚得在途得受病症，不能行走，欲暫在此處將養。德祿等看他病重，未敢逐攆，遲至晌午時，李尚得因病身死，經他同伴金銀喜·安得榮，用高麗紙，將屍纏裹，由屯內買棺裝殮。金銀喜等央求在屯外閑處寄放，秋後再來搬接，德祿等欲想不准，金銀喜二人，哭哀太甚，未敢強攔，他二人已竟走了。

等語。

連陞仍往別屯查界，迨後查完屯界，回旗聲稱。

職思，高麗究係外國，來此貿易，病故遺屍，未便隱匿。隨即親詣屬界，二甲喇·五屯查看，訊據該屯丁等，僉稱病故屬寔。

除飭該屯丁等，將李尚得屍棺暫行掩埋，播立木牌標記，並嚴飭領催連陞，帶同該總屯達財興等，前往各處，務將金銀喜·安得榮二人訪獲，以憑送署斟查，去後，續於初十日，據連陞旋稱。

遵派前赴各處，尋找金銀喜等，已竟出境走遠，無處追趕，等情。合將高麗國人，進界賣藥，身故寄屍之各情形，備文聲稱查核。

等情。轉呈前來。

據此，查該委協領呈據該屬佐領富勒洪阿等報稱，有高麗國人金銀喜·安得榮·李尚得三人，進界賣藥，因李尚得病故，將屍棺寄存該屯，言俟秋後再行接靈，經該管已將屍棺，暫行掩埋看守，未將同伴金銀喜·安得榮，送官斟問，各節。

惟查高麗雖與吉屬界址較近，究係外國之人進境，理宜隨時報明斟查，方合體制。且又在此病故一人，寄放屍棺，尤須斟辦。乃該丁等，鄉愚無知，致令金銀喜·安得榮等，脫身他往，殊覺錯誤，當即嚴飭該管，及各旗佐校，立派妥幹弁兵，上繫查訪，務獲送究。並將該旗領催連陞，總屯達財興，屯達德祿，家長劉印生，屯丁潘廷謨·那常保等，傳署斟訊，核與該管所報無異。除將該領催連陞等交旗聽候外，復據各旗查報。

高麗國人金銀喜等，寔無在界隱匿，亦未訪有踪跡。

等情。但查堡屬並未辦過此等成案。應否先行咨查，該國有無此項來人貿易，抑俟高麗金銀喜等，秋後前來接屍，再斟訊辦理之處，未敢擅便。理合將高麗國人進界病故，

遺寄屍棺各緣由，備文呈請報明，伏乞指示遵行。

等因，前來。

溯查外夷欲赴內地各處貿易，有執照者方准入境，惟朝鮮一郡本係屬邦，向無准入內地貿易之條，今該民人金銀喜·安得榮·李尚得等三名，私越華境，潛投各處，本屬有干邊禁，至該民人于五月十二日，潛入雙城堡境界，於十四日李尚得即行因病身故，求寄屍棺，秋間來接，而金銀喜·安得榮二人，即此哀求逃走，其查界官連陞等，竟自任其脫身他往，且遲延兩月之久，始行呈報，顯有情弊，除嚴飭署雙城堡總管，刻即出派弁兵，寔力搜查，務將前項逃人，悉數尋獲解送，並將該界官等，因何遲延，及有無賄縱情弊，作速查明，一併呈報備核，暨咨行寧古塔·伯都訥·三姓·阿勒楚喀副都統衙門，劄飭烏拉林·五常堡協領，烏拉總管，伊通·額木和索羅十路界協佐領·四邊門章京，吉林·伯都訥同知·長春廳通判等，一體遵照，即將朝鮮逃人金銀喜等二人，飭屬嚴行搜查，務獲解送，嗣後如有此項人等入界，務須按名拿獲解究，如在交界處，遇有朝鮮人等越界者，即行阻禁，不准私越，致滋事端，並劄飭琿春協領訥穆錦，務將朝鮮越界人等，備具照會，就近知照該國慶源府官，即將前來雙城堡貿易之金銀喜·安得榮二人，解送來堡，以便接領李尚得屍棺歸國，暨嚴飭屬界台卡官弁，不准再令潛越外，相應將朝鮮人民潛越華境，病故及逃往各緣由，先行據情呈報總理各國事務衙門，謹煩查核可也。

8월 28일, 吉林將軍 奕榕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올해 8월 10일, 雙城堡總管事務·參領 常海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左司·右司에서 공동으로 다음과 같은 기안문서를 올렸습니다.

6월 28일, 右翼協領銜花領·委協領 富興이 올린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屬翼 廂紅旗 佐領 富勒洪阿와 委驍騎校 慶恩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6월 2일, 本旗의 查界 담당 藍翎領催 委官 連陞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시를 받고 경계지대로 가서 돌아다니며 屯務를 조사하다가, 5월 14일에 二甲喇

34) ‘情因’은 “사정이 이렇습니다”는 뜻으로 아랫사람이 官長에게 보고할 때 쓰는 용어이다.

에 이르렀습니다. 總屯達 財興과 五屯 屯達 德祿 등의 보고에 따르면, 5월 12일 일몰 무렵에 그 屯에 외래인 3명이 나타났습니다. 나이는 대략 40여 세 정도로 변발을 하지 않았고, 머리에는 실로 짠 청색의 綱帽를 쓰고 있었으며, 몸에는 흰색 천으로 된 작은 小衫을 걸치고, 등에는 약상자와 錢褡 등의 물건을 진 채 屯으로 들어왔는데, 이야기를 해보려 했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머물 여관이 없어 屯의 동쪽에 屯丁 潘廷謨가 일찍이 만들어 놓았지만 농사를 짓지 않아 비워둔 집에 머물게 했다고 합니다.

14일 아침에 屯達 德祿과 家長 劉印生, 醫生 那常保, 屯丁 潘廷謨 등이 살펴보러 갔는데, 그들이 손짓발짓으로 말하기를, 高麗人으로 이름은 金銀喜와 安得榮, 李尙得이며, 조선에서 나와 각지에서 淸心完 약을 파는데, 李尙得이 도중에 병에 걸려 돌아다닐 수가 없자, 잠시 이곳에서 휴양하고자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德祿 등은 그의 병이 위중한 것을 보고 차마 쫓아내지 못했는데, 늦게 정오쯤이 되자 李尙得은 병으로 사망하였고, 일행인 金銀喜, 安得榮은 高麗紙로 시신을 싸고 屯 내에서 관을 사서 入棺했다고 합니다. 金銀喜 등은 (관을) 屯 밖의 한적한 곳에 잠시 두었다가 가을이 지난 후에 다시 와서 옮겨가고 싶다고 간청했는데, 德祿 등은 허용하지 않으려 했지만, 金銀喜 등 2명이 너무 심하게 애걸하여 차마 매몰차게 거절할 수 없었고, 그들 2명은 이미 떠났다고 합니다.

連陞은 계속 다른 屯으로 가서 경계를 조사하고, 나중에 屯 경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다시 旗로 돌아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조선은 어쨌든 외국인데, 이곳에 와서 장사를 하다가 병사하여 시신을 남겨두었다는 사실을 숨겨주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관할 경계지역인 二甲喇와 五屯에 가서 살펴보고 그곳 屯丁을 심문하였는데, 모두 李尙得이 병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곳 屯丁들에게 지시하여 李尙得의 시신이 담긴 관을 잠시 묻어두고 木牌를 세워 표식을 해두도록 한 것 외에, 아울러 領催 連陞에게 지시하여, 總屯達 財興 등을 데리고 각지로 가서 金銀喜와 安得榮 2명을 사로잡아 관청에 보내 조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10일에 다음과 같은 連陞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시에 따라 각지로 가서 金銀喜 등을 찾아다녔는데, 이미 국경을 넘어 멀리 가버렸으므로 더 이상 추격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조선인들이 (屯의) 경계 안에 들어와 약을 팔다가 사망하여 시신을 남겨둔 상황을 문서를 갖추어 보고를 올리니 검토해주시시오.

이상의 보고가 (雙城堡總管事務·參領 常海에게) 전달되어 왔습니다. 이에 해당 委協領의 보고를 살펴보니, 조선인 金銀喜, 安得榮, 李尙得 3명이 屯의 경계로 들어와 약을 팔다가 李尙得이 병사하여, 시신이 담긴 관을 잠시 남겨두었다가 가을이 지난 후에 다시 와서 가져가겠다고 하였다는 것, 해당 관원이 이미 시신이 담긴 관을 잠시 묻어두고 지켜보라고 했다는 것, 일행인 金銀喜와 安得榮을 아직 관아로 잡아 보내서 심문하지 못했다는 것 등의 내용입니다.

생각해보건대, 高麗는 비록 吉林의 경계와 비교적 가깝기는 하지만, 어쨌든 외국인이 경내로 들어왔으므로 마땅히 그때그때 명확히 보고하여 조사해야 體制에 부합할 것입니다. 또한 이곳에서 병사한 사람 1명의 시신이 담긴 관을 잠시 남겨두는 것에 대해서는 더더욱 적절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屯丁들은 시골의 무식한 백성이라 金銀喜와 安得榮 등이 빠져나가 다른 곳으로 가게 놔두었습니다. 이점은 특히 잘못이라, 곧바로 해당 관원 및 各 佐領 및 驍騎校에게 엄격히 지시하여, 곧바로 적절한 文武官員을 파견해서 촘촘히 탐문하여 그들을 체포해 처벌하도록 힘쓰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旗의 領催 連陞과 總屯達 財興, 屯達 德祿, 家長 劉印生, 屯丁 潘廷謨와 那常保 등을 관청으로 불러들여 조사하였는데, 해당 관원이 보고한 바와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領催 連陞 등을 旗로 보내 대기하도록 한 것 외에, 다시 各旗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고려인 金銀喜 등은 실로 屯의 경계 안에 숨어 있지 않으며, 흔적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살펴보건대, 雙城堡 관할 지역에서는 이러한 사안을 전혀 처리해본 적이 없습니다. 먼저 咨文을 보내서 장사하러 이곳으로 온 사람들이 있는지를 조사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조선의 金銀喜 등이 가을이 지난 후에 이곳으로 와서 시신을 가져갈 때 다시 심문하여 처리해야 할 것인지, 감히 함부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조선인이 屯의 경내로 들어왔다가 병사하여 그 시신이 담긴 관을 잠시 남겨둔 사정에 대해서, 마땅히 문서를 갖추어 명확히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앞드려 지시를 기다려 그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吉林將軍이) 되짚어 살펴보건대, 外夷가 내지 각처로 들어와 무역을 하고자 한다면, 증명서가

있는 자들만 입경을 허가합니다. 조선 一郡은 본래 屬邦으로, 그동안 내지에 들어와 무역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백성 金銀喜, 安得榮, 李尙得 등 3명이 불법적으로 중국 경계로 넘어와 각지에 드나든 것은, 본래 변방의 금령을 어긴 것에 해당합니다. 해당 백성들이 5월 12일에 雙城堡 경계로 잠입했다가, 14일에 李尙得이 곧바로 병사하자, 시신이 담긴 관을 잠시 남겨두었다가 가을에 와서 가져가겠다고 요청하고, 이후 金銀喜와 安得榮 2명이 애걸하면서 도주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查界官 連陞 등이 결국 그들을 다른 곳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방임한 것이며, 또한 두 달이나 지나서야 비로소 보고한 것은 뚜렷하게 큰 잘못입니다.

署雙城堡總管에게 엄히 지시하여, 즉각 文武官員을 파견하여 전력으로 수색해서 위의 도망자들을 전부 찾아내 압송하고, 아울러 해당 查界官 등이 왜 보고를 지연하였는지, 뇌물을 받은 폐단이 있었는지, 신속히 조사하여 함께 보고해서 검토를 받도록 하고, 아울러 寧古塔·伯都訥·三姓·阿勒楚喀의 副都統衙門에 咨文을 보내서, 烏拉林·五常堡의 協領, 烏拉總管, 伊通과 額木和索羅十路界 協領과 佐領, 四邊門章京, 吉林·伯都訥의 同知, 長春廳 通判 등에게 지시공문을 보내 모두 따르게 하였습니다. 즉 속관들에게 지시하여, 조선 도망자 金銀喜 등 2명을 엄밀하게 수색하여 잡아서 압송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자들이 경계로 들어오면 전원 체포하여 압송·처벌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交界지역에서 조선인이 월경하는 것을 발견하면, 곧바로 제지하여 불법적으로 월경하여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琿春協領 訥穆錦에게 지시하여, 월경 조선인에 대하여 照會를 갖추어 가까운 곳에 있는 朝鮮 慶源府 관원에게 통지해서, 雙城堡로 와서 장사를 한 金銀喜와 安得榮 2명을 雙城堡로 압송하여, 그들이 李尙得의 관을 받아서 귀국하도록 하고, 아울러 관할 경계지역 초소의 관병들에게 엄격히 지시하여, 다시는 조선인이 몰래 월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외에, 조선인이 중국의 경계로 잠입하여 病死하고 도망간 각 사정에 대하여, 마땅히 먼저 사실대로 총리아문에 보고하니, 번거롭더라도 검토해주십시오.

(72) 문서번호 : 1-2-3-41 (184, 238b-240b)

사안 : 조선의 걸식 난민을 이미 단속하여 모두를 송환시켰으며, 아울러 변경 초소에 철저히 막아 다시는 넘어가게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습니다(查禁朝鮮乞食難民, 已悉數予以遣回, 並飭邊卡防範勿再令偷越).

날짜 : 同治十年十月十九日(1871년 12월 1일)

발신 : 吉林將軍 奕榕

수신 : 總理衙門

十月十九日, 吉林將軍奕榕文稱.

本年十月初五日, 本衙門恭摺奏.

爲 遵旨查禁朝鮮乞食難民, 現在悉數飭交該國差員領回, 並墊給川資銀兩各緣由, 恭摺具奏, 仰祈聖鑒 事.

竊奴才等, 前於同治九年十月初九日, 承准軍機大臣字寄, 同治九年十月初一日奉上諭.

總理各國事務衙門奏, 朝鮮人潛逃俄界, 請飭該國自行辦理一摺. 前有旨諭令禮部, 行知朝鮮國王, 將逃越俄界民人, 悉數領回約束, 勿許再爲逃越. 並由總理各國事務衙門, 咨行禮部, 轉咨該國. 著該部按照前咨, 迅卽行令朝鮮, 自行設法招徠, 使已逃者, 懷德復歸. 嗣後尤當嚴申禁令, 不可復蹈前轍. 並著該部行知該國王遵照辦理. 至邊防必應嚴密, 著奕榕·毓福, 嚴飭邊界各員弁, 隨時認真稽查, 如有朝鮮民人, 由中國地界, 逃至俄國者, 卽行查禁, 勿任乘間偷越. 將此諭知禮部, 並諭令奕榕·毓福知之.

欽此. 遵旨寄信前來.

奴才等跪讀之下，仰見聖慮周詳，無微不至。當即檄令寧古塔副都統烏勒興阿，“欽遵諭旨，嚴飭琿春協領，並邊界卡弁，認真稽察，如有朝鮮民人，由中國地界，逃赴俄境者，即行查禁，毋任乘間偷越”等因。行令去後，旋據該副都統烏勒興阿，轉據琿春協領，並差派之巡查等員，先後報稱。

陸續在於所屬街市村屯，僻壤處所，及俄界之珠倫河等處，查得³⁵朝鮮越界難民男婦子女，共五百二十四名口，隨時病故者四名。

當經該副都統，以時屆隆冬，天氣嚴寒，人數較衆，塔城相距該國慶源府八百餘里，沿途僅有卡房數處，若遽行派員押送回國，恐無寄宿處所，不無凍餒之虞，轉失柔遠之道。除將已故四名，派員驗明，飭即掩埋標記候領外，餘俱咨請暫緩解送前來。

奴才等詳查，朝鮮人民逃越中國境界，例禁甚重，本應解回該國治罪。姑念該國頻年歉收，以致男婦子女，奔逃各處，乞食求生，情尚可憫。當即咨覆該副都統，揀派妥員，前往彈壓，酌給口食，查點名數，送交該國邊界官吏收領，俾歸故土，以杜乘間偷越俄境，仰副朝廷懷柔遠人，綏靖邊圉之至意。

復據該副都統咨稱。

經琿春協領派員，將朝鮮難民，於本年三月十九日，護送至塔城安置，查點人數，給以口食。並經該副都統派員，藉便持照，與該國邊界官吏會商，如何將此項越境難民，收領回國，去訖。即經該國使員帶領通事人等，馳赴塔城收領。

並據該通事文稱。

此來未及關領回國行糧，懇求貸給米價駝腳等銀，俟回本國後，再行送交琿春協領衙門歸款，免致中途枵腹。

等因。

經該副都統，咨由奴才等衙門核准，共合米價駝腳等銀，二百九十九兩二錢，暫由該城，如數籌款墊發，以廣皇上，而示軫恤。並即由該副都統，將各界查獲該國越境難民，除病故四名，前後共五百二十四名口，如數點交該國官吏收領，揀派妥員，沿途照料，護送至該國慶源府官點收，取具收付，回照內開，“人數相符，現在邊界，一律肅清，”加具印結，咨報前來。

奴才等復查，塔屬地處偏隅，率多崇山峻嶺，琿春地界與朝鮮，僅有土門一江之隔。該國流民，時虞偷越，亟應咨行該副都統烏勒興阿，仍嚴飭所屬邊卡官兵，認真防範，不時派員，常川梭巡，如有朝鮮難民，再行潛越，或由中國地界，逃入俄境者，務須隨時拿獲，照例奏明，解回該國治罪，務使偏僻屬國，畏威懷德，則邊界可期肅清矣。除咨呈總理各國事務衙門，暨咨報禮部查核外，合將“奴才等遵旨查禁朝鮮乞食難民，現在悉數飭交該國差員領回，及派員解交該國慶源府官收領，並籌墊川資銀兩，暨嚴飭邊卡，加意防範，毋任再行乘間偷越”各緣由，理合恭摺覆奏。伏乞皇太后·皇上聖鑒。謹奏。

等因。

具奏之處，相應照抄原摺，呈報總理各國事務衙門，謹請查核可也。

10월 19일,吉林將軍 奕榕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올해 10월 5일, 본 아문에서 다음과 같이 상주하였습니다.

유지에 따라 조선의 걸식 난민을 단속하였고, 현재 전원을 조선에서 파견한 관원에게 넘겨 주어 데려가게 하였으며, 잠시 여비를 빌려준 각 사안에 대하여 삼가 주접을 갖추어 상주하오니 열람해주시기 바랍니다.

奴才 등은 同治 9년 10월 9일, 10월 1일에 다음과 같은 上諭를 받았다는 軍機大臣의 廷寄를 전해 받았습니다.

총리아문에서 조선인이 몰래 러시아 경계로 넘어가고 있으니, 朝鮮에 지시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주접을 올렸다. 전에 禮部에 지시하여, 조선국왕에게 알려 러시아로 몰래 넘어간 백성을 모두 데려와서 단속하고, 다시는 몰래 넘어가지 못하게 하도록 유지를 내린 바 있다. 아울러 총리아문에서 禮部로 咨文을 보내, 다시 朝鮮으로 咨文을 보내게 한 바 있다. 禮部는 이전의 咨文에 따라서 신속히 조선에 문서를 보내, 조선에서 자체적으로 방법을 강구하여 도망자를 불러들이되, 이미 도망간 사람들이 감격하여 복귀하게 하고, 이후에는 더욱 금령을 엄격히 펼쳐서 다시는 전철을

35) 查得은 서류철을 조사해보니 알게 되었다는 뜻이다.

밟지 못하게 하도록 하라. 아울러 禮部는 조선국왕에게 문서를 보내, 그에 따라 처리하게 하라.

변경의 방비는 반드시 엄밀해야 하니, 奕榕과 毓福은 변경지역의 각 관병들에게 엄격히 지시해서 수시로 충실하게 단속하도록 하며, 만약 조선백성이 중국 경계를 거쳐 러시아로 도망가려 한다면, 즉각 제지하여 틈을 타고 몰래 넘어가지 못하게 하도록 하라. 이 유지를 禮部에 알리고, 奕榕과 毓福에게도 유지를 알리도록 하라.

유지에 따라 이상과 같은 廷寄가 전달되어 왔습니다. 奴才 등은 무릎 꿇어 유지를 읽고 난 후, 폐하의 사려 깊은 마음이 어느 작은 것에도 미치지 않음이 없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곧바로 寧古塔副都統 烏勒興阿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습니다. “삼가 유지에 따라서 琿春協領과 변경지역 초소 관원들에게 엄격히 지시하여 충실하게 단속하고, 만약 조선백성이 중국경계를 거쳐 러시아로 도망가려 한다면, 곧바로 제지하여 틈을 타고 몰래 넘어가지 못하게 하라.”

그 뒤 오래지 않아, 琿春協領과 임무를 받고 파견된 순찰 관원이 전후로 보고한 내용을 해당 副都統 烏勒興阿가 받아 다음과 같이 전달해 왔습니다.

관할지역 街市 및 村屯의 벽지, 그리고 러시아 경계의 珠倫河 등지에서, 연이어 조선의 월경한 남녀노소 난민 총 524명을 확인하였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4명은 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보고를 받고) 해당 副都統은 마침 때가 한겨울이라 날씨가 매우 춥고, 사람 수도 비교적 많으며, 寧古塔城과 朝鮮 慶源府도 800여 리 떨어져 있는 데다가, 경로 상에 겨우 몇 개의 초소건물 밖에 없으므로, 갑자기 관원을 파견하여 압송·귀국시킨다면 아마도 숙박할 장소도 없어 추위와 굶주림에 떨 우려가 없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먼 곳의 나라를 품어주는 도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미 사망한 4명에 대해서는 관원을 파견하여 확인한 다음 매장하여 표식을 세워 나중에 옮겨가도록 하는 것 외에, 나머지 모두의 압송을 잠시 늦춰줄 것을 欸文으로 요청해왔습니다.

奴才 등이 상세히 살펴보건대, 조선 백성이 중국 경계로 몰래 넘어온 것에 대해서는 법에서 엄중히 금지하고 있는 바이므로, 본래 마땅히 朝鮮으로 돌려보내서 처벌받게 해야 합니다. 다만 朝鮮에서 빈번히 흉년이 들어 남녀노소가 각지로 도망하여 걸식을 하면서 생명을 부지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사정이 그래도 가련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 副都統에게

咨文을 보내 회신하여, 적절한 관원을 파견해 보내 단속하게 하되, 식량을 나눠주고 인원수를 점검한 다음 朝鮮의 변경관원에게 넘겨 수령하게 함으로써 故土로 돌려보내어, 틈을 타서 몰래 러시아 경계로 넘어가는 것을 차단하고, 먼 곳의 백성들을 회유시키고 변방을 안정시키시려는 조정의 지극한 뜻에 부응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副都統이 다시 보낸 다음과 같은咨文을 받았습니다.

琿春協領이 관원을 파견하여 조선 난민을 올해 3월 19일에 寧古塔城으로 호송하여 안치시켜, 인원수를 점검하고 식량을 주었습니다. 아울러 해당 副都統은 증명서를 지니는 문제를 구실로 조선 변경관원과 만나, 어떻게 이 월경 난민을 수령해서 귀국시킬지에 대해서 상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조선 사신이 이미 번역원(通事) 등을 데리고, 그들을 수령하고자 寧古塔城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울러 해당 번역원(通事)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이번에 올 때 귀국 길에 쓸 양식을 수령해오지 못했으니, 식비와 운송비 등을 빌려주면 본국으로 돌아간 후에 다시 琿春協領衙門으로 갚음으로써, 중도에 굶주리게 되는 것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해당 副都統이 奴才 등의 아문으로咨文을 보내 승인을 받은 다음, 식비와 운송비로 총 299兩 2錢을 일단 寧古塔城에서 전액 준비하여 발급하여 줌으로써, 황상의 어진 은혜를 넓히고 진흥의 뜻을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副都統은 각지에서 체포한 朝鮮의 월경 난민 가운데 病死한 4명을 제외한, 총 524명을 모두 점검하여 朝鮮관원에게 수령하도록 넘겨주었고, 적절한 관원을 파견하여 귀국길을 돌봐주면서, 朝鮮 慶源府 관원에게 호송하여 점검·수령하게 한 뒤 증명서를 받아 돌아왔습니다. 답장으로 받은 照會에는 “인원수가 맞으며, 현재 변경지역은 전부 정돈되었습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관인을 찍은 보증서와 함께咨文으로 보고해 왔습니다.

奴才 등이 다시 살펴보건대, 寧古塔 관할지역은 편벽한 곳에 처하여 높은 산과 봉우리가 많으며, 琿春지역과 조선은 겨우 土門江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朝鮮 유민이 때때로 몰래 월경을 하니, 신속히 副都統 烏勒興阿에게咨文을 보내, 소속 변경지역 초소의 관병들에게 엄격히 지시하여 충실히 방법하게 하고, 불시에 관원을 파견하여 상시적으로 순찰함으로써, 조선 난민이 다시 몰래 넘어오거나, 중국 경계를 거쳐 러시아 경계로 몰래 들어가려 하면, 그때그때 체포하여 전례대로 상주하고 朝鮮으로 압송해 처벌받게

하도록 힘쓰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편벽한 속국이 대국의 위엄을 두려워하고 인덕에 감화되도록 한다면, 변경지역은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총리아문으로 咨文을 올리고, 禮部에도 咨文으로 보고하여 검토하도록 하는 것 외에, 奴才 등이 “유지에 따라 조선의 걸식 난민을 단속하여, 지금은 전부 朝鮮에서 보낸 관원이 수령하도록 넘겨주었고, 또한 관원을 파견하여 그들을 朝鮮 慶源府의 관원에게 압송하여 수령하게 하였으며, 아울러 여비를 빌려주고 변경지역의 초소에 엄격히 지시하여, 더욱 주의하여 방범함으로써 다시는 틈을 타서 몰래 넘어가지 못하게 한” 각 사정을, 마땅히 삼가 주점을 갖추어 답장으로 올리는 바입니다. 앞드려 빌건대 皇太后와 皇上께서 열람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삼가 주를 올립니다.

이상의 상주에 대하여, 마땅히 원 주점을 抄錄하여 총리아문에 보고하니 검토해주시시오.

(73) 문서번호 : 1-2-3-42 (185, 241a-242b)

사안 : 유지에 따라 조선의 걸식 난민을 단속하였고, 현재 전원을 송환시켰으며, 아울러 변경초소에 지시하여 다시는 몰래 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서 막게 하였습니다(遵旨 查禁朝鮮乞食難民, 已悉數遣回, 並嚴飭邊卡加意防範再有偷越).

날짜 : 同治十年十月二十一日(1871년 12월 3일)

발신 : 軍機處

수신 : 總理衙門

十月十九日, 吉林將軍奕榕文稱.

[이하 중간 내용은 바로 앞의 (71) 문서번호 : 1-2-3-41 (184, 238b-240b)와 동일하므로 생략.]

同治十年十月二十一日, 軍機大臣奉旨.

該衙門知道.

欽此.

10월 21일, 軍機處에서 吉林將軍 奕榕의 奏摺를 문서로 보내왔습니다.

[이하 중간 내용은 바로 앞의 (71) 문서번호 : 1-2-3-41 (184, 238b-240b)와 동일하므로 생략.]

동치 10년 10월 21일, 軍機大臣은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다.

해당 아문에 알리라.

이상.

(74) 문서번호 : 1-2-3-43 (193, 251a-251b)

사안 : 조선에서 난민을 송환해가느라 전에 빌려갔던 쌀값 비용을 반납하였습니다(朝鮮歸還前墊接回難民辦買路米銀兩).

날짜 : 同治十年十一月二十二日(1871년 1월 2일)

발신 : 吉林將軍 奕榕

수신 : 總理衙門

十一月二十二日, 吉林將軍奕榕文稱.

本年十月二十三日, 准寧古塔副都統衙門咨.

據琿春協領訥穆錦報稱.

於九月十二日, 據朝鮮慶源會寧等府差派將校金尙振等, 送到前代辦買路米銀二百九十九兩二錢, 中途又買路米五斗, 價銀四兩, 共銀三百零三兩二錢, 爲恐見縮, 加數銀七錢五分, 希爲兌明查收歸款前來.

當經協領訥穆錦眼同朝鮮差員金尙振等, 速加數銀七錢五分, 兌足三百零三兩二錢之數, 給回收付, 飭令該差員等旋回去訖.

等因.

呈據該副都統轉報前來.

查此項墊給朝鮮接回難民辦買路米等項, 銀二百九十九兩二錢, 俟回該國再行送交. 等因.

報經本衙門, 當於十月初五日, 據情奏報在案. 茲准咨稱.

朝鮮送到前墊辦買路米銀二百九十九兩二錢, 又在中途買米五斗, 墊銀四兩, 二共三百零三兩二錢.

今已如數送到，並達加數銀七錢五分，兌足原墊銀三百零三兩二錢，如數歸款之處，理合據情呈報總理衙門，謹請查核可也。

11월 22일에 吉林將軍 奕榕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올해 10월 23일 寧古塔副都統衙門에서 (다음과 같은) 咨文을 보내왔습니다.

琿春協領 訥穆錦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9월 12일, 朝鮮 慶源·會寧府에서 將校 金尙振 등을 파견하여, 전에 대신 지불해준 쌀값 비용 299兩 2錢과 함께, 중간에 다시 산 쌀 5斗의 값 銀價 4兩, 모두 銀 303兩 2錢을 보내왔는데, 모자랄까봐 銀 7錢 5分을 더 추가해 왔으니, 兌換해서 수령한 뒤 원래의 항목으로 반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協領 訥穆錦이 朝鮮의 파견관원 金尙振 등과 함께, 은 7錢 5分을 서둘러 추가하여 303兩 2錢으로 兌換해서 제출하였으므로, 증명서를 지급하여 해당 파견관원이 가지고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보고를 해당 副都統이 받아서 다음과 같이 전달해 왔습니다.

朝鮮으로 돌려보내는 난민의 여비로 빌려준 항목, 즉 은 299兩 2錢에 대해서, 그들이 조선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려 다시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는 본 아문을 거쳐 이미 10월 5일에 사실대로 상주된 바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조선에서 전에 빌려준 쌀값 비용 銀 299兩 2錢과 함께, 다시 중도에 산 쌀 5斗의 값인 은 4兩을 모두 채워 보내왔으니, 두 가지를 합쳐 銀 303兩 2錢입니다.

지금 이미 액수대로 보내왔고, 거기에 다시 은 7錢 5分을 추가하여, 원래 빌려준 銀 303兩 2錢의 액수를 충분히 채워 兌換해 보내왔으므로, 그 액수대로 원래의 항목으로 귀속시킨다는 점을 마땅히 사실대로 總理衙門에 보고를 올리니, 삼가 검토해주십시오.

(75) 문서번호 : 1-2-3-44 (195, 254a)

사안 : 이전에 상주하여 조선 걸식 난민을 단속하라는 유지를 받은 주접을 초록하여 알려드립니다(前奏遵旨查禁朝鮮乞食難民一摺錄旨知照).

날짜 : 同治十年十一月二十五日(1872년 1월 5일)

발신 : 吉林將軍 奕榕

수신 : 總理衙門

十一月二十五日, 吉林將軍奕榕文稱.

本年十月初五日, 本衙門恭摺具奏, “爲 遵旨查禁朝鮮乞食難民, 現在悉數飭交該國差員領回, 並墊給川資銀兩”等因一摺, 當經照抄原摺呈報在案. 茲於十一月初八日, 奉到迴摺, 軍機大臣奉旨.

該衙門知道.

欽此. 欽遵前來.

相應恭錄諭旨, 呈報總理衙門, 謹請查核可也.

11월 25일, 吉林將軍 奕榕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올해 10월 5일에 본 衙門에서는, “유지를 받아 朝鮮의 구걸하는 난민을 단속하여, 현재 난민 전부를 조선에서 보낸 관원이 데려가게 하였으며, 아울러 여행비용을 빌려주었습니다”라고 삼가 상주한 바 있습니다. 그 때 이미 원 주접을 그대로 초록하여 총리아문에 알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8일에 주접을 다시 돌려받았는데, 그때 軍機大臣은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아문에 알리라.
마땅히 유지를 초록하여 총리아문에 알려드리니, 삼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6) 문서번호 : 1-2-3-45 (199, 258a-258b)

사안 : 조선 백성 김은희 등 3명이 월경하였다가 병사하거나 도망친 일에 대해, 조선 경원부에서는 조사해보니 그런 사람이 없다고 답장해 왔습니다(朝鮮民人金銀喜等三名越境病故逃逸事, 朝鮮慶源府回稱查無此人).

날짜 : 同治十一年正月初七日(1872년 2월 15일)

발신 : 吉林將軍 奕榕

수신 : 總理衙門

同治十一年正月初七日, 吉林將軍宗室奕榕文稱.

前據雙城堡總管報稱.

有朝鮮民人金銀喜·安得榮·李尚得等三名私入華境賣藥. 李尚得因病身故, 當將屍軀浮屠標記. 其金銀喜·安得榮等二名逃走.

等情. 呈報前來.

當經本衙門一面咨劄所屬各處, 一體搜查, 並飭琿春協領, 就近照會朝鮮慶源府官, 卽將前來雙城堡貿易之金銀喜·安得榮等二人解送來堡, 接領李尚得屍棺, 一面據情於八月十六日咨呈在案. 茲於十二月初十日, 據琿春協領訥穆錦報稱.

揀派雲騎尉依薩繡阿持照抵至朝鮮卡倫, 交其馳遞. 旋經慶源府官派出兵房座守等官携回原費照會, 靚面告稱.

所屬各處並無逃逸民人金銀喜·安得榮名姓之人. 本地方官雖查明確, 祇以未奉本國王之命, 不敢擅自聲覆, 亦未便率存大國文移, 當將照會繳回.

等情. 呈據該協領具情呈報前來.

除飭覆該協領仍行備具文移照會朝鮮慶源府官, 趕緊據寔訪查, 如有前項逃人金銀喜·

安得榮二名, 務卽飭令來堡接領屍棺, 毋得久懸, 並咨報禮部查核外, 相應具情呈報總理各國事務衙門, 謹請備查可也.

同治 11년 1월 7일, 吉林將軍 종실奕榕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이전에 雙城堡 總管이 다음과 같은 보고를 해왔습니다.

조선 백성 金銀喜·安得榮·李尙得 3명이 몰래 국경에 들어와 약을 팔았습니다. 李尙得은 병으로 사망했기에 시신을 잠시 묻어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金銀喜·安得榮 2명은 도주하였습니다.

본 衙門에서는 이미 소속 각 지역에 지시공문을 보내 모두 조사하도록 했고, 琿春協領으로 하여금 근처의 朝鮮 慶源府 관원에게 照會를 보내, 雙城堡에 와서 거래를 한 金銀喜·安得榮 두 사람을 잡아오게 하고, 李尙得의 시신이 안치된 관을 인수해 가게 하는 한편, 사실에 근거하여 8월 16일에 咨文으로 보고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에 12월 10일에 琿春協領 訥穆錦이 다음과 같이 보고를 하였습니다.

雲騎尉 依薩繃阿를 파견해, 여행증을 가지고 朝鮮 초소에 이르러 속달로 공문을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곧 慶源府 관원이 兵房座守 등의 관원을 파견해, 원래 보냈던 照會를 가지고 와서 다음과 같이 정중히 알려왔습니다.

소속 각지에는 도망자 金銀喜·安得榮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본 지방관이 분명히 조사하긴 했지만, 아직 국왕의 지시를 받들지 않아 함부로 답장을 드릴 수는 없으며, 또한 大國의 공문을 계속 보관하기도 불편하니, 照會를 가지고 돌아가 주십시오.

해당 協領이 이런 보고를 전달해 왔습니다. 해당 協領에게 문서를 갖춰 朝鮮 慶源府 관원에 照會를 보내도록 해서, 서둘러 사실대로 조사하여 앞서의 도망자 金銀喜·安得榮 두 사람이 있다면 즉시 堡로 와서 시신이 든 관을 인수해서 시일을 끝지 않도록 하였고, 아울러 禮部에 咨文을 보내 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마땅히 총리아문에도 사실대로 보고하니 삼가 참고해주시시오.

(77) 문서번호 : 1-2-3-46 (200, 259a)

사안 : 변경 금령을 재확인하는데, 만일 조선 난민이 중국 경내를 거쳐 러시아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면 즉시 제지하되, 다른 곳을 거쳐 들어가는 경우는 모두 불문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稽查邊禁事. 如朝鮮難民欲由中國境內逃入俄界, 卽行阻攔. 由他處入俄, 概置不問).

날짜 : 同治十一年正月初九日(1872년 2월 17일)

발신 : 吉林將軍 奕榕

수신 : 總理衙門

正月初九日, 吉林將軍宗室奕榕函稱.

本月初二日接奉鈞函, 嚴示一切, 敬已領悉. 此後惟有欽遵諭旨, 嚴飭所屬邊界各官, 認真稽查. 如有朝鮮民人由中國境內逃入俄界者, 卽行攔阻. 其本由朝鮮境內逃入俄界者, 概置不問, 以泯事端, 而安邊圉. 至琿春交涉事件, 旣蒙酌復前去, 自應俟俄使照覆到日, 聽候飭知, 以便轉飭遵照辦理. 謹此肅復, 恭請勛安.

1월 9일에 吉林將軍 종실 奕榕이 다음과 같은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이번 달 2일, 보내주신 서한을 잘 받았으며, 지시하신 일체의 것도 모두 잘 파악하였습니다. 차후로는 오로지 유지에 따라 소속 변경의 각 관원들에게 충실히 조사하도록 지시하여, 만일 조선 난민이 중국 경내를 경유해 러시아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면 즉시 제지하고, 조선 경내를 경유해 러시아로 들어가는 경우는 모두 불문에 부치도록 하여, 말썽을 막고 변방을 안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琿春의 교섭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답장을 보내주셨으므로, 마땅히

러시아 공사의 답장 조희가 올 때까지 기다려, 지시를 내려주시면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삼가 답장을 올리며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78) 문서번호 : 1-2-3-47 (1761, 3091b-3092a)

사안 : 조선 會寧府와 鍾城府에서 민변이 일어나 府使가 도주하였으니, 현명한 관원을 골라 파견하여 민심을 무마함으로써, 러시아인이 기회를 틈타 들어오는 것을 막도록 조선 국왕에게 서한을 보내주십시오(韓會寧·鍾城兩府民變, 府使逃逸, 請函該國王簡派賢員撫輯民心, 以免俄人乘釁而入).

날짜 : 光緒十八年十二月初七日(1893년 1월 24일)

발신 : 吉林將軍 長順

수신 : 總理衙門

十二月初七日, 吉林將軍長順函稱.

敬肅者. 遠戀鈞暉, 無時或釋, 翹詹築範. 惟以永懷恭維大業, 格天邊猷經世, 望崇中外, 頃集珙球. 順泰鎮邊陲, 未遑遠略, 內安外睦, 本應兼權, 猶幸俄約免就, 交涉各事, 近尚撫平. 惟九月二十八日朝鮮之會寧府因官貪吏虐, 民不堪命, 一夫攘臂, 卽聚衆至三千餘人, 毀署毆官. 凡平日吏如虎狼者, 悉被打逐, 禍且及家, 聞該府使隻身鼠竄, 僅逃回王京. 其惡吏家屬, 欲遁無地, 都有潛渡過江入我界以避禍者. 當經順飛飭吉朝通商局及近江各隊, 妥爲阻違而去, 並加意巡江密防, 以觀動靜. 恐其衆怒之深, 我若容其匪人, 卽有他慮. 苟能不入我境, 我亦不必過問. 蓋其民之變, 皆由其官吏激成, 殊非反叛可比. 月餘以來, 雖已相安無事, 不料昨接恩幫辦澤函, 述該國鍾城百姓, 又復因事聚衆闐鬧, 府使亦已逃回王京. 以前會寧之事度之, 雖亦不至釀成變亂, 然查該兩府使均因貪虐, 致犯衆怒, 爲所毆逐. 民情渙散, 於此可見. 久無主持, 實慮嘯聚生事. 且恐俄人狡焉思啓, 乘釁而入, 不可不思患預防, 懲前毖後, 爲朝鮮計. 擬請貴署函致朝鮮國王, 請其詳擇賢明慈惠之資, 又能善制吏役者, 派爲該兩城府使, 則民心安

服, 邊界無事矣. 愚昧之見, 未知有當萬一否, 尚望裁奪而行. 肅沕, 恭請鈞安, 伏希垂鑒. 不莊.³⁶⁾

12월 7일 吉林將軍 長順이 다음과 같은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삼가 올립니다. 멀리서도 귀하를 잠시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으며, 항상 모범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삼가 天下大業을 지키고자 하는 뜻을 항상 품고 있어, 國防과 經世에 대한 식견은 하늘에 이르러 중외에서 모두 숭앙하는 바이니, 최근에는 보물과 같은 인재들이 주변에 모여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단지 차분히 변경의 요충을 지킬 뿐, 큰 식견을 펼칠 겨를은 없고, 안으로 평안하고 밖으로는 화목한 문제에 대해서만 본래 심사숙고해야 하는데, 다행히 러시아와의 조약 교섭에 관련된 일을 피해, 최근에는 비교적 평온합니다. 다만 9월 28일에 朝鮮 會寧府에서 관리들이 탐욕스러워 백성들이 살아갈 수 없자, 한 사람이 팔을 걷고 나서니 3천여 명의 무리가 그에 호응하여, 관청을 부수고 관리를 구타하였습니다. 평소 호랑이나 이리와 같던 서리들은 모두 맞고 쫓겨났으며, 그 화가 장차 家屬들에게까지 미쳐, 소식들은 해당 府使는 단신으로 달아나 몰래 수도로 도망쳐 갔다고 합니다. 악질 서리의 家屬들은 달아나려 해도 갈 곳이 없어, 모두 몰래 강을 건너 우리 경내로 들어와 화를 피하였습니다. 이미 서둘러 吉·朝通商局과 강 부근 각 부대로 하여금 제지하게 하는 한편, 주의를 기울여 강을 순찰하면서 몰래 방비하고 동정을 살피게 하였습니다. 그 무리들의 분노가 깊어, 우리가 만일 그들을 받아들인다면 바로 다른 근심거리가 될 지도 모릅니다. 만일 우리 국경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꼭 간섭할 필요는 없습니다. 백성들의 변란은 모두 관리들이 자극해서 일어난 것이지, 반역에 비견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 달여 동안 이미 아무 일이 없었는데, 뜻밖에도 어제 恩澤 幫辦의 서신을 받았습니다. 鍾城의 백성이 역시 무슨 사정으로 인해 무리를 모아 소란을 일으켰고, 府使는 역시 이미 수도로 달아났다는 것입니다. 이전 會寧의 사례로 헤아려 보건대, 비록 변란으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두 府使들이 모두 탐욕스러웠기에 백성의 분노를 사 두들겨 맞고 쫓겨나게 된 것 같습니다. 민심이 흐트러졌음을 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주지하는 이가 없으니, 무리를 모아 일을 벌일까

36) 편지의 끝 부분에 쓰는 겸사(謙詞)로, 불경(不恭)하다는 뜻이다.

실로 두렵습니다. 또 러시아인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틈을 타서 들어갈까 걱정되니, 미리 방비를 생각하고 과거의 잘못을 훗날의 교훈으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선을 위해 총리아문에서 조선국왕에게 서한을 보내, 현명하고 자애로운 자질이면서 胥吏·衙役들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을 신중히 골라, 두 곳의 府使로 파견하도록 요청한다면, 민심이 안정되고 변경도 무사할 것입니다. 우매한 의견이 만에 하나라도 잘못된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可否를 살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귀하의 평안함을 바라며, 살펴봐 주시기를 엿드려 기다립니다.

(79) 문서번호 : 1-2-3-48 (1764, 3095b)

사안 : 조선 會寧府와 鍾城府 백성이 무리를 모아 관청을 부수고 관리를 구타하였으니, 현명한 관원을 골라 파견하여 민심을 무마해달라고 조선국왕에게 서한을 보내주십시오
(朝鮮會寧·鍾城兩處百姓聚衆毀署毆官, 請函該國王詳簡賢員安撫民心).

날짜 : 光緒十八年十二月初十日(1893년 1월 27일)

발신 : 總理衙門

수신 : 北洋大臣 李鴻章

十二月初十日, 發北洋大臣李鴻章信[詳見密啓].

草目 : 朝鮮會寧·鍾城兩處百姓聚衆毀署毆官, 請函致該國王詳擇賢員由.

12월 10일, 北洋大臣 李鴻章에게 보내는 서신[자세한 내용은 密檔을 참고할 것].

내용 요약 : 朝鮮 會寧·鍾城 두 곳의 백성들이 무리를 모아 관청을 부수고 관리를 구타하였으니, 조선국왕에게 현명한 관원을 골라 파견하도록 서한을 보내달라고 부탁함.

월경한인 송환을 위한 중국·러시아 교섭 (中俄交涉逐回越界韓人)

(80) 문서번호 : 1-2-4-01 (73, 90a)

사안 : 산에 들어가서 직접 조사하라는 유지를 받들어, 우선 朝鮮에 관원을 파견하여, 접견 장소를 정하게 하였습니다(遵旨進山查勘, 先令朝鮮派員定地接見).

날짜 : 同治六年九月十五日(1867년 10월 12일)

발신 : 軍機處

수신 : 總理衙門

九月十五日, 軍機處交出都興阿抄摺[詳見密檔].

草目 : 遵旨進山查勘, 先令朝鮮定地接見由.

9월 15일에 軍機處에서 都興阿에게 보낸 주접 초록[자세한 내용은 密檔을 참고할 것].

내용 요약 : 산에 들어가서 직접 조사하라는 유지를 받들어, 우선 朝鮮에 접견 장소를 정하라고 함.

(81) 문서번호 : 1-2-4-02 (97, 119a-122b)

사안 : 월경민을 되돌려 받고 변경 금령을 밝히는 것에 대해, 조선국왕이 대신 상주해달라고 요청하여 상주한 주접과 유지를 초록하여 알립니다(具奏朝鮮國王請代奏, 領回逃民申明邊禁一摺, 錄旨知照).

첨부문서 : 1. 이미 북방 변경관원에게 러시아에서 송환된 백성을 돌려받기를 기다려, 다시 금령을 밝히라고 지시하였습니다(已飭北境邊官, 俟領取自俄界逐回民人後再申邊禁).
2. 조선국왕이 월경민을 되돌려 받고 금령을 밝혔다고 알려진 咨文을 대신 상주합니다(轉奏朝鮮國王咨覆領回逃民申明邊禁文).

날짜 : 同治九年二月二十五日(1870년 3월 26일)

발신 : 禮部

수신 : 總理衙門

[(55) 문서번호 : 1-2-3-24 (97, 119a-122b)와 같은 내용이라 생략함.]

(82) 문서번호 : 1-2-4-03 (100, 127a-130b)

사안 : 러시아는 월경 조선인을 쫓아낼 생각이 없고, 조선 관원 역시 구실을 빌어 책임을 미루고 송환해가려 하지 않습니다(俄國不願逐回逃俄韓人, 韓官亦藉故推諉, 不欲領取).

첨부문서 : 1. 조선국왕의 답장 咨文.

2. 禮部의 비밀상주와 吉林將軍의 답장 咨文.³⁷⁾

날짜 : 同治九年九月初四日(1870년 9월 28일)

발신 : 吉林將軍 富明阿

수신 : 總理衙門

九月初四日, 吉林將軍富明阿文稱.

案查本年三月初五日, 准禮部咨開.

主客司案呈.

所有本部抄錄朝鮮王原文轉奏一摺, 於同治九年二月二十四日奏, 本日軍機處片交, 軍機大臣奉旨.

知道了.

欽此.

相應抄錄該國王原文及本部原奏, 知照吉林將軍可也.

計單開.

37) 원문에는 첨부문서의 표기가 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 첨부문서가 2건 있으므로 여기에 추가하였다. 하지만 (1)은 정상적인 咨文인데, (2)는 공문서의 형식에서 약간 어긋난 점이 있지만, 禮部의 비밀상주와 吉林將軍의 답장 咨文으로 구성되어 있다.

朝鮮國王爲，咨覆事。

同治八年十一月二十二日，承准禮部咨。

節該主客司案呈。

本部謹密奏，“爲朝鮮民人潛投俄界，應卽仍由該國王申明禁令，嚴飭邊官悉數領回，毋得再有逃越，以清疆域而重邊防”等因二摺，奉上諭一道。

咨行照辦前來。

除將禮部咨文一一承領外，竊念小邦北境，接連上國地界，只隔琿春河，衣帶一水。荒邊窮鄙，樂生安業，數百年晏然無事，無往非天朝庇覆洪恩。而一自俄人之占居設卡以來，凡係邊情，恒存虞憂，終未能遏絕匪類之窺覘，懷保遇民之疾苦，致令越界潛投，已多厥數，興擾滋事，極有深慮。今此邊奏纖悉，實據目驗，上諭諄複，特紆宸衷，俯慙藩屏之不職，仰頌階庭之無間，感惶攢祝，曷有無極。蓋此邊民犯越之弊，誠非一朝一夕之故。逃避徭役者有之，陷溺利誘者有之，乘間漏逸，馴致千百。本年十月初十日，據咸鏡道觀察使李興敏馳啓。

備慶興府使李鼎鎬呈稱。

阿吾真民十九戶，渾率家眷，掠取銃砲，一齊越境逃走。

等語。

該地方年穀不幸大歉，官所賑賙，雖未及時，惟彼多戶之齊逃，總由邊弁之溺職，見方究核事情，嚴行懲辦。第念琿春協領所覩流入俄界之男婦子女，無或卽是此次逃去之人衆歟。巖杵河棘心河等處，計以千數者，都是此等漸次流入之類也。縱恨防範之疎失，而從今務加嚴密，如欲逋藪之搜剔，則亦難力致容易。何幸天鑒洞澈，聖慮深遠，銷釁於未萌，防患於未然。特飭邊臣會商俄官，越界民人之悉行逐回，小邦邊官之悉數領回，並將恪遵聖旨，迅速奉行。海邦從此而無虞，邊政從此而益嚴。不敢猥頌陳請，乃蒙曲軫恩眷，感激之極，懇彌切。謹當申飭北境一帶邊官，恭俟逐回民人，一一領取，再申邊禁，期無因循頹惰。煩乞禮部將此情實轉達天聽，千萬至祝。爲此合行咨覆，請照驗施行。

禮部謹密奏，爲 據咨轉奏 事。

准盛京禮部送到朝鮮國王咨文一件，臣等公同閱看，係因上年臣部具奏“朝鮮國民人紛紛逃往俄界，”欽遵諭旨行文該國王。

將逃赴俄界民人，飭令該國邊界官悉數領回，並由該國王申明禁令，以重邊防。等因。

今准該國王咨覆。

恪遵聖旨，感激天恩，謹當申飭邊官，恭候俄界逐回民人，一一領取，再申邊禁。等情。咨乞轉奏前來。

謹抄錄原文，恭呈御覽。

爲此，謹密奏聞。

等因。抄單咨行前來。

當經本衙門飭飭琿春協領訥穆錦。

務將此項越界朝鮮民人，有無悉數逐回領取淨盡之處，隨時查訪據寔具報，以憑轉詳。等因。

飭飭去後，嗣於五月初六日，據琿春協領訥穆錦報稱。

職前奉飭文之日，當即親詣海沿摩闊崙，會見俄官廓米薩爾，曲爲開導，令將朝鮮越界人等悉數逐回。據該俄酋答稱。

俄國不願招留，雖設卡拒阻，而若輩乘間偷入，人數旣勝，不勝驅逐，擬於春融移至綏芬一帶服役，庶與兩國邊界無碍。

等語。今奉來飭，復飭二道河卡官領催藍翎祥太等。

務將此項越界朝鮮民人，有無逐回，而該國邊界官是否領取淨盡，查訪明確，據寔呈報。

等因。

飭據祥太等稟稱。

奉飭前往海沿密探朝鮮逃人行止等情，即聞俄人揚言。

“海沿一帶聚集朝鮮人等，業經俄國供給口食，若令回國，必須包補糜費。”

等語。除此未見朝鮮官界官領回一名，現今仍有男婦子女，公然投奔俄國，而俄人船隻，擇其少壯者載往他處，將其衰老者即由陸路驅往綏芬一帶安置。

等情。

查明呈據該協領轉報前來。

本衙門當以該協領以此三國邊界重事，僅飭虛銜卡官，就近查訪，復以揚言無稽之談，率行具報，並未親往查察，實屬不知輕重。復於五月初九日，飭覆該協領。

即將前情務須親往該兩國邊界處所，會見朝鮮邊界之員，並俄國廓米薩爾，面為開導，隨機區畫，俄國如何驅逐，朝鮮如何取領，妥籌定擬，據實具報，以憑轉詳。

等因。

飭覆去後，茲於八月十四日，據該協領訥穆錦覆稱。

職遵即帶兵會見朝鮮慶源府邊界之員，詎該邊界官赴往該國慶興海津等處，與民人等賑濟去訖。當即職旋回後待有一月之久，於七月初五日，該邊界官始行旋回。是以職帶兵親詣會見該邊界官，着伊“領取被俄國招留該國男婦子女。”等因。告說之際，據該邊界官飭令該國通事答說。

其被俄國招去該國男婦子女，伊國如若領取，俄國尚且不准。再並非慶源府一處之人，又兼未奉該國王之旨，適際伊寔係不敢承領。

等語。

是以職帶兵即赴摩闊歲，面晤廓米薩爾，將前文逐回領取各情，逐以剖辯，據廓米薩爾飭令該國通事答說。

將該國所招朝鮮男婦子女之事，以前伊奉該國東悉畢爾總督飭，將朝鮮國男婦子女俱載往綏芬等處，飭令耕作，扣抵所需糜費。

等語。

當即職復向伊婉言討要之際，據廓米薩爾答說。

伊斷不能專主其事，再伊國住京公使，將此等情已經達知朝鮮國王矣。嗣後不關你

們琿春之事。

等語。

是以職復向伊曲爲開導，告說。

琿春地方與朝鮮僅屬一江之隔，守近鄰邦之地，爾國理宜遵照和約，將該國所逃男婦子女，按名逐回，方符和好之道。

等因。

再三開導，該廓米薩爾始終不能交回，是以職於七月二十日帶兵旋回，密留雲騎尉吉爾洪阿在摩闊巖，訪查俄酋將朝鮮男婦子女等載往何處等情，迅速呈遞。後據吉爾洪阿回稱。

俄酋將朝鮮男婦子女，於二十一日俱以載往綏芬等處去訖。

等情。

呈據該協領轉報前來。

查此案，前准禮部咨抄朝鮮國王覆文內稱。

已經申飭北界邊官，恭俟俄界逐回民人，一一領取，再申邊禁。

等情。在案。

今經琿春協領會見該慶源府邊界官，詎該員何以“未奉該國王之旨，適際伊寔係不敢承領”等語答之？寔屬前文不達後語。再“伊國如若領取，俄國尚且不准，又非慶源府一處之人”等情，查該國王既已申飭北境邊官，豈不通文各處一律照辦，何致並非一府之人，即不能承領？揆其語意唐突，庶不知意存何居。至俄國廓米薩爾聲稱。

該國所招朝鮮難人，係奉該國東悉畢爾總督筭飭，將該男婦子女，俱載往綏芬等處，飭令耕作，扣抵所需糜費。

及至討要，該酋答說。

伊不能專主，再伊國駐京公使，將此等情節，已經達知朝鮮國王矣。嗣後不管你們琿春之事，始終不能交回。

等情。

詳核該酋所述一切，是否耕作抵費，達知朝鮮，真偽莫辯。視其兩國互相推諉，各不能

主之意，甚爲叵測。案關邊界鄰邦，互相交雜，迄無着落，自應據寔聲明，以憑酌核辦理。相應據情飛行呈報總理各國事務衙門，謹請查核辦理可也。

9월 4일에 吉林將軍 富明阿가 (다음과 같은) 글을 보냈습니다.

살펴보건대, 올해 3월 5일에 다음과 같은 禮部의 咨文을 받았습니다.

主客司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문서를 올렸습니다.

禮部에서 조선국왕의 자문 원문을 초록해 同治 9년 2월 24일에 대신 상주하였는데, 오늘 軍機處가 附片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와 더불어 軍機大臣은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알았다.

이에 마땅히 조선국왕의 원문과 예부의 원 상주문을 초록해 吉林將軍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1) 조선국왕의 답장 咨文

조선국왕이 답장 咨文을 보냅니다.

同治 8년 11월 22일, 禮部의 咨文을 받았습니다.

생략. 主客司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문서를 올렸습니다.

禮部에서는 “조선 백성이 몰래 러시아로 넘어가니, 마땅히 조선국왕으로 하여금 禁畵을 펼치고 변경관원이 그들을 모두 데려가도록 해, 다시는 월경하지 않게 함으로써, 강역을 분명히 하고 변경의 방비를 엄중히 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비밀상주 2건을 올렸는데, 이에 대해 咨文을 보내서 그에 따르게 하라는 상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禮部의 咨文을 받았으므로 조선국왕은) 禮部 咨文의 내용을 하나하나 받아들여 고자 합니다. 그런데 삼가 생각건대 조선의 북쪽 지역은 淸國의 경계와 맞닿아 있고, 단지 琿春河를 사이에 두고 있어 정말로 가까운 데다가, 황막한 변방의 빈곤한 백성들도 樂生安業 하면서 수백 년 동안 편안히 아무 일이 없었으니, 天朝에서 감싸주신 크나큰 은혜 덕분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인이 점거하여 초소를 설치한 이래, 무릇 변경 상황에

항시 우려가 있게 되었고, 결국 비적이 틈을 엿보는 것을 막지 못하고 백성의 고통을 풀어주지 못하여, 그들이 몰래 월경하여 넘어간 데다가, 이미 그 수가 많고, 소요와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아주 커졌습니다. 이번 변경에 관한 상주문은 매우 자세한데, 실제 모두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반복하여 上諭로 깨우쳐주시면서 황상의 속뜻을 보여주시니, 직무를 다하지 못한 藩屏으로서 부끄러운데도, 우려 더할 나위 없는 배려를 내려주신 것에 대해, 황송해하며 송축하는 마음에 어찌 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건대 이들 변경 백성의 범월 문제는 실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까닭 때문만은 아니며, 요역을 도피한 경우도 있고 이익에 피여 빠져 들어간 경우도 있는데, 기회를 엿보아 도망간 사람이 순식간에 千百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올해 10월 10일, 咸鏡道觀察使 李興敏이 다음과 같이 급히 狀啓를 올렸습니다.

慶興府使 李鼎鎬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阿吾鎭 거민 19戶가 온 집안 가솔을 이끌고 총포를 약탈하여 일제히 월경하여 도주하였습니다.

해당 지역은 올해 수확에 불행히도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官에서 진휼하였는데, 비록 때를 맞추지는 못하였다고는 하나, 저렇게 많은 백성이 일제히 도주한 것은 모두 변경 담당 관원이 직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야흐로 사정을 조사하여 엄격히 징벌할 예정입니다. 다만 琿春協領이 목격했다고 하는 러시아 경내로 유입한 남녀노소는, 아마도 바로 이번에 도주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巖杵河·棘心河 등지의 천여 명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점차적으로 유입된 무리일 것입니다. 방법을 느슨히 하여 놓친 것은 한스럽지만, 앞으로는 힘써 더욱 엄밀하게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도망가버린 백성들을 찾아내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어찌나 다행인지 황상께서 깊이 꿰뚫어보시고 깊고 넓게 걱정해 주셔서, 일어나기 전에 말썽을 없애 주시고, 미연에 근심을 막아 주셨습니다. 특히 변경관원에게 지시하여, 러시아 관원과 함께 상의하여, 월경한 백성들을 모두 돌려보내어 조선의 변경관원이 모두 거두어들이도록 해 주시면서, 아울러 장차 聖旨를 삼가 준수하고 신속하게 받들도록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海邦은 지금부터 걱정이 없을 터이고, 邊政 역시 더욱 엄밀해질 것인데, 감히 번거로움을 두려워하여 간청하지 않아도 곡진한 은혜를 입게 되었으니, 감격함이 그지없고, 황공함이 이를 데 없습니다. 삼가 마땅히 북쪽 일대의 변경관원에게 지시하여, 백성이 모두 돌려보내

지기를 기다려 하나하나 거두어들이고, 다시 변경의 금령을 펼쳐 과거의 잘못을 다시 따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예부에서 이러한 사정을 황상께 전달해 주신다면 천만 다행이겠습니다.

이에 마땅히 咨文을 보내어 회답하니, 청컨대 참고해주십시오.

(2) 禮部의 비밀상주와 吉林將軍의 답장 咨文

예부가 咨文을 받아 대신 상주하는 일로, 삼가 비밀상주를 올립니다.

盛京禮部에서 조선국왕의 咨文 1건을 보내왔습니다. 臣 등이 함께 검토해 보니, 조선 백성이 잇달아 러시아 경내로 도망가는 일에 관한 것이었는데, 작년 臣部에서 이에 대해 상주하였고, 삼가 유지를 받들어 조선국왕에게 다음과 같이 咨文을 보낸 바 있습니다.

러시아 경내로 도망간 백성들에 대하여, 조선의 변경관원에게 지시하여 모두 거두어들이도록 하고, 아울러 조선국왕은 禁畵를 다시 펼침으로써 변경 방어를 신중히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에 대한 조선국왕의 다음과 같은 답장 咨文을 받았습니다.

삼가 聖旨를 따르고 天恩에 감격하여, 곧바로 변경관원에게 지시하여, 러시아에서 백성을 돌려보내기를 기다려 하나하나 거두어들이도록 하였으며, 다시금 변경의 禁畵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국왕이 이상과 같은) 咨文을 보내어 대신 상주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삼가 원 咨文을 초록하여 올리니 살펴봐 주십시오.

이에 삼가 비밀상주를 올리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咨文과 첨부분서가 咨文으로 吉林將軍에게 전달되었습니다.³⁸⁾

이미 吉林將軍衙門에서는 琿春協領 訥穆錦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한 바 있습니다.

38) 앞서 지적한 공문의 형식에 어긋나는 부분이 여기서 시작된다. 이하의 내용은 吉林將軍의 답장 咨文이다. 바로 앞은 禮部 비밀상주인데, 보통 이것을 받았다고 하여 인용하면서, 답장을 뒤에 붙이는데 여기서는 그런 형식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越境한 조선 백성이 모두 쫓겨나 조선에서 남김없이 데리고 갔는지, 수시로 조사해서 사실에 근거해 보고함으로써 상부에 보고할 수 있게 하라.

곧이어 5월 6일 琿春協領 訥穆錦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지시를 받자마자 곧 직접 연해의 摩澗巖로 가서, 러시아 界務官과 만나 조선 월경민을 모두 쫓아내도록 완곡하게 설득하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측 해당 관원은 다음과 같이 답하였습니다.

러시아는 이들을 끌어들이며 머물게 할 생각이 없지만, 초소를 설치하여 막으려 해도, 이들이 몰래 틈을 타 들어오는 수가 너무 많아, 이루다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봄에 날씨가 풀리면 綏芬 일대로 옮겨 일을 맡기려 하는데, 아마 양국 변경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지시를 받았으므로, 다시 二道河 초소의 관원으로 領催인 藍翎 祥太 등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습니다.

越境 朝鮮人들을 쫓아냈는지 아닌지, 조선의 변경관원이 이들을 남김없이 모두 데리고 갔는지, 분명히 조사해 사실에 근거해서 보고하라.

이 지시를 받은 祥太 등이 다음과 같이 보고를 해왔습니다.

지시를 받아 연해 지역으로 가서 조선 월경민의 거동 등을 몰래 탐문하였습니다. 러시아인은 다음과 같이 공언하였습니다.

연해 일대에 모인 朝鮮人들에게 러시아에서 평소에 식량을 제공하였으므로, 만약 귀국시키려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변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朝鮮의 변경관원이 이들을 한 명이라도 데리고 가는 것은 본적이 없으며, 지금도 여전히 러시아로 공공연히 들어가는 남녀노소가 있는데, 러시아인들은 젊은이들은 배로 다른 곳으로 실어 나르고 노약자들은 육로를 통해 綏芬 일대로 보내 安置시키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해당 協領이 전달해 왔습니다. 吉林將軍이 살펴보건대, 해당 協領에게 三國 邊境에 관련된 중대사를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虛銜만 가진 초소 관원에게 근처에 가서 탐문하라고 지시하고, 또한 황당무계한 소리만 듣고 온 것을 그대로 보고할 뿐이었는데, 이런 태도는 실로 경중을 모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5월 9일에 해당 協領에게 다시 다음과 같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전에 지시한 일은 즉시 반드시 자신이 직접 兩國 변경지역으로 가서 朝鮮의 변경관원 및 러시아 界務官을 만나 설득하고, 상황에 따라 처리하라. 러시아에서 어떻게 월경민을 쫓아낼지, 朝鮮이 어떻게 그들을 받아들일지 적절히 계획하고, 사실대로 보고함으로써 상사에게 보고를 올릴 수 있도록 하라.

이에 8월 14일에 해당 協領 訥穆錦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지시에 따라 즉시 병사를 거느리고 朝鮮 慶源府 변경관원을 만나려 했는데,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 변경관원은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 慶興·海津 등 지역에 가버렸던 것입니다. 저는 돌아가서 1개월을 기다렸는데, 7월 5일에야 해당 변경관원이 비로소 돌아왔습니다. 이에 저는 병사를 거느리고 직접 가서 해당 변경관원과 만나, “당신이 러시아에서 수용하고 있는 조선의 남녀노소를 모두 데리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해당 변경관원은 통역을 통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러시아에 의해 유인 당한 朝鮮의 남녀노소를 조선에서 되돌려 받아오자 해도, 러시아에서 아직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慶源府 한 곳만의 사람이 아닌 데다가, 아직 국왕의 유지를 받들지 못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는 사실 제가 감히 데려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제가 병사를 거느리고 摩澗巖로 가서 界務官을 직접 만나, 월경민을 쫓아내 朝鮮 측에서 데려가도록 요청한 이전의 문서를 다시 언급하였는데, 界務官은 통역을 통해 다음과 같이 답하였습니다.

러시아에서 끌어들이는 朝鮮의 남녀노소는 이전에 러시아 동시베리아 총독에게 받은 지시에 따라, 모두 綏芬 등지로 보내 경작에 종사하게 하였으니, 거기 소모된 비용을 변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제가 다시 그에게 완곡하게 다그치자, 界務官은 다음과 같이 답하였습니다.

내가 결코 이 일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또한 北京 주재 러시아 공사가 이 사정을 이미 조선국왕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당신네 琿春에서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이리하여 저는 다시 그를 설득하면서 알려주었습니다.

琿春은 朝鮮과 겨우 한 줄기 강을 사이에 두고 있으면서, 가까운 이웃 국가(와의 경계를) 지키는 지역입니다. 당신네 나라에서 마땅히 和約에 따라 朝鮮에서 달아난 남녀노소를 모두 돌려보내야만 화평의 도리에 부합할 것입니다.

재삼 설득했지만 해당 界務官은 계속 월경민을 돌려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7월 20일에 병사를 거느리고 돌아오면서 雲騎尉 吉爾洪阿를 摩濶歲에 몰래 남겨두어, 러시아 측 관원이 朝鮮의 남녀 및 자녀들을 어느 곳으로 보내는지 등의 상황을 탐문하여 신속히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나중에 吉爾洪阿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러시아 계무관이 朝鮮의 남녀노소를 21일에 모두 綏芬 등지로 옮겼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해당 協領이 전달해 왔습니다. 생각건대, 일전에 禮部가 초록해 보낸 조선국왕의 답장 咨文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미 북쪽 변경관원에게 지시하여, 러시아에서 백성들을 돌려보내기를 공손히 기다렸다가 일일이 받아들여지게 한 뒤, 다시 변경 금령을 펼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이미 琿春協領이 해당 慶源府 변경관원과 만났는데, 어찌 알았겠습니까? 해당 관원은 “국왕의 유지를 아직 받지 못했으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감히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는 식의 말로 대답하였습니다. 실로 앞의 글과 뒤의 말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또한 “조선에서 데려 가려고 해도 러시아가 아직 승인하지 않으며, 慶源府 한 곳의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식의 이야기는, 조선국왕이 이미 북쪽 변경관원에게 지시한 것을 감안했을 때, 어찌 그 글이 각지에 일률적으로 시행되지 않아 같은 府의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니 데려올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말투의 당돌함을 생각했을 때, 그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 界務官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끌어들이는 朝鮮의 남녀노소는 이전에 러시아 동시베리아 총독에게 받은 지시에 따라, 모두 綏芬 등지로 보내 경작에 종사하게 하였으니, 거기 소모된 비용을 변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쪽에서) 다그치자 해당 관원은 (다음과 같이) 답하였습니다.

내가 결코 이 일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또한 北京 주재 러시아 공사가 이 사정을 이미 조선국왕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당신네 琿春에서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결코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해당 계무관의 말 전부를 상세히 검토해보면, 경작에 들어간 비용을 朝鮮에 알렸는지,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兩國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각자가 서로 결정을 할 수 없다고 하니, 정말로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이 변경의 이웃나라와

관계되어 서로 뒤엎기면서 아직 결말이 나지 않고 있으므로, 마땅히 사실에 근거해 밝힘으로써 검토해서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며, 마땅히 사실대로 서둘러 총리아문에 보고해야 할 것이니, 삼가 검토해서 처리해주십시오.

(83) 문서번호 : 1-2-4-04 (101, 131a-132a)

사안 : 러시아로 도주한 조선 난민 문제는 조선에咨文을 보내 스스로 알아서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朝鮮逃俄難民事, 請轉咨該國自行酌辦).

날짜 : 同治九年九月十二日(1870년 10월 6일)

발신 : 總理衙門

수신 : 禮部

九月十二日, 行禮部文稱.

同治九年九月初五日, 准吉林將軍咨稱.

本年三月, 准禮部咨開抄錄朝鮮國王原文轉奏一摺, 當經飭飭琿春協領親晤俄官, 令將朝鮮越界人等悉數逐回. 據俄官答稱.

俄國不願招留, 雖設卡拒阻, 而若輩乘間偷入, 人數既衆, 不勝驅逐, 擬於春融移至綏芬一帶服役, 庶與兩國邊界無碍.

等語.

該協領復往海沿, 密探朝鮮逃人行止, 但聞俄人揚言, 朝鮮人等素經俄國供給口糧, 若令回國 必須包補糜費. 除此未見朝鮮邊界官領回一名, 現今仍有男婦子女, 公然投奔俄國, 而俄人船隻, 擇其少壯者載往他處, 將其衰老者即由陸路驅往綏芬一帶安置. 該協領復向俄官再三開導, 據俄官聲稱.

奉該國東悉畢爾總督飭, 飭將朝鮮國男婦子女俱載往綏芬等處, 飭令耕作. 扣抵所需糜費, 已將此情達知朝鮮國王矣. 嗣後不關你們琿春之事.

等語.

該協領復往見朝鮮慶源府邊界之員, 詎該邊界官答稱.

並非慶源府一處之人，又兼未奉該國王之旨，伊實不敢承領等語。

查此案前准禮部咨抄朝鮮國王覆文。

已經申飭北境邊界官，恭俟俄界逐回民人，一一領取，再申邊禁等情在案。

今琿春協領會見該慶源府邊界官，何以答稱“未奉該國王之旨”？實屬前文不達後語。且該國王既已申飭北境邊官，豈不通文各處，一律照辦，何致“並非一府之人，即不能承領”？揆其語意，不知意存何居。至俄國所招朝鮮子婦男女，俱載往綏芬等處，飭令耕作，扣抵所需糜費，據俄官聲稱，已達知朝鮮國王。視其兩國互相推諉之意，甚為叵測。案關邊界，呈請查核辦理。

等因。前來。

查上年八月間，本衙門據吉林將軍咨稱，“朝鮮國男婦紛投俄界，恐日久生釁”，咨行貴部酌核辦理，經貴部奏奉上諭。

迅即行文該國王，將逃赴俄界民人，飭令該國邊界官悉數領回，並由該國王申明禁令，嚴飭該國沿邊官弁，約束民人，毋許再有逃越，以重邊防。

等因。欽此。

該國王欽奉諭旨。

自宜設法撫綏所屬百姓，已逃者令其懷德復歸，未逃者不至復蹈前轍，一面嚴申禁令，飭該國官弁設法招徠，以追既往，加意約束，以杜將來。

及該國主復文內稱。

恭俟逐回民人，一一領取，再申邊禁。

是該國不能禁本國之民逃往外國，轉望外國自將收留之民逐回，方行領取。且謂領取後再申邊禁，是一日未有逐回之民與伊領取，即一日不申邊禁，聽其復逃。要之已逃者縱不能一時領回，未逃者總可禁其不復再往。現俄國既稱“該國逃民飭令耕作，扣抵所需糜費，並稱已將此情達知朝鮮國王”，是否確實，應由該國自行酌核辦理。相應咨行貴部，轉咨該國查照可也。

9월 12일에 禮部로 다음과 같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同治 9년 9월 5일, 吉林將軍의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올해 3월에 조선국왕의 자문을 받아 예부에서 대신 상주한 주접을 받고, 바로 琿春協領에게 지시하여, 직접 러시아 관리와 만나 越境 조선 백성을 모두 돌려보내게 하였습니다. 당시 러시아 계무관은 다음과 같이 답하였습니다.

러시아는 이들을 끌어들이며 머물게 할 생각이 없지만, 초소를 설치하여 막으려 해도, 이들이 몰래 틈을 타 들어오는 수가 너무 많아, 이루 다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봄에 날씨가 풀리면 綏芬 일대로 옮겨 일을 맡기려 하는데, 아마 양국 변경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협령은 다시 연해지방으로 가서 조선 월경민의 행방을 탐문하였는데, 러시아인이 “朝鮮人들에게 러시아에서 평소에 식량을 제공하였으므로, 만약 귀국시키려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변상해야 할 것”이라고 공언하는 것을 듣게 될 뿐이었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朝鮮의 변경관원이 이들을 한 명이라도 데리고 가는 것은 본적이 없으며, 지금도 여전히 러시아로 공공연히 들어가는 남녀노소가 있는데, 러시아인들은 젊은이들은 배로 다른 곳으로 실어 나르고, 노약자들은 육로를 통해 綏芬 일대로 보내 安置시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協領은 다시 재삼 설득하였지만, 러시아 계무관은 다음과 같이 답하였습니다.

러시아 동시베리아 총독에게 받은 지시에 따라, 조선의 남녀노소를 모두 綏芬 등지로 보내 경작에 종사하게 하였으니, 거기 소모된 비용을 변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사정을 조선국왕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당신네 琿春에서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해당 협령은 다시 조선 慶源府의 변경관원과 만났는데, 어찌 알았겠습니까? 해당 관원은 이렇게 답장하였습니다.

결코 慶源府 한 곳의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며, 아직 국왕의 유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제가 감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을 조사해보건대, 전에 예부에서 초록해 보내 준 조선국왕의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미 북쪽 일대의 변경관원에게 지시하여, 러시아 경계에서 백성이 모두 돌려보내지기를 기다려 하나하나 거두어들이고, 다시 변경의 금령을 펼치겠습니다.

지금 琿春協領이 慶源府의 변경관원을 만났을 때 어찌 “국왕의 유지를 아직 받지 못했으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감히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는 식의 말로 대답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실로 앞의 글과 뒤의 말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또한 조선국왕이 이미 북쪽 변경관원에게 지시한 것을 감안했을 때, 어찌 그 글이 각지에 일률적으로 시행되지 않아, 같은 府의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니 데려올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말뜻을 생각했을 때, 그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러시아 界務官은 “러시아에서 끌어들이던 朝鮮의 남녀노소는 모두 綏芬 등지로 보내 경작에 종사하게 하였으니, 거기 소모된 비용을 변상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고, 또한 “이 사정을 이미 조선국왕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당신네 琿春에서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라고도 하였습니다. 兩國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로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이 변경의 이웃나라와 관계된 것이니, 삼가 검토해서 처리해주시요. 이상과 같은 吉林將軍의 咨文이 전달되어 왔습니다. 작년 8월에 본 아문에서는 “朝鮮의 남녀노소가 분분히 러시아로 넘어가니, 오래되면 말썽이 생길까 두렵습니다”는 吉林將軍의 咨文을 받아, 귀 예부에 검토해서 처리하라고 자문을 보낸 바 있고, 귀 예부에서는 상주하여 다음과 같은 상유를 받았습니다.

즉시 조선국왕에게 공문을 보내, 러시아로 들어간 백성을 조선의 변경관원이 모두 데려가게 하는 한편, 조선국왕이 禁畵를 다시 펼쳐 조선의 변경주변 문무관원으로 하여금 백성들을 통제해서 다시는 국경을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변경의 방어를 중시하도록 하라.

조선국왕은 유지를 받자,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자체적으로 방법을 강구하여 도망자를 불러들이되, 이미 도망간 사람들이 감격하여 복귀하게 하고, 아직 도망가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는 전철을 밟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금령을 다시 펼쳐, 문무관원으로 하여금 방법을 강구하여 다시 불러들이므로써 이미 떠난 사람을 돌아오게 하고, 단속에 더욱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장래의 분란을 차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국왕은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해당 백성이 돌려보내지기를 공손히 기다렸다가 일일이 받아들인 뒤, 다시 변경 금령을 펼치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이 자기 나라 백성이 외국으로 달아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도리어 외국에서 스스로 거두어들인 백성을 돌려주어야만 비로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받아들이고 나서야 변경 금령을 다시 펼치겠다고 하는데, 이는 하루라도 백성들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하루라도 변경의 금령을 펼치지 않아, 그들이 다시금 달아나게 놔둔다는 뜻입니다. 요컨대 이미 달아난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두 되돌려 받지는 못하더라도, 아직 달아나지 않은 사람들이 다시 넘어가는 것은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조선 월경민을 경작에 종사하게 했으니 소모된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정을 이미 조선국왕에 알렸다”고 하는데, 이것이 확실한지는 마땅히 조선에서 알아서 검토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며, 이에 마땅히 貴 禮部에 咨文을 보내니, 조선에 전달하여 참고하게 해주십시오.

(84) 문서번호 : 1-2-4-05 (102, 132b)

사안 : 몰래 러시아로 월경한 조선 백성을 조선에서 송환하지 못하므로, 다시 조선국왕에게
되받아가도록 공문을 보내달라는 吉林將軍의 咨文을 대신 상주합니다(轉奏吉林將軍
咨, 朝鮮私越俄界民人, 該國未能領回, 再行文該國王領取).

날짜 : 同治九年九月十三日(1870년 10월 7일)

발신 : 禮部

수신 : 總理衙門

九月十三日, 禮部文稱.

主客司案呈.

所有據咨轉奏, 吉林將軍咨“朝鮮私越俄界民人, 該國未能領回”一摺, 於同治九年九月
十三日具奏. 本日軍機處片交, 軍機大臣奉旨.

該衙門知道.

欽此.

相應抄錄原奏, 知照總理各國事務衙門遵照辦理可也.

[原奏詳見本月十四日軍機處抄摺.]

9월 13일에 禮部가 (다음과 같은) 글을 보냈습니다.

몰래 러시아로 越境한 조선 백성을 조선에서 송환하지 못한다는 吉林將軍의 咨文을 받아,
예부에서 同治 9년 9월 13일에 대신 상주하였는데, 그 날로 군기처에서 附片을 돌려주었고,

軍機大臣은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아문에 알리라.

이상.

마땅히 원 상주문을 초록해 총리아문에 알려, 그에 따라 처리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원 상주문은 이번 달 14일 軍機處가 초록한 주점에 상세히 보인다.]

(85) 문서번호 : 1-2-4-06 (103, 133a-135a)

사안 : 러시아로 월경한 조선 난민을 총리아문에서 나서서 러시아가 그들 모두를 쫓아내게
만든 다음, 다시 조선국왕에게 공문을 보내 되받아가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朝鮮逃俄難民可否由總署轉令俄人盡數逐回, 再行文該國王領取).

날짜 : 同治九年九月十四日(1870년 10월 8일)

발신 : 軍機處

수신 : 總理衙門

九月十四日 軍機處交出全慶抄摺稱.

爲 奏聞請旨 事.

同治九年九月初五日, 准吉林將軍富明阿等咨稱.

所有朝鮮民人潛投俄界一案, 准禮部抄錄該國王原文及本部原奏抄單咨行前來. 當
經本衙門飭飭琿春協領訥穆錦.

卽將前情務須親往該兩國處所, 會見朝鮮邊界官並俄國廓米薩爾, 面爲開導, 隨機
區畫, 俄國如何驅逐, 朝鮮如何領取 妥籌定擬, 據寔具報.

等因. 去後.

茲據該協領訥穆錦覆稱.

遵卽帶兵會見朝鮮慶源府邊界官, 着伊領取被俄國招留該國男婦子女等, 據該國
邊界官飭通事答說.

被俄國招去該國男婦子女, 伊國如若領取, 俄國尚且不准. 再並非慶源府一處之
人, 又兼未奉該國王之旨, 邇際寔不敢承領.

等語.

職帶兵即赴摩澗歲，面晤廓米薩爾，將前文逐回領取各情，逐一剖辨，據廓米薩爾飭通事答說。

該國所招朝鮮男婦子女，伊奉該國東悉畢爾總督筭飭，俱載往綏芬等處，飭令耕作，扣抵所需糜費。再伊國駐京公使，將此情已經達知朝鮮國王。嗣後不關你們琿春之事。

等語。

職復向伊曲為開導，該廓米薩爾始終不能交回。是以帶兵旋回，密留雲騎尉吉爾洪阿在摩澗歲，訪查俄人將朝鮮男婦子女載往何處。旋據吉爾洪阿回稱。

俱載往綏芬等處去訖。

等情。

呈據該協領轉報前來。

查此案前准禮部咨抄朝鮮國王覆文內稱。

經申飭北境邊官，俟俄國逐回民人，一一領取，再申邊禁。

等情。在案。

今經琿春協領會見該慶源府邊界官，詎該員以“未奉該國王之旨，適際伊不敢承領”等語答之。又云“非慶源府一處之人”等情。至俄國廓米薩爾聲稱。

該國所招朝鮮難人，係奉該國東悉畢爾總督筭飭載往綏芬等處，飭令耕作，扣抵所需糜費。再伊國駐京公使，將此等情節，已經達知朝鮮國王。嗣後不干琿春之事。

等語。

詳核所述，真偽莫辨。視其兩國互相推諉，各不能主之意，甚為叵測。應咨部查核辦理。等語。到部。

臣等查同治八年十一月初三日，准吉林將軍富明阿等咨稱。

朝鮮國男婦子女紛投俄界。除咨寧古塔副都統轉飭協領訥穆錦，刻即親赴摩澗歲，會同該國廓米薩爾，務將朝鮮逃越男婦子女，共念和好，悉數逐回外，應咨禮部轉行朝鮮國王，即將該國逃越之男婦子女一千餘人，飭令邊界官悉數領回，各安本業。

等因。

當經臣部據咨轉奏，奉上諭。

著禮部迅即行文該國王，將逃越俄界民人，悉數領回，並由該國王申明禁令，嚴飭該國沿邊官弁，約束民人，毋許再有逃越，以重邊防。並著富明阿飭令訥穆錦，會商俄國廓米薩爾，務將朝鮮越界民人，悉行逐回，不得久留俄界，以致另生枝節。

等因。欽此。

臣部遵於十一月初八日，恭錄知照朝鮮國王·吉林將軍，暨總理各國事務衙門遵照辦理在案。嗣於同治九年二月十四日，准朝鮮國王咨稱。

恪遵聖旨，謹當申飭邊官，恭俟俄界逐回民人，一一領取，再申邊禁。

等情。咨請轉奏前來。

復經臣部據咨轉奏，奉旨。

知道了。

欽此。

臣部遵於二月二十五日，恭錄行知朝鮮國王吉林將軍及總理各國事務衙門，查照亦在案。今該將軍咨稱，據朝鮮慶源府邊界官稱，並未奉國王之旨，不敢承領。是與朝鮮國王前次咨文自相矛盾，自應由臣部再行知照該國王，恪遵上年諭旨辦理。惟此項逃越俄界難民，必俄人情願交出，方能責令朝鮮領取。今據該將軍稱。

俄國所留逃越難民，亦聲言載往綏紛各處耕作，扣抵糜費。

等語。

是俄人並無交出之意，此時若遽由臣部行知該國王，責令領取，恐有窒礙難行之處。臣等公同商酌，所有朝鮮逃越俄界難民，擬請旨飭下總理各國事務衙門，將可否轉令俄人盡數逐回之處，揆度情形，斟酌辦理。再由臣部酌量行知朝鮮國王遵照，庶免空文往返，而益足見朝廷字小之仁矣。是否有當，伏乞聖鑒，為此謹密奏請旨。

同治九年九月十三日，軍機大臣奉旨。

該衙門知道。

欽此。

9월 14일에 軍機處에서 全慶의 주접을 초록하여 (총리아문으로) 보내왔습니다.

상주하여 유지를 청합니다.

同治 9년 9월 5일, 吉林將軍 富明阿의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조선 백성이 러시아로 몰래 월경하는 사안에 대해, 조선국왕의 咨文 및 예부에서 대신 상주한 주접과 첨부문서가 咨文으로 전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본 아문에서는 琿春 協領 訥穆錦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습니다.

이전에 지시한 일은 즉시 반드시 자신이 직접 兩國 변경지역으로 가서, 朝鮮의 변경관원 및 러시아 界務官을 만나 설득하고, 상황에 따라 처리하라. 러시아에서 어떻게 월경민을 쫓아낼지, 朝鮮이 어떻게 그들을 받아들일지, 적절히 계획하고 사실대로 보고하라. 이어 해당 協領 訥穆錦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지시에 따라, 즉시 병사를 거느리고 朝鮮 慶源府 변경관원을 만나, “당신이 러시아에서 수용하고 있는 조선의 남녀노소를 모두 데리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해당 변경관원은 통역을 통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러시아에 의해 유인 당한 朝鮮의 남녀노소를 조선에서 되돌려 받아오고자 해도, 러시아에서 아직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慶源府 한 곳만의 사람이 아닌 데다가, 아직 국왕의 유지를 받들지 못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는 사실 제가 감히 데려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제가 병사를 거느리고 摩濶巖로 가서 界務官을 직접 만나, 월경민을 쫓아내 朝鮮 측에서 데려가도록 요청한 이전의 문서를 다시 언급하였는데, 界務官은 통역을 통해 다음과 같이 답하였습니다.

러시아에서 끌어들이는 朝鮮의 남녀노소는 이전에 러시아 동시베리아 총독에게 받은 지시에 따라, 모두 綏芬 등지로 보내 경작에 종사하게 하였으니, 거기 소모된 비용을 변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北京 주재 러시아 공사가 이 사정을 이미 조선국왕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당신네 琿春에서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재삼 설득했지만, 해당 界務官은 결국 월경민을 돌려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병사를 거느리고 돌아오면서 雲騎尉 吉爾洪阿를 摩濶巖에 몰래 남겨두어, 러시아 측 관원이 朝鮮의 남녀 및 자녀들을 어느 곳으로 보내는지 등의 상황을 탐문하

여 신속히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나중에 吉爾洪阿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朝鮮의 남녀노소를 21일에 모두 綏芬 등지로 옮겼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해당 協領이 전달해 왔습니다. 생각건대, 일전에 禮部가 초록해 보낸 조선국왕의 답장 咨文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미 북쪽 변경관원에게 지시하여, 러시아에서 백성들을 돌려보내기를 공손히 기다렸다가 일일이 받아들이게 한 뒤, 다시 변경 금령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琿春協領이 해당 慶源府 변경관원과 만났는데, 어찌 알았겠습니까? 해당 관원은 “국왕의 유지를 아직 받지 못했으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감히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는 식의 말로 대답하였습니다. 또한 “조선에서 데려 가려고 해도 러시아가 아직 승인하지 않으며, 慶源府 한 곳의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라고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界務官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끌어들이는 朝鮮의 남녀노소는 이전에 러시아 동시베리아 총독에게 받은 지시에 따라 모두 綏芬 등지로 보내 경작에 종사하게 하였으니, 거기 소모된 비용을 변상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당신네 수도에 주재하는 공사는 이 내용들을 이미 조선 국왕에게 알렸습니다. 앞으로는 혼춘의 일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해당 계무관의 말 전부를 상세히 검토해보면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兩國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각자가 서로 결정을 할 수 없다고 하니, 정말로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예부에 咨文으로 알리니, 검토해서 처리해주십시오. 臣等이 조사해보건대, 同治 8년 11월 3일에 다음과 같은 吉林將軍 富明阿의 咨文을 받은 바 있습니다.

조선의 남녀노소가 분분히 러시아 국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寧古塔副都統에게 咨文을 보내, 協領 訥穆錦으로 하여금 즉시 摩濶崴로 직접 가서, 러시아 界務官과 만나, 상호 화평을 위해서 조선에서 越境한 남녀노소를 모두 돌려보내도록 하는 한편, 마땅히 禮部에 咨文을 보내 조선국왕에게 전달하여, 조선에서 越境한 남녀노소 천여 명을 변경관원이 모두 데리고 가도록 해 각자의 생업에 안착시켜야 합니다.

저희 部에서 이 咨文을 받아 대신 상주하였더니, 다음과 같은 上諭를 받았습니다.

禮部에서는 신속히 해당 국왕에게 공문을 보내, 러시아로 들어간 백성을 모두 데려가게

하는 한편, 조선국왕이 禁畵을 다시 펴서, 조선 변경지방의 문무관원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통제하게 해 다시는 越境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변경의 방어를 중시하도록 하라. 아울러 富明阿는 訥穆錦에게 지시를 내려, 러시아 界務官과 협의하여 越境한 조선 백성을 모두 돌려보내 러시아 국경에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함으로써, 따로 말썽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데 힘쓰라.

禮部에서는 이에 따라 11월 8일에 공손히 기록해 조선국왕·吉林將軍 및 總理衙門에 알려, 그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 同治 9년 2월 24일, 조선국왕의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삼가 聖旨를 따라 곧바로 변경관원에게 지시하여, 러시아에서 백성을 돌려보내기를 기다려 하나하나 거두어들이도록 하였으며, 다시금 변경의 禁畵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조선국왕은 예부에) 대신 상주해 달라고 咨文을 보내왔습니다. 다시 禮部에서 대신 상주하여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알았다.

禮部에서는 지시에 따라 2월 25일에 유지를 공손히 기록해 조선국왕·吉林將軍·總理各國事務衙門에 알려, 참고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해당 將軍이 자문을 보내 이르기를, “조선 慶源府 변경관원이 아직 국왕의 유지를 받지 않아 감히 데려올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국왕의 지난 咨文과 서로 말이 맞지 않으므로, 마땅히 禮部에서 재차 조선국왕에게 알려, 삼가 작년의 유지에 따라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국경으로 越境한 난민 사안의 경우, 러시아인들이 보내주기를 원해야 비로소 朝鮮이 데리고 가도록 독촉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길림장군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데리고 있는 越境難民은 綏芬 등 각지로 옮겨 농사를 짓게 하였으므로, 그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인들이 결코 월경민을 보내줄 의사가 없다는 뜻이니, 이때 禮部에서 잇따라 조선국왕에게 알려 그들을 데려가도록 체근한다면, 아마도 상당히 처리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까 우려됩니다. 臣等이 공동으로 논의하건대, 러시아로 월경한 조선 백성의 문제는 총리아문에서 러시아인에게 지시를 전하여 모두 되돌려 보내게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상황을 따져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라는 유지를 내려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禮部에서도 조선국왕에게 적절하게 알려, 이런 지시에 따르게 함으로써 쓸데없는 문서 왕복을 피하고, 조정에서

작은 나라를 긍휼히 여기는 인덕을 더욱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황상께서 살펴주시기를 엿드려 빕니다. 이에 삼가 비밀상주를 올려 유지를 청하는 바입니다.

同治 9년 9월 13일에 軍機大臣은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다.

해당 아문에 알리라.

이상.

(86) 문서번호 : 1-2-4-07 (104, 135b-137a)

사안 : 러시아로 월경한 조선 난민은 응당 조선에서 더욱 주의하여 위무함으로써 감격하여
복귀할 수 있게 해야 하며, 금령을 다시 밝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朝
鮮逃俄難民, 宜由該國加意撫輯, 使其懷德復歸, 並嚴申禁令, 免蹈前轍).

날짜 : 同治九年十月初一日(1870년 10월 24일)

발신 : 總理衙門

수신 : 同治帝

十月初一日, 本衙門遞正摺稱.

爲 朝鮮民人潛投俄界, 已由臣衙門咨行禮部轉咨該國自行酌核辦理, 恭摺密陳, 仰祈
聖鑒 事.

同治九年九月十三日, 准軍機處抄出禮部密陳朝鮮民人, 潛投俄界, 請旨飭臣衙門, 可
否轉令俄人盡數逐回之處, 揆度情形, 斟酌辦理一摺, 奉旨.

該衙門知道.

欽此.

查此案臣衙門於同治九年九月初五日, 據吉林將軍富明阿等咨稱.

本年三月間, 筭飭琿春協領訥穆錦, 親晤俄官, 令將朝鮮越界人等, 悉數逐回, 而若
輩乘間偷入, 人數既衆, 不勝驅逐. 該協領復往海沿密探, 但聞俄人揚言, 朝鮮人等
素經俄國供給口食, 若令回國, 必須包補糜費. 現今未見朝鮮邊官領回一名, 仍有男
婦子女公然投奔俄國. 該協領復向俄官再三開導, 據稱 “該國已將朝鮮逃民載往綏
芬等處, 飭令耕作, 扣抵糜費.” 並稱 “已達知朝鮮國王, 嗣後不關琿春之事.”

該協領復往見朝鮮慶源府邊界之員, 詎該員答稱, “並非慶源府一處之人, 又未奉該

國王之旨，伊實不敢承領。”案關邊界，呈請核辦。

等因。

臣等公同酌核此案，上年八月間，據富明阿咨稱，

朝鮮國民紛投俄界，恐日久生釁。

當由臣衙門行經禮部，奏奉上諭。

迅即行文該國王，將逃赴俄界民人，飭令該國邊界官悉數領回，並由該國王申明禁令，嚴飭該國沿邊官弁，約束民人，毋許再有逃越，以重關防。並著富明阿飭令訥穆錦，會商俄國廓米薩爾，務將朝鮮越界民人，悉行逐回，不得久留俄界，以致另生枝節。

等因。欽此。

該國欽奉諭旨。

自宜將已逃民人，設法領回，一面嚴申禁令，通飭該國官弁，毋許再有民人潛投外國，方為仰體聖意。敬謹遵行。

乃查該國復文。

有俟俄界逐回民人，一一領取，再申邊禁。

等語。

是該國不能禁本國之民逃往外國，轉望外國自將收留之民逐回，方行領取。且謂領取後再申邊禁，是一日未有逐回之民，與伊領取，即一日不申邊禁，聽其復逃。若由中國代向俄國索取，在俄國方有“朝鮮人等平素供給口食，若令回國，必須包補糜費。”等詞，明向琿春協領訥穆錦回覆。臣衙門已於本月十二日，將此情形咨行禮部酌核，轉咨該國自行辦理在案。今禮部奏請。

飭下臣衙門，揆度可否轉令俄人盡數逐回之處，斟酌辦理。

等因。

自係尚未接到臣衙門咨文，可否請旨飭下禮部，仍照臣衙門前咨各情，酌核轉咨朝鮮，令其自行設法辦理，已逃者果能加意撫輯，固可令其懷德復歸，未逃者從此嚴申禁令，亦可不致復蹈前轍。如此辦理，縱不能將從前逃民，一一領回，而此後總可禁其不復再往矣。

除由臣衙門再行移咨富明阿，嚴飭邊界官隨時稽查，毋任朝鮮民人由中國地界逃至俄國，致滋紛擾外，所有臣等核議朝鮮民人潛投俄界辦理緣由，理合恭摺具奏，伏乞皇太后皇上聖鑒，訓示遵行。

謹奏。

同治九年十月初一日，軍機大臣奉旨。

另有旨。

欽此。

10월 1일, 본 아문에서 다음과 같은 正摺을 올렸습니다.

조선 백성이 몰래 러시아 국경으로 몰려가니, 이미 저희 총리아문에서 禮部에 咨文을 보내, 조선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咨文을 전달하게 하였음을 삼가 주접을 갖추어 비밀리에 아뢰오니 살펴봐 주십시오.

同治 9년 9월 13일, 조선 백성의 러시아로의 월경에 대해 총리아문에 지시하여, 러시아인들로 하여금 그들을 모두 돌려보내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게 해달라고 유지를 요청한 禮部의 주접을 軍機處가 초록하여 보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유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아문(총리아문)에 알리라.

조사해보건대, 총리아문은 同治 9년 9월 5일에 吉林將軍 富明阿 등의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올해 3월중 琿春協領 訥穆錦에게 지시하여, 직접 러시아 界務官을 만나 조선 월경민을 모두 돌려 보내달라고 설득하였으나, (러시아에서는) 그들이 몰래 들어오는 데다가, 그 수가 너무 많아 이루 다 쫓아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協領이 다시 연해의 지역에서 몰래 탐문하였지만, “朝鮮의 남녀노소는 러시아에서 식량을 제공하였으므로, 만약 돌려보내고자 한다면, 반드시 거기 소모된 비용을 변상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귀국하려면 반드시 그 비용을 메워서 변상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명하게 琿春協領에게 답장을

하였습니다. 지금 조선의 변방관원이 한 명이라도 데려가는 것을 보지 못했으며, (조선의) 남녀노소는 계속해서 공공연하게 러시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혼춘협령은 재차 러시아 관원을 제삼 설득해 보았으나, “러시아에서는 이미 조선의 월경 백성들을 綵芬 등지로 이주시켜 경작하게 하였으니, 거기 소모된 비용을 변상해야 됩니다”라 하였고, 또한 “이미 조선국왕에게 알렸으며, 앞으로는 혼춘에서 관여하지 마십시오”라 하였습니다.

해당 협령은 다시 조선 경원부의 변경관원과 만났는데, 해당 관원이 “결코 경원부 한 곳의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며, 아직 국왕의 유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감히 받아들 수 없습니다”라고 답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사안이 변경 경계와 관련된 것이므로, 문서를 올려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신 등은 이 사안에 대해서 함께 검토하였는데, 작년 8월에 富明阿의 다음과 같은 축문을 받았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이 어지러이 러시아 경계로 들어가니,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됩니다. 총리아문에서 예부로 문서를 보내 上奏하여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곧바로 조선국왕에게 문서를 보내서, 러시아 경계로 도망간 (조선의) 백성들을 조선 변경 관원들에게 명하여 전부 데려오게 하고, 아울러 조선국왕은 금령을 분명히 펼치고 조선의 변방 관리들에게 엄치 경계하여, 백성들을 단속함으로써 다시는 (그들이) 몰래 월경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변경 방어를 중히 하게 하라. 아울러 富明阿로 하여금 訥穆錦에게 지시하여, 러시아 변경관리와 함께 논의하여 조선의 월경 백성들을 전부 돌려보내게 함으로써 오래토록 러시아 경계에 머물면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조선에서는 유지를 받고, (다음과 같이 답하였습니다.)

마땅히 이미 도망친 백성들을 방법을 강구하여 데려오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금령을 엄히 펼치고 조선의 관원들에게 두루 명하여, 다시는 백성들이 외국으로 몰래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만이, 비로소 황상의 뜻을 체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삼가 따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에서 보낸 답장을 살펴보니, 다음과 같은 말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변경에서 백성들을 돌려보내길 기다려, 하나하나 거둬들이고 재차 변경의 금령을 펼치겠습니다.

이는 조선에서 본국의 백성들이 외국으로 도망가는 것을 금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외국에서 스스로 수용한 백성들을 돌려보내야만 비로소 거둬들이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둬들이고 후

재차 변경의 금령을 펼치겠다고 했는데, 이는 하루라도 도망간 백성들을 그들이 거둬들이지 못하면, 하루 동안 변경의 금령을 펼치지 않고 도망가는 것을 놔두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대신 러시아에게 요구하면, 러시아 쪽에서는 “조선인들에게 평소에 식량을 제공했으니, 만약에 귀국하게 하려면 반드시 그 비용을 변상해야 됩니다”라는 말로 혼춘협령 訥穆錦에게 회신합니다. 총리아문에서는 이미 이번 달 12일에 이러한 사정을 알리고, 禮部에서 적절하게 검토하고 조선에 전달하여 스스로 처리하게 하라고 咨文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禮部에서 다음과 같이 주청하였습니다.

총리아문에 지시하여, 러시아인들로 하여금 조선 백성을 모두 돌려보내게 할 수 있는지 적절하게 처리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禮部에서 이렇게 주청한 것은) 분명히 臣 아문의 咨文을 아직 받아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방안의 가부에 대해서는, 禮部에 지시하여 총리아문에서 이전에 咨文으로 보낸 각 내용을 검토한 후, 조선으로 다시 咨文을 보내 조선 스스로 방법을 강구하여 처리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유지를 내려주실 것을 청합니다. 즉 이미 도망간 사람들은 더욱 마음을 써서 위무해 준다면, 실로 그들로 하여금 감격하여 돌아오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도망하지 않은 사람들은 앞으로 禁命을 엄격히 펼친다면, 또한 다시는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못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처리한다면, 설령 이전에 도망친 백성을 하나하나 모두 거두어들이 수는 없을지라도, 앞으로는 결국 백성이 다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총리아문에서 재차 富明阿에게 咨文을 보내, 변경의 관원에게 엄격히 지시하여 수시로 단속하게 함으로써, 조선 백성이 다시는 중국 영토를 거쳐 러시아로 도망쳐 말썽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것 외에, 臣 등이 조선 백성이 러시아 경계로 몰래 넘어가는 문제를 검토·처리한 경과에 대해서는, 마땅히 삼가 주점을 갖추어 상주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皇太后와 皇上께서 열람하신 후 훈시를 내려주시면, 삼가 따르고자 합니다.

이에 삼가 주를 올립니다.

同治 9년 10월 1일에 軍機大臣은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다.

따로 유지를 내릴 것이다.

이상.

(87) 문서번호 : 1-2-4-08 (110, 142a-143a)

사안 : 조선에서 과견한 관원이 琿春에 도착하여, 러시아로 월경한 난민의 송환을 요청하였으나, 러시아 界務官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朝鮮差官抵琿春, 請領俄界逃人, 而俄廓米薩爾拒絕遣還).

날짜 : 同治九年閏十月十九日(1870년 12월 11일)

발신 : 吉林將軍 毓福

수신 : 總理衙門

閏十月十九日, 吉林將軍毓福文稱.

於本年十月二十五日, 據琿春協領訥穆錦呈報.

案查前奉筭文, 遵即帶兵會見朝鮮國慶源府邊界官, 着伊領取被俄國招留該國男婦子女. 據該國邊界官飭令通事答說.

其被俄國招去該國男婦子女, 伊國如若領取, 俄國尚且不准. 再並非慶源府一處之人, 又兼未奉該國王之旨, 適際伊寔不敢承領.

等語.

是以職帶兵即赴摩濶歲, 面晤廓米薩爾, 將前文逐回領取各情, 逐以剖辨, 據廓米薩爾飭令該國通事答說.

將該國所招朝鮮男婦子女之事, 以前伊奉該國東悉畢爾總督筭飭, 將朝鮮男婦子女, 俱令載往綏芬等處, 飭令耕作, 扣抵所需糜費.

等語.

當即職復向伊婉言討要, 據廓米薩爾答說.

伊斷不能專主其事, 再伊國住京公使, 將此等情已經達知朝鮮國王矣. 嗣後不關你

們琿春之事。

等語。

是以職以伊曲爲開導，據該廓米薩爾始終不能交回等因。職無奈帶兵旋回，密留雲騎尉吉爾洪阿在摩濶歲，探訪俄酋將朝鮮男婦子女載往何處。嗣據該員回稱。

俄酋已將朝鮮男婦子女，於二十一日俱以載往綏芬等處去訖。

等情。[呈報前來]

[茲據協領訥穆錦據情呈報。]³⁹⁾

於九月初三日由朝鮮慶源地方官出派員弁，過江投署，“請領俄界逃人”等語。職將以前屢向俄官所要，不意俄官堅不交還情形，詳細指示。該夷人等告稱。

現今已奉國王之命，難以空回，求爲從中區畫。

據此。

卽令該夷暫且旋回，約以十月初一日爲期，聽候領取。職再到摩濶歲，卽以“彼此和好，不宜久留鄰邦逃人”等情，復向俄國廓米薩爾婉言開導。該俄酋仍答以“俄國將此逃來人衆，供濟多年，不包糜費，豈容徒自領回？”據此，職卽按理折說，“卽是接濟多年，尤當篤義垂情，逐回本國方爲邦交矣。”詎該俄酋怒形於色，聲言“乃奉俄國司馬大將軍之命，已經載往東海各處服役，本廓米薩爾官職卑末，寔不能專主，且與中國無涉，何必多費唇舌？”再要絮叨追索，不免有傷和氣，職善言理論，俄官惡語拒絕，寔係無可如何。僅依前定期限，趕緊回城，卽令朝鮮差員回覆本國之處。

等情。呈報前來。

相應將朝鮮差員抵春，請領俄界逃人，該協領代爲索要，仍不交回情形，據情呈報總理各國事務衙門，謹請查核可也。

윤10월 19일에 吉林將軍 毓福이 다음과 같은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39) 琿春協領의 보고가 다시 이어지는 부분인데, 본문에는 약간의 착오가 있어 이러한 구절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10월 25일, 琿春協領 訥穆錦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전에 받은 지시공문에 따라, 즉시 병사를 거느리고 朝鮮 慶源府 변경관원을 만나, “당신이 러시아에서 수용하고 있는 조선의 남녀노소를 모두 데리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해당 변경관원은 통역을 통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러시아에 의해 유인 당한 朝鮮의 남녀노소를 조선에서 되돌려 받아오고자 해도, 러시아에서 아직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慶源府 한 곳만의 사람이 아닌데다가, 아직 국왕의 유지를 받들지 못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는 사실 제가 감히 데려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제가 병사를 거느리고 摩濶巖로 가서 界務官을 직접 만나, 월경민을 쫓아내 朝鮮 측에서 데려가도록 요청한 이전의 문서를 다시 언급하였는데, 界務官은 통역을 통해 다음과 같이 답하였습니다.

러시아에서 끌어들이는 朝鮮의 남녀노소는 이전에 러시아 동시베리아 총독에게 받은 지시에 따라, 모두 綏芬 등지로 보내 경작에 종사하게 하였으니, 거기 소모된 비용을 변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완곡한 말로 요구하였지만, 界務官은 다음과 같이 답하였습니다.

당신은 단연코 이 일을 주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北京 주재 러시아 공사가 이 사정을 이미 조선국왕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당신네 琿春에서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재삼 설득했지만, 해당 界務官은 결국 월경민을 돌려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병사를 거느리고 돌아오면서 雲騎尉 吉爾洪阿를 摩濶巖에 몰래 남겨두어, 러시아 측 관원이 朝鮮의 남녀노소들을 어느 곳으로 보내는지 등의 상황을 탐문하여 신속히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나중에 吉爾洪阿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朝鮮의 남녀노소를 21일에 모두 綏芬 등지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協領은 다음과 같이 사실에 의거하여 보고해 왔습니다.

9월 3일에는 朝鮮 慶源의 지방관이 파견한 문무관원이 강을 건너 우리 官署에 직접 오더니, 러시아 경내의 월경민을 수령해가겠다고 요청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전에 여러 차례 러시아 관원에게 요구했던 바와, 뜻하지 않게 러시아 관원이 완강히 송환을 거부한 상황을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조선 관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지금 이미 국왕의 명을 받았으므로 그냥 돌아가기 어렵고, 중간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선 관원에게 일단 잠시 돌아가 있되, 10월 1일로 약속기일을 잡아, 그때까지 기다리다 반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다시 摩澗巖로 가서, 양국 간의 우호를 위해 이웃나라 월경민을 오래 머무르게 하는 게 좋지 않다는 점을 가지고 러시아 界務官을 완곡히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러시아 관원은 “러시아에서 많은 월경민을 오랫동안 부양한 만큼 소모된 비용을 보전하지 못한다면, 어찌 쉽게 송환을 받아들일겠습니까?”라고 답하였습니다. 이에 본관은 “오랫동안 부양한 만큼, 더욱 의리를 돈독히 하고 온정을 보여야 하며,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간의 우호를 위한 것”이라고 이치를 들어 설득하였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관원은 갑자기 노기를 띠면서, “러시아 총독의 명을 받아 이미 동쪽 해안 각지로 보내 일을 맡겼는데, 나는 (관직이) 낮아 책임지고 처리할 수 없으며, 또 중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어찌 입이 닳도록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수다스럽게 따진다면 평화로운 분위기를 해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본관이 좋은 말로 이치를 들어 따졌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관원이 험한 말로 거절하니, 실로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단지 이전에 정한 기한에 맞춰 속히 성으로 돌아와, 조선의 파견 관원에게 (그런 사정을) 본국에 알리게 했습니다.

(이러한 보고가 吉林將軍에게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朝鮮의 파견 관원이 琿春에 와서 러시아 경내 월경민의 송환을 요청했고, 해당 協領이 그들을 위해 대신 러시아에 가서 요청했지만, 러시아가 월경민을 송환해주지 않은 상황을 사실에 근거해 총리아문에 보고하니, 삼가 검토해 주십시오.

(88) 문서번호 : 1-2-4-09 (115, 154a-156b)

사안 : 러시아인이 월경민 송환을 거부하였으므로, 변경관원이 경계를 넘어 데리고 올 수 없는 것이지, 결코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이 아니라고 조선국왕이 알려진 것을 대신 상주합니다(轉奏朝鮮國王申辯俄人拒遣逃民, 邊吏無法越界押回, 並非意存推諉).

첨부문서 : 1. 러시아 관원이 러시아로 도망간 조선인들을 돌려보내는 것을 거절함(俄官拒絕逐回逃俄韓人).

2. 金光宇 등을 파견하여, 가서 도망간 백성들을 데려오게 하였으나, 혼춘협령은 러시아 관원들이 돌려보내줄 생각이 없다고 하여 돌아가게 하였음(派遣金光宇等往領逃民, 琿春協領以俄官無意遣還令返).

날짜 : 同治九年十二月十七日(1871년 2월 6일)

발신 : 軍機處

수신 : 總理衙門

十二月十七日, 軍機處交出禮部奏稱.

爲 據咨奏聞 事.

同治九年十二月初二日, 准盛京禮部送到朝鮮國王咨文二件, 臣等共同閱看. 一係因本年十月初一日, 臣部恭錄上諭一道, 並節錄總理各國事務衙門咨文行知朝鮮國王. 茲該國王覆稱.

俄人所稱已將飭令逃民耕作抵費各情, 達知該國王等語, 係屬俄人杜撰虛謊. 該國邊關所稱不敢承領等語, 係屬不能越界押回, 並非推諉.

等情.

一係因該國權管金光宇等往領在逃民口, 據琿春協領以俄官無意承應, 仍令歸還.

等情。均咨請轉奏前來。

謹鈔錄原文二件，恭呈御覽，伏候命下，由臣部遵奉施行。爲此謹密奏聞。

同治九年十二月十七日，軍機大臣奉旨。

該衙門知道。

欽此。

(1) 照錄咨文。

朝鮮國王，爲咨覆事。

同治九年十月三十日，承准禮部咨。

節該主客司案呈。

准欽命總理各國事務衙門，爲咨行事。

同治九年九月初五日，准吉林將軍咨稱。

[이하 내용은 (83) 문서번호: 1-2-4-04 (101, 131a-132a)와 동일하므로 생략함.]

竊照小邦以北地犯越邊民押還事，屢行咨請，迎邀天恩。此次因貴咨始知俄人之不肯趕回，安置綏芬等處。第其聲稱，“達知小邦”云云，不勝驚悚。小邦邊界之忽與俄人毘連，恒存無窮之疑慮，何敢通涉竭來視同鄰國哉。凡有大小邊情之與俄界相關者，輒皆控因大邦。苟有俄人達知情形，豈可恬然不卽上聞也。杜撰虛謊，敢欲瞞過，極爲可駭。而至若慶源邊官答稱之說，概緣小邦無以越界押回，則只是指陳情實，非欲故爲推諉。小邦不能設法招徠，使之安插故土，猶欲承藉威靈，清理邊疆，實仗上國字小之恩，罔敢自阻，有懷必陳者也。煩祈部堂諸大人，特賜諒照將此情實轉運天陞，不勝幸甚。爲此合行咨覆，請照驗施行。

(2)

朝鮮國王, 爲 洊陳北地情形 事.

同治九年閏十月初二日, 咸鏡道觀察使金壽鉉, 節度使金箕陽, 麟次馳啓.

備慶源府使申杓呈稱.

本年十月初一日, 因琿春協領照會在逃民口領回. 次入送乾源權管金光雨等, 與該協領商議, 則協領以爲“俄官無意承應, 民口亦已安置於綏芬等處, 且有扣抵賠償等語. 今不必委往俄界, 只此還歸爲好.” 該權管領受照會, 卽爲出來.

等因.

小邦纔因禮部咨辭, 恭修承領之儀, 仍陳感頌之意, 已於本月初八日馳譯交付鳳城守尉衙門. 此次北道道帥臣狀啓辭意, 係是禮部咨辭中早已領認之話也. 俄人之委以扣抵, 計在不肯推刷, 民口之徙諸隔遠, 莫或更無往來. 第其俄官聲稱, “將此情形已達知朝鮮”云云, 全然做謊, 白地杜撰, 已於前咨中據實申暴. 小邦事情, 合有諒燭. 蓋緣小邊邊民冒法奔竄, 屢煩天聽, 仰邀皇威. 煩乞部堂諸大人將此轉奏, 冀蒙訓示, 千萬幸甚. 爲此合行移咨, 請照驗施行.

12월 17일에 軍機處가 禮部の (다음과 같은) 상주문을 보내왔습니다.

조선국왕의 咨文을 받아 대신 상주합니다.

同治 9년 12월 2일, 盛京禮部에서 보낸 조선국왕의 咨文 2건을 받아, 臣들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올해 10월 1일에 저희 예부에서 삼가 초록한 상유, 그리고 총리아문의 咨文을 초록해 조선국왕에 알린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조선국왕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월경민의 경작에 든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조선국왕에게 이미 알렸다는 말은 러시아인들의 허황된 날조입니다. 조선 변경의 관문에서 월경민을 감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는 말은 국경을 넘어가서 데리고 올 수 없다는 뜻이지, 결코 책임을 미루려

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자문은 朝鮮權管 金光雨 등이 월경민을 데리러 갔지만, 러시아 관원이 송환 요구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면서 琿春協領이 그들을 돌려보냈다는 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모두 대신 상주해달라고 咨文으로 요청해 왔으므로, 삼가 원문 2건을 초록해서 황상께서 살펴보시도록 공손히 올리고 엎드려 하명을 기다리다가, 禮部에서 그에 따라 받들어 시행하겠습니다. 이에 삼가 비밀상주를 올립니다.

同治 9년 12월 17일에 軍機大臣이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아문에 알리라.

이상.

(1) 조선국왕의 답장 咨文 초록

조선국왕이 답장으로 咨文을 보냅니다. 同治 9년 10월 30일에 다음과 같은 禮部의 咨文을 받았습니다.

主客司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문서를 올렸습니다.

총리아문에서 咨文을 보냅니다.

同治 9년 9월 5일에 吉林將軍의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이하 내용은 (83) 문서번호: 1-2-4-04(101, 131a-132a)와 동일하므로 생략함.]

삼가 생각건대, 저희의 북쪽 지역 월경민 소환 문제를 가지고, 여러 차례 咨文을 보내 황상의 은혜를 간청하였습니다. 이번 귀 아문의 咨文 덕분에 러시아인이 송환을 달가워하지 않고, (월경민을) 綏芬 등지에 안치했음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러시아인들이 저희에게 알렸다”고 운운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 나라의 변경이 갑작스럽게 러시아와 맞닿게 되다 보니 항상 무궁한 의구심이 있었는데, 어찌 감히 폭넓게 왕래하면서 보통 이웃나라처럼 여길 수 있겠습니까? 중국과 조선 변경의 정세에서 러시아 경계와 관련된 것이 있다면, 모두 上國에 의해 통제되어야 합니다. 만약 진실로 러시아인이 사정을 알려줬다면, 어찌 천연덕스럽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허황된 날조로 감히 잘못을

속이려 하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慶源 변경관원의 대답은 모두 저희가 국경을 넘어가서 (월경민을) 데리고 올 수 없기에 단순히 사실을 밝힌 것일 뿐, 고의로 책임을 미루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월경민을 데리고 와 그들을 고향 땅에 安置할 방도를 마련할 수 없지만, 上國의 위엄을 빌어 변경을 정리하는 것은 실로 작은 나라를 긍휼히 여기는 上國의 은혜에 의지하는 것이니, 감히 자제하지 못한 채 꼭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禮部의 여러 大人께서 특별히 아량을 베푸시어, 이러한 사정을 황상께 전해주시면 정말 다행이겠습니다. 이에 마땅히 답장 咨文을 보내니, 참고해주시시오.

(2) 조선국왕의 咨文 초록

조선국왕이 조선 북쪽 지역의 상황에 대해 연이어 진술합니다.

同治 9년 10월 2일에 咸鏡道 觀察使 金壽鉉과 節度使 金箕陽이 다음과 같은 狀啓를 잇따라 보내왔습니다.

慶源府使 申杓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올해 10월 1일에 琿春協領의 照會에 따라 월경민을 되돌려 받으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乾源의 權管 金光雨 등을 보내 琿春協領과 상의케 했으나, 琿春協領은 “러시아 관원이 월경민을 송환할 의사가 없고, 백성들 역시 이미 綏芬 등지에 안치돼 있으며, 또한 변상금 지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꼭 러시아로 들어갈 필요는 없고, 돌아오는 게 나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해당 權管은 照會를 받아 즉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禮部의 咨文을 통해 비로소 월경민을 받아들일 조치를 준비하면서 감격한 마음을 전달하려 했다는 것은, 이미 이번 달 8일에 통역을 통해 鳳城守尉衙門에 알린 바 있습니다. 이번 북쪽 지방의 신하들이 올린 狀啓의 내용은 禮部의 咨文으로 이미 알게 된 내용입니다. 러시아인이 변상을 핑계로 대는 것은, 그 속셈이 월경민을 송환하지 않으려는 데 있습니다. 백성들을 먼 곳으로 옮긴 문제는 더욱 왕래를 못하도록 하려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러시아 관원이 “이러한 사정을 朝鮮에 알렸다”고 운운하는 것은 완전히 허황된 날조임은 이미 일전의 咨文에서 사실에 근거하여 밝힌 바 있습니다. 저희 사정을 부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선 변경의 백성이 법을 어기고 달아나는 바람에 황상을 누차 번거롭게 해드렸으니, 황상의 위엄을 바랄 뿐입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禮部의 尙書 등 여러 大人께서 대신 상주하여 訓示를 내려 받도록 해주신다면 참으로 다행이겠습니다. 이에 마땅히 咨文을 보내니, 참고 해주십시오.

(89) 문서번호 : 1-2-4-10(116, 157a)

사안 : 조선국왕의咨文 2건을 상주하고, 유지를 받아 초록하여 알립니다(具奏朝鮮國王咨文二件錄旨知照).

날짜 : 同治九年十二月二十日(1871년 2월 9일)

발신 : 禮部

수신 : 總理衙門

十二月二十日, 禮部文稱.

所有本部抄錄朝鮮國王咨文二件轉奏一摺, 於同治九年十二月十七日具奏. 本日軍機處片交, 軍機大臣奉旨.

該衙門知道.

欽此.

相應抄錄朝鮮國王原咨文及本部原奏, 知照總理各國事務衙門可也.

照錄粘單[詳見十二月十七軍機處抄摺].

12월 20일에 禮部에서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禮部에서 조선국왕의咨文 2건을 초록해 同治 9년 12월 17일에 대신 상주하였습니다. 오늘 軍機處가 附片을 보내주었는데, 軍機大臣은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아문에 알리라.

이상.

(이에) 마땅히 조선국왕의 원래 咨文과 禮部의 원 상주문을 초록하여, 총리아문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첨부 문서를 그대로 옮김[상세한 내용은 12월 17일 軍機處 주접 초록을 볼 것].

(90) 문서번호 : 1-2-4-11 (190, 247b)

사안 : 훈춘부도통이 러시아 계무관에게 공문을 보내 러시아 경내 한인의 송환을 요청하였는데, 북경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부도통의 개인적인 견해인지 문의합니다(琿春副都統移咨俄邊官, 請遣還俄境韓人, 係由京札飭抑該副都統私見).

날짜 : 同治十年十一月十六日(1871년 12월 27일)

발신 : 러시아 공사 블란가리

수신 : 總理衙門

十一月十六日, 俄國倭使函稱.

琿春副都統移咨本國該處邊界廓米薩爾文稱.

奉京師上憲札文, 該副都統令將移居本國之高麗人, 仍送回本籍.

因其人本係貴國所屬之人, 而本大臣于此事實未經貴王大臣曾行知照, 是以于未行照會之先, 特奉詢此事, 是否由京札飭或係該副都統之私見. 如係由京札飭, 則此事別有意見, 貴王大臣亦已知之. 如係該副都統之私見, 則無甚別意, 而專于此事用心, 未免太過, 緣其致貴國亦牽入此事中故也.

11월 16일에 러시아 블란가리 공사가 (다음과 같은) 서한을 보냈습니다.

琿春副都統이 본국의 해당 지역 界務官에게 다음과 같은 咨文을 보내왔습니다.

京師에 있는 중앙정부의 지시를 받들어, 러시아로 옮겨간 朝鮮人을 원래 자신의 나라로 돌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副都統이 귀국 소속이고, 본 大臣은 이 일과 관련해 貴王大臣으로부터 미리 전해 받은

바도 없습니다. 따라서 照會를 보내기에 앞서, 특별히 이 일에 대해 北京에서 지시를 한 것인지, 아니면 해당 副都統의 개인적인 견해인지를 묻고자 합니다. 만일 北京의 지시라면, 이 일에는 따로 의견이 있을 것이며, 貴王大臣도 이미 이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만일 해당 副都統의 개인적인 견해라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며, 이 일에만 너무 신경을 쓰는 건 지나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귀국 역시 이 일에 휘말려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91) 문서번호 : 1-2-4-12 (192, 250a-250b)

사안 : 咨文을 보내 조선 난민의 송환을 촉구한 것은 중국의 변경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며, 따로 그 일 처리에 책임이 따르는 바가 있어 照會를 보내지 않았습니(移咨逐回朝鮮難民, 係中國自防邊界生事起見, 因事另有責成, 故未照會).

날짜 : 同治十年十一月二十二日(1872년 1월 2일)

발신 : 總理衙門

수신 : 러시아 공사 블란가리

十一月二十二日 致倭使函稱.

昨准貴大臣來函內開.

琿春協領行文廓米薩爾, 將高麗人送回本籍.

等因.

本衙門查此事前准吉林將軍咨報.

據琿春協領呈報.

有朝鮮民人越界, 游行人數甚多.

此項人等既敢私自逃越本界, 難保無莠民在內, 來往中國與貴國及朝鮮交界之地, 滋生事端. 倘因此致貴國邊界未安, 既非中國之願. 若因此致中國邊界生事, 中國尤不可不防. 朝鮮一切政令, 雖係該國王自主, 中國向不遙制, 然因該國此項人民致與中國邊務大有關係, 則不能不嚴密防範, 以杜事端. 曾經本衙門奏奉諭旨.

飭下吉林將軍等切飭該處官員, 申明邊禁, 毋許朝鮮人民偷越中國境界. 如於各交界處所查有前項人等, 卽行交還朝鮮, 勿任逗留生事. 並令朝鮮約束本國人民, 不得仍蹈故轍, 俟貴國將該國越界民人逐回時, 盡數收回管束. 其應否與貴國邊界官商酌妥

辦之處 則由朝鮮國王自行酌辦.

凡此皆係中國自防邊界生事起見. 祇以所事另有責成, 且情形亦難懸揣, 不必由本大臣照會貴大臣辦理, 是以未經照會. 今琿春協領擬將朝鮮人民送回朝鮮之處, 係照前因辦理, 既准函詢, 用特布後.

11월 22일에 블란가리 공사에게 (다음과 같은) 서한을 보냈습니다.

어제 貴大臣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서한을 받았습니다.

琿春協領이 界務官에게 문서를 보내, 조선인을 원래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라고 하였습니다. 본 아문이 이 일을 조사해보니, 전에 吉林將軍의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은 바 있습니다.

琿春協領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선 백성이 월경하여 떠도는 사람의 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들은 이미 몰래 원래 국경을 넘어갔으므로, 그 가운데 못된 무리가 끼어들어 중국과 러시아, 조선의 交界를 왕래하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이 때문에 러시아 변경이 불안해진다면, 그것은 중국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만일 이 때문에 중국 변경에 문제가 생긴다면, 중국은 더욱 그것을 막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조선의 모든 政令은 조선국왕이 스스로 주재하고, 중국이 예로부터 멀리서 통제하는 일은 하지 않았지만, 조선 백성이 중국의 변경 업무와 크게 상관된다면, 빈틈없이 방비함으로써 미리 사단을 막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찍이 본 아문은 이 문제에 대해 상주하여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吉林將軍 등에게 지시하여, 해당 지역 관원들로 하여금 변경 금령을 다시 펼쳐, 조선 백성이 중국 경계를 몰래 넘지 못하게 하라. 만일 각 交界 지역에 이런 자들이 발견된다면, 즉시 조선으로 돌려보내 머물면서 말썽을 피우지 못하게 하라. 아울러 조선에서 자기 백성을 단속하게 해서 더 이상 전철을 밟지 않게 하도록 하고, 러시아가 조선 월경민을 송환할 때를 기다려 모두를 데리고 돌아가 통제하도록 하라. 러시아 변경관원과 상의해 적절히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선국왕으로 하여금 스스로 적절히 처리하게 하라.

이것은 모두 중국이 변경의 문제 발생을 스스로 막으려는 차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만 일 처리에 책임이 따르고 상황이 예측하기 어렵기에, 본 大臣이 반드시 貴大臣에게 照會를

보내 처리하게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照會를 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琿春協領이 조선인을 조선으로 송환시키려는 것은 이전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 것이며, (이에 대한) 문의 서한을 이미 받았기에 특별히 뒤늦게나마 통보하는 바입니다.

(92) 문서번호 : 1-2-4-13 (194, 252a-253b)

사안 : 조선인이 도망쳐 러시아 경내로 월경한 일에 대해 러시아 공사는 협박을 할 뜻이 있는 것 같으므로, 오로지 변경 금령을 엄격히 하여 구실로 삼을 수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韓民逃入俄境事, 俄使來函意存要脅, 惟自嚴邊禁, 不令有所藉口).

날짜 : 同治十年十一月二十四日(1872년 1월 4일)

발신 : 總理衙門

수신 : 吉林將軍 奕榕

十一月二十四日, 致吉林將軍奕榕函稱.

本月十六日, 據駐京俄使函稱, 琿春協領行文廓米薩爾, 將高麗人送回本籍一節. 其意以朝鮮民人逃入俄界, 無與中國之事, 今琿春協領欲送回朝鮮, 不知是何意見, 頗露有要脅之意.

查同治八年十月間, 准前富將軍文稱.

朝鮮難民紛紛逃入俄界, 兩國邊防最關緊要.

等因.

本處以既係朝鮮難民, 應令該國邊界官自行辦理. 當即行經禮部, 奏奉諭旨.

行文該國王, 嚴飭該國沿邊官弁, 約束民人, 毋許再有逃越, 以重關防.

等因. 欽此在案.

嗣於上年九月間, 又據富將軍咨稱.

該國並未領回一名, 仍見該國逃民紛投俄界.

且據琿春協領訥穆錦報稱.

往見俄國廓米薩爾, 曲爲開導, 令其將朝鮮民人悉數逐回, 詎廓米薩爾答稱.

此事不干琿春之事。如欲將朝鮮民人悉數領回，須包補糜費。

等語。

本處又以該國廓米薩爾之辭，心甚叵測，事關邊界，不可不預爲之防。該琿春協領第知朝鮮民人，不宜逃入俄界，須知逃越之時，只問其是否由中國境內行走。如由中國境內行走，則中國邊界官自宜嚴行禁止。若本由朝鮮界內逃入俄界，中國原可不問。該協領屢令朝鮮邊官領回，而該邊官答以未奉該國王之命。又屢向俄國邊官索要，而該邊官復以不干琿春之事回覆，且有包補糜費等語。是兩國各存意見，而中國反爲所愚。本處遙隔數千里，究未知朝鮮民人逃入俄界，是否由中國境內行走，又未便置之不問。緣又奏奉諭旨。

迅卽行令朝鮮，自行設法招徠，並飭邊界各員弁，隨時稽查，如有朝鮮民人由中國地界逃至俄國者，卽行查禁。

等因。欽此。

當由本處恭錄行知復在案。本處於抄寄諭旨之時，復添入中外交涉。惟自嚴邊禁，毋稍疏漏，以期常弭釁端。嗣後惟飭邊界官從嚴稽查，如有朝鮮民人由中國地界內逃入俄境者，立即攔阻，不令兩國有所藉口等語。本處思患預防，早慮及俄國包補糜費等詞，將來必有藉端饒舌之處。今俄使來函雖未明露，然其意存要脅，已可概見。本處酌復之詞，惟以中國邊務，大有關繫，一切皆係中國自防邊界起見。今將與俄使來往信函抄錄寄閱，貴將軍自當洞悉其情也。除俟俄使函復到日，再行咨達外，先此布泐，卽頌勛祉，正繕函間。適接准貴將軍十月二十六日咨稱。

據黑河口巡員報稱。

見有俄國火船將高麗國人載赴匣子地方屯居，並見匣子迤東有新房五十一所，俱是朝鮮難民居住。

此項難民既非由中國屬界潛越，自無從攔阻。且匣子地方亦屬俄界，又非姓城所轄，咨請查核。

等因。

查貴將軍此次來文，朝鮮難民越界，分別由中國與非由中國。其俄人所給該難民屯居之

地，亦分別係俄界與中國境界。最爲得當，此後務希嚴飭貴屬，照此辦理，以安邊界，而泯事端，是爲至要，又泐。

11월 24일에 吉林將軍 奕榕에게 다음과 같은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번 달 16일에 琿春協領이 조선인을 본국으로 송환하라는 공문을 界務官에게 보냈다는 北京 주재 러시아 공사의 서한을 받았습니다. 그 뜻은 조선 백성이 러시아로 월경하는 것이 중국과 관련 없는 일이니, 지금 琿春協領이 (그들을) 조선으로 돌려보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내용입니다만, 상당히 위협적인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同治 8년 10월에 전 吉林將軍 富明阿의 다음과 같은 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조선 난민이 분분히 러시아 국경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은 양국의 변경 방어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총리아문에서는 원래 이들이 조선 난민이기에, 마땅히 조선의 변경관원에게 스스로 처리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禮部를 거쳐 이에 대해 상주하여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조선국왕에게 공문을 보내, 조선 변경의 문무관원으로 하여금 백성을 통제하게 하여, 다시는 국경을 넘어가는 일이 없게 함으로써, 변경의 방어를 중시하라.

그 후 작년 9월에 다시 吉林將軍 富明阿의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조선에서 월경민을 한 명도 데려 가지 않았으며, 조선 월경민이 분분히 러시아 국경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전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琿春協領 訥穆錦의 다음과 같은 보고도 받았습니다.

러시아 界務官에게 가서 완곡히 설득하여 조선 백성들을 모두 송환시키려 했지만, 界務官은 다음과 같이 답했을 뿐입니다.

이 일은 琿春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만일 조선 백성들을 모두 데리고 돌아가려 한다면, 반드시 소모된 비용을 변상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총리아문에서 해당 界務官의 발언을 살펴보니, 그 심중을 추측하기 어렵고, 일이 변경과 관련되어 있기에 미리 방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琿春協領은 단지 조선 백성이 러시아 국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점만 알고 있는데, 마땅히 월경 시점을 알아야 하고, 중국 경내를 거쳐 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중국 경내를 거쳐 갔다면, 중국의 변경관원은 마땅히 이를 엄격히 금지해야 합니다. 만일 조선 국경 내에서 러시아로 넘어갔다면, 중국은 원래 이에 대해 더 이상 따질 수 없습니다. 琿春協領이 여러 차례 조선 변경관원으로 하여금 월경민을 데려가게 했지만, 그들은 국왕의 명을 아직 받들지 못했다고 답하였습니다. 또 러시아 변경관원에게 누차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변경관원은 琿春의 개입에 상관하지 않는다고 대답 하면서 소모된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국이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 있어, 중국은 도리어 우롱당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총리아문은 수천 리 멀리 떨어져 있어서 조선 백성이 러시아로 월경하면서 중국 경내를 거쳐 갔는지 모르지만, 또한 그대로 방치하기 곤란하여, 이에 대해 상주하여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즉시 조선에 지시하여 스스로 방법을 마련하여 월경민을 데려오되, 변경의 각 문무관원에게 수시로 조사하게 하여, 만일 조선 백성 가운데 중국 땅을 경유해 러시아로 가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이를 제지하도록 하라.

(이에) 마땅히 총리아문에서는 (유지를) 공손히 기록하여 재차 알린 적이 있습니다. 총리아문이 유지를 초록해 전달할 때, 다시 중국과 외국 간 교섭은 스스로 변경을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항상 문제의 소지가 없게끔 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변경관원이 조사에 임할 때, 조선 백성 가운데 중국 경내를 경유해 러시아 경내로 가는 경우가 있다면, 즉시 이를 제지하여 양국에게 빌미로 삼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러시아에서 소모된 비용을 변상해 달라는 구실을 내세워, 장래 반드시 트집을 잡아 농간을 부릴 여지가 있을 듯 해 우려가 됩니다. 지금 러시아 공사가 보내 온 서한에서 뚜렷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의도가 위협에 있다는 것은 이미 대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총리아문에서 답장으로 보낸 말은, 이 문제가 중국의 변경 업무와 큰 관련이 있으며, 모든 것이 중국이 변경을 스스로 방어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러시아 공사와 주고받은 서한을 초록해 보내니, 貴將軍께서도 마땅히 그 사정을 잘 아시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 공사의 답신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이에 대한 咨文을 다시금 보낼 터이지만, 이보다 앞서 알려드리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마침 이 서한을 준비하는 사이에 10월 26일, 貴將軍의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黑河 입구 순찰 관원이 다음과 같이 보고를 하였습니다.

러시아 기선이 조선인을 태워 匣子 지역으로 옮겨 거주하게 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匣子 동쪽에 새 집 51채가 있는데, 모두 朝鮮 난민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난민은 중국 경내를 경유해 월경한 것이 아니기에 막을 방도가 없었습니다. 또 匣子 지역은 러시아에 속해 있어 三姓城의 관할이 아니니, 咨文으로 알려 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貴 將軍이 이번에 보낸 공문을 검토해보니, 조선 난민의 월경은 중국을 경유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뉩니다. 러시아인이 해당 난민들에게 거주하도록 지급한 토지 역시, 러시아 경내와 중국 국경(일대)로 나뉩니다. 가장 적절한 방안은 이후 貴 將軍의 속관에게 엄격히 지시해 이와 같이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변경을 안정시키고 문제의 소지를 없애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

(93) 문서번호 : 1-2-4-14 (198, 256b-257b)

사안 : 조선 난민을 쫓아 보내는 일은 조약에 근거가 없어, 허락하여 실행하기 곤란합니다
(逐回朝鮮難民, 於約無據, 礙難允行).

날짜 : 同治十年十二月初四日(1872년 1월 13일)

발신 : 러시아 공사 블란가리

수신 : 總理衙門

十二月初四日, 俄國公使倭良嘎哩函稱.

接准貴大臣來函內稱, 查明琿春協領擬將越界之朝鮮人民送回本籍一事, 貴國用心安邊, 併防朝鮮逃出近邊之游民滋生事端之至意, 本大臣固深明悉, 而琿春協領行文本國廓米薩爾所擬之處, 尚有不能與貴大臣同允者. 查函內所稱諭旨.

飭下吉林將軍等, 切飭該處官員申明邊禁, 毋許朝鮮人民偷越中國境界. 如於各交界處所查有前項人等, 卽行交還朝鮮.

等因.

自係以貴國所屬, 與旨內所稱官員該管之邊界地方而論. 若邊外他國境內遇有事故, 令該管官恐其向邊界滋生事端, 其該員應照和好之意, 請鄰國邊界官員, 按照該國章程, 設法消弭滋事之故. 至其令將朝鮮人民逐回朝鮮之處, 核與貴國所定和約本不可行. 貴王大臣亦諗知本國與朝鮮並未立過和約, 而與貴國所立和約內亦未題明此事也. 大抵天下惟朝鮮一國, 違避鄰國, 不與交涉. 因此我等於載籍之內, 始知有朝鮮之國. 至其爲國及該國有無規矩政令, 本國毫難措詞. 乃該國有人因災歉餓殍等故, 携家至本國, 求准其在境內居住, 照平民一體度日, 本國並無不允之處. 該民人等既經居住, 能遵本國法律, 因此自得本國體恤, 與本國之民無異. 此項人民內亦或有莠民, 因避國法而逃

者，本國莫知其情，寔緣與朝鮮素無往來之故也。查將來日久，或者改易現在所有不合之情形，而朝鮮亦必應棄今日所守彌縫過嚴之法。因與天下各處現行之公法不符，目下本國尚能容忍似此之鄰國，自無用設法以致邊界不安。即如同治五年法國及去年美國向朝鮮動兵之時，本大臣辦事和平之意，貴王大臣亦必知之。儻若前兩次動兵，本國無庸幫助該兩國，即許其征討爲是，則必致外洋大邦幾於一同幫助也。

12월 4일에 러시아 공사 블란가리가 (다음과 같은)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貴大臣이 보낸 서한을 받아, 琿春協領이 조선 월경민을 本籍地로 송환하려 하는 사안을 살펴봤을 때, 귀국이 변경 안정에 주의하고 있으며, 조선에서 근처 변경으로 월경한 游民들이 일으킬 문제를 방지하려는 지극한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본 大臣도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琿春協領이 러시아 界務官이 관할하는 지역에 공문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貴大臣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한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吉林將軍 등에게 지시하여, 해당 지역 관원들로 하여금 변경 금령을 펼치도록 하고, 조선 백성이 중국 경내로 越境하지 못하도록 하라. 만일 각 交界 지역에서 이런 사람이 확인된다면, 즉시 조선으로 돌려보내라.

자연히 이것은 귀국 소속의 지방, 즉 유지에서 말하는 관원이 관할하는 변경 지역에 대해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 국경 밖 다른 나라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해당 관할 관원으로 하여금 변경에서 문제가 일어날까 염려하게 한다면, 그 관원은 응당 양국 간의 우호를 위해 이웃나라 변경관원에게 해당 국가의 규정에 따라 문제의 원인을 제거할 방법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인을 조선으로 돌려보내는 일의 경우, 귀국과 맺은 조약을 살펴봤을 때 전혀 들어맞지 않습니다. 貴王大臣 역시 러시아와 조선이 아직 조약을 맺지 않았으며, 귀국과 맺은 조약 안에도 이 문제를 분명히 하지 않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저 천하에서 조선 한 나라만이 이웃 국가를 피해 교섭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적을 통해 처음으로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선이 국가인지, 해당 국가에 법과 政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본국이 뭐라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국가에서 재해와 기아 등의 이유로 가족을 데리고 본국으로 와, 경내에서 거주하며

평민처럼 살게 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본국에서는 허락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해당 백성들이 이미 러시아에 살고 있고, 러시아의 법률을 준수하므로, 러시아의 보살핌을 받는 데 있어 러시아 백성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 가운데 불순분자나 국법을 피해 달아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러시아에서는 그러한 사정을 전혀 알 수 없는데, 그것은 실로 조선과 평소에 왕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장래에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 현재의 불합리한 상황을 바꾸고, 조선 또한 현재의 미봉책이나 지나치게 엄격한 법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계 각지의 現行公法과 부합되지 않기에, 지금 러시아에서는 이러한 이웃 나라를 용인할 뿐이지만, 자연히 방도를 마련함으로써, 변경이 불안해지도록 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同治 5년에 프랑스가, 그리고 작년에 美國이 조선과 전쟁을 벌였을 때처럼, 본 大臣이 평화롭게 일을 처리하려 했던 뜻을 貴 王大臣 역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두 차례의 전쟁에서 러시아가 프랑스와 美國 두 나라를 도울 필요는 없었지만, 만약 그 징벌이 명분상으로 옳았다면, 틀림없이 外洋의 대국들도 함께 도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동북아역사 자료총서 41

국역 『清季中日韓關係史料』 1

초판 1쇄 인쇄 2012년 12월 3일

초판 1쇄 발행 2012년 12월 10일

역 김형중, 배우성, 이지영, 이원준, 김창수, 허주형
펴낸이 김학준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 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미군동 267) 임광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9
e-mail book@nahf.or.kr

© 동북아역사재단, 2012

ISBN 978-89-6187-292-8 94910
978-89-6187-291-1 (세트)

- *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